



2023.9.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보고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기획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진익	경제분석국장	
심의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검토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상우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정	최준호	정책분석관				이지선	예산분석관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작성	김윤성	이지선	이상아	강지혜	윤성식	남명진	예산분석관	
	유연제	이미선	유다연	김민석	김성은	정성영		
	허아름	이한성	정금연	황진솔	유민호	한서영		
	이병철	손동희	안태훈	안수지	송은혜	최해인		
	윤주철	태정림	남희	김우림	임슬기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	
	박선아	이미연	어수진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김문경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박성은							
	김경수	박승호	김상용	황종률	김원혁	박선우	경제분석관	
	신용재	권일	김윤희	조은영	김용균	유근식		
	김민혁	이소연	천경록					
	지원	유선주	김현실	양희열	김정선	행정실무원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정책총괄담당관실 | 02) 6788-3730 | policy@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2023.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09. 0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회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교역량 감소,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방향의 설정과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금년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재정·경제 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국세수입 오차, 연금개혁 및 소비자물가 등 재정·경제 분야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관련 통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요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의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재정

1. 국가채무 현황	2
2. 재정수지 현황	8
3. 재정준칙 도입 논의	1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원 산정 방식 개편 논의	18
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논의	22
6.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쟁점	28
7.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발전·송전로 추이	32
8.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	38
9.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44
10. 국가 결산상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제	50
11. ODA 재원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과제	55
12. 민·관 공동비축제도 논의	61
13.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 이후 과제	63
14. 인공위성·발사체 개발 사업의 주요 쟁점	68
1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현황	72
16. 코로나19 백신 관리방안	76
17.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황 및 과제	79
18. 병 인건비 인상과 국방분야 자원 배분	84
19. 대형산불 대응체계 확립 과제	88
2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관련 논의	92
21. 방위산업 동향 및 절충교역 과제	96
22.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관련 쟁점	101
2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쟁점	106
24. 풍수해보험 제도 현황 및 과제	110
25. 사립대학 재정 위기와 정부의 대학등록금 규제	115



조세

26. 국세수입 전망 오차 개선	122
2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현황	126
28.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129
29. 국세 체납 현황 및 개선방안	134
3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쟁점	137
31.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142
32.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및 주요 개정 경과	146
33.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154
34. 부가가치세율 국제비교 및 논의 현황	160
35. 물가 관리를 위한 소비세제 개정 동향	164
36. 법인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168
37. 투자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72
38.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방안	176
39.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개선	179
40.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182
41.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186
42.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 현황	190

Contents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연기금 및 사회보험

43.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과제	196
44. 연금개혁 추진과제	202
4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206
46.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209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214
48.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부담	217
49. 실업급여 추이	222
5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 현황 및 쟁점	226
51. 군인연금 현황 및 보전금 추이	230



경제

52. 2023년 소비자물가 동향	236
53. 최근 경상수지 현황	239
54.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과제	243
55.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과 수입의존도 추이	247
56.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과 교역구조 변화	252
57. 원화가치 약세의 현황 및 방향성	255
58. 최근 엔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58
59. 식량자급률 추이 및 쟁점	262
60. 최근 미국경제 상황과 정책금리 전망	265
61.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의 위험요인	268
62. 재정의 경기대응성	272
63.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및 쟁점	278
64. 이민 현황 및 이민정책 관련 쟁점	282
65. 청년 고용 현황과 과제	290
66.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현황	294
67. 최근 기업부채 현황	298
68. 가구유형 변화와 주거정책	301
69. 건설업 미분양 및 부동산 PF 현황	306
70. 최근 역전세 및 강통전세 현황	310
71.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	315
72. 친환경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현황	319
73. 「녹색성장·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정투자 현황	323
74.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과 주요 쟁점	328
75.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실태	334
76.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관련 현안	340
77. 공공기관 이전의 현황 및 성과	346
78.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351
79.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역할과 추진현황	357
80. 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점검	361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재정

1

국가채무 현황

가. 현황

-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D1)¹⁾은 1,067.7조원(GDP 대비 49.4%)
 - 전년 대비 97.0조원 증가, 최근 5년(2018~2022) 연평균 11.9% 증가
 - 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의 97.4%는 국채 증가(94.4조원)에 기인
 - 국채 증가분은 국고채권 93.8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0.6조원 등
 - 2023년 6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83.4조원 규모
 - 전년말 대비 49.9조원 증가: 국채 50.4조원 증가, 차입금 △0.5조원 감소
-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5.6%p 증가(2018년 379.2조원(55.7%) → 2022년 676.4조원(63.3%))
 - 적자성 채무: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로, 일반회계의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
- 2023년 예산 기준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67.8조원이며,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5조원(일반회계 적자보전용 45.8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 규모
 -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는 글로벌 금리상승에 동조하여 하락 후 재상승 추세
 - 4.21%(2022년 10월) → 3.28%(2023년 4월) → 3.67%(2023년 7월)
 - 2023년 7월 기준 국고채 응찰률은 266%,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210.9조원(보유 비중 21.0%)
- 일반정부 부채(D2)²⁾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51.3%
 - EU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D2) 지표를 사용

강지혜 예산분석관 (02-6788-4626)

- 1)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상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재정법」 상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함
- 2)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채무(D1) 포괄범위에 추가적으로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위의 부채를 의미함

나. 주요 쟁점

-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로서 일반정부 부채(D2) 및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 부채비율 등 보완 지표 검토 필요
 -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D1) 지표를 사용하나, EU 등 대다수 해외국가들은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 일반정부 부채(D2)를 관리지표로 활용
 -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지표간 차이(D2-D1)가 확대되는 추세로 2021년 결산 기준 95.5조원에 이름
 -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중 51.3%는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한 수준³⁾
 - 기축통화국⁴⁾의 평균 D2 비율은 GDP 대비 92.3%
 - 한국의 2000~2020년 D2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OECD 평균(7.7%)을 상회

3)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2022.12.15.) 인용.

4) 기축통화국의 경우 IMF Fiscal Report(2023.4월) 기준 선진국 중에서 IMF의 세계 외환보유액(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구성 통화(달러(미국, 캐나다, 호주),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프랑으로 구성) 사용 국가를 의미함. 단,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제외함.

다. 관련 통계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 결산 (A)	2022년			증감	
		예산	2회 추경 (B)	잠정결산 (C)	추경 대비 (C-B)	전년 대비 (C-A)
국가채무 총계 (D1) (=A+B) (GDP대비 %)	970.7 (46.7)	1,064.4 (50.0)	1,068.8 (49.7)	1,067.7 (49.4)	△1.1 (△0.3)	97.0 (2.7)
중앙정부 채무 (A=a+b+c) (GDP대비 %)	939.1 (45.1)	1,033.3 (48.5)	1,037.7 (48.2)	1,033.4 (47.8)	△4.3 (△0.4)	94.3 (2.7)
• 국채(a)	937.0	1,031.3	1,035.8	1,031.5	△4.3	94.4
- 국고채	843.7	937.1	937.5	937.5	△0.0	93.8
- 외평채	11.2	12.0	12.3	11.8	△0.5	0.6
- 국민주택채권	82.2	82.1	85.9	82.2	△3.7	△0.0
• 차입금(b)	2.0	2.0	1.9	1.9	0.0	△0.1
• 국고채무부담행위(c)	0.1	0.1	0.1	0.1	-	△0.0
지방정부 순채무(B)	31.5	31.1	31.1	34.2	3.1	2.7

주: 1. 지방정부 순채무 34.2조원은 잠정치이며 12월경 확정 예정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2018-2022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¹⁾	B-A
국가채무(D1) (GDP대비,%)	680.5 (35.9)	723.2 (37.6)	846.6 (43.6)	970.7 (46.7)	1,067.7 (49.4)	97.0 (2.7%p)
- 적자성채무 (국가채무 비중)	379.2 (55.7)	407.6 (56.4)	512.7 (60.6)	597.5 (61.6)	676.4 (63.3)	78.8 (1.8%p)
- 금융성채무 (국가채무 비중)	301.3 (44.3)	315.6 (43.6)	333.9 (39.4)	373.2 (38.4)	391.3 (36.7)	18.2 (△1.8%p)

주: 1) 2022년 지방정부순채무 결산기준액은 잠정치(지방자치단체 결산 이후 확정 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잠정) 중앙정부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잠정)						
		예산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말 대비
중앙정부 채무 ¹⁾	1,033.4	1,101.7	1,053.6	1,072.7	1,088.7	1,083.4	△5.3	49.9
국채	1,031.5	1,100.3	1,051.8	1,070.9	1,087.1	1,081.9	△5.2	50.4
(국고채권)	937.5	999	958.1	975.6	993.4	988.4	△5.1	50.9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5	82.6	81.3	81.2	△0.1	△1.0
(외평채권)	11.8	14.5	12.2	12.6	12.3	12.3	△0.0	0.5
차입금	1.9	1.2	1.7	1.7	1.5	1.4	△0.1	△0.5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1	0.1	0.1	0.1	-	-

주: 1)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1.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고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말
국고채 발행 잔액	611.5	726.8	843.7	937.5	999.0	1003.7
총발행액	101.7	174.5	180.5	168.6	167.8	116.3
순발행액	44.5	115.3	120.6	97.3	61.5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88.2	86.2	45.8	
차환발행액	57.2	59.5	59.9	71.4	106.3	

주: 1. 2019~2022년은 결산, 2023년은 예산 기준이며 7월말 기준은 총 발행실적만 공표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48	3.46	3.41	3.28	3.33	3.59	3.67
유통 금리(3년물)	1.798	3.722	3.325	3.797	3.270	3.293	3.459	3.662	3.681
유통 금리(10년물)	2.250	3.730	3.297	3.753	3.340	3.360	3.532	3.675	3.761
국고채 평균 응찰률	283	275	290	282	257	272	265	245	266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	164.1	192.9	190.6	189.9	191.8	200.4	206.3	210.9
	(순투자)	42.5	28.9	△2.3	2.2	△3.0	1.9	8.6	5.9
	보유 비중	19.4	20.5	20.1	20.0	19.8	19.7	20.1	21.0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채무(부채) 지표별 주요 활용 현황

재정지표	규모('21년)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국가채무 (D1)	970.7조원 (46.7%)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예산·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일반정부 부채 (D2)	1,066.2조원 (51.3%)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GFS), 발생주의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427.3조원 (68.6%)	D2 + 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

주: 2022년 지표는 2023년 12월경 발표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2-2021년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 부채(D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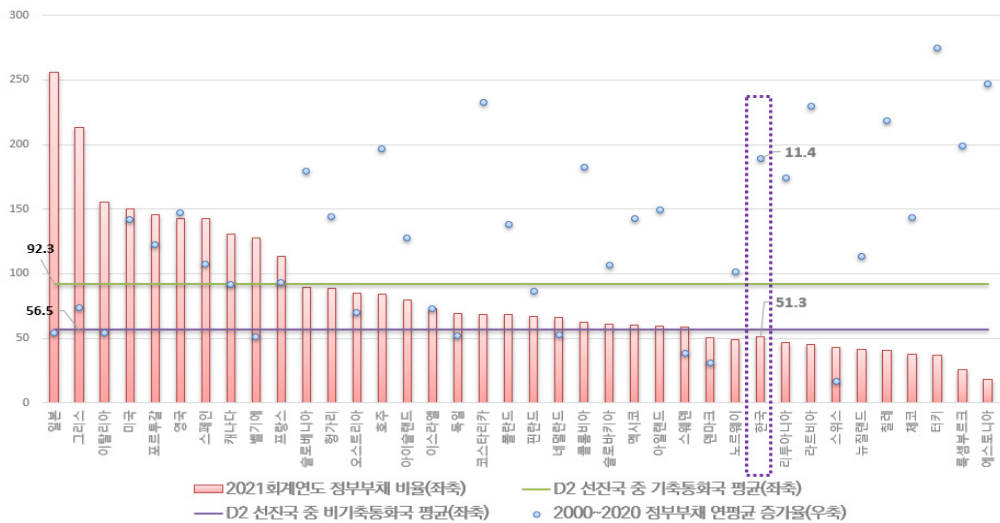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채무 (D1)	규모	443.1	489.9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70.7
	GDP 대비 비율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3.8	46.7
일반정부 부채 (D2)	규모	504.6	565.6	620.6	676.2	717.5	735.2	759.7	810.7	945.1	1,066.2
	GDP 대비 비율	35.0	39.6	41.8	40.8	41.2	40.1	40.0	42.2	48.9	51.3
차이 (D2-D1)	규모	61.5	75.7	87.4	84.7	90.6	75	79.2	87.5	98.2	95.5

자료: 기획재정부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단위: %)



주: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2022.12.15.) 인용. 기축통화국의 경우 IMF Fiscal Report(2023.4월) 기준 선진국 중에서 IMF의 세계 외환보유액(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구성 통화(달러(미국, 캐나다, 호주),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프랑으로 구성) 사용 국가를 의미함. 단,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제외함.

자료: IMF 자료 및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부 부채(D2)(「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 산정책처 재작성

2

재정수지 현황

가. 현황

-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재정수지는 재정운용 결과를 보여주는 주요 총량 지표

- 20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 차감)가 적자인 해는 2009년, 2015년, 2019~2022년이었으며, 관리재정수지¹⁾는 2000~2019년 동안 GDP 대비 평균 $\Delta 1.1\%$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020~2022년 동안 GDP 대비 평균 $\Delta 5.2\%$ 로 악화
-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연도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 시에 $\Delta 3\%$ 초과
 - 정부는 2022년 9월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의 $\Delta 3\%$ 로 하되,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0% 초과 시 한도를 $\Delta 2\%$ 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안 제시

- 2011년 이후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보면,²⁾ 1분기에 비해 2·3분기에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4분기에 회복하는 주기가 있음

- 다만, 2013~2018년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으나,³⁾ 2019년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연말 재정수지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악화

나. 주요 쟁점

- 최근 세수 부진 등으로 2023년 6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4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0조원 수준

- 2023년도 본예산은 총수입은 625.7조원,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8.2조원 적자 규모로 편성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 1)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미래에 지급될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흑자를 제외하므로 당해연도의 재정운용 결과 파악을 위한 지표로 활용
- 2) 월별 총수입·총지출 수납액 자료는 열린재정 웹사이트에서 2011년 이후부터 검색 가능
- 3)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재정수지는 월별로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 1분기 실적으로 연간 적자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023. 5. 14.

- 재정수지는 수입과 지출 상황에 따라 매월 등락하므로 특정 시점의 재정수지로 해당연도의 재정운용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현시점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총수입 진도율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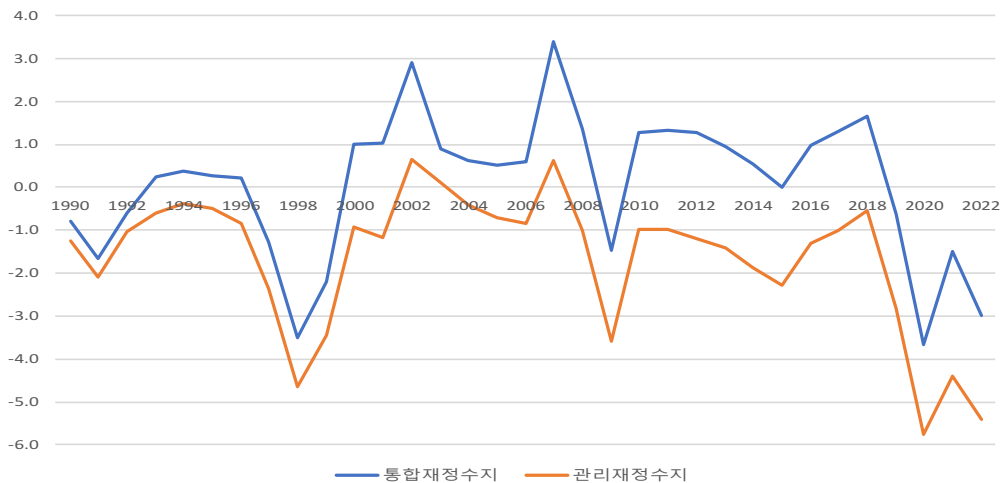
■ 2023년 6월 기준 총수입 진도율(6월 총수입 누계 / 본예산)은 47.3% 수준으로 2011~2022년 평균 진도율(51.1%, 결산 기준)⁴⁾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2023년 6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6월 총지출 누계 / 본예산)은 55.1% 수준으로 2011~2022년 평균 진도율(57.5%, 결산 기준)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나, 총수입 진도율 차이보다는 작음

다. 관련 통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추이: 1990~2022

(단위: 경상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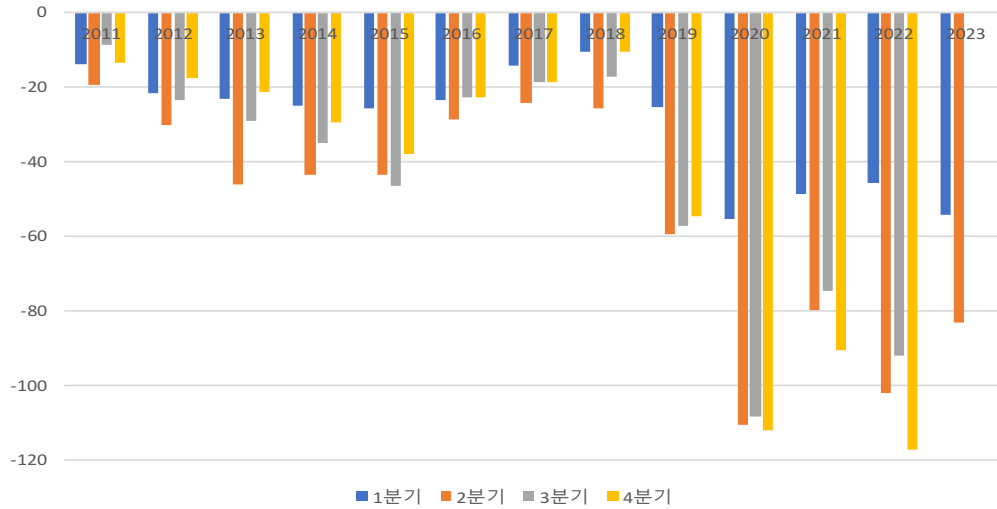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열린재정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원 단위 월별 총수입·총지출 수납액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진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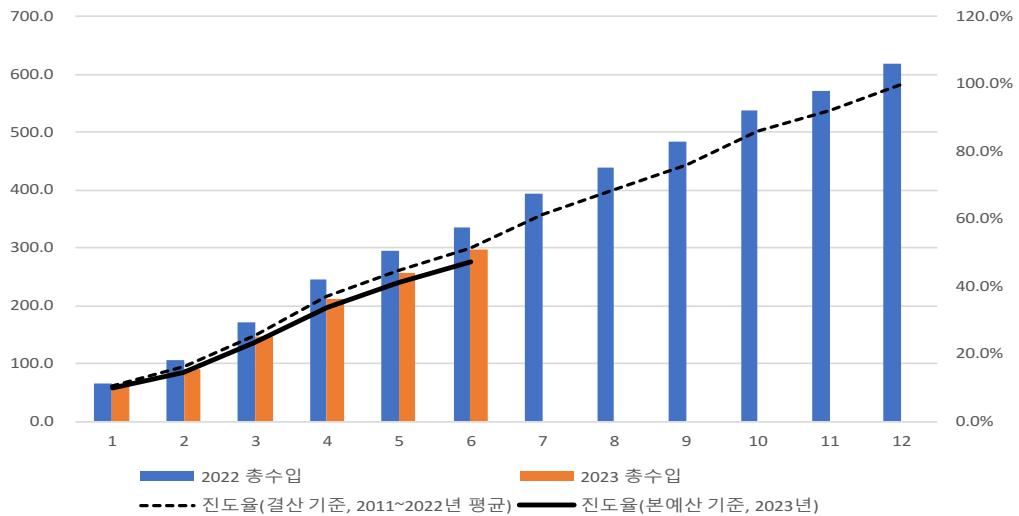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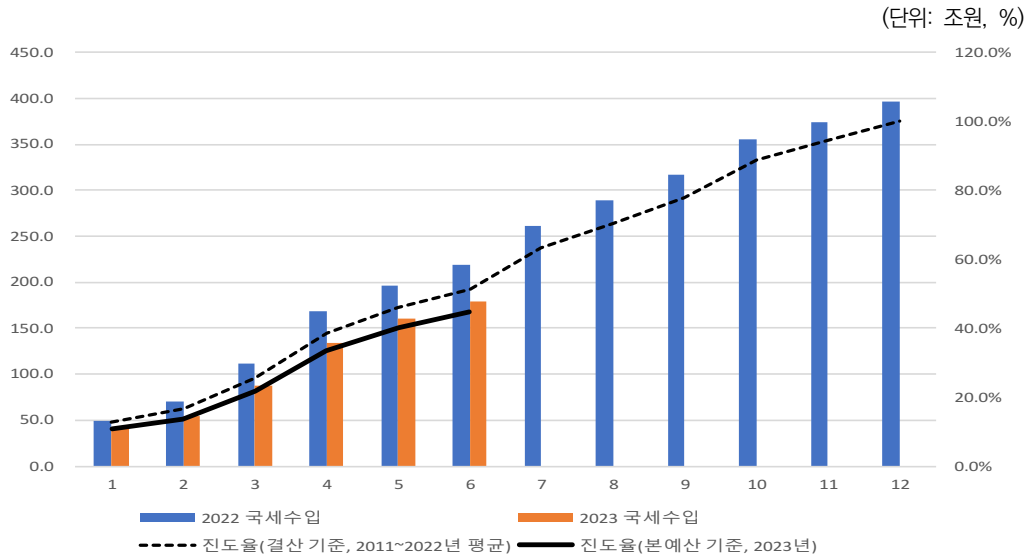
2023년 월별 총수입 추이와 진도율 비교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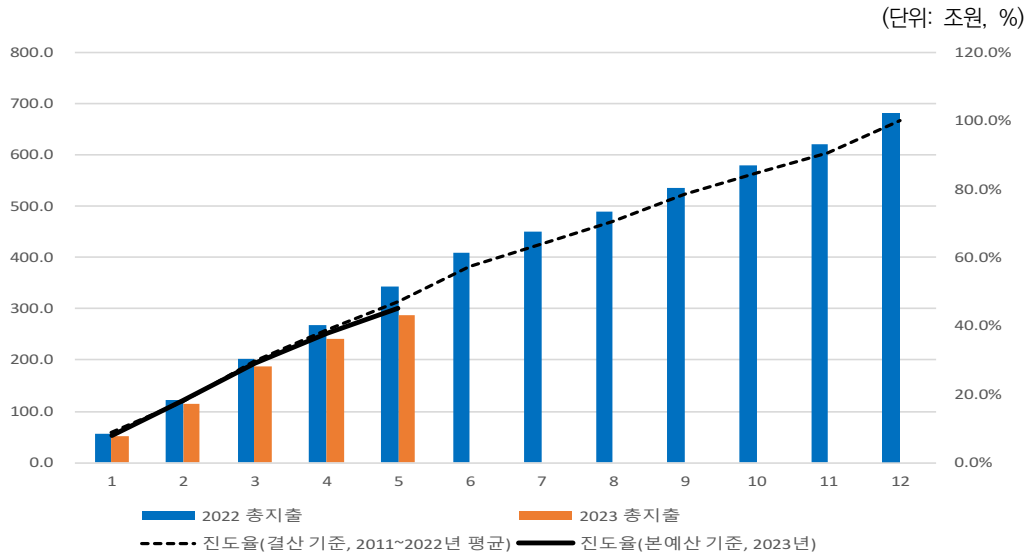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월별 국세수입 추이와 진도율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월별 총지출 추이와 진도율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재정준칙 도입 논의

가. 현황

- 재정준칙(fiscal rule)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
 - 재정준칙은 수치 제한이 이루어지는 “재정총량”에 따라 채무준칙(Debt rules), 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s), 지출준칙(Expenditure rules), 수입준칙(Revenue rules) 등으로 구분¹⁾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국가 수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2022년 동안 관리재정수지²⁾가 크게 악화되었고,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결산기준 49.4%로 2013년(32.6%) 대비 16.8%p 증가
 -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튀르키예를 제외한 36개국이 재정준칙 운영 경험이 있음
- 정부는 2022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의 3%로 하되(수지준칙), 국가채무(D1)³⁾의 GDP 대비 비율이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준칙안을 제시
 -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재정준칙 적용 면제, 예외 상황 소멸 후 한도 재적용 및 재정건전화대책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 포함

강지혜 예산분석관 (02-6788-4626)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 1) ① 채무준칙: 국가채무 또는 신규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② 수지준칙: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③ 지출준칙: 지출의 증가율 한도를 GDP 성장률 등으로 정하는 방식 ④ 수입준칙: 수입의 최저 또는 최고 수준을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

Davoodi et al. (2022a), Fiscal Rules and Fiscal Councils Recent Trends and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F Working Paper WP/22/11

-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상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재정법」 상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함.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와는 포괄범위 및 산출기준이 다름

나. 주요 쟁점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준칙 도입 관련 주요 법률안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 다수로, 준칙의 유형 및 기준의 적정성, 예외 조항 도입 등이 주요 논의 사항
 -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채무 한도는 GDP의 40% ~ 60% 수준, 수지 한도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GDP의 $\Delta 2\%$ 또는 $\Delta 3\%$ 수준으로 규정
- 관리재정수지 한도의 적정성 관련 쟁점
 - 정부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한도(GDP 대비 $\Delta 3\%$)의 경우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의 재정운용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Delta 3\%$ 에 달한 경우는 1997-1998 외환위기,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2020 이후 코로나19 시기 등 경제위기 시로 한정됨
- 경상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필요
 - 관리재정수지가 $\Delta 3\%$ 이내로 관리되더라도 경상성장률 등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규모 및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 필요
 - 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4%(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Delta 3\%$, 경상성장률 3% 유지 가정 시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은 91%에 이르나, 경상성장률이 5%로 유지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은 6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준칙 도입 이후 준칙 이행을 점검·평가할 독립재정기구 역할 논의 필요
 - IMF는 독립재정기구를 장기적 재정의 안전성 및 단기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포함한 정책 목표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정책과 계획 및 성과를 공개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정의⁴⁾
 - 재정준칙 도입과 더불어 독립재정기구 설립 국가 증가 추세
 - 2021년 기준 49개국에서 51개의 독립재정기구를 설치·운영중이며, 독립재정기구 중 85%가 재정준칙 준수 여부 감독 기능을 수행

4) IMF, 「The Return to Fiscal Rules」, 2022.

다. 관련 통계

주요 재정총량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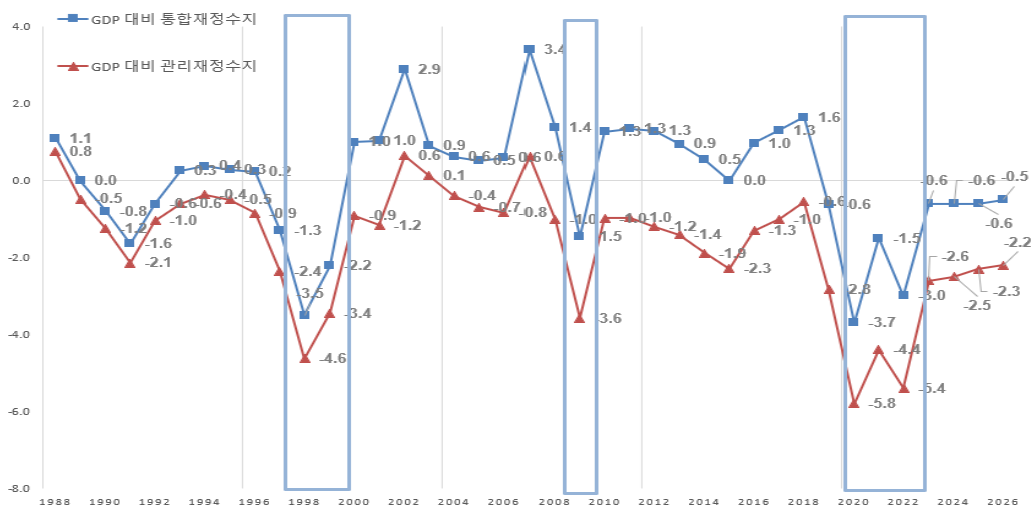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A)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총지출(B)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통합재정수지(A-B)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5	△64.6	△13.1
(GDP 대비, %)	0.9	0.5	0.0	1.0	1.3	1.6	△0.6	△3.7	△1.5	△3.0	△0.6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6	△117.0	△58.2
(GDP 대비, %)	△1.4	△1.9	△2.3	△1.3	△1.0	△0.6	△2.8	△5.8	△4.4	△5.4	△2.6
국가채무(D1)	489.9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70.7	1,067.7	1,134.8
(GDP 대비, %)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3.8	46.7	49.4	49.8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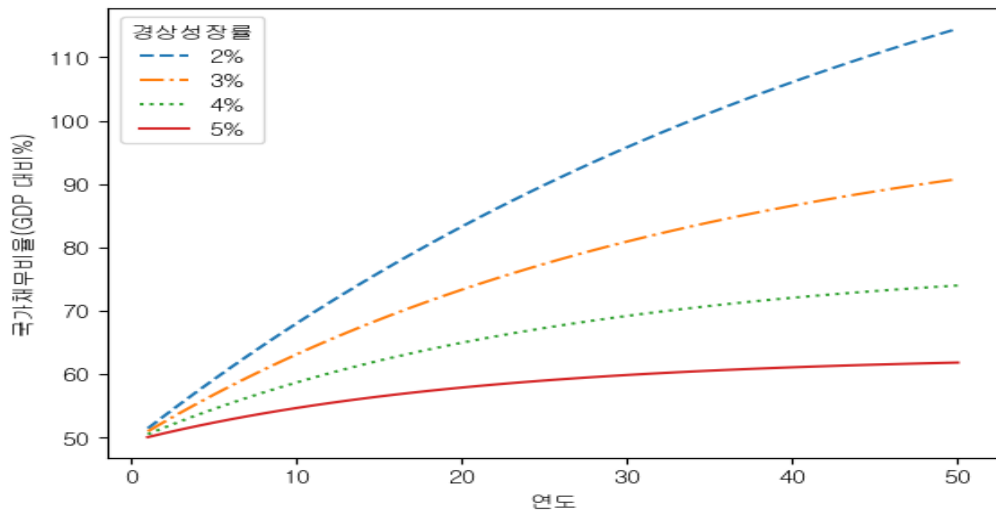


주: 1. 그림의 파란색 박스 부분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3% 이하 부분

2. 1988~2022년은 실적치, 2023~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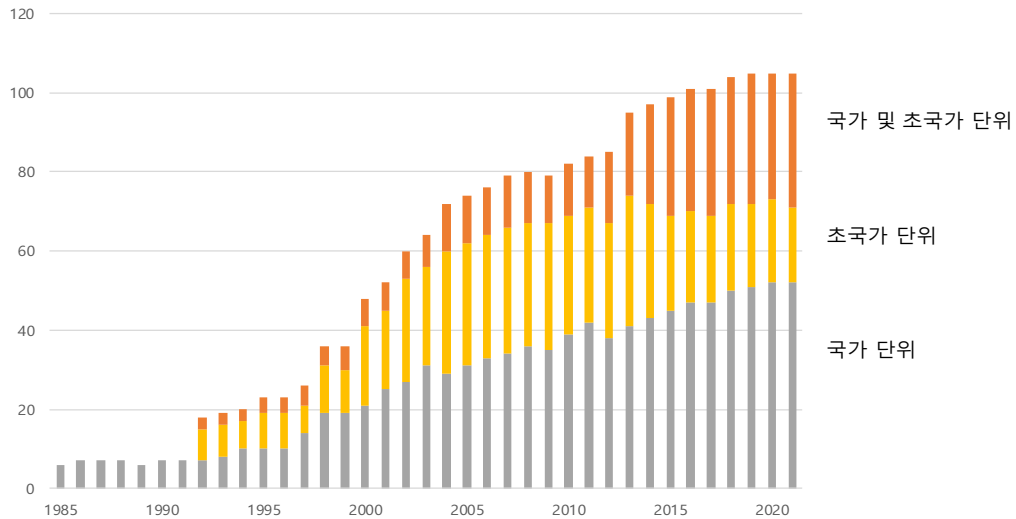
경상성장률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3% 유지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준칙 도입 국가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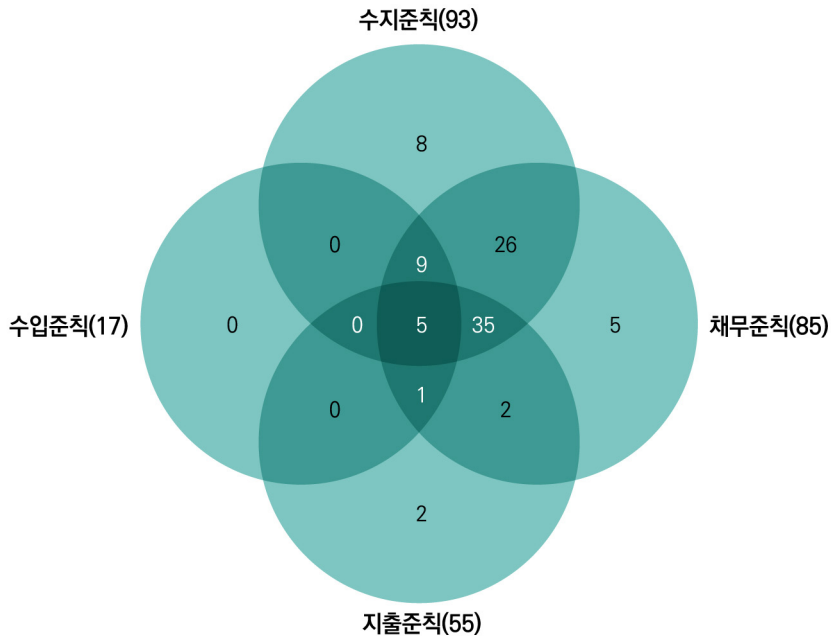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IMF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유형별 재정준칙 운영 국가 수 현황: 2021년

(단위: 개)



주: 수지준칙과 지출준칙을 함께 도입한 경우(10개국), 수입준칙과 채무준칙을 함께 도입한 경우(2개국)
 자료: IMF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

관리지표	관리재정수지
한도식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한도를 △2%로 축소)
법적 근거	법률(「국가재정법」)
시행 시기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
예외사유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사유 소멸 후 한도 적용	즉시 재적용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완화규정	없음
한도 재검토	5년마다 한도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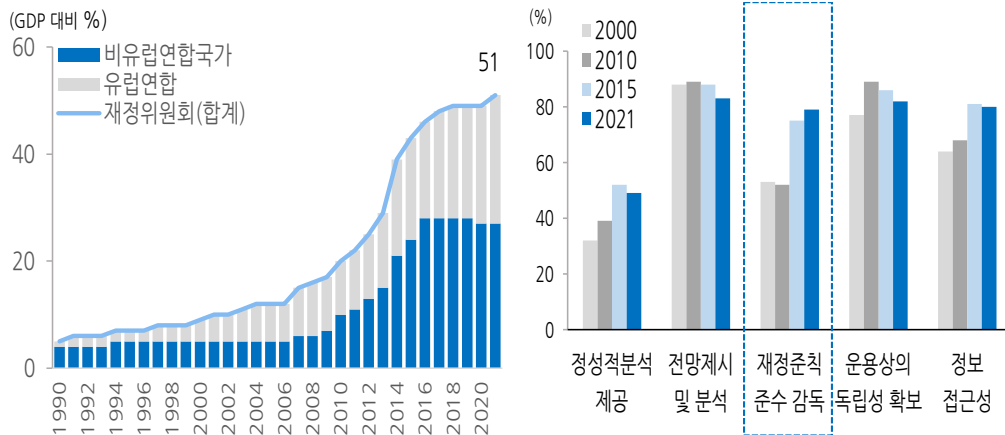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재정준칙 도입 방안」, 2022. 9. 13.

21대 국회 재정준칙 도입 관련 주요 법률안

의안	발의의원 (발의일)	재정준칙	
		유형	내용
재정건전화법안	류성걸의원 (2020. 6. 3.)	채무준칙	국가채무 ≤ GDP 대비 45%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2020. 6. 5.)	채무준칙	국가채무 ≤ GDP 대비 45%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2020. 7. 1.)	채무준칙	국가채무 ≤ GDP 대비 45%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2020. 7. 15.)	채무준칙	신규 국가채무 누적분 ≤ GDP 대비 3%
		수지준칙	수지 균형 (단, 신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0.5% 이하면 균형 간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 12. 30.)	채무준칙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3%) ≤ 1.0
		수지준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2022. 9. 20.)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한도를 △2%로 축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독립재정기구 설립 현황 및 독립재정기구의 기능 변화 추이



자료: IMF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 개편 논의

가.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별 부족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조건 및 용도를 정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합한 금액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증가하는 구조¹⁾
- 2013~2022년 총 국세수입은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내국세수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9%로 2배 가까이 증가
 - 총 국세수입: ('13) 201.9조원 → ('22) 395.9조원 (연평균 7.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 41.1조원 → ('22) 81.3조원 (연평균 7.9%)

나. 주요 쟁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령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히 개선 되었으므로, 여유 재원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여 정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함

김성은 예산분석관 (02-6788-4634)

정혜승 추계세제분석관(02-6788-46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013~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배 이상 증가
 -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 ('13) 657만명 → ('22) 532만명
 - 지원대상 학생 1인당 교부금: ('13) 625만원 → ('22) 1,528만원
 - 2019년 정부 총지출 중 초·중등교육 분야의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5,200달러로 OECD 평균의 1.4배
 - 정부 총지출 중 초·중등교육분야 지출 비중: (한국) 10.2% > (OECD평균) 7.8%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한국) 15,200달러 > (OECD평균) 10,722달러
 - ※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한국) 11,287달러 < (OECD평균) 17,559달러
 -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볼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²⁾, 통합재정안정화기금³⁾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⁴⁾의 연도말 기준 보유재원 또한 2019년 3.4조원에서 2022년 23.5조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
-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원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급 수와 교사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노후건물 개축·보수 등으로 향후에도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함
- 학급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중등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2022년 23.6만개로 과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교원 수는 2013년 43.7만명에서 2022년 45.4만명으로 증가
 - 초·중등교육기관 학급 수: ('13) 23.6만개 → ('22) 23.6만개
 - 초·중등교육기관 교원 수: ('13) 43.7만명 → ('22) 45.4만명
 - 2023년 7월 기준 초·중·고 학교시설 중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인 건물은 약 3.9만동으로 전체 건물(6.1만동)의 63.8%를 차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세입의 75.6%를 차지하는 만큼 그 재원의 산정 방식이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예산

2)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3)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에 대비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운용하고 있음

4) 시·도교육청 기금(2022년말 55개)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사용용도가 포괄적이므로, 시·도교육청의 여유재원으로 볼 수 있음

배분의 합리성과 함께 교육재정 수요와 초·중등교육의 질을 아울러 고려하여 자원 산정 방식의 개편 방향을 결정할 필요

- 참고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⁵⁾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가 아닌 경상GDP 증가율에 연동하고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⁶⁾
- 중앙정부의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산정할 때 소득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되, 학령인구의 증감을 반영하여 교부금액을 조정

다. 관련 통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A)	41.1	40.9	39.4	41.2	42.9	49.5	55.2	55.4	53.2	65.1	75.8
추경(B)	-	-	-	1.9	1.8	-	-	△1.9	6.4	11.0	-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C)	-	-	-	-	1.9	2.9	5.3	-	0.7	5.3	-
교부금 최종액 (A+B+C)	41.1	40.9	39.4	43.2	46.6	52.5	60.5	53.5	60.3	81.3	-

자료: 교육부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천명,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부금(A)	41.1	40.9	39.4	43.2	46.6	52.5	60.5	53.5	60.3	81.3	75.8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B)	6,571	6,382	6,202	6,026	5,834	5,699	5,562	5,437	5,350	5,322	5,267
학생 1인당 교부금(A/B)	6,249	6,403	6,354	7,162	7,986	9,204	10,883	9,848	11,277	15,275	14,383

주: 2013~2022년 교부금은 최종액(세계잉여금 및 추경예산 포함), 2023년 교부금은 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계 전문가 지원단임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 총예산 대비 교육재정 비중',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지출액' 등 교육재정 수요의 국제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구균철,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재무행정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5.)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추이: 2018~2022년

(단위: 조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세계잉여금	2.2	2.2	1.7	1.8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	1.2	2.3	3.0	11.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	-	-	1.9	8.8
합계	2.2	3.4	4.0	6.7	23.5

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자료: 교육부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단위: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구 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전체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OECD	전체 평균	9,848	929	10,722	12,235	5,173	17,559	10,161	1,827	11,990
	상위 50% 국가 평균	12,589	918	13,500	16,211	7,154	23,966	13,189	2,137	15,476
한 국		13,746	1,454	15,200	4,318	6,969	11,287	10,419	3,400	13,819

주: 1. 합계에 해외재원 포함, 한국의 경우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
2. 최종재원 기준: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민간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
3. 초등교육에 유아교육 포함
4.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을 합한 공교육비 기준 상위 50% 국가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2022. 10.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2008		2015		2020	
		한국	OECD	한국	OECD	한국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	초등	24.1	16.4	16.8	15.2	16.3	14.4
	전기 중등	20.2	13.7	15.7	13.0	13.1	13.2
	후기 중등	16.5	13.5	14.1	13.1	10.9	12.6
학급당 학생수	초등	30.0	21.6	23.4	21.1	22.7	20.3
	전기 중등	35.3	23.9	30.0	23.3	26.2	22.6

주: 1. OECD 기준 교원은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임
2.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3.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4.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를 토대로 교육부 작성

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논의

가. 현황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적정 투자시기와 자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으로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함(「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도 대상
-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10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다만,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 면제 대상사업이라도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의무대상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

나. 주요 쟁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가 제도 도입(1999년, 2006년) 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조정 필요성 제기
 - 국가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대립
 - ※ 기획재정부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23. 4. 12. SOC 및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 1,000억원, 국비 지원규모 300억원 → 500억원)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8월 현재 전체회의 계류 중)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면제 여부가 행정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 제기
 - 최근 5년(2018~2022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국가 정책적 사유로 면제된 사업의 총사업비 비중은 2021년을 제외하고 약 70~80% 수준

다. 관련 통계

2018~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

(단위: 건, 억원, %)

연도	사업 수 기준			총사업비 기준		
	전체 면제 (A)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B)	비중 (B/A)	전체 면제 (C)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D)	비중 (D/C)
2018	30	16	53.3	128,798	109,638	85.1
2019	47	25	53.2	359,750	250,089	69.5
2020	31	17	54.8	300,215	249,151	83.0
2021	31	4	12.9	105,020	8,603	8.2
2022	26	1	3.8	172,438	137,584	79.8
2023.6.	1	-	-	518	-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면제사유	사업 수		총사업비	
	예산	2023.6.	예산	2023.6.
(제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8	1	11,136	518
(제2호) 문화재 복원사업	-	-	-	-
(제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국방 관련 사업	6	-	5,53	-
(제4호)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	-	-
(제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1	-	4,822	-
(제6호) 시설안전성 확보, 안전문제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	25,597	-
(제7호) 재난예방	3	-	9,000	-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	9,344	-
(제9호) 실익 없는 사업	3	-	15,650	-
(제10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	139,671	-
합 계	35	1	220,473	518

주: 1. 총사업비는 각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2. 상기 사업들은 2021년 및 2022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됨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현황: 2018~2023년 6월

연번	연도	사업명
1	20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2	2018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3	201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	2018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내일채움 공제
5	20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오픈바우처)
6	2018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7	20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8	2018	R&D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9	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10	2018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11	2018	다함께돌봄
12	201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업
13	201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4	201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	201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6	2018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17	2019	제2경춘국도

연번	연도	사업명
18	2019	충북선 철도 고속화
19	2019	석문산단 인입철도
20	2019	세종~청주 고속도로
21	2019	동해선 단선 전철화
22	2019	남부내륙철도
23	2019	대구산업선 철도
24	2019	울산 외곽순환도로
25	2019	산재 전문 공공병원
26	2019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27	2019	새만금 국제공항
28	2019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29	2019	서남해안 관광도로
30	2019	수산물식품 수출단지
31	2019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비R&D포함)
32	2019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33	2019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34	2019	영종~신도 평화도로
35	2019	평택~오송 복복선화
36	2019	국도 위험구간 등
37	2019	지역특화산업육성+(R&D)
38	2019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39	2019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40	2019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41	2019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42	202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43	2020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44	2020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45	2020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46	202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7	2020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48	2020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49	2020	5G융합서비스발굴및공공선도
50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1	2020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52	2020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53	2020	스마트 생태공장 육성

연번	연도	사업명
54	2020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55	2020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
56	2020	그린스마트 스쿨
57	2020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58	2020	전선지중화
59	2021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
60	2021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61	2021	청년 월세지원 사업
62	2021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63	202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현황

(단위: 건, 조원)

연도	조사대상	
	건수	사업비
2020	13	5.6
2021	20	10.1
2022	16	2.7
2023.6.	3	16.8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조원, %)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7.1	12	63.2	7.3	26.9	7	36.8	19.8	73.1
2000	30	14.0	15	50.0	6.1	43.6	15	50.0	7.9	56.4
2001	41	19.8	14	34.1	6.5	32.6	27	65.9	13.4	67.4
2002	31	20.1	14	45.2	10.0	50.1	17	54.8	10.0	49.9
2003	32	17.6	19	59.4	13.6	77.4	13	40.6	4.0	22.6
2004	55	18.7	41	74.5	13.3	71.4	14	25.5	5.3	28.6
2005	30	12.4	19	63.3	8.4	68.0	11	36.7	4.0	32.0
2006	52	21.5	28	53.8	9.3	43.2	24	46.2	12.2	56.8
2007	45	16.7	26	57.8	10.5	62.6	19	42.2	6.2	37.4
2008	43	11.0	28	65.1	5.2	47.4	15	34.9	5.8	52.6
2009	72	35.4	47	65.3	24.8	70.2	25	34.7	10.6	29.8
2010	81	35.8	60	74.1	23.1	64.5	21	25.9	12.7	35.5
2011	63	24.0	45	71.4	16.3	68.0	18	28.6	7.7	32.0
2012	48	23.7	37	77.1	17.3	73.1	11	22.9	6.4	26.9
2013	29	7.7	18	62.1	4.8	63.1	11	37.9	2.8	36.9
2014	47	13.9	35	74.5	10.2	73.1	12	25.5	3.8	26.9
2015	41	8.9	25	61.0	4.6	51.8	16	39.0	4.3	48.2
2016	43	17.9	26	60.5	11.1	62.0	17	39.5	6.8	38.0
2017	44	23.1	20	45.5	10.7	46.3	24	54.5	12.4	53.7
2018	29	13.6	20	69.0	10.1	74.3	9	31.0	3.5	25.7
2019	33	19.4	25	75.8	14.9	76.9	8	24.2	4.5	23.1
2020	24	24.7	18	75.0	9.7	39.4	6	25.0	14.9	60.6
2021	28	43.8	22	78.6	39.8	90.8	6	21.4	4.0	9.2
2022	26	17.5	21	80.8	16.2	92.6	5	19.2	1.3	7.4
2023.6.	5	1.7	-	-	-	-	5	100.0	1.7	100.0
합계	991	486.9	635	64.1	301.0	61.8	356	35.9	185.9	38.2

6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쟁점

가. 현황

- 정부는 국가가 광역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버스운송업자는 노선에 대한 관리·운영만을 담당하는 노선 입찰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 중
 - 국가는 경쟁입찰에 의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송적자를 재정으로 지원
 - 재정지원금은 운송비용(A)[협약금액(a) + 운행실적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료비·통행료 등 금액(b)]에 운임 등 수입금(B)을 차감한 금액(A-B)으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 50%를 지원
- 2020년 광역급행버스(M버스)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 후 연차별 계획에 따른 노선 이관·신설을 통해 사업 시행 중
 -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국토교통부·경기도, 2019. 5.)」에 따라 버스 운영비 상승 등에 대응하고 광역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
 -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0.12.)에 따라 기존 19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도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모두 이관 합의

나. 주요 쟁점

-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대상 101개 노선 중 당초 계획대로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한 노선은 15개(14.9%)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행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음

- 사업 시행 결과 실제 재정지원금의 노선별 평균 단가가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준공영제 노선은 운영 적자가 보전되어 운송사업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적으므로 향후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사업 도입 시에는 노선당 평균 지급단가 5억원을 적용하였고, 2022년부터는 시범사업 실적을 감안하여 8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2022년에 12개월간 운행한 8개 노선의 실제 평균 재정지원금은 연간 12억 1,929만원으로 당초 예상치 및 예산편성단가보다 높음
 - 국토교통부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이윤¹⁾ 차등지급, 면허갱신 제한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나, 현행 지침상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성과이윤의 25%를 지급받는 등 제도적 한계 존재

다. 관련 통계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차별 로드맵

(단위: 노선)

연도	총 노선(A+B+C)	계속(A)	이관(B)	신설(C)
2020	9	-	-	9
2021	27	9	-	18
2022	101	27	66	8
2023	153	101	41	11
2024	212	153	49	10
2025	258	212	36	10

주: 2024·2025년 이관 및 신설은 잠정 계획임
자료: 국토교통부

1)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운송비용에서 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때 운송비용은 '운전직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성과이윤'으로 산정함. 운전직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는 협약단가 또는 실비로 정산하는 반면, 성과이윤은 (운전직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적자 보전 외에 추가로 이윤을 제공하는 것임

2020~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추진실적 및 경과

(단위: 노선)

연도	유형	당초 계획	연내 완료	사업추진경과
2020	광역급행버스 신설	3	3	- 2020. 8.: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방침 - 2020. 8.~10. : 사업자 모집·입찰·협상 - 2020. 11.: 2개 노선 운송 개시 - 2020. 12.: 1개 노선 운송 개시
	일반광역버스 신설	6	0	- 2021. 1.: 준공영제 국비지원비율 상향에 대한 관계 기관 이견으로 경기도에서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 연기요청 - 2021. 3.: 시범사업 착수 협의 - 2021. 4.: 관계 지자체 의견조회 - 2021. 6.: 노선위원회 심의 - 2021. 7.: 운송사업자 모집·입찰·협상 - 2021. 10.: 1개 노선 운송 개시 - 2021. 11.: 2개 노선 운송 개시 - 2021. 11.: 2개 노선 운송 개시 - 2022. 3: 1개 노선 운송 개시
2021	일반광역버스 신설	18	0	① 준공영제 신규노선(7개) - 2021. 10.: 노선위원회 심의 - 2021. 11.~2022. 4.: 운송사업자 모집·입찰·협상 - 2022. 4.: 1개 노선 운송 개시 - 2022. 5.: 5개 노선 운송 개시 - 2022. 6.: 1개 노선 운송 개시 ② 준공영제 전환 노선(11개) - 2021. 10.: 노선위원회 심의 - 2021. 3.~6.: 운송사업자 모집·입찰·협상 - 2022. 7.: 10개 노선 운송 개시 - 2022. 9.: 1개 노선 운송 개시
2022	광역버스 노선 이관	66	12	- 2022. 8.: 「대광위경기도버스조합 3자합의서」 체결 - 2022. 8.~11.: 지자체·운수사 개별 협상 완료 및 수송시설 등 확인 - 2022. 11.: 면허 발급 - 2022. 11.: 12개 노선 운송 개시 - 2023. 1.: 53개 노선 운송 개시 ※ 1개 노선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관 지연 중
	광역버스 노선 신설	8	0	- 2022. 4.~6.: 지자체 수요조사 - 2022. 6.~10.: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22. 10.: 노선위원회 심의 - 2022. 12.: 운송사업자 모집·입찰·협상
합 계		101	1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보조사업자 실적행내역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0	1,350	450	-	450	12	450	12	438	-	0.9
2021	4,050	4,950	438	5,388	814	4,950	376	4,574	-	9.3
2022	36,400	36,034	4,574	40,068	8,087	36,034	4,190	31,844	677	11.5

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2년도에 12개월간 운행한 노선별 재정지원금 현황

(단위: 천원)

지자체명	노선번호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8개 노선 평균		1,219,288	609,644	182,893	426,750
용인시	4101	1,336,207	668,104	200,431	467,672
시흥시	6501	1,178,869	589,435	176,830	412,604
김포시	M6427	922,695	461,348	138,404	322,943
남양주시	M2341	824,638	412,319	123,696	288,623
안양시	M5333	1,151,994	575,997	172,799	403,198
김포시	3000	2,185,307	1,092,654	327,796	764,857
양주시	1101	1,595,118	797,559	239,268	558,291
광명시	3002	559,472	279,736	83,921	195,815

자료: 국토교통부

서비스평가²⁾ 등급별 성과이윤 지급률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미만
성과이윤 지급률	100%	75%	50%	25%

자료: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지침

2) 「광역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개 분야 11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① 가용성(30): 첫차/막차시간 준수율(15), 운행횟수 준수율*(15)
- ② 신뢰성(15): 배차시간 정시성(15)
- ③ 안전성(25): 교통안전도 평가지수(10), 입석률(5), 관련법규 위반 단속 결과(5), 차량관리실태(5)
- ④ 근로자복지(10): 인건비 체불(5), 노동 관계법 위반(5)
- ⑤ 편의 향상(20): 이용자 만족도(10), 운송사업자 이행노력(10)

* 운행횟수 준수율의 경우 노선운행계획 내 제시된 운행횟수의 95% 이상 운행한 날짜의 비율로 산정

7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발전·송전로 추이

가. 현황

-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¹⁾의 정의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예산 기준 7개 부처에서 1조 5,650억원 규모로 파악
 - 부처별로는 2023년 예산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1조 3,37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8억원, 국토교통부 53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464억원, 환경부 374억원, 해양수산부 303억원, 농촌진흥청 50억원 규모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정격용량기준으로 2023년 32.8GW에서 2036년 108.3GW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2023년 22.1%에서 2036년 45.3%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

윤성식 예산분석관 (02-6788-4666)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나. 주요 쟁점

-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가능량 대비 발전량(이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 개선 필요
 - 총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21년 4.0%로 증가, 풍력 발전량 비중은 2017년 0.4%에서 2021년 0.5%로 증가,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은 2017년 0.3%에서 2021년 0.8%로 증가
 -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2017년 21.2%, 2019년 18.9%, 2021년 19.1%이며, 에너지원별 이용률은 태양광 2017년 13.7% → 2021년 13.3%, 풍력 2017년 21.7% → 2021년 21.2%, 연료전지 2017년 67.1% → 2021년 69.0%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된 전력계통 송전 설비의 적기 건설 및 선제적 보강 필요
 - 송전선로는 한국전력공사 재원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전체 송전선로 회선길이는 2017년 3만 3,955 C-km에서 2022년 3만 5,451 C-km로 5년간 1,496 C-km 증가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 및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혼잡 완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송전선로 회선길이를 2021년 3만 5,190 C-km에서 2036년 5만 7,681C-km로 약 1.64배(2만 2,491C-km) 확충할 계획
 - 서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로) 구축 등을 통한 지역 간 전력 유통망 보강으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적기에 연계할 계획
 -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전력망 인프라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등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남 등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과 중부권 및 수도권을 연계하는 주요 송전설비는 2032년 이후 준공될 예정으로, 송전 설비의 적기 확충 필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발전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송전 시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력수요에 비해 일시적으로 많은 전력이 생산될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력제어 조치(2021년 출력제어: 제주 64회, 전남 신안 3회)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주요 송전설비 계획

(단위: C-km)

지역	준공시기	송전선로(HVDC)	회선길이
호남권-중부권	2032년 이후	신해남 C/S-태안화력 C/S	350.0
중부권-수도권	2032년 이후	태안화력 C/S-서인천복합 C/S	80.0
호남권-중부권	2032년 이후	새만금 C/S-태안화력 C/S	150.0
중부권-수도권	2032년 이후	태안화력 C/S-영흥화력 C/S	40.0

주: C/S(Conversion Station), 전력변환소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2년 한국전력통계(제92호), 2023.05.

다. 관련 통계

신재생에너지 자원 사업 예산 현황: 2018~2023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123,359	1,280,773	1,641,311	1,846,700	1,827,541	1,564,996
산업통상자원부	991,171	1,131,332	1,460,033	1,633,360	1,573,842	1,337,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022	78,367	83,709	98,355	103,610	54,816
국토교통부	0	3,000	6,895	15,753	55,169	53,802
농림축산식품부	38,450	31,179	45,112	57,899	51,883	46,375
환경부	13,710	15,675	23,082	16,471	29,859	37,438
해양수산부	15,006	21,220	22,480	21,111	8,256	30,291
농촌진흥청	0	0	0	3,751	4,922	5,000

주: 1. 2018~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집행 부처 예산으로 분류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GWh,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량	비중
총발전량		578,014	100.0	594,609	100.0	589,200	100.0	579,999	100.0	611,015	100.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3,769	4.1	29,680	5.0	34,247	5.8	43,124	7.4	50,657	8.3
재생 에너지	태양광	7,739	1.3	10,168	1.7	14,193	2.4	19,338	3.3	24,718	4.0
	풍력	2,169	0.4	2,465	0.4	2,679	0.5	3,150	0.5	3,180	0.5
	수력	2,820	0.5	3,374	0.6	2,791	0.5	3,879	0.7	3,057	0.5
	해양	489	0.1	485	0.1	474	0.1	457	0.1	455	0.1
	바이오	7,467	1.3	9,363	1.6	10,416	1.8	9,938	1.7	11,788	1.9
	폐기물	330	0.1	347	0.1	356	0.1	439	0.1	471	0.1
신 에너지	연료전지	1,469	0.3	1,775	0.3	2,307	0.4	3,544	0.6	4,798	0.8
	IGCC	1,286	0.2	1,702	0.3	1,031	0.2	2,377	0.4	2,191	0.4

주 1. 총발전량은 양수발전 포함,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은 사업자+상용자가+신재생소규모자가용 합계임

2. 2022년 통계는 2023년 11월 공표 예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22.12.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용량 현황

(단위: MW,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12,802	100.0	16,363	100.0	20,632	100.0	25,974	100.0	30,212	100.0
재생 에너지	태양광	6,436	50.3	8,939	54.6	12,745	61.8	17,357	66.8	21,199	70.2
	풍력	1,143	8.9	1,303	8.0	1,494	7.2	1,645	6.3	1,709	5.7
	수력	1,794	14.0	1,798	11.0	1,809	8.8	1,807	7.0	1,821	6.0
	해양	255	2.0	255	1.6	256	1.2	256	1.0	256	0.8
	바이오	2,284	17.8	3,065	18.7	3,141	15.2	3,526	13.6	3,579	11.8
	폐기물	292	2.3	306	1.9	368	1.8	422	1.6	507	1.7
신	연료전지	250	2.0	351	2.1	473	2.3	615	2.4	794	2.6
에너지	IGCC	346	2.7	346	2.1	346	1.7	346	1.3	346	1.1

주 1. 보급용량은 누적기준

2. 2022년 통계는 2023년 11월 공표 예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22.12.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단위: MW, GWh, %)

연도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IGCC	전체
2017	설비용량	6,436	1,143	1,794	255	2,284	292	250	346	12,802
	발전가능량(A)	56,379	10,013	15,715	2,234	20,008	2,558	2,190	3,031	112,146
	발전량(B)	7,739	2,169	2,820	489	7,467	330	1,469	1,286	23,769
	B/A	13.7	21.7	17.9	21.9	37.3	12.9	67.1	42.4	21.2
2018	설비용량	8,939	1,303	1,798	255	3,065	306	351	346	16,363
	발전가능량(A)	78,306	11,414	15,750	2,234	26,849	2,681	3,075	3,031	143,340
	발전량(B)	10,168	2,465	3,374	485	9,363	347	1,775	1,702	29,680
	B/A	13.0	21.6	21.4	21.7	34.9	12.9	57.7	56.2	20.7
2019	설비용량	12,745	1,494	1,809	256	3,141	368	473	346	20,632
	발전가능량(A)	111,646	13,087	15,847	2,243	27,515	3,224	4,143	3,031	180,736
	발전량(B)	14,193	2,679	2,791	474	10,416	356	2,307	1,031	34,247
	B/A	12.7	20.5	17.6	21.1	37.9	11.0	55.7	34.0	18.9
2020	설비용량	17,357	1,645	1,807	256	3,526	422	615	346	25,974
	발전가능량(A)	152,047	14,410	15,829	2,243	30,888	3,697	5,387	3,031	227,532
	발전량(B)	19,338	3,150	3,879	457	9,938	439	3,544	2,377	43,124
	B/A	12.7	21.9	24.5	20.4	32.2	11.9	65.8	78.4	19.0
2021	설비용량	21,199	1,709	1,821	256	3,579	507	794	346	30,212
	발전가능량(A)	185,703	14,971	15,952	2,243	31,352	4,441	6,955	3,031	264,657
	발전량(B)	24,718	3,180	3,057	455	11,788	471	4,798	2,191	50,657
	B/A	13.3	21.2	19.2	20.3	37.6	10.6	69.0	72.3	19.1

주: 발전가능량은 정격기준 설비용량×365(일)×24(시간)으로 측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022.12)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송전선로 회선길이 추이

(단위: C-km)

연도	구분							
	756kV	345kV	154kV	66kV	500kV (HVDC)	250kV (HVDC)	180kV (HVDC)	합계
2017	1,019	9,746	22,831	128	0	0	230	33,955
2018	1,019	9,744	23,031	129	0	0	231	34,155
2019	1,025	9,801	23,265	119	0	0	231	34,440
2020	1,025	9,813	23,485	111	0	0	231	34,665
2021	1,024	9,899	23,668	101	35	226	231	35,184
2022	1,024	9,996	23,838	101	35	226	231	35,451

자료: 한국전력공사, 2022년 한국전력통계(제92호), 2023.05.

전압별 송전선로 증가 추이 및 계획

(단위: C-km)

구분	송전선로		
	2021	2029	2036
765kV	1,024	1,032	1,032
345kV	9,899	12,195	17,643
154kV	23,769	29,949	35,922
HVDC	498	1,744	3,084
합계	35,190	44,950	57,681

주: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직류송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2022~2036), 2023.4.

8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

가. 현황

- 지방소멸은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¹⁾하며,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²⁾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기준 0.78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령인구 비율³⁾은 동기간 내 가장 높은 18.0% 수준
 -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2023년 2월 기준 전체 시군구의 절반 수준(51.8%)인 118곳에 이르며, 이 중 소멸고위험지역도 51곳으로 증가세⁴⁾
-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정책을 수립·추진 중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22.7.)에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포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존재⁵⁾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22~’31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⁶⁾을 주요 재원으로 총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2년 최초 도입(2021년 12월 설치)⁷⁾

손동희 예산분석관 (02-6788-4660)

- 1)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2020.10.
- 2)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
- 3)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4)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정의되며, 해당 지수가 0.5 미만 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각각 구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로 본 지역고용 -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2023.3.)
- 5)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도 지방소멸 대응 관련 재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중심으로 수록
- 6) 2022년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7,500억원 규모로 교부
-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개발이익의 지방지원을 위해 수도권 지방소비세 재원의 세입 중 35% 출연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 2010년 설치⁸⁾⁹⁾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요

구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1조
대상	• 15개 광역지자체 • 107개 기초지자체	• 비수도권 14개 시·도
재원	• 정부출연금 1조원('22년 0.75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 출연금 •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 지자체 출연금 및 공익법인 출연금 • 발전기금 운용수익 등
용도	•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대상 재정지원 • 광역: 인구·재정 여건 등 고려 정액 배분 • 기초: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배분	• 재정지원: 지자체별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출연금의 50%) • 용자지원: 지방채 및 지방공사채 인수(출연금의 50%) • 전환사업보전: 국가→지방으로의 전환사업 비용 정액 보전
기간	2022~2031년	2010~2029년
관리·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위탁전문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위탁전문기관)

- 주: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중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 출연금은 수도권 시·도에서 배분받은 지방소비세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10~'19년). 2020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중 전환사업 보전분 약 3.6조원 및 재정조정분 0.9조원을 제외한 잔여분 중 수도권 지자체 분의 35% 출연('20~'29년)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2010~2019년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에서 동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2019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기 출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확대 개편
3.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자체 대상 배분계획 평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민간전문가)에서 실시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행정안전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호협력,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강화」, 2010.5.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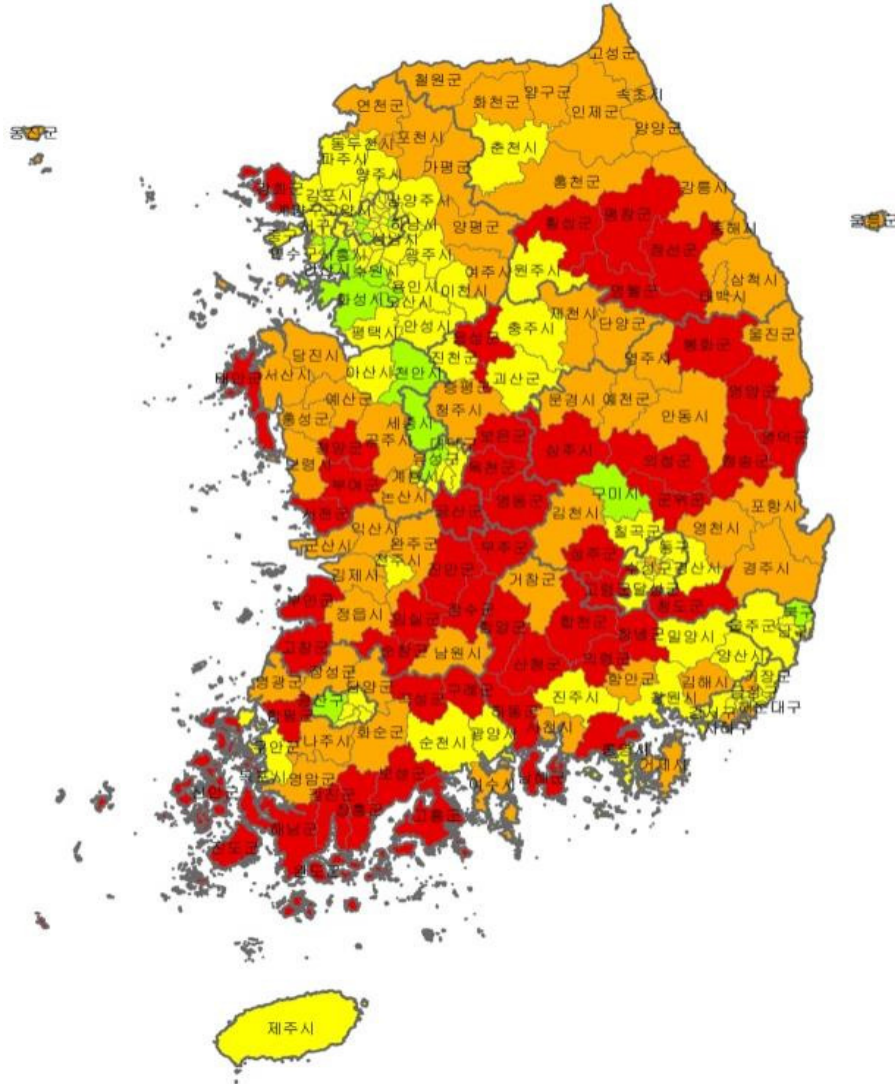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논의 필요
 - 2022년분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이 2022년 9월 이루어졌으며, 광역지원계정 대비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투자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강화 논의 필요¹⁰⁾
 - 2022년 광역지원계정 집행률(87.1%) > 기초지원계정 집행률(5.7%)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거시적인 국정 아젠다임을 감안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중장기적 사업 개발·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논의 필요
 -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1년 단위의 단기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유인 존재¹¹⁾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논의 필요

10)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22.1.)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22.2.) → 지자체 별 기금 투자계획 수립제출(~'22.5.) → 투자계획 평가('22.6.~7.) → 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조합회의 의결('22.8.) → 기금 교부('22.9.)로 추진

11) 일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관련 통계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2023년 2월)



명칭	소멸저위험	정상지역	소멸주의단계	소멸위험	
				소멸위험진입	소멸고위험
소멸위험지수	1.5 이상	1.0 ~ 1.5 미만	0.5 ~ 1.0 미만	0.2 ~ 0.5 미만	0.2 미만
범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로 본 지역고용 -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2023.3.

합계출산율 및 고령인구비율 추이 (2017~2022년)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고령인구비율	12.2	12.7	13.1	13.5	14.2	14.8	15.5	16.4	17.1	18.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2022년)

(단위: 개, 억원, %)

구분	지자체수	사업수	배분액(G)	집행액(H)	집행률(I=H/G)
합 계(A=B+C)	122	509	7,477	1,950	26.1
광역지원계정(B)	15	109	1,871	1,630	87.1
기초	소계(C=D+E)	107	400	320	5.7
지원	인구감소지역(D)	89	359	319	6.0
계정	관심지역(E)	18	41	1	0.4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2022년)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구분	사업수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부산	18	217	29	13.6	충북	25	473	100	21.2
대구	14	138	21	15.1	충남	38	737	90	12.1
인천	12	122	33	27.0	전북	48	882	241	27.4
광주	6	37	0	0.0	전남	84	1,320	417	31.6
대전	6	51	9	18.2	경북	105	1,335	374	28.0
울산	1	9	0	0.0	경남	61	946	312	33.0
경기	9	141	2	1.5	제주	1	14	0	0.0
강원	81	1,056	320	30.3	합계	509	7,477	1,950	26.1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각 시·군·구별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배분액의 시·도별 합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배분금액(A=B+C+D)	3,079	3,614	40,131	40,826	51,408	65,145
- 재정지원(B)	3,079	1,807	2,226	2,573	2,709	3,472
- 용자지원(C)	-	1,807	2,225	2,573	2,708	3,472
- 전환사업보전(D)	-	-	35,680	35,680	45,991	58,201

주: 1. 재정지원(재정지원계정) 및 용자지원(용자관리계정)의 경우, 2010~2021년은 정산 기준, 2022년도는 수도권 3개 시·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규모임. 2023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울·인천·경기 출연금 6,944억원) 기준

2. 전환사업보전(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년 신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9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가. 현황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2022년 기준으로 0.78명), OECD 평균(1.59)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며, 2위인 이탈리아(1.24명), 3위인 그리스(1.28명)와도 큰 차이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은 2006년 2.1조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1조원, 2016년 21.4조원, 2021년 46.7조원, 2022년 51.7조원으로 증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및 추진과제의 변화에 따라 예산 구성의 추이도 변화
 - 제1차(2006~2010) 및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3차(2016~) 기본계획부터는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등 환경 조성 관련 예산이 증가

나. 주요 쟁점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나 기업규모·성별에 따른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정부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으로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은 6.0%이었으나,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의 54.1%, 남성의 2.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¹⁾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 보전규정(통상임금의 80%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낮음
 - 해외 주요국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스웨덴 410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노르웨이 774만원, 독일 244만원, 일본 317만원 등(단, 육아휴직기간은 국가별 상이)
 -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기간(12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도록 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월 3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인 소득 보전비율은 39% 수준
 - 정부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²⁾'를 시행, 첫 3개월에 대해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였는데, 그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5% 증가(여성은 14.3% 증가)
-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 연속성 및 수혜자의 체감도 감소
 -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0~1세에 집중되며(부모급여, '23년 기준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등),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86개월 미만)과 아동수당(월 10만원, 만8세 미만) 뿐임
 - 실제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시기 이후에 점차 증가(영유아의 경우 월평균 60.6만원, 초등 78.5만원, 중·고등 91.9만원 등으로 증가³⁾)
 -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132유로(2자녀 기준, 추가 자녀당 최대 169유로),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250유로를 아동수당으로 지급
-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일 때보다 혼인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혼부부 지원대상 기준은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제한적임

1)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로서(실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은 자녀 나이 만8세까지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를 뜻한다(육아휴직통계, 통계청, 2021)

2)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의 하나의 특례 제도로써,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현 80%→100%) 하고 상한액을 매월 상향(현 150만원 → 200/250/300만원)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2021.

- 중위소득 100%(약 335만원)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년 2인이 각각 1인 가구로 살고 있다가 결혼하는 경우, 소득 합산액(670만원)이 지원기준(600.6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 주거지원 사업의 맞벌이 신혼부부 지원대상 기준은 600.6만원⁴⁾ 이하인데,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소득 평균은 657만원(통계청, 2021)

■ 저출산 예산이 지속 증가하였으나,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 예산⁵⁾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통계인 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은 수준⁶⁾
-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예산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 1.12%의 약 30% 수준에 그침

■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중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2022년 기준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및 학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 8,293억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3,098억원), 그 밖에도 직업훈련 개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창업자 육성(게임산업, 만화유통 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 스포츠 단체 지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사업체 창업지원 등 다수

4) LH, 「'23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 사전안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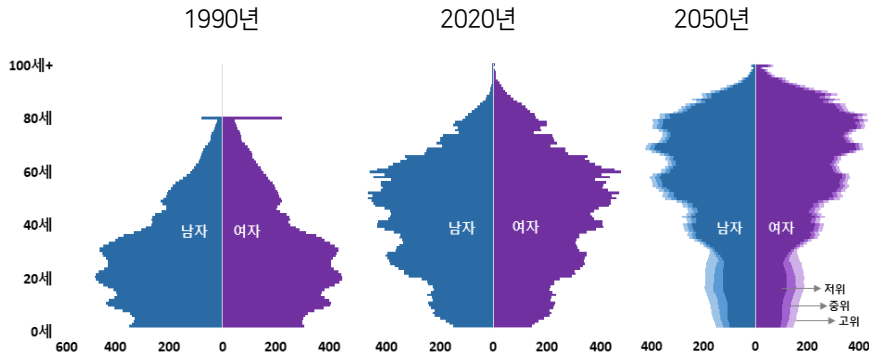
5)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공공지출

6) OECD Family Database, Public Expenditure on family benefits (2023.3.)

다. 관련 통계

우리나라 인구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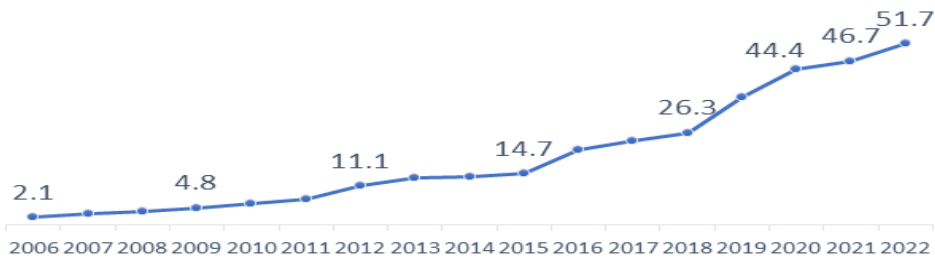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 및 보도자료(2021)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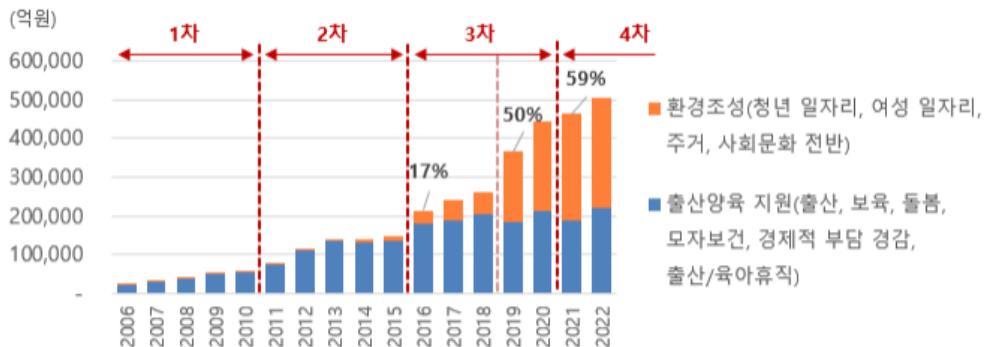
(단위: 조원)



주: 예산은 국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합한 수치이며, 2006년~2020년은 결산기준, 2021년 및 2022년은 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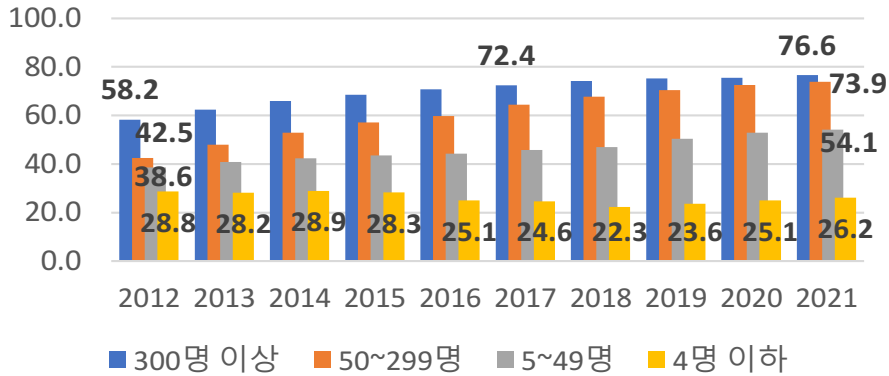
제1차~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출산·양육지원, 환경조성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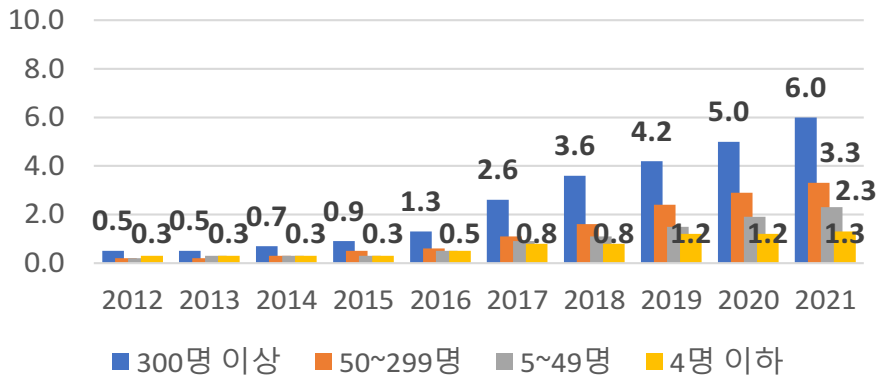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업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출생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기업규모 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기업규모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



주: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출생연도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 100(%)

자료: 통계청,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해외 주요국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및 상한액 비교

구분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일본	한국
소득보전 규정	78%	80%	80~100%	67%	67%	80%
상한액 ¹⁾	410만원	585만원	774만원	244만원	317만원	150만원

주: 1) 각 국 통화에 2021년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Koslowski, Alison et al., 17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2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자녀성장 시기별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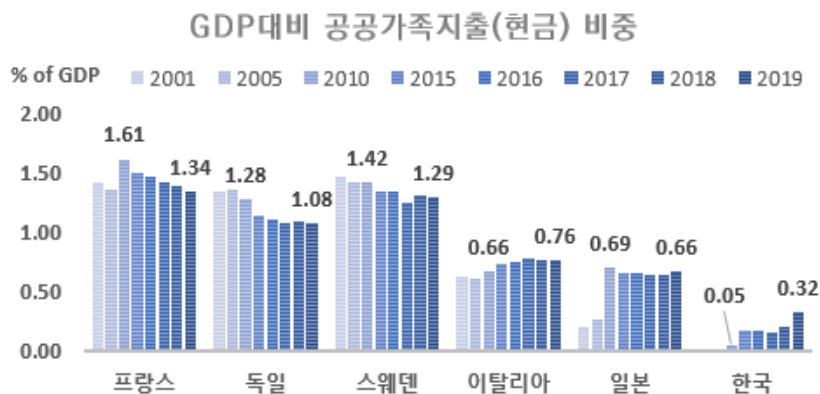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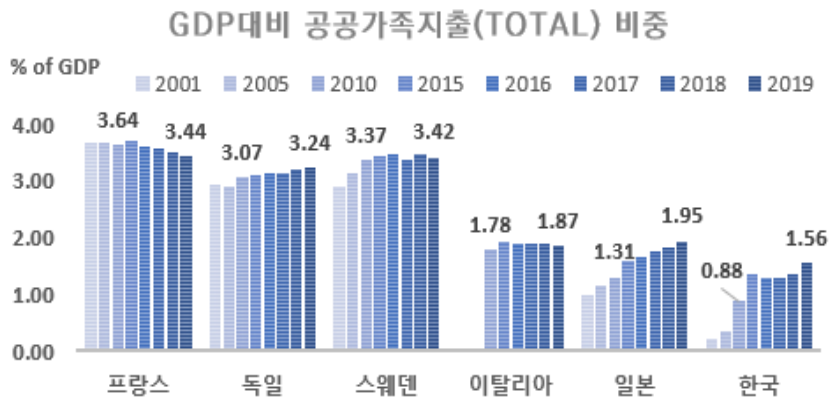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영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월평균)	72.1	60.6	78.5	91.9	73.6
양육비용 중 사교육비(월평균)	26.0	8.9	42.7	50.6	30.8

주: 전국의 9,999가구 19~4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양육비용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녀 돌봄비용,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를 포함한 금액이며, 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공교육비(대학등록금 등)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202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비중 비교

(단위: %)



주: 가족지원 예산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혜택 및 보육 지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함. 총액(TOTAL)은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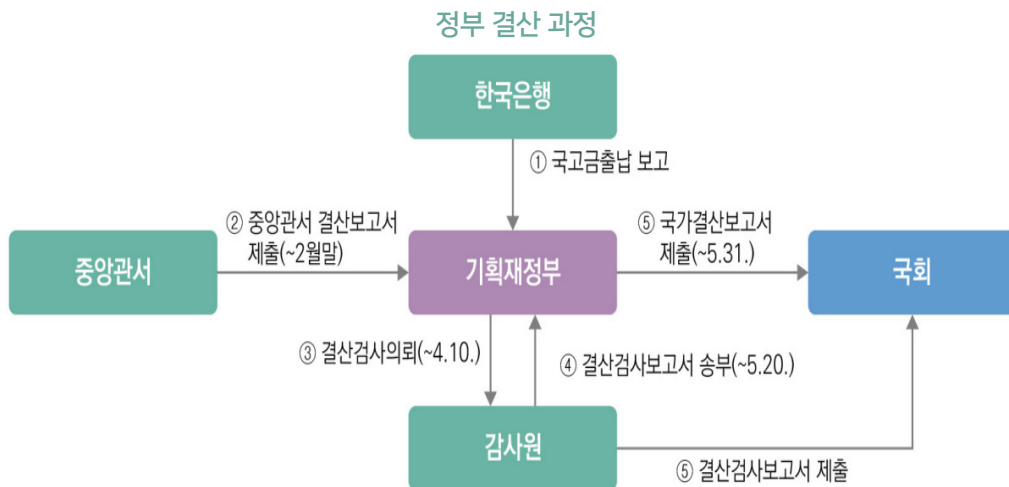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국가 결산상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제

가. 현황

- 정부 결산 과정은 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¹⁾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 결산검사,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 (중앙관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년 2월 말까지)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후 감사원 제출(매년 4월 10일까지)
 -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매년 5월 20일까지)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매년 5월 31일까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2023. 4., p.277

이한성 예산분석관 (02-6788-4642)

- 1)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 국가재무제표 오류 수정 절차

-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는 ①감사원의 결산검사 오류 수정과 ②전기 오류수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감사원 결산검사 오류수정)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이에 대한 결산검사 후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서 국가재무제표 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t년도에 t-1년의 결산상 오류를 수정
- (전기오류수정) 이전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발견하여 수정²⁾하는 것으로 t+1년도에 t년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시 t-1년의 결산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나. 주요 쟁점

■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가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 결산 심의가 정부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³⁾

- 최근 10년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액은 총 136조원으로, 이 중 전기오류수정 이익은 83.3조원, 전기오류수정손실은 52.7조원
- 전기오류수정은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를 확인·수정하지 못하여 발생

※ 최근 10년간 결산검사에서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한 건은 총 999건으로 연평균 약 100건의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 있으며, 오류 수정금액은 총 137.6조원

■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자산에 대한 평가의 최신화 미흡, 결산 오류에 대한 책임성 부재 등이 있을 수 있음

2) 「국가회계 예규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2023, p.214 이하 참고

- 각 중앙관서의 결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자산재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산재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큰 폭의 국가재무제표 수정이 발생하고 매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
 - ※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에 10년 만에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증액 240.9조원, 평가감액 92.6조원이 발생
- 감사원은 회계결산 검사만 수행하며, 재무제표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다. 관련 통계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오류 현황: 2013~2023년

(단위: 건,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감사원 수정 사항	건수	134	132	120	99	102	90	92	84	67	79	999
	금액	153,613	118,806	68,875	124,634	41,144	142,025	164,378	178,376	320,326	64,194	1,376,371
전기 오류 수정	건수	데이터 미보유										
	이익	27,648	89,986	75,385	36,857	63,867	50,335	25,850	33,346	26,672	402,881	832,826
	손실	16,297	46,310	43,945	35,818	95,339	37,966	42,743	56,302	19,358	132,774	526,851
	계	43,945	136,296	119,330	72,675	159,206	88,301	68,593	89,648	46,030	535,655	1,359,677

자료: 감사원,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무제표 감사원 수 건수: 2018~2022년

구분	오류 세부유형	오류 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무 제표	자산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9	17	16	10	19
	자산재평가, 대손 등 평가 관련 오류	19	23	17	25	10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26	23	15	7	9
	부채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6	4	4	2	5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8	7	9	7	6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15	13	19	13	27
	내부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오류	7	5	4	3	3
	계	90	92	84	67	79

자료: 감사원

최근 10년간 국가재무제표 감사원 수정액 상위 10건

(단위: 백만원)

순위	발생연도	금액	오류 세부유형	소관 부처	세부내용
1	2021	27,575,304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중 감가상각하지 않는 고속도로 포장물에 대하여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2	2016	3,531,103	건물 자산 등재 누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이전까지 준공이 완료된 중앙선 복선전철(덕소~원주) 건설사업 등 9개 노선 관련 자산과 본 회계연도 말까지 등기 및 취득이 완료된 철도(원주~강릉) 건설사업 등 3개 노선 관련 자산의 국유재산 등재를 누락
3	2019	3,325,013	장기선급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에서 사업 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1년 후에 취득이 완료되어 본 계정에 대체될 선급금(유동자산)에 대하여 장기선급금(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4	2014	2,673,33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차액 회계처리 오류	교육부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201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중에 확정된 2조 6,733억 3,4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
5	2018	2,182,376	수익형 민자사업 (BTO)관련 자산 등재 누락 및 자산 등재 오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BTO방식으로 추진되어 2017년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된 상주영천고속도로와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등재를 누락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준공되어 국가로 귀속된 옥산오창고속도로에 대하여 국가로 귀속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
6	2022	2,020,415	군수품 표준단가 적용 오류	국방부	군수정보체계 내 일부 군수품의 표준단가가 잘못 설정되어 국방부 일반회계에서 전비품(일반유형자산)과 기타평가이익(비배분수익)에 오류 발생
7	2013	1,714,440	토지 재평가 오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에서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토지 외 24,168건의 재평가 손실을 자산재평가이익과 우선 상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재평가손실로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토지 외 41건의 공정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였는데도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누락

순위	발생연도	금액	오류 세부유형	소관 부처	세부내용
8	2020	1,453,996	국방 6군수 통합 정보체계와 국방 통합재정 정보체계 간 연계오류 수정	국방부	전력화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안정화 미흡으로 인해 군수거래가 국방통합재정정 보체계로 연동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 발생
9	2015	1,339,805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세입분류 오류	기획재정부	세입으로 납부받는 결산상 순이익금에 대 하여 기타재원조달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데도 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 오류
10	2017	788,497	출자증권 과소 계상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출자증권을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

11

ODA 재원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과제

가. 현황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지역(양자원조), 또는 국제기구(다자원조)에 자금이나 기술협력 제공의 개념으로 정의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무와 OECD DAC 및 수원국,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정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ODA 자원 운용 목표 및 방향을 ① 총규모, ② 구속·비구속성 비율, ③ 유·무상 ODA 포트폴리오, ④ 지역별, ⑤ 소득그룹별로 구분하여 자원배분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원조의 양적 증대를 위한 총규모는 '19년(3.2조원)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22년 기준으로 ODA 규모 세계 순위는 10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비구속성 ODA비율은 ODA의 중견공여국의 위상 및 국제사회 권고 등을 감안하여 유상ODA 60% 이상, 무상ODA 95% 이상으로의 확대가 목표
 - 유·무상 간 자원 배분은 인정액 기준¹⁾으로 40:60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일정 범위 내(37~43:63~57)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의 지원이 목표
 - 소득그룹별로 최저개발국은 무상 ODA, 하위중소득국은 유상ODA 중심의 지원이 목표

한서영 예산분석관 (02-6788-4639)

1) 유상 ODA 지출액은 수원국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양허성 차관에 대한 지출액이며, 유상 ODA 인정액은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으로 측정되는데, ODA 지출액(차관지출액)에서 이자율,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수원국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

유·무상원조 소득그룹별 협력 방향

소득그룹	협력방향
최저개발국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위생 등 기초인프라 및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에너지 분야 중점 지원
하위중소득국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발수요 지원과 민자사업 연계 지원 및 복합 금융 패키지를 통한 대규모 유상사업 지원 확대
상위중소득국	구속성 원조가 제한됨에 따라 비구속성 차관 시범사업 국가 선정 및 실시와 더불어 MDB 협조용자 및 경험증진자금과의 연계 활성화

자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합동

- 한국의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과 더불어 원조 규모 증가에 따라, 원조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와 환류의 중요성이 커짐

-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의 ODA 사업규모별 및 개별사업 규모별 기준을 설정하여 자체평가 수행 장려를 통해 대규모 사업 책무성 강화
 - 개별사업 단위 무상ODA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중간 혹은 종료평가를, 유상 ODA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후평가를 실시
 - 기관 단위 ODA 예산규모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구분하여 목표 설정

기관별 ODA 자체평가 건수 기준

구분	평가건수
상위(100억 이상) 규모 기관	연 최소 2건, 연간 사업수 또는 사업규모의 10%
중상위(50억 이상) 규모 기관	연 최소 2건
중하위(10억 이상) 규모 기관	연 최소 1건
하위(10억 미만) 규모 기관	2년에 1번

자료: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 정부는 ODA 사업에 투입된 재정에 대한 ODA 정책 부합성과 성과평가 기반 향후 사업에 환류를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²⁾을 근거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회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시행³⁾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개발협력평가): 평가결과를 차기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음

3) 자체평가: 시행기관별로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 실시, 평가 협조 기관이 그 평가결과를 종합·보고하고, 평가전문위원회가

나. 주요 쟁점

- (ODA 자원배분) 지역별 배분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외에 4가지(ODA 총규모, 유·무상 ODA 포트폴리오 및 비구속성 비율, 소득그룹별 배분) 측면에서는 일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목표의 적정성과 이행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음
 - ODA 총규모는 '21년(3.7조원)대비 '22년 4조원대로 증가하였으나, 세계 순위는 16위로 목표였던 10위를 달성하지 못함('21년 15위 대비 순위 하락)
 - 비구속성 ODA 비율은 '20년까지 확대되고 있었으나 '21년에 크게 감소되었으며('20년도 81.75%에서 '22년 66.41%로 15.3%p감소), 유·무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각각의 목표치에 미달(최근 7년간 평균은 유상 51%, 무상 87% 수준)
 - 유·무상 ODA 포트폴리오는 '22년 예산액 기준 약 39.5:60.5의 비율로 목표치에 부합하지만, 인정액 기준에 의하면 31.5:68.4의 비율로 유상ODA의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
 - 소득그룹별 지원전략은 최저개발국 그룹에서는 이행('22년 무상원조 비중이 48.2%로 전년도 대비 7.1%p 증가)되었지만 하위중소득국 그룹에서는 다소 미흡('22년도 유상원조 비중이 38.8%로 전년도 대비 2.5%p 감소)
- (평가체계) ODA 평가는 통합성 및 현장성 강화가 목표이지만 실제 평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종료 이후에 주로 실시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개별 ODA 사업은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현지사정에 의한 장애요소 해결 및 사업표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중간평가 및 사업별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지난 5년간 중간평가의 비중은 20%대 미만이며, 중간평가와 종료평가 간 연계가 미흡 - 특히, 상위(100억 이상) 규모 기관으로 분류되는 외교부는 중간평가를 별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대체하는 연차점검 또한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실시
 - 정부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평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직접평가 강화, 자체평가의 확대 그리고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밝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

심의위원회평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통합 추진 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제3자 평가를 실시

다. 관련 통계

개발원조 총규모 예산 추이: 2015~2022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ODA(A+B)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34,270	37,101	40,425
양자간원조(A)	16,827 (70.76)	19,479 (79.85)	21,300 (80.81)	23,877 (78.33)	24,938 (77.92)	27,750 (80.97)	28,819 (77.68)	32,199 (79.65)
유상ODA	8,380	8,937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3,334
무상ODA	8,447	10,542	11,755	13,296	13,526	15,901	16,237	18,865
다자간원조(B)	6,955 (29.24)	4,915 (20.15)	5,059 (19.19)	6,605 (21.67)	7,065 (22.08)	6,519 (19.02)	8,282 (22.32)	8,226 (20.35)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 제32-1호, 제34-1호, 제36-1호, 제40-1호, 제44-1호

구속성 및 비구속성 비율: 2015년~2021년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ODA	구속성 771.25 (41.87)	764.71 (37.69)	897.74 (43.97)	1059.05 (43.12)	1284.74 (40.79)	350.55 (18.25)	1243.82 (33.59)
	비구속성 1070.85 (58.13)	1264.05 (62.31)	1143.74 (56.03)	1397.05 (56.88)	1864.54 (59.21)	1570.78 (81.75)	2459.4 (66.41)
유상 ODA	구속성 682 (55.81)	683.35 (47.80)	828.63 (57.08)	981.26 (55.55)	1172.15 (51.54)	184.6 (24.92)	1047.51 (45.91)
	비구속성 540.1 (44.19)	746.34 (52.20)	623.05 (42.92)	785.2 (44.45)	1101.94 (48.46)	556.1 (75.08)	1234.21 (54.09)
무상 ODA	구속성 89.25 (14.40)	81.36 (13.58)	69.11 (11.72)	77.79 (11.28)	112.59 (12.86)	165.95 (14.06)	196.31 (13.81)
	비구속성 530.75 (85.60)	517.71 (86.42)	520.69 (88.28)	611.85 (88.72)	762.6 (87.14)	1014.68 (85.94)	1225.19 (86.19)

주: 잠정통계는 구속성 및 비구속성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OECD Stats

2022년 지역별 ODA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총계
유상	7,039 (52.8)	3,373 (25.3)	1,380 (10.4)	785 (5.9)	106 (0.8)	650 (4.9)	13,333
무상	4,860 (25.8)	2,674 (14.2)	1,097 (5.8)	863 (4.6)	114 (0.6)	9,257 (49.1)	18,865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40-1호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2019~2022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¹⁾	무상				유상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최저개발국	401 (44.5)	374 (43.6)	403 (41.1)	426 (48.2)	358 (40.9)	392 (50.9)	474 (44.4)	375 (39.8)
저소득국	5 (0.5)	3 (0.4)	7 (0.7)	0 (0)	0 (0)	0 (0)	0 (0)	0 (0)
하위중소득국	335 (37.1)	333 (38.9)	405 (41.3)	343 (38.8)	469 (53.6)	317 (41.2)	425 (39.8)	422 (44.8)
상위중소득국	162 (17.9)	146 (17.1)	166 (17.0)	115 (13.0)	48 (5.5)	61 (7.9)	169 (15.8)	144 (15.3)
소득그룹별 합계	903	856	981	884	875	770	1,068	941
기타	268	297	403	613	0	0	0	0
총계	1,171	1,155	1,384	1,498	875	770	1,068	941.4

주: 1) 2022년도 자료는 잠정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3년 하반기에 공표되는 확정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국제기구 및 NGO 지원, 지역별 공동기구 원조 등 특정 수원국 배분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출액임

자료: 국무조정실, OECD Stats

2022년 ODA 분야별 배분

(단위: 억원, %)

구분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	교육	수자원 및 위생	공공 행정	농림수산	에너지	기타	총계
유상	2,470 (18.5)	3,776 (28.3)	- -	571 (4.3)	2,242 (16.8)	891 (6.7)	610 (4.6)	1,470 (11.0)	1,304 (9.7)	13,334
무상	1,780 (9.4)	448 (2.4)	3,163 (16.8)	2,362 (12.5)	244 (1.3)	1,581 (8.4)	1,788 (9.5)	425 (2.3)	7,074 (37.5)	18,865

주: 기타분야는 환경보호, 산업, 통신, 기타로 구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유상ODA), 외교부(무상ODA)

평가시기별 자체평가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사전평가	2 (2.50)	1 (1.67)	1 (1.15)	0 (0)	1 (0.88)
중간평가	22 (27.50)	11 (18.33)	21 (24.14)	18 (18.18)	18 (15.93)
종료평가	29 (36.25)	20 (33.33)	54 (62.07)	64 (64.65)	75 (66.37)
사후평가	27 (33.75)	28 (46.67)	11 (12.64)	17 (17.17)	19 (16.81)
합계	80	60	87	99	113

주: 일부 사업은 2가지 이상의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총 사업 수와 시기별 평가횟수 간 차이가 나타남

자료: '19~'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평가방법별 자체평가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외부평가	63 (78.75)	43 (74.14)	75 (88.24)	83 (83.83)	98 (83.76)
내부평가	17 (21.25)	13 (22.41)	10 (11.76)	16 (16.16)	18 (15.38)
공동평가	0 (0)	2 (3.44)	0 (0)	0 (0)	1 (0.85)
합계	80	58	85	99	117

주: 일부 사업은 공동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총 사업 수와 평가횟수 간 차이가 나타남

자료: '19~'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안)

12

민·관 공동비축제도 논의

가. 현황

-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민간비축사업자가 구매한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를 조달청 시설에 비축하는 제도로써, 정부 비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 확대를 위해 도입(「조달사업법」 제32조)
 - 재원상의 한계로 정부 단독으로는 충분한 비축재고를 확보가 어려운 반면, 민간의 경우 비축시설 관리비용, 재고비용 등 기회비용으로 인해 자체적인 원자재 비축에 소극적임
 - 민·관 공동비축시 비축시설 사용료가 저렴하고 장기비축이 가능하며, 비상시 정부 우선 사용 특약을 설정한 경우 시설 사용료를 할인

나. 주요 쟁점

- 민·관 공동비축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알루미늄, 탄산리튬이 공동비축되었다가 각각 2016년, 2017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구리 1,713톤만 공동비축 중으로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함
 - 현재 공동비축 중인 구리는 정부 우선사용 특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자산으로서 처분이 사실상 제약되어 비상시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 의문시
- 조달청은 자체 비축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통해 민간 대비 저렴하게 비축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동비축물자에 대한 우선사용 특약 등이 설정된 건은 없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 조달청은 비축공간의 부족으로 비축 알루미늄의 87%인 약 12만 톤을 야적 보관 중이며, 마스크 비축을 위한 민간창고 임차비용¹⁾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상황
 - 사용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비축시설 연간 사용료를 1㎡당 단가로 간접 비교 시 민간은 약 138,000원/㎡·년²⁾, 조달청은 약 85,000원/㎡·년³⁾으로 조달청이 부과하는 비축시설 사용료는 민간의 62% 수준

이상아 예산분석관 (02-6788-3736)

1) (2020년) 548백만원, (2021년) 2,047백만원, (2022년) 1,706백만원

2) 2023년 임대창고 2곳(대한통운, 롯데로지스)의 평균 단가

3) 2022년 사용료(3,000만원)를 비축 면적(354㎡) 당 단가로 환산

다. 관련 통계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톤)

연도	업체	품목	비축기지	비축기간	입고량	방출량	비고
2012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12.12. ~ 현재	1,112	-	
2013	△△상사	알루미늄	부산청	'13. 1. ~ '16. 2.	5,807	5,807	종료
2015	□□□□	탄산리튬	부산청	'15. 9. ~ '17. 8.	2,076	2,076	종료
2021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21. 6. ~ 현재	601	-	

주: 정부의 우선사용 특약이 설정된 것은 없음

자료: 조달청

민·관 공동비축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현황

(단위: 원)

연도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계
2013	10,861,950	13,763,710	24,625,660
2014	15,115,790	16,276,310	31,392,100
2015	15,991,470	15,926,990	31,918,460
2016	14,725,700	16,970,990	31,696,690
2017	11,048,020	20,385,440	31,433,460
2018	6,696,650	22,099,800	28,796,450
2019	5,819,450	12,851,480	18,670,930
2020	5,189,580	13,333,260	18,522,840
2021	5,321,710	15,679,330	21,001,040
2022	7,503,440	22,668,040	30,171,480
2023(~5월)	3,741,440	11,536,170	15,277,610
계	102,015,200	181,491,520	283,506,720

주: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조달청

마스크 비축용 민간창고 임차료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4
마스크 비축	예산액	420	2,448	2,448	2,448
보관시설 임차료	집행액	548	2,047	1,706	366

주: 2020년~2023년 4월 집행액은 실집행금액

자료: 조달청

13

공익기능증진직불제 도입 이후 과제

가. 현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9.12.31.)에 따라 기존 6개 직불 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기존 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로 통합
 - (기본형) 농지 면적 0.5ha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운영
 - (선택형) 친환경 농법, 경관작물 재배 등 특정 공익기능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 대비 농지 면적당 직불 단가 상승, ‘소농직불제’ 시행 및 역진적 단가 적용으로 농가소득 증진 및 경지 규모 간 형평성 개선
 - 농가당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19년 268.8만원에서 2020년 375.9만원으로 107만원(39.8%) 증가하였음
 -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 십분위율¹⁾은 2016~2019년 22 이상이었으나 2020~2021년 8.5 수준으로 나타나고, 지니계수²⁾는 2016~2019년 0.6 이상이었으나 2020~2021년 0.4 수준으로 나타나 농가 간 직불금 수령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23.4월)을 발표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을 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 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의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 시 이를 완화하고, ②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가루쌀·밀·콩 등) 재배농가 지원 강화 제도 확충 계획

유연제 예산분석관 (02-6788-4651)

- 1)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집단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에 위치한 표본의 수치를 하위 10%에 위치한 표본의 수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
- 2) 소득분배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

나. 주요 쟁점

-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7.3%에서 2020년 31.7%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향후 농가소득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농업 공적 보조금 정책에 해당하는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 예산 투입 비중도 2019년 21.1%에서 2022년 26.1%로 증가한 반면, ‘혁신성장·체질강화’ 및 ‘지역개발’과 같은 농업 R&D·SOC 분야 투자 비중은 비슷하거나 감소하였음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과 논활용(이모작)직불사업 참여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직불제 지급 단가 조정이 미미하므로 쌀 수급 균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강화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 8,544ha에서 2022년 7만 127ha로 감소
 - 논활용 직불 사업 참여 농지 면적은 2018년 10만 1,985ha에서 2022년 8만 5,374ha로 감소

다. 관련 통계

기존 직불제와 공익직불제 단가 비교

(단가: 만원/ha)

구분	2018	2019	2020~2023				
쌀고정	100		〈기본형〉 소농직불: 120만원(면적 무관)				
쌀변동	17	37					
밭고정	50	55	구분	면적직불금(만원/ha)			
조건 불리	농지: 60 초지: 35	농지: 65 초지: 40		~2ha	2~6ha	6ha~	
				진흥 ¹⁾ 논·밭	205	197	189
				비진흥 논	178	170	162
				비진흥 밭	134	117	100

구분	2018	2019	2020~2023
경관 보전	경관작물: 170 준경관작물: 100		〈선택형〉 • 경관작물 ²⁾ : 170 • 준경관작물: 100 • 준경관초지: 45 • 친환경농업 ³⁾
친환경	논: (유기) 70, (무농약) 50, (지속) 35 밭: (유기) 130~140, (무농약) 110~120, (지속) 65~70		- 논: (유기) 70, (무농약) 50, (지속) 35 - 밭: (유기) 130~140, (무농약) 110~120, (지속) 65~70
논활용		50	• 논활용: 50 → 전락작물('23년) - 23년부터는 쌀을 대체하여 가루쌀·콩 등을 재배 시 ha당 100만원~430만원 추가 지원

주: 1. 이외에도 친환경 축산 직불제가 있으나 생략

- 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
- 2) 경관작물은 마을 경관 보전을 위해 재배하는 작물로서 이 중 식량작물 등으로 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은 준경관작물, 사료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은 준경관초지로 구분함
- 3) 무농약인증농가는 최대 3년, 유기인증농가는 최대 5년까지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 유기지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영주 연령별 농업 공적보조금 변화

(단위: 만원)

구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2019년 평균	451.5	603.3	373.8	312.8	181.8	268.8
2020년 평균	793.2	707.1	488.3	440.0	281.9	375.9

주: 30~39세는 표본 수가 10호 내외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익직불제 이행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21

공익직불제 개편 전후의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 변화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십분위율	57.926	31.954	21.989	22.722	8.513
지니계수	0.672	0.643	0.616	0.623	0.463

주: 직불금 수령액은 2020년은 기본직불을 의미하고, 그 이전연도의 경우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의 합계액을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익직불제 이행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21

2018~2022년 농가 평균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업소득	12,920	10,261	11,820	12,961	9,485
이전소득(A)	9,891	11,230	14,263	14,809	15,245
농가소득(B)	42,066	41,182	45,029	47,759	46,153
비중(A/B)	23.5	27.3	31.7	31.0	33.0

주: 농가소득 = 농업소득+이전소득+농외소득+비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19~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괄 내역

(단위: 억원, %)

분야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		146,596	157,743	162,856	168,767
혁신성장·체질강화	예산	30,587	33,908	37,081	36,363
	비중	20.9	21.5	22.8	21.5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	30,859	43,858	41,987	43,989
	비중	21.1	27.8	25.8	26.1
농촌복지	예산	4,541	4,515	4,775	5,154
	비중	3.1	2.9	2.9	3.1
지역개발	예산	12,848	7,461	8,550	8,516
	비중	8.8	4.7	5.3	5.0
양곡관리	예산	20,138	20,641	20,019	22,901
	비중	13.7	13.1	12.3	13.6
유통혁신	예산	16,111	15,684	16,915	18,238
	비중	11.0	9.9	10.4	10.8
재해대비·기반정비	예산	19,964	19,314	19,684	20,297
	비중	13.6	12.2	12.1	12.0
식품업	예산	6,924	7,515	8,934	8,302
	비중	4.7	4.8	5.5	4.9
기타사업비	예산	4,623	4,849	4,911	5,007
	비중	3.2	3.1	3.0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8~2022년 친환경농산물 재배 현황

(단위: 호, ha)

구 분	유기농		무농약		소 계		국내 전체 재배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a)	면적(b)	비중(b/a)
2018	15,528	24,666	41,733	53,878	57,261	78,544	1,595,614	4.9
2019	18,199	29,711	39,856	52,006	58,055	81,718	1,580,957	5.2
2020	23,750	38,540	35,499	43,286	59,249	81,827	1,564,797	5.2
2021	25,362	40,663	29,992	34,771	55,354	75,435	1,546,717	4.9
2022	24,906	39,625	25,816	30,503	50,722	70,127	1,528,237	4.6

자료: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논활용직불 사업 참여 현황

(단위: ha, 명,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량	면적	50,314	44,579	39,106	33,719	30,178
	참여농업인	39,494	36,225	32,375	27,353	24,605
	집행액	25,157	22,289	19,553	16,860	15,089
사료	면적	51,593	50,262	53,544	59,234	54,832
	참여농업인	30,579	30,501	31,974	33,544	31,997
	집행액	25,797	25,131	26,772	29,617	27,416
목초	면적	51	74	88	143	364
	참여농업인	68	102	96	167	258
	집행액	25	37	44	72	182
계	면적	101,958	94,915	92,738	93,096	85,374
	참여농업인	70,141	66,828	64,445	61,064	56,860
	집행액	50,979	47,457	46,369	46,549	42,687

주: 사료, 목초를 제외한 작물을 식량작물로 분류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4

인공위성·발사체 개발 사업의 주요 쟁점

가. 현황

-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¹⁾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위성의 독자개발 및 자체 발사역량 확보 사업을 추진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2.12.)에 따른 우주개발 비전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이며 ① 우주탐사 영역 확장, ② 우주개발 투자 확대, ③ 민간 우주산업 창출을 목표로 함

비전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		
성과 목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핵심 우주탐사 임무 완수 (‘32)달 착륙 → (‘45) 화성 착륙	정부 우주개발 투자 (‘21)0.73조원 → (‘27)1.5조원	우주 산업 세계시장 비중 (매출액 기준) (‘20) 약 1% → (‘45)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주 분야 예산은 2023년 기준 4,068억원 규모이며, 인공위성개발 2,749억원과 발사체개발 1,319억원 등으로 구성
 - (인공위성개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등
 - (발사체개발)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차세대발사체개발, 민간소형발사체발사장구축 등
- 우주 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기술격차 및 기술 상위 분야(건설·교통, ICT·SW 등)에 비해 저조하고, 산업생태계 미흡으로 R&D 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
 - 2021년 기준 최고국 대비 우리나라 전체 기술격차는 3.3년이나, 우주 분야의 경우 10년 이상(인공위성 10년, 발사체 18년, 우주기반 15년)이고, 건설·교통(2.9년), ICT·SW(2.1년) 등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

이미션 예산분석관 (02-6788-4628)

1)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21년 우주 분야 민간 투자는 약 1,505억원으로 정부투자(3,569억원)의 0.4배 수준으로, ICT·SW 분야(36배), 기계·제조 분야(22.2배) 등에 비해 저조

나. 주요 쟁점

-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인공위성의 개발·발사 지연과 이로 인한 연구비 실집행 저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주 분야 일정 지연 최소화 및 대내외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증대
 - (일정 지연)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및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경우 해외부품 개발·제작 지연 등으로 위성개발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3년 이상 늦춰진 데 이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발사체 계약 변경(러시아 발사체 → 대체 발사체)으로 발사 지연 중
 - (실집행 저조) 2022년 결산 기준 초소형위성체계개발(0%), 다목적실용위성개발(37.5%),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61.9%) 등 주요 위성개발 사업의 연구기관 실집행 저조
- 민간의 위성·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민간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 등의 지연이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
 - 국가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 중 2호(당초 '20년 발사 → 발사 미정) 및 4호(사업종료 '23년 → '25년으로 연장)등의 개발·발사 지연으로 민간업체의 위성 개발 및 발사·활용 역량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 2024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체추진체 소형발사체 시험 발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등으로 2년 연장됨에 따라 국내 민간 발사 시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 관련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주 분야 사업 예·결산 현황: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공위성개발	1,683	1,386	1,546	2,148	2,749
우주발사체개발	1,596	2,000	1,729	1,948	1,319
합계	3,279	3,386	3,275	4,096	4,068

주: 2019~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고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격차 현황

(단위: 최고국(미국)대비 년, %)

구분	국가 전체	우주 분야			건설·교통	ICT·SW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기반		
기술격차	3.3	10.0	18.0	15.0	2.9	2.1
기술수준	80.1	55.5	60.0	56.0	82.3	81.4

주: 국가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2021년 기준, 기술분야별 기술수준·기술격차는 2020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2023.2.

우주 분야 정부·민간 R&D 투자현황(2021)

(단위: 억원, 배)

구분	우주 분야				ICT·SW	기계·제조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기반	합계		
정부투자(A)	1,243	1,718	608	3,569	12,058	7,664
민간투자(B)	1,505				434,103	170,525
민간투자비(B/A)	0.4배				36배	22.2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2023.2.

2022회계연도 우주 분야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실적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전체 합계	100,959	409,590	510,549	356,660	153,889	69.9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437	20,947	21,384	13,830	7,554	64.7
다목적실용위성개발	33,163	3,497	36,660	13,734	22,926	37.5
차세대중형위성개발	21,018	33,149	54,167	31,464	22,703	58.1
한미민간달착륙선탄재제 공동연구	484	5,800	6,284	3,959	2,325	63.0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0	26,401	26,401	16,352	10,049	61.9
초소형위성체계개발	0	7,237	7,237	0	7,237	0.0
민간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1,043	13,700	14,743	1,043	13,700	7.1
기타 14개 사업	44,814	298,859	343,673	276,278	67,395	8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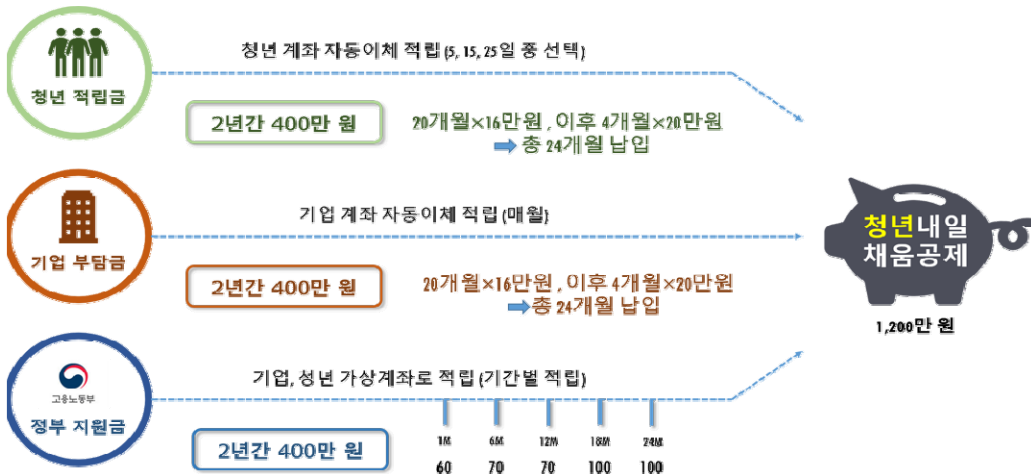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현황

가. 현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신규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 2년간 1,200만원 =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자부담 100%)+정부 4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16.4월)에 따라 2016년 시범사업 실시되었고,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며 2025년까지 지원 계획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3	'24	'25
일반회계	429,586	162,752	47,530
고용보험기금	210,693	90,115	44,453
합 계	640,279	252,867	91,983

자료: 고용노동부

김민석 예산분석관 (02-6788-4638)

나. 주요 쟁점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참여요건을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자부담을 100%로 변경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 기업자부담 상향에 대하여는 사업을 보다 필요로 하는 청년·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확대하여 왔다는 입장임
 - 2023년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타 부처 자산형성사업(청년도약계좌 등)과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 효과가 있고 사업 인지도가 높았다는 점, 참여요건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혜 범위 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요건 등 변경내역

사업연도	참여요건	지원수준	적립비율	기업부담율
2020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	2년형: 청년 300 + 기업 400+ 정부 900 3년형: 청년 600 + 기업 600+ 정부 1800	없음
2021 (~8월)	상동	2년형: 1,200만원 (3년형 폐지)	청년 300 + 기업 300+ 정부 600	없음
2021 추경 (9월~)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외)	상동	상동	50인 미만 면제 50인 이상 20% 부담
2022	상동	상동	상동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2023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	상동	청년 400 + 기업 400+ 정부 400	자부담 100%

자료: 고용노동부

다. 관련 통계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목표 대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사업연도	지원대상	지원 결과(가입자 수)
2016	55,000*	5,217
	55,000	5,217
2017	55,000	40,170
	55,000	40,170
2018	110,000	106,402
	90,000(2년형)	87,523
	20,000(3년형)	18,879
2019	100,000	98,572
	60,000(2년형)	58,954
	40,000(3년형)	39,618
2020	138,200	137,226
	136,000(2년형)	135,115
	2,200(3년형)	2,111
2021	120,000	119,783
	120,000(2년형)	119,783
2022	70,000	69,489
	70,000(2년형)	69,489
2023.6.	20,000	2,225
	20,000(2년형)	2,225
총 계 (누적, 중복제거)		579,084

주: 1. '16. 7월 청년인턴사업 시범사업으로 운영, 청년인턴사업 목표(수혜)인원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별 기업 참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0인 미만	2,209	14,544	31,873	33,248	44,948	42,252	30,583	1,725
50~299인	548	3,470	7,067	7,505	8,940	8,416	4,802	21
300인+	34	297	638	803	717	624	166	0
소 계	2,791	18,311	39,578	41,556	54,605	51,292	35,551	1,746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연도별 가입자(2년형, 3년형) 및 중도해지 현황

(단위: 명, 건, %)

사업연도	가입유형	청약 가입자수	해지건수 (비율)		기타
2016	소 계	5,217	2,132	(40.9)	127
	2년형	5,217	1,786	(34.2)	127
2017	소 계	40,170	13,951	(34.7)	1,709
	2년형	40,170	13,951	(34.7)	1,709
2018	소 계	106,402	35,594	(33.5)	764
	2년형	87,523	29,125	(33.3)	563
	3년형	18,879	6,469	(34.3)	201
2019	소 계	98,572	33,952	(34.4)	338
	2년형	58,954	19,878	(33.7)	243
	3년형	39,618	14,074	(35.5)	95
2020	소 계	137,226	41,176	(30.0)	1,561
	2년형	135,116	40,368	(29.9)	1,531
	3년형	2,110	808	(38.3)	30
2021	소 계	119,783	38,967	(32.5)	2,236
	2년형	119,783	38,967	(32.5)	2,236
2022	소 계	69,489	10,144	(14.6)	169
	2년형	69,489	10,144	(14.6)	169
2023.6	소 계	2,225	39	(1.8)	-
	2년형	2,225	39	(1.8)	-
총 계		579,084	181,699	(30.5)	6,978

16

코로나19 백신 관리방안

가. 현황

- 정부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제약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국제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기준 2021년 4.7조원, 2022년 2.5조원, 2023년 0.2조원 등 총 7.4조원 투입
 - 2023년 7월말 기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총 2억 6,270만 회분, 그 중 실제 도입된 물량은 2억 128만 회분이며, 나머지 6,142만 회분은 백신 유효기간 및 향후 코로나 19 대응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급일정 조정 추진 중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도입 현황

(단위: 만 회분)

백신 종류	확보 물량 ¹⁾	도입 완료 ²⁾				도입예정
		계	2021	2022	2023	
계	26,270	20,128	11,891	7,884	353	6,142
화이자	12,749	11,749	6,749	4,860	140	1,000
모더나	5,445	4,949	2,598	2,138	213	496
노바백스	4,000	293	-	293	-	3,707
안센	341	341	292	49	-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735	693	210	483	-
	화이자		42	42	-	-
아스트라제네카	2,000	2,000	2,000	-	-	-
스카이코비원	1,000	61	-	61	-	939

주: 1) 감축물량 2,265만 회분(코백스 1,265만, 모더나 600만, 안센 400만) 제외

2) 2023.7.31.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 2023년 동절기 접종을 위해 기 계약 물량 중 미도입 물량 약 1,500만 회분*을 XBB 1.5 기반 신규백신으로 전환 도입 예정
 - 신규백신을 신속히 도입하여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허가동향 모니터링, 제약사·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지속 추진 중
 - * 화이자 1,000만 회분, 모더나 496만 회분

정성영 예산분석관 (02-6788-4637)

나. 주요 쟁점

-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자연감염·백신접종에 따른 복합면역을 확보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백신 접종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2023년 7월말 기준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실제 접종에 사용된 물량은 1억 3,448만 회분, 폐기량은 2,328만 회분이며, 2023년 3~4분기 및 2024년 연내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물량 또한 3,310만 회분 수준
 - 2022년 동절기(10월) 추가접종 시 예방접종률은 13%에 그쳤으며, 자연 감염 및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는 전 국민의 약 97% 수준으로 확인¹⁾되는 등 코로나19 백신 활용도의 지속적인 하락 예상
- 제약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백신 공급일정 조정, 도입 예정 물량의 신규백신으로의 전환 도입, 향후 폐기량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 공여 추진 등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및 백신 활용도 제고, 철저한 잔여물량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계약 취소 등 공급계약 조정을 위해 제약사와의 협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1) 질병관리청, “전국 단위 코로나 19 항체양성률 조사”(‘22.12월)

다. 관련 통계

코로나19 백신별 접종기관 사용량, 잔여물량, 폐기량, 해외공여 현황

(단위: 만 회분, %)

백신 종류	접종기관 사용량	잔여물량		폐기량							해외 공여
		접종기관 잔여량	물류센터 재고량	유효 기간 경과	백신 온도 일탈	백신 용기 파손	사용 가능 시간 경과	접종 과정 오류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소계	
계	13,448	18	3,310	2,314	3	1	3	-	7	2,328	1,024
화이자	8,430	13	2,571	626	2	1	2	-	7	638	139
모더나	2,930	3	474	1,480	-	-	1	-	-	1,481	62
노바백스	101	1	32	158	-	-	-	-	-	158	-
얀센	138	-	190	13	-	-	-	-	-	13	-
아스트라제네카	1,844	-	-	25	1	-	-	-	-	26	823
스카이코비원	5	1	43	12	-	-	-	-	-	12	-

주: 1) 2023.7.31. 기준

2) 접종기관 사용량 = 도입량 - 잔여물량 - 폐기량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별 유효기한 도래 현황

(단위: 만 회분)

구 분	2023			2024	계
	3/4분기	4/4분기	소계		
아스트라제네카	-	-	-	-	-
화이자	131	696	827	1,744	2,571
모더나	474	-	474	-	474
노바백스	-	32	32	-	32
얀센	190	-	190	-	190
스카이코비원	-	43	43	-	43
계	795	771	1,566	1,744	3,310

주: 2023.7.31.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17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황 및 과제

가. 현황

- 무공해차(ZEV, Zero Emission Vehicle)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 전기차 및 수소차가 해당되며, 환경부는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2조 5,652억 2,400만원 편성
 - 2022년도까지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차량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사업을 분리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 및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과목 개편
 - (2023년도 예산) 전기자동차 1조 9,180억원, 수소차 6,334억원, 운영비 138억원
- 2023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버스), 전기이륜차 30.8만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차 보급사업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수소청소차 1.7만대에 구매보조금 지원

2023년도 차종별 지원물량 및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대, 만원)

구분	전기차		수소차	
	지원물량	국고보조금	지원물량	국고보조금
승용	215,200	600	16,000	2,250
승합	3,000	7,000	버스(저상) 400 버스(고상) 300	버스(저상) 21,000 버스(고상) 26,000
화물	50,000	1,200	100	25,000
기타	이륜 40,000	이륜 80	청소차 120	청소차 72,000

주: 전기차와 수소차의 지방비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름
자료: 환경부

나. 주요 쟁점

-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수송 부문의 대표적 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30년 보급목표를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로 설정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예상
 - 2030 목표달성을 위해 2023년~2030년 향후 8년간 전기차는 '22년 누적 보급량 대비 380만대(약 9.5배), 수소차 27만대(9배) 보급 필요
 - * ('22.12.말 누적 보급실적) 전기차 40.2만대(이륜차 제외), 수소차 3.0만대 보급
 - 2018년 대비 전기차 지원예산 4.6배(3,427억 → '23년 1조 9,180억원), 수소차(148억 → '23년 6,334억원) 약 42배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약 2조 1,938억원 증액됨
 - '23.4.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정부에서 산출한 중기재정소요계획에 따르면 2024년~2027년도 총 4개년간 15조 1,3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무공해차 보급사업 중기재정소요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4~2027년 소계
무공해차 보급	25,652	31,715	37,957	39,726	41,936	151,334

자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 중기 예산 내역(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을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는 2011년부터 1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기준이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고 있고, 보조금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 보급계획이 부재한 실정으로, 재정 지원의 한계 및 잠재적 구매 수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보급목표 달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해외 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및 폐지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해외 주요국의 구매보조금 지원 동향,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경쟁력, 보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다. 관련 통계

전기차 및 수소차 예산 집행실적 추이: 2018~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부처(환경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B/A)
		예산 (A)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전기차	2018	342,750	342,750	412,753	302,558	36,313	73,882	88.3
	2019	463,720	463,720	500,033	361,491	72,788	65,755	78.0
	2020	818,850	761,263	834,051	583,655	193,455	56,941	71.3
	2021	1,023,000	1,027,463	1,221,596	1,030,586	111,001	80,009	100.7
	2022	1,719,000	1,446,291	1,557,291	1,388,713	97,351	71,227	80.8
	2023.6.	1,918,000	1,228,200	2,015,351	658,916	-	-	34.4
수소차	2018	14,835	14,835	17,255	15,205	2,048	2	102.5
	2019	130,408	125,908	127,956	95,779	30,188	1,988	73.4
	2020	254,250	217,695	247,883	140,835	26,963	80,085	55.4
	2021	365,500	229,010	274,670	199,608	15,698	59,364	54.6
	2022	454,505	288,813	304,510	243,748	23,698	37,064	53.6
	2023.6.	633,400	151,533	175,230	77,923	-	-	12.3

주: 추경이 있는 연도는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연도별 구매보조금 국비지원 단가

(단위: 백만원/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기승용차	15	15	15	15	15	12	14	12	9	8	7	6	5
전기버스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70	70
전기화물차	-	-	-	-	-	-	-	-	18	18	16	14	12
수소승용차	-	-	60	60	60	27.5	27.5	22.5	22.5	22.5	22.5	22.5	22.5
수소버스(자상)	-	-	-	-	-	-	-	-	200	150	150	150	210
수소버스(고상)	-	-	-	-	-	-	-	-	-	-	-	200	260
수소화물차	-	-	-	-	-	-	-	-	-	-	200	250	250
수소청소차	-	-	-	-	-	-	-	-	-	-	-	720	720

주: 전기차는 2018년부터 차량의 성능 등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며, 표의 금액은 최대 금액임

자료: 환경부

무공해차 누적등록 현황 및 자동차 등록총계 대비 차지 비중

(단위: 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월말
자동차 누적 등록총계(A)	22,528,295	23,202,555	23,677,366	24,365,979	24,911,101	25,503,078	25,757,201
무공해차(B)	25,278	56,649	95,001	145,868	250,847	419,478	497,412
- 전기차	25,108	55,756	89,918	134,962	231,443	389,855	464,928
- 수소차	170	893	5,083	10,906	19,404	29,623	32,484
비중(B/A)	0.11	0.24	0.40	0.60	1.01	1.64	1.93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76만대”, 2023.7.19.

국가별 전기차(승용) 보급 현황

(단위: 대, %)

국 가	2022년 판매량	(비중)	누적 판매량	(비중)	자국 내 신차판매 비중	자국내 누적판매 비중
World	10,200,000	100.0	25900000	100.0	14.0	2.1
China	5,900,000	57.8	14,100,000	54.4	29.0	4.9
USA	990,000	9.7	2960000	11.4	7.7	1.3
Germany	830,000	8.1	1890000	7.3	31.0	4.0
UnitedKingdom	370,000	3.6	950,000	3.7	23.0	2.8
France	340,000	3.3	990,000	3.8	21.0	2.7
Norway	166,000	1.6	790,000	3.1	88.0	27.0
Sweden	163,000	1.6	440,000	1.7	54.0	8.8
Korea	131,000	1.3	357,000	1.4	9.4	1.7
Canada	114000	1.1	380,000	1.5	9.4	1.6
Netherlands	107,000	1.0	530,000	2.0	35.0	5.6

주: 1.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을 정리함

2. BEV(순수전기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해외 주요국 구매보조금 지원 제도(2023년 초, 전기승용 기준)

국가	보조금 규모
한국	- 국비 최대 680만원, 지방비 상이(180~776만원) ·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지원단가 전액지원, 5,700만~8,500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50% 지원, 8,500만원 초과 미지원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 보조금 지원 축소계획 및 중장기 지원계획 부재
독일	- 정부와 제작사가 각각 2:1의 비율로 지원하며, 2025년까지 지원 예정 · 차량가격 €4만 미만일 경우 €6,750 (정부 €4,500, 제작사 €2,250) · 차량가격 €4만~€6.5만 이하일 경우 €4,500 (정부 €3,000, 제작사 €1,500) * 2020.6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보조금 지급 연장
영국	- 2022년 6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중단 · 2022년에는 전기 승용차 구매시 차량가격이 £32,000 이하인 모델에 한하여 £1,500 한도로 보조금 지원
스웨덴	- 2022년 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중국	- 2023년도부터 전기차 보조금 중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20 → '22)
미국	- 2032년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 세액공제 · (핵심광물)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경우 \$3,750 세액공제 · (부품) 배터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경우 \$3,750 세액공제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병 인건비 인상과 국방분야 재원 배분

가. 현황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 단위의 단계적인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
 - 직접적인 병 봉급 인상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원까지 지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병 봉급 (병장 기준)	67.6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자료: 국방부

- 2022년 기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운영비(37.9조원)와 방위력개선비(16.7조원)의 비중은 각각 69.4%, 30.6%이며, 결산 기준 군인인건비는 13.1조원으로 전력운영비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음

나. 주요 쟁점

-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지출액이 2013년 8조 4,365억원에서 2022년 13조 1,184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5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가장 상승률이 높은 부문은 병 인건비 사업으로 2013년 약 6,298억원에서 2022년에는 약 2조 2,523억원까지 증가하여 약 3.7배로 증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높은 수준의 병 봉급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병 인건비 사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질 전망
 - 병과 간부와 의 봉급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초급간부 임용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초급간부 임용을 위한 지원액을 늘리는 경우 군인 인건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전체 예산에서 국방예산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음을 고려하면, 국방예산 내 방위력개선비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 중 2022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69.4%, 30.6%에서 2026년 70.3%, 29.7%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전력운영비는 군인 인건비·장비의 유지·시설물 건설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방위력개선비는 무기체계의 구매·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개선하는 예산임
- 단계적 병 봉급 인상 계획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
 - 2022년 4/4분기에는 입영률이 낮아(10월 72.8%, 11월 46%, 12월 67.3%) 월 평균 '1만 676명'만이 입영하였으며, 2023년 1/4분기에는 입영률이 회복(1월 95.2%, 2월 100.7%, 3월 100.4%)되어 월 평균 '1만 8,431명'이 입영하였음

다. 관련 통계

군인 인건비 지출액: 2014~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교인건비	3,705,273	3,865,598	4,004,340	4,152,885	4,257,804
부사관인건비	4,318,272	4,558,853	4,784,039	5,044,735	5,293,316
병인건비	711,906	846,964	945,214	1,025,208	1,741,239
계	8,735,451	9,271,415	9,733,593	10,222,828	11,292,359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교인건비	4,299,462	4,361,780	4,483,634	4,549,711	4,636,212
부사관인건비	5,557,275	5,758,464	6,052,546	6,316,300	6,674,580
병인건비	1,601,785	2,087,891	2,265,331	2,252,366	2,852,461
계	11,458,522	12,208,135	12,801,511	13,118,377	14,163,253

주: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최근 5개년 간 전년 대비 병 봉급 및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 2021~2025년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대비 인상률	병장			47.9	25	20
	상병	12.5	11.1	31.1	미정	
	일병			23.2		
	이병			17.6		
	소위	1.0	1.6	1.7		
	하사	1.0	1.6	3.9		

자료: 국방부

초급간부 지원율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학 사	4.0 : 1	3.3 : 1	2.7 : 1	2.6 : 1	2.6 : 1
학 군	3.3 : 1	3.1 : 1	2.7 : 1	2.6 : 1	2.4 : 1
부사관	4.5 : 1	4.4 : 1	3.7 : 1	3.5 : 1	3.2 : 1

자료: 국방부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2022~2026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국방	546,112	571,268	595,135	617,592	638,430	4.0
전력운영비	379,195	401,089	416,442	433,537	448,853	4.3
	(69.4)	(70.2)	(69.9)	(70.2)	(70.3)	
방위력개선비	166,917	170,179	178,693	184,055	189,577	3.2
	(30.6)	(29.8)	(30.1)	(29.8)	(29.7)	

주: 괄호 내 수치는 국방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2년도 입영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21,079	17,312	17,728	20,981	20,014	-	-	-	-	-	-	-	
입영	<u>20,065</u>	<u>17,428</u>	<u>17,861</u>	21,062	19,616	-	-	-	-	-	-	-	
입영률	95.2	100.7	100.8	100.4	98.0	-	-	-	-	-	-	-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17,615	19,478	17,236	18,536	20,079	16,779	16,260	21,974	15,575	19,554	15,842	15,605	214,533
입영	16,819	17,764	15,528	18,718	19,844	15,800	15,462	20,077	14,162	<u>14,233</u>	<u>7,295</u>	<u>10,499</u>	186,201
입영률	95.5	91.2	90.1	101.0	98.8	94.2	95.1	91.4	90.9	<u>72.8</u>	<u>46.0</u>	<u>67.3</u>	<u>86.8</u>

월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20,158	17,954	21,193	20,713	22,212	20,168	17,377	20,660	13,682	15,958	17,199	16,123	223,397
입영	19,955	17,383	20,839	20,155	21,924	19,608	17,429	20,926	13,720	15,570	15,843	12,402	215,754
입영률	99.0	96.8	98.3	97.3	98.7	97.2	100.3	101.3	100.3	97.6	92.1	76.9	<u>96.6</u>

주: 입영률이란 군의 병력 총원 계획 대비 입영 인원 비율을 뜻함

자료: 국방부

19

대형산불 대응체계 확립 과제

가. 현황

- 대형산불¹⁾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의미
 - 2022년(2022년 3월~2023년 2월)의 경우 총 67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 대형산불이 9건으로 2020년 5건, 2021년 2건에 비해 크게 증가
 -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483건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발생건수 362건의 1.3배
-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대형산불 피해규모 현황은 2020년 2,586ha, 2021년 419ha, 2022년 24,015ha, 2023년 3,769ha
 - 2023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 중 4월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의 피해면적은 1,337ha, 충남 금산 889ha, 전남 함평 681ha

나. 주요 쟁점

- 현재 대형 산불 발생 시 대응체계는 산림청이 통합 지휘권이 있고, 민가와 시설물 보호는 소방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형산불 진화 시 기관 간 지휘권의 한계, 업무 분장 등으로 화재 진압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일례로 재난 발생 시 소방청, 지자체 등은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헬기와 교신이 가능한 자체 통신망(VHF방식)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총 83대만 확보

정금연 예산분석관 (02-6788-4641)

남명진 예산분석관 (02-6788-4632)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은 2027년까지 100대, 소방청은 2023년까지 32대를 각각 보유한다는 계획이나, 2023년 현재 산림청은 9대, 소방청은 23대를 보유하고 있어 계획 대비 확충 미흡
 - 산림청 및 소방청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량²⁾의 확충 지연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외자 장비인 고성능 진화차량의 운송 지연, 물류 지연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이 원인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5월) 이전에 도입되어야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산불 진화헬기는 산림청 48대, 소방청 32대를 각각 보유 중인데, 산림청의 경우 도입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기종이 33대(68.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하며, 담수용량별로 보면 1000리터 미만의 소형헬기(11대) 및 1,000리터이상 5,000리터 미만의 중형헬기(30대)가 대다수로 5,000리터 이상의 대형헬기(7대)는 상대적으로 적어 대형산불 진화에 한계

다. 관련 통계

2020년 이후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산불 규모	2020				2021				2022				2023
	3~5 월	6~8 월	9~11 월	12~2 월	3~5 월	6~8 월	9~11 월	12~2 월	3~5 월	6~8 월	9~11 월	12~2 월	3~4월
소· 중형	378	39	83	170	158	16	25	253	368	29	82	186	326
대형	3	-	-	2	-	-	-	2	9	-	-	-	8
합 계	381	39	83	172	158	16	25	255	377	29	82	186	334

주: 2023년 4월말 기준

자료: 산림청

2) 일반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산림지역에 기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진화차량으로 급수량(3,000리터 → 3,500리터)을 확대하여 대형산불 진화에 용이

2023년 주요 대형산불 발생 현황

(단위: ha)

발생일시	진화종료일시	발생지역	피해면적	발생원인
4월 2일 11:00	4월 4일 16:41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1,337.00	담뱃불 실화 추정
4월 2일 12:18	4월 4일 17:00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24-3	889.36	입산자 실화 추정
4월 3일 12:19	4월 4일 18:00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128	681.72	쓰레기 소각 추정

자료: 산림청

산림청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연도별 확충 계획

(단위: 대, 백만원)

연도	수량	대당 가격	소요 예산액	배치 예정지역	비 고
~2023	18	750	13,500	강원, 경북, 충북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경북 및 내륙권 산불대응(산림청 배치)
2024	25	750	18,750	강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산불 지상역량 강화를 위한 배치(산림청 배치)
2025	25	750	8,400 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불 지상역량 강화를 위한 배치(지자체 배치)
2026	25	750	7,950 ²⁾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7	7	750	2,550 ³⁾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계	100	-	51,150		

주: 1) 2025년: 산림청 2대(국비 100%), 지자체 23대(국비 40%)

2) 2026년: 산림청 1대(국비 100%), 지자체 24대(국비 40%)

3) 2027년: 산림청 1대(국비 100%), 지자체 6대(국비 40%)

자료: 산림청

소방청 고성능 산불전문진화차 연도별 보강 계획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국비 50%) * 대당 750백만원 기준	10대 3,750백만원	16대 6,000백만원	6대 2,250백만원	32대 12,000백만원

자료: 소방청

산림청 대형 산불 진화 장비 현황

종류	산불지휘차 (대)	산불진화차 (대)	고성능 산불진화차 (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세트)	산불진화헬기 (대)
수량 (산림청/지자체)	342 (43 / 299)	1,394 (77 / 1,317)	9 (9 / -)	1,785 (267 / 1,518)	121 (48 / 73)

자료: 산림청

산림청 및 소방청 헬기 사용연수별 보유현황

(단위: 대)

기관명	계	10년 미만	10~15년	15~20년	20~25년	25~30년	30년 이상
산림청	48	5	3	7	9	15	9
소방청	32	14	4	3	6	5	-

주: 2023. 8. 21. 기준

자료: 산림청, 소방청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담수용량별 보유현황

(단위: 대)

기관명	계	소형 (1,000리터 미만)	중형 (1,000리터~5,000리터)	대형 (5,000리터 이상)
산림청	48(100.0%)	11(22.9%)	30대(62.5%)	7(14.6%)

주: 2023. 8. 21. 기준

자료: 산림청

2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관련 논의

가. 현황

- 무인교통단속장비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장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율, 중상 및 사망사고율, 신호위반 비율 등이 높은 곳에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이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대수가 급격히 증가
 -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대수는 1만 9,675대로, 20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대수 9,741대 대비 약 2배 증가함(어린이 보호구역 장비 1,379대 → 8,423대)

나. 주요 쟁점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존재하나, 장비 운영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증가, 교통운영상 비효율 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 운영 대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도로교통공단 연구('18.12.)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적정 운영 대수를 1만 1,950대로 제시하였는데, 2022년 실제 운영 대수는 1만 9,675대로 적정 운영 대수의 1.65배 수준
 - 2022년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1대당 운영비(관리비, 정기검사비 등)는 약 929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성·필요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은 장비는 이전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사후관리는 각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수·단속실적 등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필요성·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비의 이전·폐기를 검토할 필요

다. 관련 통계

교통사고 발생 추이: 2020~2022년

(단위: 건)

분석지표	기준년도	2020	2021	2022
사고건수	전체	209,654	203,130	196,836
	1일평균	572.8	556.5	539.3
	인구10만명당	404.9	392.0	381.3
사망자수	전체	3,081	2,916	2,735
	1일평균	8.4	8.0	7.5
	인구10만명당	6.0	5.6	5.3
부상자수	전체	306,194	291,608	281,803
	1일평균	836.6	798.9	772.1
	인구10만명당	591.3	562.7	545.8

자료: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등록대수: 202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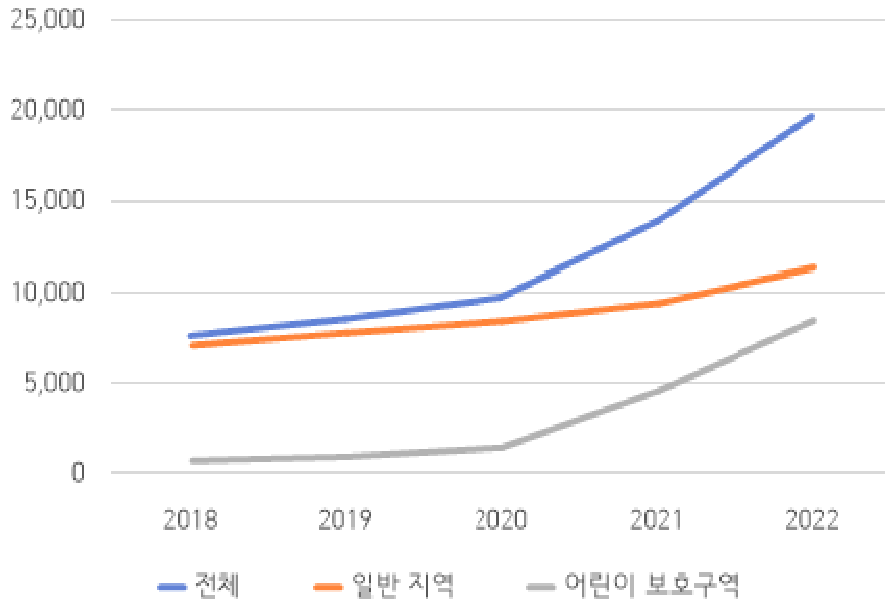
(단위: 대)

기준년도	2020	2021	2022
승용	19,860,955	20,410,648	20,952,759
승합	783,842	749,968	723,961
화물	3,615,245	3,631,975	3,696,317
특수	105,937	118,510	130,041
합계	24,365,979	24,911,101	25,503,078

자료: 국토교통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2018~2022년

(단위: 대)



구분	계			일반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2018	7,651	6,297	1,354	7,010	5,897	1,113	641	400	241
2019	8,576	7,186	1,390	7,706	6,558	1,148	870	628	242
2020	9,741	7,722	2,019	8,362	6,915	1,447	1,379	807	572
2021	13,860	8,901	4,959	9,335	7,522	1,813	4,525	1,379	3,146
2022	19,675	13,556	6,119	11,252	9,061	2,191	8,423	4,495	3,928

자료: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단가(고정식 장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과속		구간		다기능		후면번호판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2018	30	24	30	25	26	25	-	-
2019	30	23	30	22	32	25	-	-
2020	30	20	30	20	32	21	-	-
2021	30	21	30	21	32	22	-	-
2022	30	24	-	-	-	-	-	-
2023	30		30		-		40	

주: 1. 편성은 예산 편성단가를, 집행은 실제 집행단가를 의미함

2. 2023년의 경우 집행단가가 아직 산출되지 않음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인단속장비 1대당 운영비(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	회선사용료	보험료	우편료	제작수수료	정기검사비	위탁관리비
운영비	9,291	360	55	2,379	266	1,260	4,982

자료: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 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위탁관리비	35,101	35,101	42,934	47,459	52,677

주: 2019~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확정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 실적: 2020~2022년

(단위: 대)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이전설치 수	42	37	54	133	44.2

자료: 경찰청

21

방위산업 동향 및 절충교역 과제

가. 현황

-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2021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6.7%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770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과반을 점유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상황
 - 비록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나, 2021년 기준 글로벌 8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을 상회하는 1~3순위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5% 내외로 유사한 수준
 - 향후 한국의 방산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
- 절충교역(Offset)은 방산물자 수출입 시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 수입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으로, 수출 절충교역과 수입 절충교역으로 구분
 - 수출 절충교역은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 시 구매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수입 절충교역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 규모(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외구매 사업에서 계약 당사자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제도
 - 절충교역 제도가 도입된 1983년부터 2022년까지 40년간 수입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 실적을 달성
 -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실적이 대폭 감소하여 최근 5년(2018~2022)간 실적은 약 7억 7,000만 달러로 이는 과거 5년(2013~2017) 실적 77억 4,400만 달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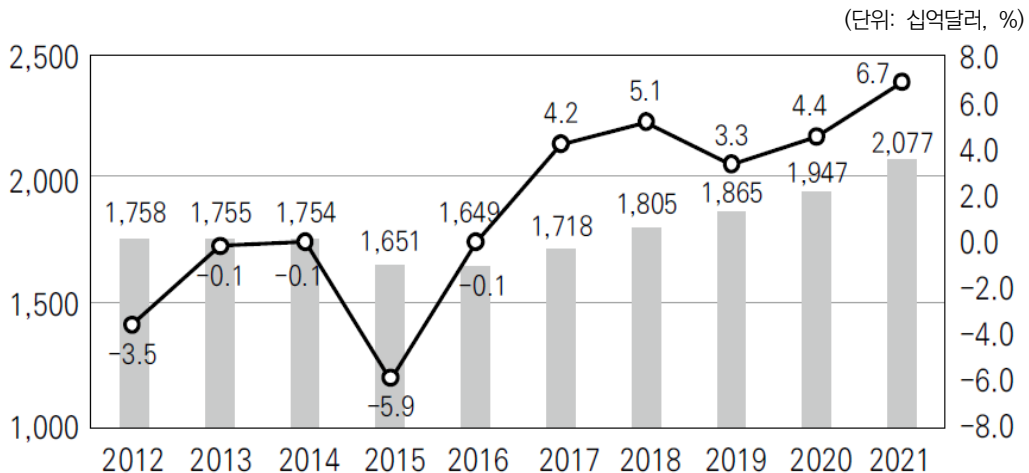
- (방위산업 육성) 방위산업은 첨단 부문(항공유도, 통신전자 등)과 전통 부문(기동화력,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첨단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전통 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세계 무기별 시장에서 한국 방산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①전통 부문인 함정(15%), 화포(39.7%)는 높게 나타났고, ②첨단 부문인 항공기(0.7%) 등은 낮게 나타남
 - 반면, 전 세계 방산수출시장의 점유율은 2.5~2.7%로 한국과 유사한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미사일(35.6%), 센서(24.7%), 방공무기(16%) 순으로 첨단무기 중심
 - 고부가가치 무기체계인 첨단무기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기 전력화를 통해 방산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 (수출 절충교역)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절충교역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지원 체계 및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
 -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0억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21년 70억 달러로 증가, 특히 '22년은 라우 전쟁 등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달러 달성
 - 반면, 수출 절충교역 대상 계약 11건(총 21억 6,702만달러 규모)의 절충교역 의무가 치는 28억 6,923만달러에 달하지만 이행 규모는 6억 4,673만달러로 절충교역 이행률이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대상국의 제도 등에 따라 상당한 위약금·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주요국들은 해외업체의 절충교역 불이행시 연차적으로 페널티가 점증하는 가중적 구조를 운영 중임
 - 관련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고 수출업체는 필요시에 방위사업청에 절충교역 의무 이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방위사업청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나 절차를 설계하고 있지 않아서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지원을 요청할 수단이 없는 실정

■ (수입 절충교역)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입액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 절충교역 확보가치 실적이 낮아지고 있음

- 과거 5년 대비 최근 5년의 무기 수입액은 1.6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과거 77억 4,400만 달러의 10% 수준인 7억 7,200만 달러로 감소
- 이는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서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특히 우리나라 무기 수입 방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FMS¹⁾ 구매의 경우 2016년 이래로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았음. 또한 절충교역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못하여 절충교역 확보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등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
- 방위사업청은 수입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혁신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수입 절충교역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무기체계 수입 시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의무가치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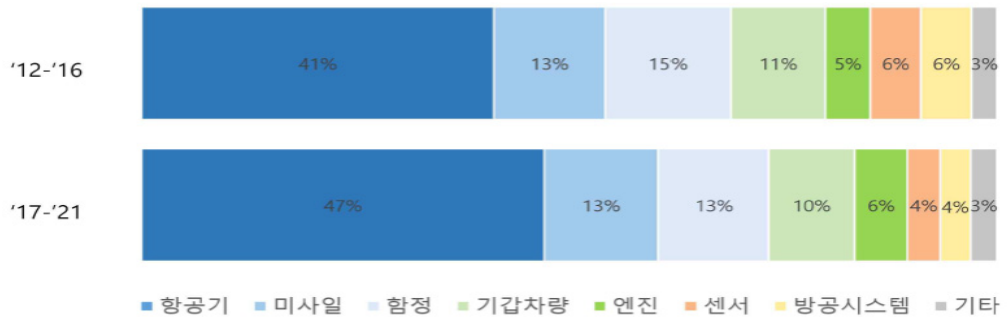
글로벌 국방비 지출 추이: 2012~2021년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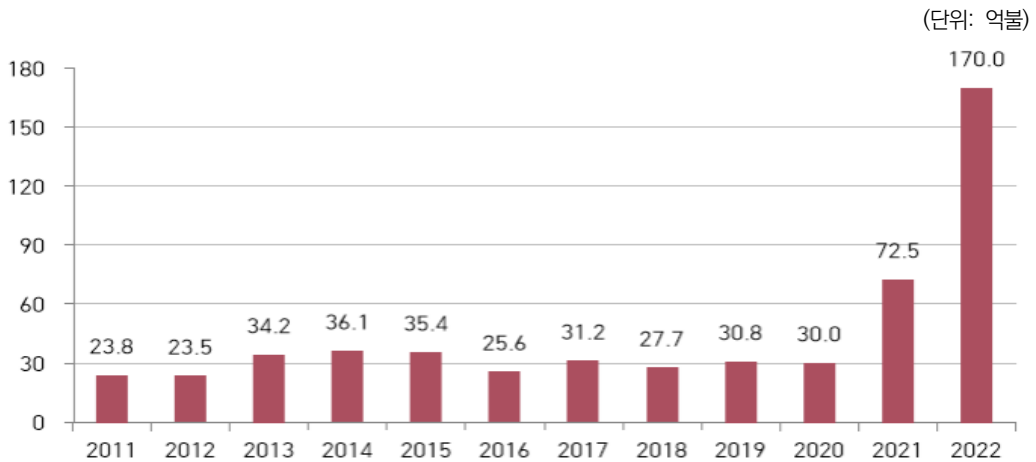
1) FMS(Foreign Military Sale)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방국을 대신해 군수업체로부터 미군 조달장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장비를 구매·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품질을 일정 기간 보증하게 됨

전세계 무기별 수출 비중 변화



주: 2017~2021년 기타품목 비중은 화포(1.3%), 해상무기(0.8%), 위성(0.2%), 기타(0.9%)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현황: 2011~2022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출 절충교역 대상 계약별 이행현황

(단위: 천달러, %)

수출국 (개)	계약수 (건)	계약액 (A)	절충교역 의무		절충교역 이행	
			규모 (B)	비율 (B/A)	이행규모 (C)	이행률 (C/B)
5	11	2,167,022	2,869,228	132.4	646,729	22.5

주: 수출 절충교역 대상 계약은 현재 수출 절충교역 이행기간 내에 있는 계약 건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외구매 무기계약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2017년	2018~2022년
무기 수입액	218,141	154,429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도별 절충교역 확보가치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기술이전	수 출	장비 등 획득	합 계
2013 ~2017	확보가치	3,388	2,184	2,173	7,744
	비중	43.8	28.2	28.1	100.0
2018 ~2022	확보가치	112	449	210	772
	비중	14.6	58.2	27.2	100.0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외구매(상업구매·FMS구매) 계약의 절충교역 금액 비중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상업 구매	계약금액	2,843	489	1,072	1,475	998	2,341	1,706	1,123	12,047
	절충교역금액	986	233	105	125	113	341	161	166	2,230
	비 중	34.7	47.6	9.8	8.5	11.3	14.6	9.4	14.8	18.5
FMS 구매	계약금액	2,825	264	469	2,506	1,540	2,437	923	418	11,382
	절충교역금액	192	0	0	0	0	0	0	0	192
	비 중	6.8	0	0	0	0	0	0	0	1.7
합계	계약금액	5,668	753	1,541	3,981	2,538	4,778	2,629	1,541	23,429
	절충교역금액	1,178	233	105	125	113	341	161	166	2,422
	비 중	20.8	30.9	6.8	3.1	4.5	7.1	6.1	10.8	10.3

주: FMS는 해당연도의 신규오퍼 수락 기준, 상업구매는 해당연도 계약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2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관련 쟁점

가. 현황

- 스마트공장이란 ICT 기술로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통합하고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은 ICT 활용 및 역량에 따라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로 구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의 구축에서부터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기술 활용 및 AS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나. 주요 쟁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스마트공장 사업 정책 방향을 보급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관련 사업 예산 축소와 함께 기초 수준 과제를 전량 축소

-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정책 전환 배경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¹⁾ 건수('22년까지 3만 개 구축)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고도화 수준 목표치('22년 25.0%)를 달성했다는 데 기인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22년) 3,193억원 → ('23년) 1,237억원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예산 / 과제수: ('22년) 875억원 / 1,750개 → ('23년) 순감

■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점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낮은 기술경쟁력,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과제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단계별 사업 전환 필요성 검토 필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질적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지원방안도 병행될 필요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과제 수행 중소기업의 성과조사 결과 매출액 증감율(7.4%)과 생산성 증가율(30.07%) 등은 전체 과제 평균(6.4%, 29.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급격한 기초 수준 과제 축소보다 균형적인 과제 지원 필요성 검토

다. 관련 통계

스마트공장 구축 수 및 수준별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구축 수(A)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5,240	5,105	30,144
기초	226	791	1,122	1,844	2,385	3,546	5,600	3,693	3,613	22,820
고도화	중간1 (B)	44	141	416	354	474	1,124	1,466	1,462	6,907
	중간2 (C)	7	31	22	5	41	87	73	85	417
고도화 비율 (B+C)/A	18.4	17.9	28.1	16.3	17.8	25.5	21.6	29.5	29.2	2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산업재해 30% 감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하였음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단계

등급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IoT 기반의 CPS화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 (POP)	관리 기능 중 심 기능 개별 운용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별 참여기업 공정개선 성과 변화

(단위: %)

구분	생산성 개선율	품질 개선율	원가 개선율	납기 개선율
기초(Level 1~2)	30.07	42.87	16.23	16.96
중간1(Level 3)	27.52	42.22	15.02	16.13
중간2(Level 4)	23.54	45.15	15.48	19.13
평균	29.35	42.77	15.95	16.82

주: 2014~2019년 보급·확산 사업 지원 기업의 사업 완료 1년 후 변화율 산술평균값임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한국통계진흥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2022.4.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별 참여기업 경영지표 변화

(단위: %, %p)

구분	매출액 증감률	고용 증감률	산업재해율 증감률
기초(Level 1~2)	7.4	1.7	△0.006
중간1(Level 3)	2.4	0.8	△0.130
중간2(Level 4)	0.7	6.8	△0.110
평균	6.4	1.5	△0.031

주: 2014~2019년 보급·확산 사업 지원 기업의 사업 완료 1년 후 변화율 산술평균값임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한국통계진흥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2022.4.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계획

(단위: 개, 백만원)

사업구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기초		1,750	87,500	-	-	△1,750	△87,500
고도화1		720	144,000	428	85,600	△240	△58,400
고도화2		30	12,000	25	10,000	△5	△2,000
상생형	기초	700	29,400	200	6,000	△500	△23,400
	고도화1	290	34,800	130	15,600	△160	△19,200
	고도화2	10	2,400	-	-	△10	△2,400
	소계	1,000	66,600	330	21,600	△670	△45,000
디지털 클러스터	계속	3	7,992	3	6,546	-	△1,446
	신규	3	1,200	-	-	△3	△1,200
	소계	6	9,192	3	6,546	△3	잘못된 계산식
합계		3,506	319,292	786	123,746	△2,668	△195,5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보화 수준 점수		67.2	68.7	70.8	71.5	72.3
세부 영역별	정보화 전략 수립	80.3	79.8	84.0	82.6	83.0
	정보화 추진 환경	61.8	63.7	67.7	66.6	66.2
	정보화 구축 활용	59.0	62.0	61.9	64.9	6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각 연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

기업 규모별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전체	기업 규모별		
			10~49명	50~249명	250명 이상
기술 분야별	사물인터넷	18.3	17.4	21.5	37.6
	클라우드 컴퓨팅	27.6	26.0	35.1	49.2
	빅데이터	14.3	12.8	19.4	46.1
	인공지능	2.7	1.9	4.4	21.4
	3D 프린팅	3.0	2.7	3.8	8.2

주: 조사 응답 기업체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이며 조사 연도는 2021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정보화통계조사」

첨단 제조 공정 장비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술수준(%)	89.7	99.7	83.2	98.2	100.0
기술격차(년)	0.7	0.1	1.1	0.2	0.0

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 기술수준(100 기준) 대비 국가별 상대적 기술수준, 기술격차는 최고 기술국 대비 국가별 기술격차 기간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년 산업기술수준조사」, 2022.10.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계	기업규모별				미분류
		소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 수	2,046	1,865	22	40	1,803	181
비중	100.0	91.2	1.1	2.0	88.1	8.8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매출액 규모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 수	871	734	183	140
비중	42.6	35.9	8.9	6.8

구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합계
기업 수	36	29	53	2,046
비중	1.8	1.4	2.6	100.0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쟁점

가. 현황

-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¹⁾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의 정보를 의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²⁾에 따라 공공기관은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 정부는 공공데이터 중 비공개 대상(비밀·보안 등)을 제외한 미개방 데이터를 2025년까지 네거티브³⁾ 방식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가중점데이터⁴⁾의 개방 확대를 추진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26만여 건에 이르며, 이중 이미 개방된 공공데이터 건수는 4.9만 건, 개방 비율은 18.7% 수준
 -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23~’25)’에 따라 행정, 법률, 일자리, IT·과학, 경제, 생활, 여가 분야의 민간 수요에 기반한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할 계획

나. 주요 쟁점

- 정부는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으로 인해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의 유출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한 가명처리 및 재식별 방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절차 마련 방안 논의 필요
 - 미개방 공공데이터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영업비밀(25%), 개인정보(24.3%), 법령상 비밀(18.5%) 등의 순으로, 정부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시 민감정보(개인정보)의

이병철 예산분석관 (02-6788-4841)

- 1)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의미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네거티브 방식이란 기관별 보유 공공데이터 중 비공개 대상(비밀·보안 등)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 4) 개방·활용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의 데이터를 의미

비식별화,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는 비밀 해당 여부, 정당한 이익 침해 정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칠 계획

-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수준이 다른 공공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자체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 필요성 검토
 - 공공데이터 개방 비율은 중앙부처 25.5%, 공공기관 16.4%, 지자체 14.7% 등의 순
 -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종합 평가 결과, 중앙부처 82.9점, 광역시도 71.4점, 공공기관 66.1점, 기초자치단체 56.0점 순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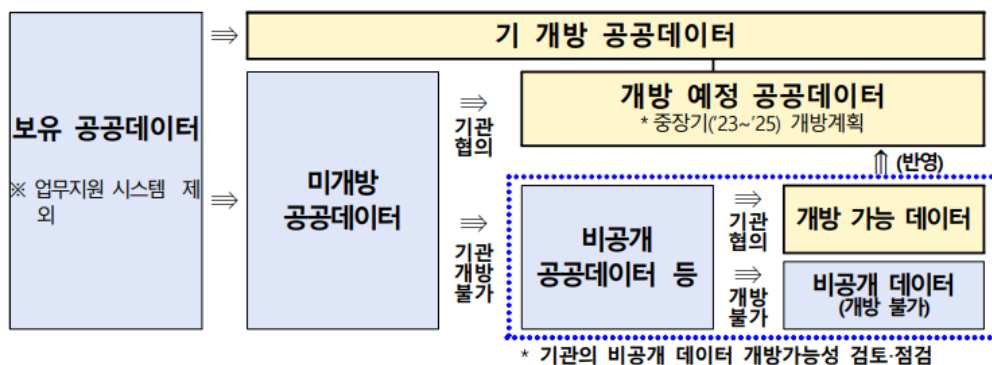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27,696	138,564	163,932	112,279	41,683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정보화)	5,761	13,794	22,356	20,781	23,049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3,574	5,767	13,072	13,362	12,717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5,300	5,268	6,006	13,577
합계	37,031	163,425	204,628	152,428	91,026

주: 단위사업 「(2046)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내 세부사업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개요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023.4.10.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서비스)

구분	영역 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2023년	12개	(행정)복지, 교육, 교통, 행정지원(관보), (일자리)취업, 창업, (생활)건강·의료, 주거, 환경(생활/자연), 안전(범죄/재난), 생활인프라, (여가)여행
2024년	11개	(법률)입법, 사법, 특허, (일자리)귀농·귀촌·귀어, (IT·과학)과학기술, (경제)금융, 부동산, (생활)먹거리,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취미·여가 활동
2025년	10개	(행정)행정지원, 정책, 세금, 모빌리티, 출입국, (IT·과학)정보통신, (경제)공급망, 농축수산, (생활)날씨, 출산·육아

자료: 행정안전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2023.4.10.

정부업무 16대 분야별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단위: 개, %)

구분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보유 공공데이터(A)	7,120	36,934	31,330	10,290	36,327	17,493
기 개방 공공데이터(B)	1,193	4,782	7,217	1,763	3,154	5,198
개방 비율(B/A)	16.8	12.9	23.0	17.1	8.7	29.7

구분	식품건강	문화관광	기타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보유 공공데이터(A)	3,220	6,895	10,970	11,920	15,669	18,996
기 개방 공공데이터(B)	913	1,646	2,357	1,331	2,528	4,643
개방 비율(B/A)	28.4	23.9	21.5	11.2	16.1	24.4

구분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안보	법률	합계
보유 공공데이터(A)	15,568	4,935	30,625	4,073	977	263,342
기 개방 공공데이터(B)	3,179	1,436	7,709	248	43	49,340
개방 비율(B/A)	20.4	29.1	25.2	6.1	4.4	18.7

주: 메타 등록정보 기반 조사·분석한 결과임(2022년 7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023.4.10.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유형별 데이터

(단위: 개, %)

구분	경영·영업비밀	개인정보	법령상 비밀	감사·감독·계약	생명·신체·재산보호
건수	38,825	37,858	28,760	22,216	18,689
비중	25.0	24.3	18.5	14.3	12.0

구분	안보·국방·외교	재판수사	투기·매점매석	기타	합계
건수	6,428	1,449	1,172	81	155,478
비중	4.1	0.9	0.8	0.1	100.0

주: 메타 등록정보 기반 조사·분석한 결과임(2022년 7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023.4.10.

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단위: 개)

구분	계	기관 유형별		
		2023	2024	2025
합계	57,590	13,809	30,171	57,590
중앙부처	17,614	3,732	8,237	17,614
지자체	26,298	6,548	14,063	26,298
공공기관	12,894	3,209	7,331	12,894
지방공사공단	784	320	540	784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023.4.10.

기관유형별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기관 유형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데이터(A)	263,342	78,482	62,146	118,868	3,846
기 개방 공공데이터(B)	49,340	20,048	9,140	19,537	615
개방 비율(B/A)	18.7	25.5	14.7	16.4	16.0

주: 메타 등록정보 기반 조사·분석한 결과임(2022년 7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2023.4.10.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기관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총점	기관유형별 점수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2021(a)	62.7	83.1	76.1	58.7	61.8
2022(b)	63.6	82.9	71.4	56.0	66.1
증감(b-a)	0.9	△0.2	△4.7	△2.7	4.3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4.10.

기초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총점	평가지표별 점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2021(a)	58.7	71.5	51.1	44.8	45.1
2022(b)	56.0	67.5	54.7	47.3	47.9
증감(b-a)	△2.7	△4.0	3.6	2.5	2.8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3.4.10.

24

풍수해보험 제도 현황 및 과제

가. 현황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관리제도
 -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2023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은 총 363.7억원이며, 이중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은 약 351.6억원, 풍수해보험 운영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 사업 예산은 약 12.1억원 편성
- 2021년부터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비율을 70~100%로 인상 하였으며, 최근 「풍수해보험법」 개정(2022.1.)¹⁾에 따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지원대상별 보험료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주택은 70%(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최대92%), 온실 및 상가·공장은 70%(최대 92%),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00%²⁾
 - 그동안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이 불가하였으나, 「풍수해보험법」 제34조에 예외 규정(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송은혜 예산분석관 (02-6788-4649)

1) 「풍수해보험법」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외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전액지원 대상자는 ①풍수해 피해이력(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및 ②저소득층 거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됨

나. 주요 쟁점

- 풍수해보험은 제한적인 가입범위, 임의보험의 한계, 재난지원금 등 타 재난지원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등의 문제로 가입률 상승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보험료 지원비율 인상을 추진하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률이 증가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대상별 평균 가입률을 살펴보면, 주택은 약 20%, 온실은 약 10%, 상가·공장(소상공인)³⁾은 약 1%를 하회
 - 2021년 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이후 소상공인 가입률은 '21년 4.7%, '22년 31.9%, '23년(6월 말 기준) 42.2%로 점차 증가
- 최근 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이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발적 가입유인이 부족하고, 유사 정책보험⁴⁾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며, 피해지역의 가입률 등이 미흡하므로 보험설계 및 유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⁵⁾
 - 2022년부터 소상공인의 자부담분을 기업이 기부 형태로 지원하는 '제3자 기부가입' 제도가 도입·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가입률이 증가한 상황이므로 자발적 가입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별 소상공인 가입률의 경우, 2023년 6월말 기준, 전국 평균 42.2%, 그중 제주 203.3%, 충남 81.9%, 충북 69.5% 순이며, 최근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큰 지역⁶⁾인 경북은 28.5%, 전남은 19.5%로 비교적 낮은 수준
- 한편, 풍수해보험의 손해율⁷⁾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6.0%, 2022년 33.5%로 낮게 나타나 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므로, 향후 손해율 추이를 고려하여 보험료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⁸⁾

3) 소상공인은 2018년부터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음

4)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49.9%, 94.6%

5)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3.7. 참조

6) 2021년 시도별 자연재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전남(307억원), 경북(155억원), 경남(56억원) 순으로 피해액 규모가 크고, 전남과 경북의 피해액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손해율이란 보험사로 납부된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3.7. 참조

다. 관련 통계

풍수해보험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보험료 분담비율	국비 56.5%~70.0%	지방비 13.5%~30.0%	자부담 0.0%~30.0%
사업자	DB, 현대, 삼성, KB, 농협, 한화, 메리츠		
보상방법	정액보상/실손보상		
가입시기 및 보험기간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보험목적물의 설치목적,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기간 조정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비율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정부			개인	정부			개인	정부			개인	정부			개인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주택 (정액형)	일반	52.5	43.5	9.0	47.5	70.0	56.50	13.5	30.0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차상위계층	75.0	59.25	15.75	25.0	77.5	61.75	15.75	22.5	77.5	61.75	15.75	22.5	77.50	61.75	15.75	22.5
	기초수급자	87.4	67.0	20.4	12.6	87.04	67.36	19.68	12.96	87.04	67.36	19.68	12.96	86.5	68.05	18.45	13.5
	재해 취약지역	-	-	-	-	86.5	68.05	18.45	13.5	86.5	68.05	18.45	13.5	86.5	68.05	18.45	13.5
	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	-	-	-	-	86.5	68.05	18.45	13.5	86.5	68.05	18.45	13.5	86.5	68.05	18.45	13.5
주택 (실손형)	일반	52.5	43.5	9.0	47.5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온실 (정액형)	일반	52.5	43.5	9.0	47.5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소상공인 (실손형)	일반	59.0	50.0	9.0	41.0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70.0	56.5	13.5	3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가구, ha, 개소, %)

연도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²⁾	
	가입실적 ¹⁾	가입률	가입실적	가입률	가입실적	가입률
2006	17,318	5.2	17	0.5	-	-
2007	20,221	3.1	61	0.6	-	-
2008	243,598	6.0	193	0.4	-	-
2009	295,646	14.2	244	0.9	-	-
2010	309,218	15.8	410	1.7	-	-
2011	340,129	17.7	573	2.2	-	-
2012	295,563	14.9	937	2.9	-	-
2013	339,155	18.8	1,454	4.0	-	-
2014	292,647	17.2	1,262	4.5	-	-
2015	317,230	19.6	800	3.7	-	-
2016	382,423	22.4	851	4.2	-	-
2017	418,029	24.9	1,639	7.2	-	-
2018	376,966	20.2	1,890	7.9	319	0.15
2019	355,027	18.9	2,268	9.1	1,483	0.46
2020	397,822	20.6	2,674	10.3	13,917	0.96
2021	487,308	24.9	3,055	11.7	28,655	4.66
2022	527,331	26.7	3,983	15.8	195,792	31.9
2023.6. ³⁾	598,755	30.6	4,383	17.7	259,050	42.2

주: 1) 가입실적이란 전체 가입대상 중 실제 보험을 가입한 주택의 건수, 온실의 면적 등을 의미함

2) 소상공인은 2018년부터 가입대상으로 포함됨

3) '23.6.30. 기준 유효 가입(계약상 유효한 가입)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도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23.6월 말 기준)

(단위: 가구, ha, 개소, %)

연도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실적	가입률	가입실적	가입률	가입실적	가입률
서울	23,858	16.2	1.2	1.7	84,767	40.8
부산	35,077	37.0	78.7	13.1	19,247	53.2
대구	2,930	4.5	0.2	0.1	5,831	53.4
인천	13,880	21.2	12.2	21.6	5,276	40.6
광주	20,023	27.7	19.8	9.1	2,842	66.6
대전	4,710	8.9	55.7	55.3	2,554	44.9
울산	57,422	164.7	1.0	0.6	10,335	52.6
세종	1,456	15.9	1.0	1.3	685	18.3
경기	82,730	27.1	1,358.4	42.6	30,659	34.9
강원	23,446	14.4	480.0	39.4	16,323	45.7
충북	10,175	8.4	1,013.1	92.4	8,018	69.5
충남	56,632	41.8	180.3	3.8	14,051	81.9
전북	64,766	56.0	69.9	5.8	9,512	48.7
전남	65,356	48.6	47.2	3.9	4,992	19.5
경북	54,170	28.1	133.6	2.9	14,814	28.5
경남	66,514	36.0	394.4	6.8	21,829	36.3
제주	15,610	24.0	536.2	2,243.9	7,315	203.3
계	598,755	30.6	4,382.7	17.7	259,050	42.2

주: 1. '23.6.30. 기준 유효 가입(계약상 유효한 가입)

2. 가입실적이란 전체 가입대상 중 실제 보험을 가입한 주택의 건수, 온실의 면적 등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풍수해보험 손해율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C)	위험손해율 (C/B)	영업손해율 (C/A)
	계(A)	위험보험료(B)	부가보험료			
2018	29,396,890	22,228,866	7,168,024	15,468,618	69.5	52.6
2019	28,982,886	21,936,908	7,045,978	20,563,953	93.7	71.0
2020	36,202,947	27,152,210	9,050,737	26,831,514	98.8	74.1
2021	42,340,810	32,102,837	10,237,973	15,242,859	47.4	36.0
2022	72,150,853	54,113,140	18,037,713	24,183,962	44.7	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134

25

사립대학 재정 위기와 정부의 대학등록금 규제

가. 현황

- 정부가 2011년 국가장학금 확충과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도입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대학등록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등록금 규제 관련 입법과 정책

-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 2011년 7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
- 2012년, 국가장학금 추진 시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하고, II 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교비장학금 확충 등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12년 기본계획)

나. 주요 쟁점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 발생
 - 초·중·고 자녀가 없는 학부모들(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58.2%로 감소
-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등록금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시킴으로, 대학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지적 제기¹⁾
 - 사립대학 중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 수가 2011년 대비 2021년 76개교 증가(62개→138개)²⁾
 - * 실질 운영수익은 수익총액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을 적용한 금액임

최해인 예산분석관 (02-6788-4648)

-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이슈페이퍼)」, 2023.6.28.
-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2023.6.7.

-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서 재정지원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국제경쟁력, 교육 및 재정 여건, 교육 성과 측면에서 주요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 세계 200위권 대학수, SCI 논문수 순위,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청년 고용률 등 성과목표 미달성

다. 관련 통계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 상한

(단위: 만원)

구 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지원구간	'22년	-	~154	~256	~358	~461	~512	~666	~768	~1,024
경곶값	'23년	-	~162	~270	~378	~486	~540	~702	~810	~1,080
'21년 지원 단가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 '23년 지원 단가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 자 녀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주: 1.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B학점 이상(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3. 학자금 지원구간 곶곶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4.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곶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곶쳐 곶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21년 4,876,290원, 2022년 5,121,080원, 2023년 5,400,964원 기준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장학금 II 유형 중 자체노력 연계형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21년	국공립	인 1학기	272	351	286	323	2,214	1,285	4,160	7,170	18,060	655	602
		원 2학기	116	231	189	211	2,518	1,413	4,889	6,441	17,781	345	351
		금액	308	579	462	500	2239	1281	4546	10606	29054	367	320
	사립	인 1학기	29,708	42,293	34,964	36,672	39,196	19,250	52,106	30,397	61,611	1,085	1,201
		원 2학기	30,265	42,107	35,143	37,317	38,467	18,786	53,196	29,149	61,711	534	544
		금액	29,418	39,457	29,945	30,635	30,270	13,799	31,908	16,821	30,870	676	739
'22년	국공립	인 1학기	57	142	157	153	1,239	721	2,470	1,979	4,294	24,462	25
		원 2학기	67	186	163	149	1,229	746	2,455	1,985	4,738	19,974	20
		금액	183	302	278	273	1,101	677	2,440	2,321	4,877	29,191	42
	사립	인 1학기	5,076	30,909	26,513	27,133	29,970	15,084	40,537	23,984	49,154	22,659	27
		원 2학기	5,054	31,025	26,314	28,617	30,068	14,625	40,991	24,617	53,363	17,088	29
		금액	4,024	29,323	22,256	22,271	23,015	10,039	22,738	11,582	23,019	7,570	25

주: 교육부는 등록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하며, 2022년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지원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9구간 가구의 지원인원 및 지원액이 2021년 대비 확대됨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통계청 '사회조사' 중 교육비 부담 인식 관련 응답 결과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응답 (매우부담+약간부담)	초·중·고생 자녀 있음	80.5	78.2	72.0	67.3	65.2	64.9	63.4	57.7
	초·중·고생 자녀 없음	77.0	80.1	77.1	75.3	65.7	63.0	65.9	58.2
	(대학생 자녀만)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등록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교육비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초·중·고생 자녀 있음	13.1	20.3	19.4	16.7	18.7	14.1	11.5	10.0
	초·중·고생 자녀 없음	63.4	81.3	76.5	72.1	69.2	65.9	64.1	60.6
	(대학생 자녀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연도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A)	111,794	109,064	108,726	109,378	108,312	107,804
보수지출(B)	67,432	70,500	72,977	74,744	76,353	77,632
관리운영비 지출(C)	19,387	19,626	19,544	19,947	19,619	20,085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B/A)	60.3	64.6	67.1	68.3	70.5	72.0
등록금 대비 인건비 + 운영비 비율((B+C)/A)	77.7	82.6	85.1	86.6	88.6	90.6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A)	105,669	105,728	105,519	103,515	102,646	102,241
보수지출(B)	78,153	79,019	77,751	78,718	78,292	79,484
관리운영비 지출(C)	20,016	20,236	20,402	18,805	19,767	22,306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B/A)	74.0	74.7	73.7	76.0	76.3	77.7
등록금 대비 인건비 + 운영비 비율((B+C)/A)	92.9	93.9	93.0	94.2	95.5	99.6

주: 제주 소재 및 각종대학 제외, 미제출교 제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금 수입(A) (수강료 제외)	106,445	103,971	103,975	105,208	103,864	102,827
자금수입(B)	176,609	181,112	183,502	191,614	189,435	189,787
등록금 의존비율(A/B)	60.3	57.4	56.7	54.9	54.8	54.2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금 수입(A) (수강료 제외)	100,564	100,566	100,426	100,152	99,023	98,155
자금수입(B)	188,606	186,052	186,989	182,427	185,075	191,111
등록금 의존비율(A/B)	53.3	54.1	53.7	54.9	53.5	51.4

주: 제주 소재 및 각종대학 제외, 미제출교 제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1년~2023년 대학 설립별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 물가인상률			4.0	2.2	1.3	1.3	0.7	1.0	1.9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89.9	91.8	93.0	94.2	94.9	95.8	97.6
등록금 인상 상한률			5.20	4.85	4.55	3.75	2.40	1.65	1.50
설 립 별	국 공립	명목등록금	4,319	4,081	4,101	4,103	4,119	4,121	4,133
		실질등록금	4,807	4,445	4,409	4,356	4,342	4,303	4,233
	사립	명목등록금	7,684	7,392	7,355	7,340	7,353	7,370	7,400
		실질등록금	8,552	8,051	7,908	7,792	7,752	7,695	7,579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년 대비 증감률
소비자 물가인상률			1.5	0.4	0.5	2.5	5.1	-	-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99.1	99.5	100.0	102.5	107.7	110.35	-
등록금 인상 상한률			1.80	2.20	1.90	1.20	1.70	4.05	-
설 립 별	국 공립	명목등록금	4,151	4,167	4,182	4,186	4,191	4,203	△2.7
		실질등록금	4,189	4,189	4,182	4,084	3,891	3,808	△20.8
	사립	명목등록금	7,432	7,455	7,478	7,490	7,521	7,569	△1.5
		실질등록금	7,501	7,495	7,478	7,307	6,983	6,859	△19.8

- 주: 1. 대상: 4년제 대학(일반, 산업, 교육) 대상(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기술대, 각종대학, 특별법대학, 특별법국립 제외), 캠퍼스, 분교 포함
 2. 등록금(평균) = 학부 등록금 총수입(계열별·학년별) / 입학정원, 연간 기준임
 3. 등록금 인상 상한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고등교육법」 제11조)
 4. 실질등록금: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명목(경상가) 금액을 조정한 등록금 금액
 5.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분기 값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6.7.), 「대학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2010년)」의 성과목표 대비 실적

주요 지표		10개년 기본계획		2020년 실적
		계획당시('10년)	목표치('20년)	
국제 경쟁력 측면	세계 200위권 내 대학 수(The Times)	4개교	10개교	6개교
	SCI 논문수 순위	11위	9위	12위
	SCI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0위	20위	31위
교육 및 재정 여건 측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33명	17명	27.2명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8,920\$	18,716\$	10,633\$('17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54.7%	40% 이하	54.9%
교육성과 측면	청년(15~29세) 고용률	40.5%	45%	42.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각 지표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조세

26

국세수입 전망 오차 개선

가. 현황

- 최근 세입전망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
 - 2021년에서 2022년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높은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
 - 본예산 대비 오차: ('21) 61.3조원 ('22) 52.6조원
 - 2023년 5월 누적 총국세: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 대규모 세수오차는 예상치 못한 경기 순환과 자산 시장의 변화에 주로 기인
 - 2021~2022년 대규모 초과 세수는 예상치 못한 빠른 경기 반등과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시장 호조에 기인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었으나, 주요국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¹⁾
 - 이와 함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시장의 호조와 거시지표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이 초과 세수로 귀결
 - 반면 2023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와 자산시장의 위축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직전 2년간 초과 세수를 주도했던 법인세, 자산관련 세수가 급감
 - 2023.5월 누적(전년동기 대비): (총국세) △36.4조원, (법인세) △17.3조원, (양도소득세) △8.9조원

나. 주요 쟁점

-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은 재정운용상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 경기대응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징세노력 강화, 세출 감액, 추경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 등이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1) 경상성장률 (전망/실적, %): (2021) 4.8/7.2 (2022) 4.2/3.9

고려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결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감액 등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과는 달리 집행하는 재량행위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존재
 - 추경편성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감액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움
- 또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사업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고려 필요
- 추가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반기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 내의 재정수지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기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반면, 대규모 초과세수의 발생은 재정지출의 추세적 증가와 재정정책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유권자들의 지대추구 유인을 높임에 따라 의원 및 정부의 세수 감소형 세법개정안 및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의 정책을 입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지출이 경기상황에 따라 역행적으로 운용되거나 최소한 중립적으로 운용되어야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경기호조로 인한 초과세수가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 재정지출이 경기동행적(pro-cyclicality)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

다. 관련 통계

국세수입 예결산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본예산	216.4	216.5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추경예산	210.4	-	215.7	232.7	251.1	-	-	279.7 ¹⁾	314.3	396.6	-
	결산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
오차	본예산 대비	△14.5	△10.9	△3.2	19.7	23.1	25.4	△1.3	△6.5	61.3	52.6	-
	추경예산 대비	△8.5	-	2.2	9.8	14.3	-	-	5.8	29.8	△0.7	-
오차율	본예산 대비	△7.2	△5.3	△1.5	8.1	8.7	8.7	△0.5	△2.3	17.8	13.3	-
	추경예산 대비	△4.2	-	1.0	4.0	5.4	-	-	2.0	8.7	△0.2	-

주: 1. 세수오차율은 예산 대비 실적의 비율로서 [실적-예산]/실적×100(%)을 의미

1) 2020년은 제1회,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으며, 표는 제3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목별 오차율 추이

(단위: %)

	2010	2015	2020	2021	2022	2010-2022	
						평균	표준편차
총국세	4.1	△1.5	△2.3	17.8	13.3	3.5	7.2
1. 소득세	0.6	5.6	5.0	21.3	17.8	6.9	7.7
- 종합소득세	5.3	1.6	△8.3	△3.0	9.9	3.3	9.4
- 양도소득세	△9.4	33.8	29.1	54.0	30.4	18.0	21.6
- 근로소득세	8.4	△2.5	△2.3	7.9	17.0	4.6	5.8
2. 법인세	1.1	△2.3	△16.0	24.3	27.6	3.8	12.7
3. 상속·증여세	12.2	△2.3	19.9	39.4	10.1	10.3	12.3
4. 부가가치세	4.4	△8.7	△6.1	6.4	5.1	0.8	5.3
5. 개별소비세	5.7	3.8	△11.0	△7.5	△8.8	△2.1	7.5
6. 증권거래세	△0.7	20.9	49.9	50.4	△19.6	6.1	28.2
7. 인 지 세	△14.3	24.4	△9.0	1.4	△18.7	△0.6	11.6
8. 과년도수입	7.5	△45.1	△29.9	10.8	15.9	0.1	23.5
9. 교통에너지환경세	16.3	4.2	△12.8	5.5	△38.4	△2.3	12.5
10. 관 세	13.0	△16.3	△24.5	△1.5	15.4	△7.4	11.6
11. 교육세	2.2	2.6	△10.6	△4.0	△15.0	△3.1	5.6
12. 종합부동산세	△1.7	8.4	7.8	16.6	△8.6	5.3	7.4
13. 주 세	0.6	△0.8	△10.6	△21.5	0.8	△4.8	6.3
14. 농어촌특별세	△5.2	△5.2	27.3	38.5	4.7	△1.0	21.4

주: 세목별 세수오차율은 예산 대비 실적의 비율로서 [실적-예산]/예산×100(%)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외 세수오차율 현황

(단위: %, %p)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한국
2010~2019(A)	7.2	1.7	2.2	6.3	1.8	4.8
2010~2014	7.5	0.7	2.3	9.0	2.1	4.1
2015~2019	6.9	2.8	2.1	3.7	1.5	5.5
2020~2022(B)	8.9	10.6 ¹⁾	12.7 ¹⁾	8.6	7.4	11.1
2020년대 이후 변동분(B - A)	1.7	8.9	10.5	2.3	5.6	6.3

주: 1. 세수오차율 절댓값의 평균임

1)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2022/23 회계연도가 3월에 종료되어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2022/23 회계연도를 제외한 2개 연도의 평균값임

자료: 각국의 예산안과 결산 자료(정부의 재무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기관별 2023년 경제 전망

	정부		NABO			한국은행			KDI		
	'22.6.	'23.7.	'23.3.			'23.5.			'23.5.		
	연간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실질성장률(%)	2.5	1.4	1.5	1.2	1.8	1.4	0.8	1.8	1.5	0.9	2.1
- 민간소비	3.2	2.5	2.4	3.1	1.8	2.3	3.3	1.4	3.0	3.5	2.4
- 설비투자	2.7	△1.2	△1.3	0.7	△3.2	△3.2	5.3	△11.1	1.1	5.2	△2.8
- 건설투자	3.5	0.6	△1.0	△2.4	0.3	△0.4	0.7	△1.4	0.4	0.9	△0.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7	3.0	4.0	3.9	4.0	3.3	3.1	3.4	3.2	3.2	3.2
취업자수 증감(만명)	15	32	15	19	11	25	35	15	27	34	21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3	3.5	4.1	3.0	3.5	4.0	2.9	3.4	4.0	2.8
경상수지(억달러)	560	230	200	△38	237	240	△16	256	164	△90	151
통관수출(%)	1.0	△6.6	△4.8	△10.2	1.0	0.4	△12.5	0.6	0.7	△13.9	△0.9
통관수입(%)	△1.0	△8.6	△6.0	△6.8	△5.2	△0.2	△7.4	△8.4	0.9	△5.8	△6.7

자료: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7.; 국회예산정책처, 「2023 경제전망」, 2023.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5.;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3.5.

2023년 국세수입 현황: 6월 누계

(단위: 조원, %)

	6월 순계			상반기 누계				진도율		'22년	'23년
	'22.6.	'23.6.	증감액	'22.6.	'23.6.	증감액	증감률	'22.6.	'23.6.	실적	예산
국세수입	21.7	18.4	△3.3	218.2	178.5	△39.7	△18.2	55.1	44.6	395.9	400.5
소득세	8.8	6.8	△2.1	69.6	57.9	△11.6	△16.7	54.0	43.9	128.7	131.9
- 종합소득세	2.8	2.1	△0.7	13.3	11.1	△2.2	△16.6	55.4	44.7	23.9	24.7
- 양도소득세	1.9	0.9	△1.0	18.2	8.3	△9.9	△54.4	56.3	27.8	32.2	29.7
- 근로소득세	2.9	2.5	△0.4	29.7	29.4	△0.3	△1.0	51.8	48.5	57.4	60.6
법인세	2.6	3.1	0.5	63.5	46.7	△16.8	△26.4	61.3	44.5	103.6	105.0
상속·증여세	1.1	1.1	0.0	8.7	7.9	△0.7	△8.4	59.3	46.3	14.6	17.1
부가가치세	2.9	2.2	△0.7	40.2	35.7	△4.5	△11.2	49.2	42.9	81.6	83.2
증권거래세	0.5	0.4	△0.1	3.7	3.0	△0.7	△18.7	58.5	60.3	6.3	5.0
교통·에너지·환경세	1.0	0.9	△0.1	6.0	5.3	△0.7	△11.9	54.2	47.6	11.1	11.1
관세	1.0	0.5	△0.4	5.5	3.5	△2.0	△36.5	53.7	32.8	10.3	10.7
기타	3.7	3.4	△0.4	21.1	18.5	△2.6	△12.5	53.2	50.7	39.7	36.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현황

가. 현황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 다만, 명목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

$$\text{조세부담률} = \frac{\text{총조세(국세 + 지방세)}}{\text{명목GDP}} \times 100$$

-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¹⁾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해야 할 필요

나. 주요 쟁점

- 2010년 17.2%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22.0%, 2022년 23.8%로 상승
 - 2021년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0% 및 G7 평균 26.7%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5.7%p에서 2021년 3.0%p로 축소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2021년 29.8%, 2022년 32.0%로 상승

○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0년 31.6%에서 2021년 34.0%로 증가하였고, G7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2021년 기준 36.8%)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및 G7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2%p에서 2021년 4.2%p로 축소되는 추세

다. 관련 통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추이: 2013~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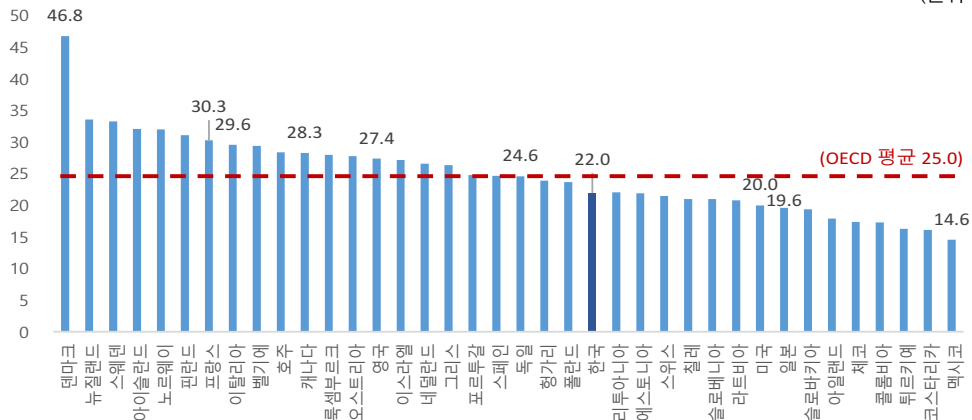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부담률	17.0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0	23.8
국민부담률	23.1	23.4	23.7	24.7	25.4	26.7	27.2	27.7	29.8	32.0

자료: NABOSTAT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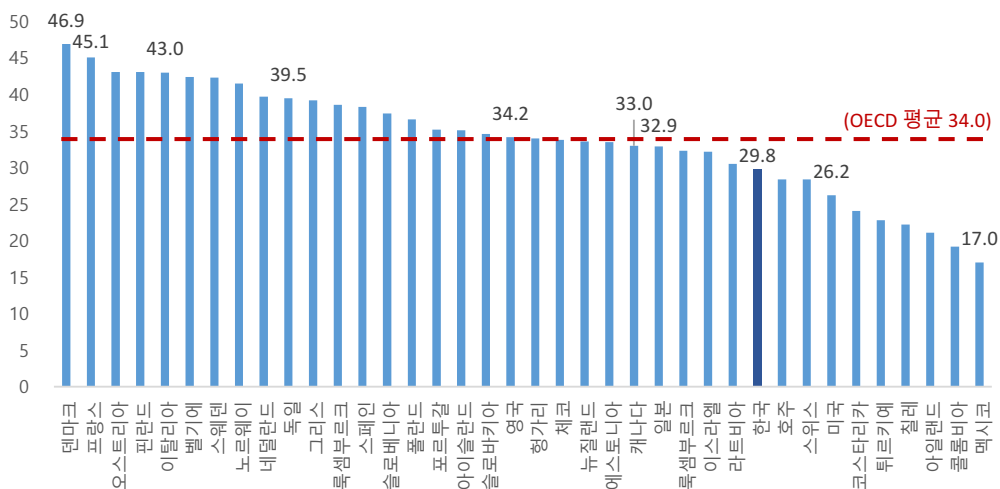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2021년 기준

(단위: %)



주: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8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란 '조세특례에 따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
 - OECD는 조세지출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¹⁾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63.5조 원^{실적}에서 2023년 69.5조원^{전망} 및 2024년 77.1조원^{전망}으로 증가할 전망
 -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1%에서 2023년 13.9%로 2024년에는 1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국세감면율 또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국세 감면액(A)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 총액 ¹⁾ (B)	4,212,938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A/(A+B)×100)	13.1	13.9	16.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²⁾	14.6	14.3	14.0

주: 1)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1) 기준조세체계에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이 포함됨

-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골자로 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 중
 -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평가(‘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와 당해 일몰이 도래하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평가(‘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의무화

나. 주요 쟁점

- 조세지출 규모 상위 20개 항목이 전체 국세 감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 항목²⁾이 일몰 기한이 설정되지 않음
 - 일몰 기한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부처 자율평가³⁾ 및 의무 심층평가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

조세지출 규모 상위 20개 항목의 현황

(단위: 억원, %)

	2022 실적	2023 전망	2024 전망
전체 국세 감면액(A)	635,484	694,988	771,144
상위 20개 항목의 감면액(B)	488,056	541,844	604,245
상위 20개 항목의 비중(B/A)	76.8	78.0	78.4

주: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일몰 기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14개임(부분 일몰이 설정된 항목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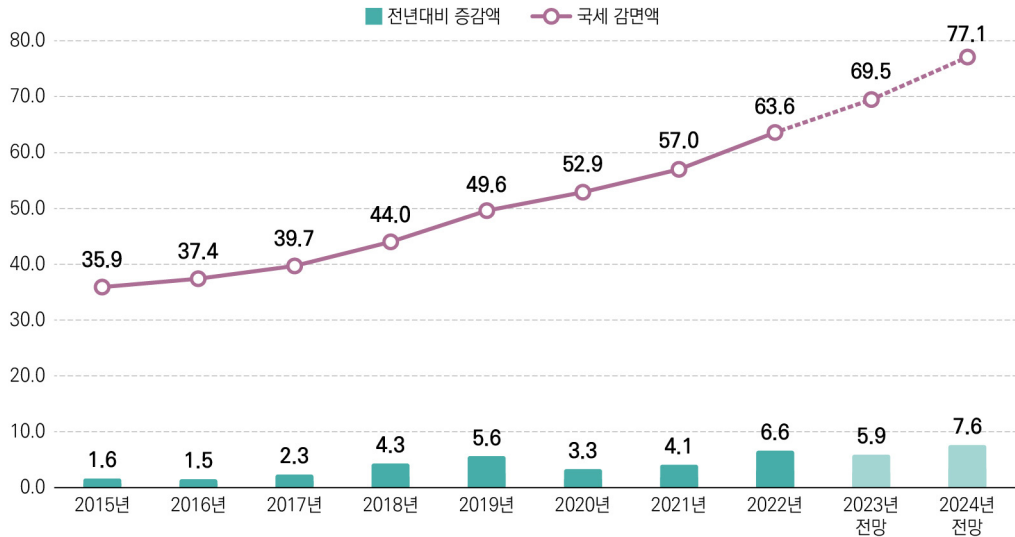
-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은 소관 부처별⁵⁾로 관리되어 총계 관점의 조세지출 파악에는 제한적인 상태로 일관성 있는 조세지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 자세한 내용은 ‘다. 관련 통계’ 참조
 3)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4)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실시
 5) 국세 조세지출은 기획재정부, 지방세 조세지출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음

다. 관련 통계

최근 10년(2015~2024년) 국세 조세지출 추이

(단위: 조원)



주: 2023년 및 2024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예산분류체계별 국세 조세지출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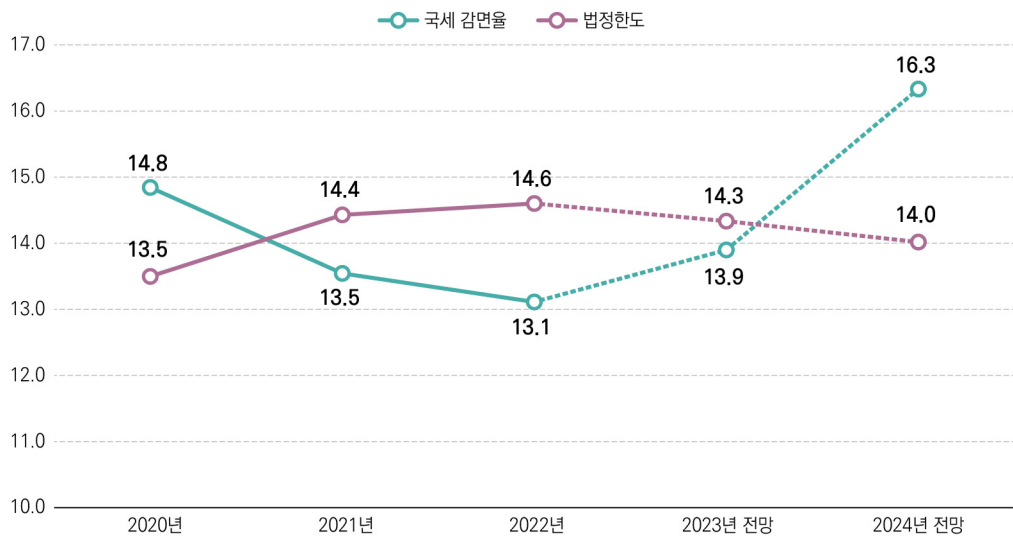
예산분류별		2020 (A)	2021	2022	2023 (전망)	2024 (B,전망)	'24 - '20 (B-A)
사회복지		18.7 (35.3)	20.0 (35.1)	21.1 (33.2)	22.9 (33.0)	24.7 (32.1)	6.0 (△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3 (25.0)	14.0 (24.5)	17.1 (26.9)	19.2 (27.7)	23.6 (30.6)	10.3 (5.5)
보건		7.5 (14.2)	7.9 (13.8)	9.1 (14.4)	10.6 (15.3)	11.1 (14.4)	3.6 (0.2)
농림수산		5.9 (11.2)	6.4 (11.2)	6.2 (9.7)	6.1 (8.8)	6.4 (8.3)	0.5 (△2.9)
합 계	4대 분야	45.4 (85.8)	48.3 (84.7)	53.5 (84.2)	58.9 (84.8)	65.8 (85.4)	20.4 (△0.4)
	전체	52.9 (100.0)	57.0 (100.0)	63.5 (100.0)	69.5 (100.0)	77.1 (100.0)	24.2 -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한 단수 차이 존재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최근 5년(2020~2024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단위: %)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조세지출 감면규모 상위 20개 항목 현황

(단위: 억원, %)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2022(실적)		2024(전망)		
	감면액	순위	감면액	순위	순위 변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4,607	1	67,202	1	-
근로장려금 지급	45,036	2	51,153	3	↓ 1
연금보험료공제	38,141	3	43,679	5	↓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7,231	4	48,129	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1,675	5	43,061	6	↓ 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31,119	6	36,593	8	↓ 2
통합고용세액공제	29,574	7	38,036	7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6,658	8	33,812	9	↓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24,676	9	29,326	10	↓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3,489	10	26,474	11	↓ 1
통합투자세액공제*	21,997	11	56,832	2	↑ 9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886	12	24,789	12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6,482	13	13,822	16	↓ 3
연금계좌세액공제	15,647	14	18,721	13	↑ 1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4,409	15	14,067	15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401	16	13,533	17	↓ 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088	17	14,483	14	↑ 3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9,743	18	8,459	-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667	19	10,205	19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9,529	20	10,221	18	↑ 2
자녀장려금	4,977	-	10,105	20	진입
전체 조세지출액(A)	635,484		693,155		
상위 20개 항목의 국세 감면액(B) ¹⁾	488,056		604,245		
상위 20개 항목의 비중(B/A) ¹⁾	76.8		78.4		

주: 1) 2022년 및 2024년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및 그해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을 집계한 것임

1. 음영으로 표시된 조세지출 항목은 일몰기한 규정이 없거나, 일부 조항에만 부분 일몰이 설정(*)된 항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9

국세 체납 현황 및 개선방안

가. 현황

- 2022년말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100조원을 상회하였고 누적 체납액의 84.8%는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액'에 해당
 - 국세 체납액: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조세수입으로 조세채권에 해당
 - 누적 체납액: 매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 중 정리되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의 누적액
 - 정리 보류액: 체납자의 소득·재산부족, 거소불명, 강제징수를 마친 후에도 부족한 경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체납액. 사실상의 '결손처분'에 해당

국세 누적 체납액 현황: 2022년말 기준

(단위: 억원, 명, 건, %)

누적 체납액(A)						인원	건수	1인당 체납액
합계		정리보류액		정리 중 체납액				
1,025,140	(100.0)	869,467	(84.8)	155,673	(15.2)	1,325,937	4,992,052	0.8

주: ()는 누적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말 기준,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42.6조원(1인당 체납액 8.8억원)
 -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현황: 2022년말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체납액	1인당 체납액
신규 공개자	6,940	44,196	6.4
누적 공개자 ¹⁾	48,356	425,609	8.8

주: 1) 통계자료 공개 당시 연도 말 기준 명단공개 중인 인원과 체납 합계액에서 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등 중복 체납액을 제거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나. 주요 쟁점

- 우리나라의 국세 누적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2년 102.5조원으로 10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
 - 국세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저하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함
- 체납자 1인당 체납액 규모에 비례하여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액'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다. 관련 통계' 참조)
 - 체납액 규모별 정리보류액 비중(%): (5백만원 미만) 32.7, (10억원 이상) 92.5
-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2022년 기준 6.9%로 낮은 수준
 - 최근 5년(2018~2022년) 국세 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은 연평균 36.4%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동 기간 평균 5.7%) 보다 높은 수준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자의 현금정리(cash collection) 실적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공개자) 현금정리 비중	4.7	4.5	5.7	6.7	6.9	5.7
국세 체납액 현금정리 비중	36.9	36.5	37.2	36.9	34.6	3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경우 지속적인 공개기준 완화와 함께 공개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발생 억제 및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¹⁾도 존재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기준 변화와 신규 공개자 추이

(단위: 명)

구분	2010	2012	2016	2017
명단공개 기준	2년 경과 7억원	1년 경과 5억원	1년 경과 3억원	1년 경과 2억원 이상
신규 명단공개 인원	2,797	7,213	16,655	21,4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20년, 202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9. 및 2022.9.)

다. 관련 통계

체납액 규모별 국세 누적 체납액 현황(2022년도)

(단위: 명, 건, 억원, %)

체납액 규모 ¹⁾	누계 체납			정리 중 체납액 (B)	정리보류	
	인원	건수	금액 (A=B+C)		금액(C)	비중 (C/A)
소계	1,325,937	4,992,052	1,025,140	155,673	869,467	84.8
5백만원 미만	628,224	1,017,995	9,551	6,431	3,120	32.7
5백만원 이상	138,551	424,173	10,037	5,732	4,305	42.9
1천만원 이상	299,583	1,474,947	73,177	29,362	43,815	59.9
5천만원 이상	101,705	732,311	72,555	20,716	51,839	71.4
1억원 이상	72,896	591,402	102,961	21,051	81,910	79.6
2억원 이상	52,939	450,721	162,842	23,488	139,354	85.6
5억원 이상	17,610	155,218	122,722	13,665	109,057	88.9
10억원 이상	14,429	145,285	471,295	35,228	436,067	92.5

주 1) 체납액 규모는 체납자 1인당 체납액 기준

주: 국세 누적 체납액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미정리되어 남아 있는 누적 체납액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신규 공개자			누계 공개자	
	인원	체납액	1인당 체납액	인원	체납세액 ¹⁾
2018	7,158	52,440	7.3	-	-
2019	6,838	54,073	7.9	56,085	511,345
2020	6,965	48,203	6.9	57,420	502,739
2021	7,016	53,612	7.6	50,033	433,344
2022	6,940	44,196	6.4	48,356	425,609

주 1) 통계자료 공개당시 연도말 기준으로 명단공개 중인 인원과 체납세액 중 2차 납세의무, 연대 납세의무 등 중복 체납액을 제거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쟁점

가. 현황

-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8,800만원 미만 과세표준 구간을 2023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2022년 제안하였고, 국회에서 2022.12.23. 의결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1,200 → 1,400만원, 4,600 → 5,000만원
 - 과표구간 조정으로 증가한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도 동시에 제안하였으며,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
- 국회에서도 2008~2022년 동안 최고구간 신설 외에는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높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계 부담의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됨
 - 관련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의 상향 또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 고정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자는 취지
- 참고로 물가 상승에 대한 소득세제 조정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Tanzi(1980)에 따르면 이상적인 물가 조정방안은 단순해야 하며, 실질소득에 따른 개인 소득세 부담 분포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고, 명목소득의 증가가 개인 소득세 수입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해야 함
 - 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를 제거할 수 있는 명목세율의 인하: 총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 분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②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방법: 물가 공제(inflation deduction)는 납세자의 직전년도 총소득에 물가상승률을 곱함으로써 계산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소득에서 과세되는 부분이 실질이 아니라 여전히 명목에 연동됨
 - ③ 총소득을 기준연도로 디플레이트하는 방법: 현재 소득을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트한 후, 현재 소득세제를 적용해 구한 소득세액을 다시 인플레이트 하는 것으로 계산이 복잡

- ④ 소득세 구조에 물가 상승을 반영: 과표구간 및 공제 등 모든 소득 세제에 물가 연동하는 경우(완전 물가 연동), 소득세제의 일부 항목에 대해 물가 연동(불완전 물가 연동), 소비 자물가지수 외에 최저임금이나 시간당 임금 등을 물가 연동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나. 주요 쟁점

-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낮은 점, 근로 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
 - GDP 대비 소득세부담(% , '21년): 한국 6.1, OECD 평균 8.3, G7 평균 10.1
- 물가 상승은 과세구간 상향이동(bracket creep effect)을 초래할 수 있어, 소득세 개편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최근과 같은 높은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과세구간 상향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고, 이는 누진세 체계하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과표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가 상존
 -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는 2023~2027년 기준 연평균 2.9조원, 누적 14.3조원으로 예상

다. 관련 통계

소득세 부담 현황: 국제비교

(단위: %, %p)

		GDP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			총조세대비 소득세 부담 비중		
		2012 (A)	2021 (B)	차이 (B-A)	2012 (A)	2021 (B)	차이 (B-A)
한국		3.6	6.1	2.5	15.0	20.4	5.4
OECD 평균		7.5	8.3	0.8	22.4	23.8	1.3
G7	G7 평균	9.1	10.1	1.0	27.3	30.3	3.0
	캐나다	11.4	12.1	0.8	36.4	36.5	0.1
	프랑스	8.0	9.5	1.5	18.1	21.0	2.9
	독일	9.4	10.5	1.1	25.6	26.6	1.0
	이탈리아	11.6	11.2	△0.3	26.5	25.9	△0.5
	일본	5.2	6.2	1.0	18.6	n.a.	n.a.
	영국	8.8	9.9	1.2	27.4	29.7	2.3
	미국	9.2	11.2	2.0	38.5	42.1	3.6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개수: 국제비교

(단위: %, %p, 평균임금의 배수)

구분		2011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차이 (B-A)
최고명목세율 (가산세 포함)	한국	38.5	44.0	46.2	46.2	46.2	49.5	11.0
	OECD 평균	39.6	41.4	41.5	41.9	42.3	42.5	2.9
	G7 평균	47.6	50.0	49.7	49.7	49.7	49.7	2.1
과표구간 개수 (중앙정부 기준)	한국	4.0	6.0	7.0	7.0	7.0	8.0	4.0
	OECD 평균	4.6	4.8	4.8	5.1	5.1	5.2	0.6
	G7 평균	4.9	5.3	5.3	5.3	5.3	5.3	0.4
최고 과표구간 문턱 (평균임금의 배수)	한국	3.2	12.9	12.2	11.9	11.7	22.8	-
	OECD 평균	3.7	5.3	5.4	5.6	7.2	6.3	-
	G7 평균	7.4	6.7	6.8	6.8	6.8	6.6	-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총소득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 현황: 국제비교

(단위: %, %p)

		2011 (A)	2017	2018	2019	2020	2021 (B)	차이 (B-A)
평균임금 67%	한국(A)	1.29	2.06	2.29	2.54	2.60	2.63	1.34
	OECD 평균(B)	10.88	10.94	10.73	10.90	10.76	10.66	△0.22
	G7 평균	13.11	11.95	12.00	12.03	11.83	11.92	△1.19
	A/B, %	11.83	18.80	21.35	23.33	24.14	24.66	-
평균임금 100%	한국(A)	3.86	5.52	5.88	6.10	6.13	6.15	2.29
	OECD 평균(B)	14.90	15.05	14.97	15.13	15.00	14.94	0.04
	G7 평균	16.36	16.32	16.30	16.34	16.01	16.00	△0.37
	A/B, %	25.93	36.69	39.28	40.29	40.85	41.17	-
평균임금 167%	한국(A)	8.09	10.14	10.80	11.11	11.13	11.13	3.04
	OECD 평균(B)	20.34	20.42	20.45	20.60	20.50	20.49	0.15
	G7 평균	22.96	23.28	23.23	23.15	23.08	23.31	0.35
	A/B, %	39.79	49.68	52.79	53.94	54.31	54.32	-

주: 무자녀 단독가구 기준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67%, 100%, 167% 수준의 총소득대비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임
 자료: OECD Taxing wage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추이: 2008~2023년

(단위: 만원, %)

과세표준 구간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2018	2021	과표구간	2023
구간 개수	4개	4개	4개	5개	5개	6개	7개	8개		8개
~ 1,200	8	6	6	6	6	6	6	6	~ 1,400	6
1,200 ~ 4,600	17	16	15	15	15	15	15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6	25	24	24	24	24	24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35	35	35	35	35	35	35	좌동	35
15,000 ~ 30,000					38	38	38	38	좌동	38
30,000 ~ 50,000				38			40	40	좌동	40
50,000 ~ 100,000						40	42	42	좌동	42
100,000 ~								45	좌동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조정 관련 발의안 현황(2023.7. 기준)

(단위: 억원)

현행 과세표준 기준금액	의원안					정부안 ⁵⁾ (2117169) '22.12.23 국회 통과
	과표 조정				과표조정 & 물가연동제 도입	
	강대식의원안 (2116388) ¹⁾	고용진의원안 (2116444) ²⁾	김두관의원안 (2116596) ³⁾	이인영의원안 (2116882)	노웅래의원안 (2116441)	
1,2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4,600만원	5,4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억원	9,500만원	1억원	8,800만원	1억원	8,800만원
1.5억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억원						
5억원						
10억원						
비고	-	세율 인하	최고 구간 신설 (과표 30억원 초과)	-	과표에 물가연동제 도입 ⁴⁾	-
심사경과	수정안반영 폐기	수정안반영 폐기	수정안반영 폐기	수정안반영 폐기	본회의 부의	수정가결
누적세수효과 (‘23~’28)	△251,994	△443,107	△650,977	△625,919	△528,402	△143,164
연평균세수효과 (‘23~’28)	△50,399	△88,621	△130,195	△125,184	△105,680	△28,633

주: 1) 대표발의자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는 의안번호임. 각 구분 내에서 의안번호 순서로 정리
 2) 고용진의원안은 세율인하도 시행(6/15/24/35/38/40/42/45% → 5/13/23/35/38/40/42/45%)
 3) 김두관의원안은 이에 추가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
 4) 해당연도의 과세표준 구간 금액은 이에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
 5) 정부안은 보도자료로 '22.7.21. 발표되었으며, '22.9.1. 국회 제출, 국회에서 '22.12.23. 의결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1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가. 현황

- 국세수입은 2012~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7.7%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는 2012~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2% 증가하며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국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2.6%에서 2022년 32.5%로 크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비율은 22.6%에서 26.2%로 소폭 상승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7.4%에서 20.6%로 하락
-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연평균 12.7% 증가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전년대비 6.3조원(15.5%), 10.2조원 (21.6%) 증가해 2012~2020년의 평균 증가액(2.7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확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2012~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4%(3.0조원) 증가, 2021년 19.3%(8.5조원) 증가

나. 주요 쟁점

- 최근 근로소득세수의 높은 증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 기업영업실적 호전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일시적 요인, 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근로소득세는 평균소득의 증가와 함께 상위 소득구간의 근로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증가해온 측면이 있는데, 2021년 고소득자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¹⁾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2)

- 1) 국세통계연보의 2012~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 이용,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이미 공개되었으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수 및 소득규모별 결정세액 등의 집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공개 예정으로 활용 불가

- 과세표준 구간 기준액이 고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 비중 증가폭(전년대비): 2012~2020년 0.1~0.3%p, 2021년 0.9%p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 비중 상승폭(전년대비): 2012~2020년 0.1~0.9%p, 2021년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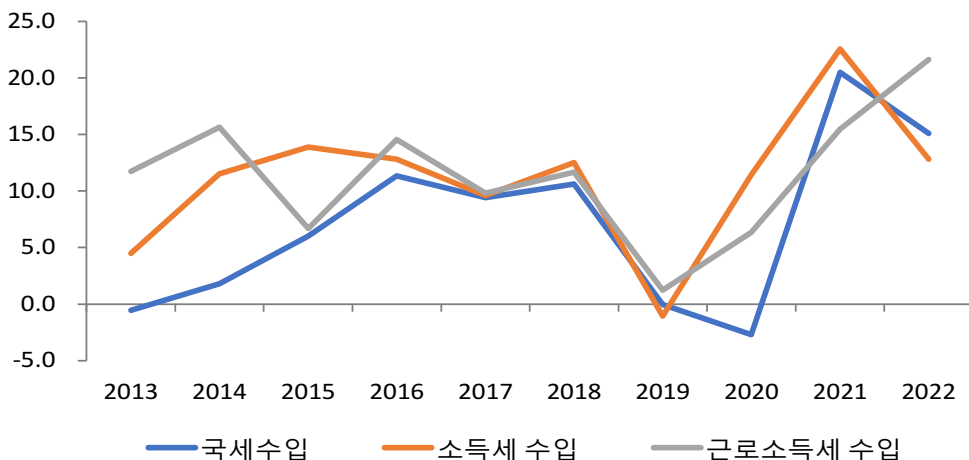
■ 2021년 고소득자 비중 증가는 평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한 데 기인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특별급여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급여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이후 기업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도 근로자의 총급여액 증가 및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폭 확대에 기여

다. 관련 통계

국세수입,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

(단위: %)



소득세 세목별 세수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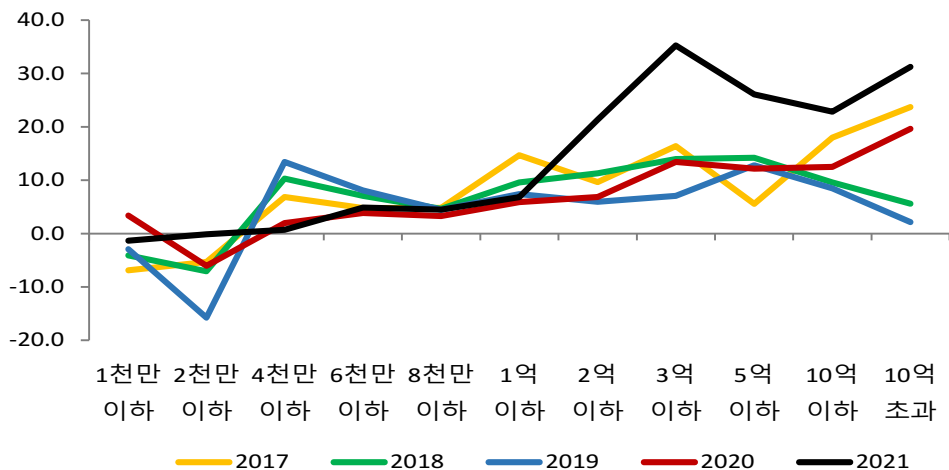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세	47.8 (4.5)	53.3 (11.5)	60.7 (13.9)	68.5 (12.8)	75.1 (9.6)	84.5 (12.5)	83.6 (△1.1)	93.1 (11.4)	114.1 (22.6)	128.7 (12.8)
신고분	17.6 (1.0)	19.5 (11.2)	24.6 (26.1)	28.0 (13.8)	31.2 (11.2)	35.5 (13.9)	32.9 (△7.4)	39.7 (20.8)	52.7 (32.6)	56.2 (6.6)
- 종합소득세	10.9 (9.7)	11.5 (5.4)	12.8 (11.3)	14.3 (12.2)	16.0 (11.9)	17.5 (8.9)	16.8 (△4.0)	16.1 (△4.2)	16.0 (△0.5)	23.9 (49.7)
- 양도소득세	6.7 (△10.7)	8.0 (20.9)	11.9 (47.3)	13.7 (15.4)	15.1 (10.6)	18.0 (19.1)	16.1 (-10.7)	23.7 (46.9)	36.7 (55.2)	32.2 (△12.2)
원천분	30.3 (6.7)	33.8 (11.7)	36.0 (6.7)	40.5 (12.3)	43.9 (8.4)	49.0 (11.6)	50.7 (3.5)	53.4 (5.3)	61.4 (15.1)	72.6 (18.2)
- 이자소득세	3.3 (△7)	2.9 (△11.5)	2.5 (△12.9)	2.1 (△17.6)	2.1 (0.3)	2.2 (6.8)	2.6 (17.8)	2.6 (0.0)	2.2 (△15.5)	2.6 (18.7)
- 배당소득세	1.6 (-1.0)	1.7 (7.1)	2.0 (17.6)	2.0 (0.4)	2.4 (18.9)	2.8 (13.3)	3.0 (7.2)	3.2 (8.5)	4.6 (44.8)	4.2 (△10.6)
- 사업소득세	1.8 (3.1)	1.9 (6.8)	2.1 (9.8)	2.4 (13.5)	2.6 (9.9)	2.9 (9.4)	3.2 (11.1)	3.3 (3.6)	3.7 (10.9)	4.1 (11.5)
- 근로소득세	21.9 (11.7)	25.4 (15.6)	27.1 (6.7)	31.0 (14.6)	34.0 (9.8)	38.0 (11.7)	38.5 (1.2)	40.9 (6.3)	47.2 (15.5)	57.4 (21.6)
- 기타소득세	1.1 (8.2)	1.0 (△1.6)	1.2 (17.3)	1.3 (6.8)	1.5 (11.2)	1.7 (14.8)	2.0 (18.9)	2.0 (△0.7)	1.9 (10.4)	2.3 (16.6)
- 퇴직소득세	0.6 (△33.7)	0.8 (43.5)	1.1 (33.4)	1.6 (44.6)	1.2 (△26.8)	1.3 (12.2)	1.3 (△0.9)	1.4 (5.5)	1.4 (5.1)	1.6 (13.9)
- 연금소득세	0.01 (75.3)	0.02 (80.3)	0.04 (102.5)	0.06 (64.9)	0.09 (42.8)	0.12 (44)	0.17 (33.9)	0.22 (29.2)	0.28 (30.1)	0.4 (30)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증가율 추이

(단위: %)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증가율 및 세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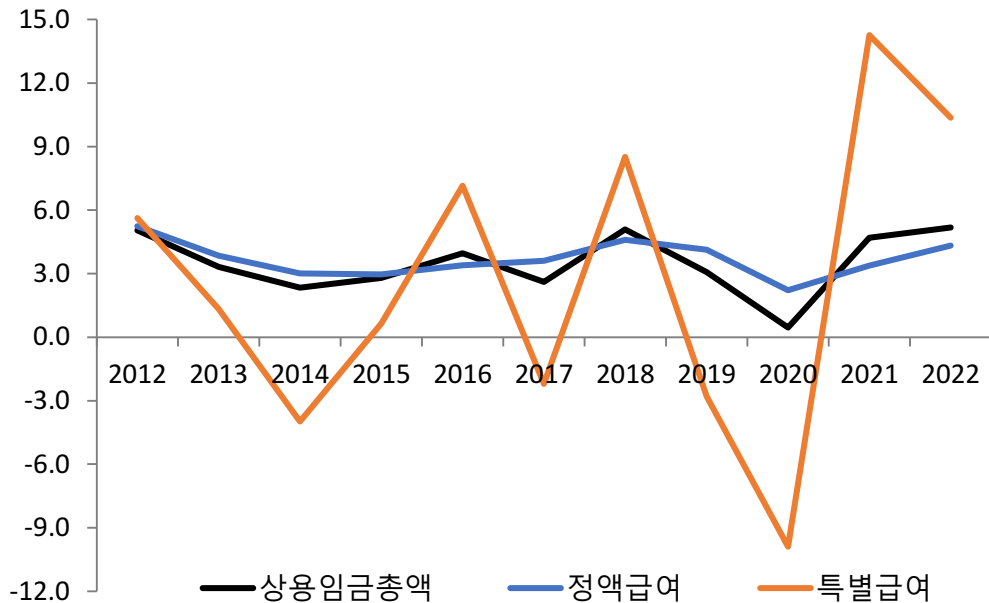
(단위: %)

총급여 규모	신고인원 증가율		근로소득세수 비중		
	2016~2021 ¹⁾	2020~2021	2016	2020	2021
전체	2.4	2.6	100.0	100.0	100.0
1천만원 이하	△2.4	△1.4	0.0	0.0	0.0
2천만원 이하	△7.0	△0.1	0.2	0.1	0.1
4천만원 이하	6.5	0.7	4.4	3.8	3.6
6천만원 이하	5.7	4.9	11.5	10.5	9.7
8천만원 이하	4.3	4.5	16.1	13.8	12.3
1억원 이하	8.8	6.8	14.9	14.9	13.5
2억원 이하	10.9	21.3	30.8	31.0	32.4
3억원 이하	16.8	35.2	7.5	8.4	9.4
5억원 이하	14.0	26.1	6.1	6.6	7.0
10억원 이하	14.1	22.8	4.4	5.1	5.2
10억원 초과	15.9	31.2	4.3	5.6	6.8
1억원 초과	11.4	22.6	53.0	56.8	60.8

주: 1) 연평균 증가율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32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및 주요 개정 경과

가. 현황

- 정부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정책의 개편안 지속 발표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발표
 -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3.1.3.)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규제 추가 해제 방침 등 발표
-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23.2.28.)
 -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규제 추가 해제(’23.1.5.부터 효력 발생)
 - 서울 지역 중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¹⁾, 투기과열지구²⁾ 지정 해제(투기지역도 동일)(’23.1.3. 발표, 효력 ’23.1.5.부터 발생)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 적용의 비교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거주	2년 보유 (단 양도대상 자산은 최초 취득 시 비규제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처분, 신규주택 전입 불필요	

문석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9)

- 1) 「주택법」 제63조의2 등,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년연도 대비 30% 증가, 3개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 등
- 2) 「주택법」 제63조 등,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실적·건축허가건수 감소,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기본세율+30%p 단, 중과 배제 한시 유예(~'24.5.9.)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원칙, 한시적으로 보유기간별 6~30%의 공제율 적용(~'24.5.9.)	보유기간별 6~30%의 공제율 적용

주: 기본세율은 6~45%(「소득세법」 §104①1, §55①)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종전주택·대체주택 등 처분기한 연장 등(「소득세법 시행령」 '23.2.28.)
- '23.1.12.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종전주택·대체주택 처분기한 관련 변경사항

종전	개정사항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 ¹⁾ 처분기한 ○ (조정→조정 ²⁾)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 1)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2)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23.1.12.

나. 주요 쟁점

-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세율인하 또는 실거주의무 완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의 진행 중
 - 다주택자 적용 중과세율 완화(폐지) 및 단기 보유 분양권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하 또는 기본세율 환원 등은 논의 중인 상태
 - (다주택자 적용 중과세율 완화(폐지)) 관련 법률안³⁾ 국회 계류 중, 다만 조정대상지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①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한시 미적용(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66, '22.3.7.), ②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기본세율 적용(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788, '22.2.18.), ③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161, '20.6.30.) 등

역 등 규제지역 해제('23.1.5.)로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서울 4개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한정

- (단기 보유 분양권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또는 기본세율 환원 등)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 개정안 미발표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완화(2~5년 거주-폐지) 또한 미개정 상태
 - 실거주의무 완화는 「주택법」 개정을 필요⁵⁾로 하는 사항
- 상기 세제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추가 규제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분양가를 비롯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

■ 최근에는 특정 조건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 부동산 관리를 위한 지역분류 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등의 양도소득세 입법 추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⁶⁾
- (지역분류 개편)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중전의 투기과열지구 및 지정지역)에만 중과세율을 적용⁷⁾
-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 미분양 주택·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4) 당초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수 조치를 시행하면서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인하(분양권/주택·입주권: 1년 미만은 70% → 45%, 1년 이상은 60% → 기본세율) 방침 발표

5) 대표적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796, '23.2.2.)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517, '21.9.10.)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419, '23.4.17.)

21대 국회 제출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법률안

개정안	발의 건수	주요 법률안의 내용
과세 완화 ¹⁾	28건	다주택자(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하 또는 면제, 중과 한시 미적용 등 다주택자 산정 요건 완화(기업주택 제외, 대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과세 강화 ²⁾	10건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수준으로 세율 인상 공익사업용토지 등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있어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 제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일몰연장 등 ³⁾	24건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적용 등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대토보상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주: 1) 다주택자 판정 주택 산입 수 감소·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요건 완화, 세율 인하 또는 감면 비율 상향 등

2) 다주택자에 산입되는 주택 산입 수 증가·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요건 강화, 세율 인상 등

3)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등 일몰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내용

1. 정부 제출안은 발의건수 기산에서 제외

자료: 2020년 6월~2023년 7월까지 발의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관련 통계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최근 주요 변경사항

- '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강화된 세율 적용
 - ('18.4.1.~'21.5.31.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20%p
 - ('21.6.1.~'22.5.9. 양도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상기 중과세율 대비 +10%p
- '22년 5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24.5.9.)

부동산 관련 자산유형별 양도소득세율 변화의 최근 연혁

자산	구분		'14.1.1.~ '17.12.31.	'18.1.1.~ 3.31.	'18.4.1.~ '21.5.31.	'21.6.1.~ '22.5.9.	'22.5.10.~ '24.5.9.
토지· 건물, 부동산 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40%) ¹⁾			50% ¹⁾ (70%) ²⁾	
		2년 미만	40% ¹⁾ (기본세율) ²⁾			40% ¹⁾ (60%) ²⁾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³⁾	
	1세대 2주택 이상 ⁴⁾ 인 경우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 시 해당 단기 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10%p) ⁶⁾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20%p) ⁷⁾	기본세율 ⁸⁾
	1세대 3주택 이상 ⁵⁾ 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지정지역 기본세율 +10%p) ²⁾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20%p) ⁶⁾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30%p) ⁷⁾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은 기본세율+10%p) ⁹⁾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주: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에는 70%, 그 외 60%(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4) 1주택+1조합원 입주권, 1주택+1분양권 포함
 5)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합이 3 이상 포함
 6)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7)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8)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4.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9) '16.1.1. 이후 모든 지역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기본세율+10%p)
 1.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및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주요 변경사항

-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에 있어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고려하여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각각 최대 40% 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제도의 주요 변천사항

구 분	'09.1.1.~'11.12.31.		'12.1.1.~'18.12.31		'19.1.1~'20.12.31.		'21.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 보유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¹⁾	토지·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²⁾	거주기간 ³⁾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80%	30%	80%	20%	80%	20%	40%	40%			
11년 이상					22%		22%					
12년 이상					24%		24%					
13년 이상					26%		26%					
14년 이상					28%		28%					
15년 이상					30%		30%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주: 1)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부터)

2)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 (2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 '12.1.1.~ (2주택 이상) 장특공제 인정,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는 장특공제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16.12.31.까지는 '16.1.1., '17.1.1.부터는 취득일로 삼고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

자료: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의 요건 및 세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적용 등 비교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요건, 종과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의 차이 발생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의 비교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투기)지역
의미 (관련조항)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 제63조 등)	주택분양·매매거래가 과열(위축)되거나 과열(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등)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지정 세부 요건 *1개 이상 충족 필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①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 ② 분양물량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③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④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지역 중 ①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 ②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년연도 대비 30% 증가 ③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 등 ④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① 해당 지역 직전 2개월 주택(지가) 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지가) 가격상승률의 130% ② 해당 지역 직전 1년간 주택(지가) 가격 상승률 > 직전 3년간 전국 주택(지가) 가격 상승률 등
지정지역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세제 ¹⁾		①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20%p, 3주택 +3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③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조정지역 2년, 비조정지역 3년) ④ '18.9 이후 신규 등록한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²⁾	소유권 이전등기시 (최대 5년)	소유권 이전등기시 (최대 3년)	

주: 1) 2023년 7월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폐지, 양도세 중과는 '24.5월까지 한시 배제 중

2) 2023년 7월 현재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완화

자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3.7.)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운용 현황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 운용내용 비교

국가 구분	주요내용		
미국	주택 등 매매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연방소득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과세대상 및 납세자)		
	(과세대상 및 납세자)		
	- 미국세법상 별도 명시된 자산 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Capital Assets)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		
	미국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 의무를 가짐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Short-term Capital Gains, STCG)	10~37%
		보유기간 1년 이상 (Long-term Capital Gains, LTCG)	20%
	(공제 등)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하며, 그 뒤에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¹⁾		
(주거용 자택에 대한 혜택)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 처분 시 비과세혜택 * 단 최근 5년 내 2년 이상 주거 목적 사용		(부부합산) 50만 USD (그외) 25만 USD (임대 목적 투자) LTCG 세율 적용	
영국	소득세 과세표준과 연동되어 고소득자일수록 양도세를 많이 납부하는 구조이며 비교적 엄격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		
	(비과세 요건) ① 1가구 1주택, ②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세율)	소득세 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납세자(과세소득 12,501~50,000파운드)	18%
		고세율(40% 과세소득 5~15만 파운드) 적용자	28%
추가세율(45%, 과세소득 15만 파운드 이상) 적용자			
프랑스	매매단계에서 양도소득세(d'impôt sur le revenu des plus-values immobilières) 부과		
	(세율) 매도자에게 양도소득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사회보장세 17%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총 36%의 세율		

주: 1) 공제한도액은 연간 3,000 USD(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1,500 USD)

자료: 국토연구원,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2020.4.) 및 국세청,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미 세금상식”(2020.6.)를 바탕으로 작성

33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가. 현황

■ [혼인 세제지원]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없음

- 과거(2004년~2008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혼인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미시행

■ [출산 및 양육 세제지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육아휴직복직자 지원,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등의 제도가 현재 시행 중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및 자녀(6세 이하) 보육수당(한도 월 10만원)¹⁾,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 급여²⁾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자녀 기본공제)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³⁾
 - 1인당 공제금액이 1995년 100만원으로 인상 및 2009년 현행 150만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로서,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⁴⁾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세액공제⁵⁾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녀 연령은 2014년 도입시행 당시 20세 이하였으나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연령상향⁶⁾에 연동되어 조정(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녀는 2020년 연말정산부터의 경우 7세 미만)

박성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8)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3)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7항

4)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5)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6) 2018년 9월 도입시행 당시 대상연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6세 미만 아동이었으나, 2019년 1월 모든 6세 미만, 2019년 9월 모든 7세 미만, 2022년 4월 모든 8세 미만 아동 등으로 확대

-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연령·소득 무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의 최대 15%~20%, 난임치료비의 최대 30%,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납입금의 12% 등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⁷⁾
 -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장애자녀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15% 세액공제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 난임 시술·의약품 비용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⁸⁾
 - 자녀(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한도 100만원)⁹⁾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연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18세 미만) 1인당 50만원 ~ 8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제외)¹⁰⁾
-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¹¹⁾, 산후조리원 이용비(분만 직후의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¹²⁾, 다자녀 가정 구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¹³⁾

현행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자녀 연령별 제도적용 여부

구분	결혼	임신	출산·양육					
			~ 6세	7세	8세 ~	~ 17세	~ 20세	~ 대학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기본공제			○	○	○	○	○	
자녀 세액공제 ¹⁾					○	○	○	
의료비 세액공제	×	○	○	○	○	○	○	○
교육비 세액공제			○	○	○	○	○	○
보험료 세액공제			○	○	○	○	○	
자녀장려금			○	○	○	○		

주: 1)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 제4조)

자료: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8)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9)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

1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1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나. 주요 쟁점

- 현재 혼인 관련 세제지원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출산·양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혼인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 현재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혼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추경호의원안) 및 세액공제(양금희·조수진·윤재옥의원안) 신설안이 계류 중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혼인 관련 세제지원 정책이 2008년 폐지 이후 다시 등장
 - 2004~2008년 근로소득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혼인시 100만원 소득공제
 - 현행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과세가액 공제한도가 자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0년간 1인당 총 5천만원인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공제한도를 총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현재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난임치료 세액공제 강화·확대(김희재·박형수의의원안), 자녀 출산·양육 비과세 확대(김용민·한준호·김영주·전용기의의원안)·강화(이수진·김승원·김희재·송언석·서영교·전재수·김용민·유경준·정성호의원안), 자녀세액공제 확대(박성준·천준호의원안)·강화(강훈식·박광온·고용진·서영교·박성준의원안), 보육비 공제확대(김영주의의원안),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김영주의의원안), 자녀인원수 감안한 소득세 산정(박성준·강대식의의원안),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영세율(박광온의원안)·면제(김영주·전재수의의원안),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한도 상향(신동근의원안) 등 계류중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출산 및 양육 관련으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확대, 양육지원금 법인세 손금산입,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예정
 - (출산·보육수당) 현재 근로자 및 그 배우자가 출산 또는 자녀(6세 이하) 보육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 (자녀장려금) 현재 총소득 4천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총소득 7천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출산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

- 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을 세액공제(한도 없음)하는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총급여액 요건 폐지
- (보육 의료비 세액공제) 현재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6세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최대 15% 세액공제
 - 참고로, 국외 주요국의 양육 자녀수를 반영한 조세제도의 경우¹⁴⁾ 실질적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세제지원 정책이 실행 중

다. 관련 통계

■ 21대 국회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 현재(2023년 8월 17일 기준)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41건
- (지원단계별) 출산·양육 31건, 임신 6건, 결혼 4건
- (지원유형별(중복포함)) 비과세 14건, 소득공제 1건, 세액공제 17건, 면제 8건 등

21대 국회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단위: 건)

지원단계		결혼	임신	출산·양육	합계
지원유형	비과세	0	0	14	14
	소득공제	1	0	0	1
	세액공제	3	6	8	17
	과표인하	0	0	1	1
	세율인하	0	0	1	1
	소비세 면제	0	0	8	8
심사결과	원안가결	0	1	0	1
	수정안 반영폐기	0	0	5	5
	대안 반영폐기	0	2	1	3
	소관위 심사 중	4	3	25	32
	합계	4	6	31	41

주: 비과세 및 세액공제 관련 중복포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프랑스의 소득세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산정 제도, 대만의 소득공제 기본생활비차액(基本生活費差額) 제도 등

■ 21대 국회 계류 법률안 현황

-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32건은 혼인비용 소득세액공제 4건,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 관련 3건, 출산·양육급여 비과세 관련 12건(중복포함), 양육 세액공제 관련 8건(중복포함), 자녀인원수 감산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관련 2건,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제 등 소비세 면제가 4건

계류 중인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관련 세제지원 의원발의 법률안 주요 내용

지원단계	지원유형	내용
혼인	소득세 소득공제	• 혼인비용 소득공제 신설(추경호의원안)
	소득세 세액공제	• 혼인비용 세액공제 신설(양금희·조수진·윤재옥의원안)
임신	소득세 세액공제	• 난임 관련 시술·의약품 비용 세액공제 강화 및 확대 - 공제율 상향 및 요건완화(김희재의원안)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대비 목적의 배아·정자·난자 보전비용 추가(박형수의의원안)
출산·양육	소득세 비과세	• 자녀 출산·양육 비과세 확대 - 자녀교육수당 추가(김용민의의원안) -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 추가(한준호의원안) -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가족돌봄휴직수당 추가(김영주의의원안) - 배우자출산휴가수당 추가(전용기의의원안) • 자녀 출산·양육 비과세 강화 - 한도상향(이수진·김승원·김희재·송언석·서영교·전재수·김용민·유경준·정성호의원안)
	소득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공제금액 상향(강훈식·박광온·고용진·서영교·박성준의원안) - 공제대상 확대(박성준·천준호의원안) • 보육비 세액공제 확대(김영주의의원안)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김영주의의원안)
	소득세 과표인하	• 양육자녀가 있는 가구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구성원수에 따라 균분(박성준의원안)
	소득세 세율인하	• 자녀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강대식의의원안)
	소비세 면제	•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전재수의의원안)
		• 적용대상 확대(김영주의의원안) - 면제에서 영세율로 강화(박광온의원안) •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한도 상향(신동근의원안)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법개정 연혁: 2016~2023년

시행시기	내용
2023년	• 아동수당제도 확대(7세미만→ 8세미만)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8세이상)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일몰폐지) • 다자녀 가구 구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2년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20%→ 30%) - 2017년 시행 세법개정에서 15%→ 20% 인상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2019~20년	• 아동수당제도 확대(6세 미만→ 7세 미만)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7세 이상 등)
2018년	• 아동수당제도(6세 미만 대상) 도입시행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6세 이상)
2017년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대상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고 동 최저 산정금액을 3만원으로 조정
2016년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목적에서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체납액 충당(즉, 근로·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자료: 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4

부가가치세율 국제비교 및 논의 현황

가. 현황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1977년 도입되었으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유지
 - 도입 초기(1977~1988년) 기본세율 13%를 기준으로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3%를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는 10%를 적용
 - 탄력세율이 폐지된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10% 세율을 적용한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74.7%를 국세로, 25.3%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 간 세원을 공유
-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2% 수준
 -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룬 시기에 도입한 EU국가의 평균 세율은 21.8%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외 국가의 평균 세율은 15.2%
 - 2000년 이후 OECD 평균 세율은 17% 대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평균 세율은 2022년 19.2%까지 상승
 - 2009~2016년 기간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24개¹⁾이며, 일본은 2014년 이후 예정되었던 세율 인상을 두 차례 연기 끝에 2020년 8%에서 10%로 인상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1) 이 중 4개국(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이스라엘, 스위스)은 세율 인하를 통해 세율 인상분을 전부 또는 일부 환원

나. 주요 쟁점

-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재정 지출의 증가에 대응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OECD 등 해외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²⁾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명목GDP대비 비중(4.3%, 이하 2022년) 및 조세수입 내 비중(14.4%)이, OECD 평균 명목GDP대비 비중(7.2%) 및 조세수입 내 비중(21.4%) 보다 낮은 현상이 주요 근거로 제시
- 부가가치세율의 비교는 국가별·시점별 재정 환경 및 과세체계 등의 차이를 고려해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세율 조정의 영향과 경제 내 파급효과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
 -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세원 확보에 용이한 특성을 가진 세목
 - 세율 조정에 따른 물가 및 소득재분배 등의 경제적 영향이나³⁾ 납세자의 행태 및 수용성 등에 대한 예측은⁴⁾ 용이하지 않으므로 경제·재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가가치세율 조정 관련 주요 법률안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물가안정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임
 - 윤두현의원안(2022.11.18.)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세율을 30% 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병덕의원안(2023.4.26.)은 물가안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pm 30\%$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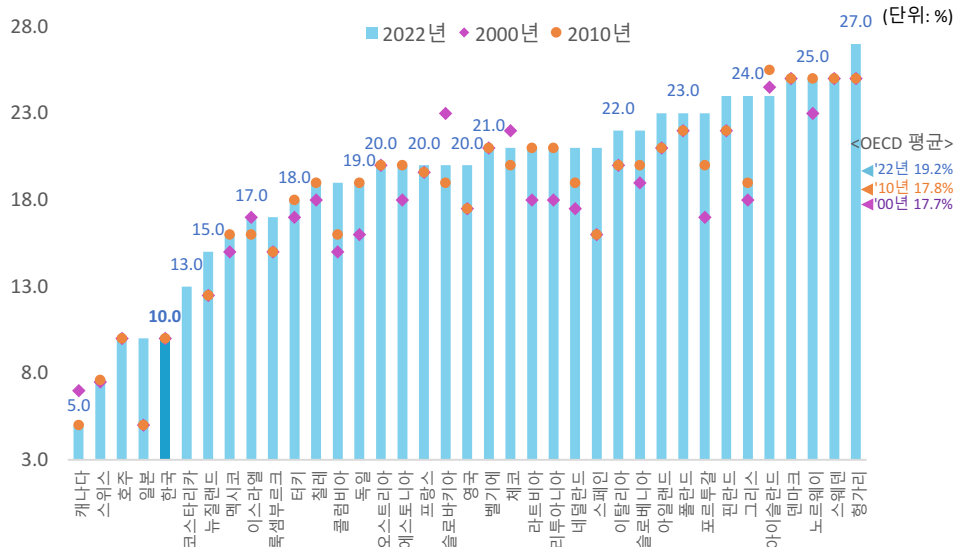
2)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2018.6.;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9.

3) 부가가치세율 조정 시 물가 조정 수준을 조사·측정한 자료(영국 통계청(2011), Carare and Danningger (2008), Economist(2019.9.26.) 등)와 소득재분배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성명재(2012), IFS(2011) 등)들은 세율 조정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각 대상·시점·방법론 등에 따라 분석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4) 예를 들어 세율 인상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가격에 반영될 시 소득효과(income effect) 등으로 개인의 소비액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구축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원이 일부 축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들은 방법론 등에 따라 이러한 전제에 차이가 있음

다. 관련 통계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주: OECD 평균은 2000년 및 2010년은 36개국, 2022년은 37개국(코스타리카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 추이 비교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헝가리	25.0	25.0	25.0	27.0	27.0	27.0	27.0
노르웨이	23.0	25.0	25.0	25.0	25.0	25.0	25.0
이탈리아	20.0	20.0	20.0	22.0	22.0	22.0	22.0
영국	17.5	17.5	17.5	20.0	20.0	20.0	20.0
프랑스	19.6	19.6	19.6	20.0	20.0	20.0	20.0
독일	16.0	16.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5.0	5.0	5.0	8.0	10.0	10.0	10.0
캐나다	7.0	7.0	5.0	5.0	5.0	5.0	5.0
평균: EU 국가	19.9	19.9	20.4	21.8	21.8	21.8	21.8
평균: EU외 국가	14.2	14.5	14.5	15.1	15.2	15.2	15.2
평균: 전체	17.7	17.8	18.1	19.2	19.2	19.2	19.2

주: OECD 평균은 2015년까지 36개국, 2020년 이후는 37개국(부가가치세를 2019년 도입한 코스타리카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경제 및 조세수입 내 부가가치세 비중 비교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명목GDP 대비 비중	한국	3.6	3.8	3.9	3.6	4.2	4.3
	OECD 평균	6.5	6.7	6.6	6.8	6.9	7.2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한국	17.0	17.4	17.5	15.3	15.1	14.4
	OECD 평균	20.1	20.7	21.0	20.8	20.7	21.4

주: 1. OECD 평균은 2015년까지 36개국, 2020년 이후는 37개국(부가가치세를 2019년 도입한 코스타리카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

2. 2021년의 경우 자료 미발표국(호주, 그리스, 일본)은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대 국회 부가가치세율 조정 관련 주요 법률안

의안	발의의원 (발의일)	내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2022.11.18.)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30% 범위에서 인하
	민병덕의원 (2023. 4. 26.)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간 $\pm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5

물가 관리를 위한 소비세제 개정 동향

가. 현황

-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계속되고 있음
 - 탄력세율 조정범위: 30% → 50%(2022.8. 개정, 2024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 비교(2023.9. 기준)
 - 휘발유: 475원/ℓ → 396.7원/ℓ, 경유: 340원/ℓ → 238원/ℓ, 부탄: 252원/kg → 176.4원/kg
 - 일반 발전용 LNG: 12원/kg → 10.2원/kg, 열병합 발전용 LNG: 12원/kg → 8.4원/kg, 비발전용 LNG: 60원/kg → 42원/kg
 - 유연탄: 46원/kg → 고열량탄 41.6원/kg, 중열량탄 39.1원/kg, 저열량탄 36.5원/kg
- 2019년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 맥주·탁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였으나,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변동지수 도입
 - 종가세가 적용되는 소주 등 다른 주종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반영되므로, 이들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물가연동제 함께 적용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2년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가격변동지수 도입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가격변동지수(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
 - 당초 정부안은 가격변동지수의 범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150%로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130%로 축소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임에 따라 2023년 가격변동지수는 가장 낮은 70%를 적용하여 3.57%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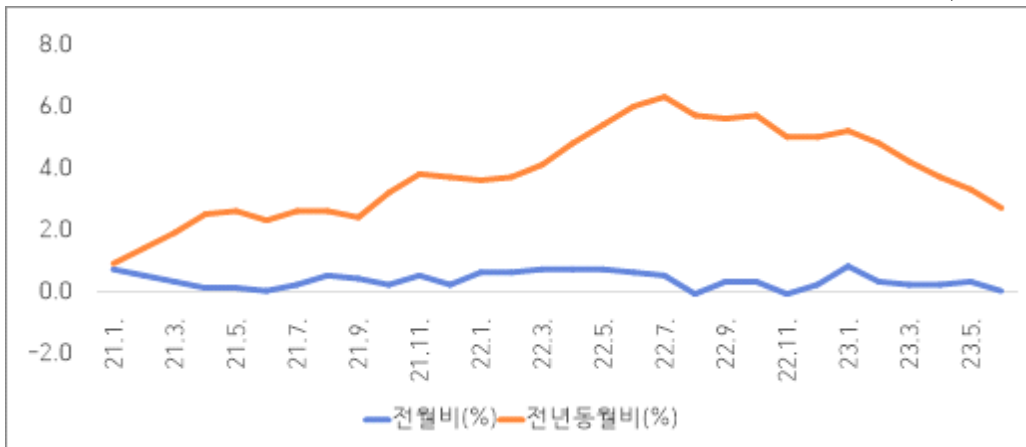
나. 주요 쟁점

-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은 2023.10.31.이고,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기한은 2023.12.31.로서 이후에도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과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법정세율의 $\pm 30\%$ 범위에서 탄력 세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필요
 - 고물가 상황에 따른 주류시장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물가연동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고물가 상황만을 고려한 제도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제기

다. 관련 통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2021.1.~2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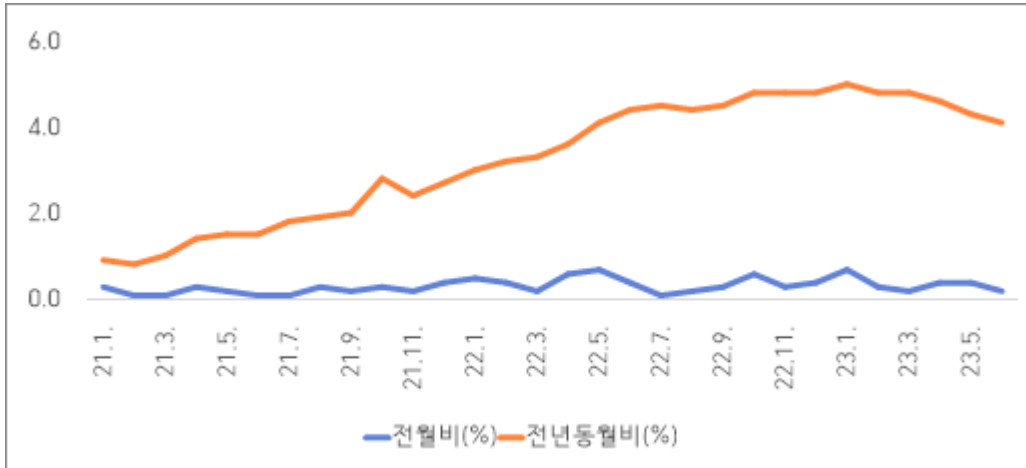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월별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등락률: 2021.1.~2023.6.

(단위: %)



주: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란 곡물 제외 농산물 및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품목(458개 중 401개)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내 유류 및 발전연료 가격 추이 : 2019~2023년

(단위: 원/ℓ, \$/mmbtu, \$/톤)

구 분	2020	2021	2022	2023.1분기	2023.2분기
휘발유	1,381	1,591	1,813	1,578	1,617
경유	1,190	1,391	1,843	1,607	1,467
부탄	791	932	1,082	1,001	979
LNG	4.4	18.6	33.3	16.7	10.7
유연탄	61.0	114.22	215.97	152.66	130.92

주: 휘발유 및 경유는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LNG는 아시아 국제가격 기준, 유연탄은 CFR 동북아 5,750kcal/kg NAR 기준임

자료: 오피넷,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price of LNG, Asia [PNGASJPUSDM], retrieved from FRE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PNGASJPUSDM>, July 27, 2023.

유류세 및 발전용 개별소비세율 현황

(단위 : 원/ℓ, 원/kg)

구 분		당초		'21.11.12.~	'22.5.1.~	'22.7.1.~	'22.8.1.~	'23.1.1.~
		기본	탄력					
휘발유		475	529	423(△20%)	370(△30%)	332.5(△37%)		396.7(△25%)
경유		340	375	300(△20%)	263(△30%)	238(△37%)		
부탄		252	275	220(△20%)	193(△30%)	176.4(△37%)		
LNG	일반 발전용	12	12	12			10.2(△15%)	
	열병합 발전용	12	8.4	8.4				
	비발전용	60	42	42				
유연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9			41.6(△15%)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46			39.1(△15%)	
	저열량탄 (~5,000kcal)		43	4.3			36.5(△15%)	

주: 서울 인하폭은 당초 탄력세율 대비 인하폭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맥주·탁주 종량세율 추이: 2019~2024년

(단위: 원/kg, %)

	2019.1.~2021.2.	2021.3.~2022.3. ¹⁾	2022.4.~2023.3.	2023.4.~2024.3. ²⁾
맥주 ³⁾	830,300	834,400	855,200	885,700
탁주	41,700	41,900	42,900	44,400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가격변동지수)	-	0.5	2.5	5.1 (3.57)

주: 1) 물가연동제 적용(세율 = 직전연도 기준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반영

3) 생맥주에 대하여는 80% 경감세율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6

법인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가.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 법인세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지방세 포함시 9.9~26.4%)

현행 법인세율 체계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지방세포함)
2억원 이하	9%(9.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20.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23.1%)
3천억원 초과	24%(26.4%)

-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명목세율을 구간별 10~25%에서 9~24%로 1%p 인하
 - 법인세 과표구간은 2011년 이전까지 2단계였으나, 2012년 3단계, 2018년 4단계로 세분화된 후 현행 유지 중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9년 22%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5%로 상향되었고, 2023년부터는 24%로 하향

법인세율 개정 연혁

과세표준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2023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9%
1~2억원	28%	27%	25%				25%	22%	22%
2~200억원				22%	22%	21%			
200~3,000억원					25%	24%			
3,000억원 초과									

나. 주요 쟁점

- 경제효과 측면에서 법인세율 변동은 이론적으로 고용 및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경제이론적으로 법인세율 변동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변화시키는데, 세율인하는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를 통해 자본유입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반면, 세율인상은 고용·투자 및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
 - 그러나,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증대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법인세율의 변동을 통한 세부담 변화가 자본유입과 기업의 위험부담에 영향을 미쳐 고용·투자증대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실증분석 연구 다수 존재¹⁾
 - 반면, 법인세율이 자본유출입이나 투자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국가의 발전수준, 제도, 재정지출 증가속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실증분석 연구도 다수 존재²⁾
-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인세율 변동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발생여부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과 중·장기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 변동이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동적
 - 가령,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증대가 공급능력 확충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클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강화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세입기반 잠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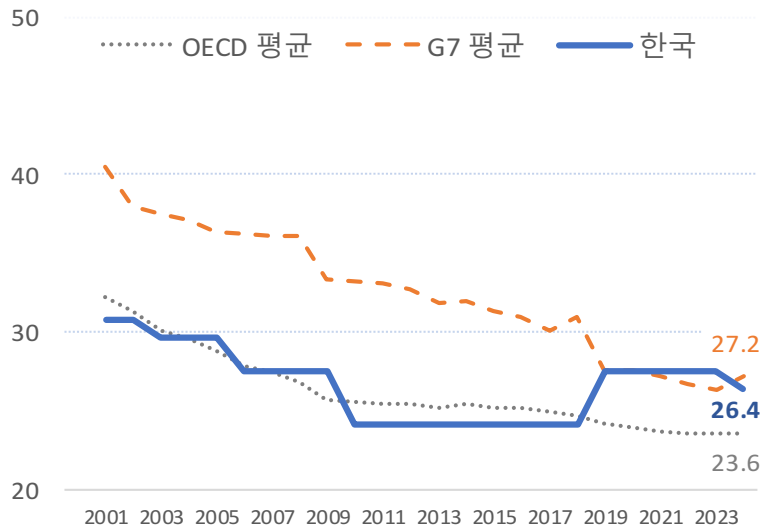
1) Lee and Gordon(2005), Djankov et al.(2010), 이만우(2008), 김학수·김빛마로(2017) 등

2) Friedman and Lav(2001), Xing(2012), 김우철(2006), 강병구·성효용(2008) 등

다. 관련 통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상위 국가(지방세 포함)

(단위: %)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1	콜롬비아	32.0	31.0	35.0	35.0
2	포르투갈	31.5	31.5	31.5	31.5
3	호주	30.0	30.0	30.0	30.0
4	코스타리카	30.0	30.0	30.0	30.0
5	멕시코	30.0	30.0	30.0	30.0
6	독일	29.8	29.8	29.8	29.8
7	일본	29.7	29.7	29.7	29.7
8	뉴질랜드	28.0	28.0	28.0	28.0
9	이탈리아	27.8	27.8	27.8	27.8
10	칠레	27.0	27.0	27.0	27.0
11	한국	27.5	27.5	27.5	26.4
12	캐나다	26.2	26.2	26.2	26.2
13	프랑스	32.0	28.4	25.8	25.8
14	미국	25.8	25.8	25.8	25.8
15	영국	19.0	19.0	19.0	25.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국가별 법인세율 단계

세율단계	국가
1개 (24개국)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2개 (11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4개 (1개국)	한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주: 1. 지방세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을 제외한 중앙정부 2022년 법인세를 기준으로 집계

2. 특정기준 이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도 별도의 세율구간으로 구분한 기준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 및 각국 과세관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단위: %)

	2019	2020	2021
한국	21.4	16.8	17.4
OECD평균	12.8	12.0	12.9
G7평균	10.3	10.1	10.8
- 캐나다	13.2	13.8	13.7
- 프랑스	7.4	7.6	8.3
- 독일	8.3	7.1	9.5
- 이탈리아	6.7	7.1	6.4
- 일본	20.4	19.6	19.6
- 영국	8.8	9.2	9.9
- 미국	7.1	6.5	7.9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

(단위: %)

	2019	2020	2021
한국	4.3	3.4	3.8
OECD평균	3.0	2.8	3.1
G7평균	2.5	2.5	2.8
- 캐나다	3.7	4.1	3.9
- 프랑스	2.2	2.3	2.5
- 독일	2.0	1.6	2.4
- 이탈리아	2.0	2.1	1.9
- 일본	3.8	3.9	4.3
- 영국	2.3	2.3	2.6
- 미국	1.4	1.3	1.6

37

투자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 현황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3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단위: %)

구분	개정 전 (‘22년 이전)				현행 (‘23년 이후 투자분)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3	10	3	1 (3)	5 (7)	10 (12)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3 (6)	6 (10)	12 (18)	3 (1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15	15	25	4 (10)

주: ()안은 2023년 투자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 분야 및 기술은 지속적으로 확대
 - (‘23. 3.)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자동차’ 분야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시컴퓨팅, 페플라스틱 연료화, 수소액화 등’ 15개 기술 추가
 - (정부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바이오헬스’ 분야(8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공급망 필수 기술(에너지효율, 핵심광물 정·제련 등)’ 추가

나. 주요 쟁점

- 투자세액공제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정책효과는 식별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제시됨

- 세제지원이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 Hall and Jorgenson(1967)과 Summers(1981)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론 관점에서 세액공제가 자본비용을 감소시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김학수(2009)는 세액공제율이 1%p 인하될 때 설비투자는 0.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이철인(2020)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 반대로,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
 - Cohen and Cummins(2006)와 Knittel(2007)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기업이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
 - 윤영선·윤택화(2011)은 설비투자 증가율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박기백(2006)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속적인 시행이 경기안정화 기능을 저해하고 항구적으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

다. 관련 통계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 추이: 2017~2021년

(단위: 개,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	법인 수	6,832	6,989	6,652	6,883	8,082
	공제액	1,878	1,800	1,558	1,607	2,583
일반법인	법인 수	2,625	2,588	2,491	2,593	2,322
	공제액	10,132	18,514	9,812	5,189	11,085
계	법인 수	9,457	9,577	9,143	9,476	10,404
	공제액	12,009	20,314	11,370	6,796	13,668

주: 2020년까지는 개별 시설투자 세액공제 합계, 2021년은 개별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실적 추이: 2017~2021년

(단위: 개, 억원)

<일반 R&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	법인 수	26,607	28,659	32,537	35,849	36,766
	공제액	12,132	11,991	12,418	12,810	12,662
일반법인	법인 수	1,535	1,462	1,388	1,450	1,364
	공제액	10,140	9,563	7,125	9,164	7,672
계	법인 수	28,142	30,121	33,925	37,299	38,130
	공제액	22,272	21,553	19,543	21,974	2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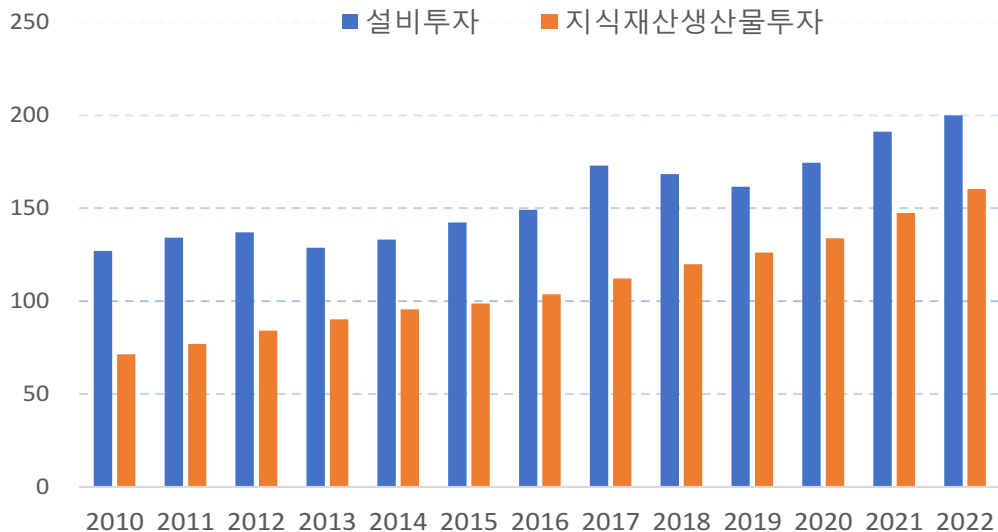
<신성장·원천기술 R&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	법인 수	-	175	132	150	197
	공제액	-	194	229	207	271
일반법인	법인 수	-	57	65	76	86
	공제액	-	1,250	2,533	4,250	5,737
계	법인 수	-	232	197	226	283
	공제액	-	1,445	2,762	4,456	6,009

주: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부터 구분통계 생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2010~2022년

(단위: 조원)



주: 원계열, 명목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업 규모별·주요 업종별 설비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잠정)	2023 (전망)	증감액 (‘23-‘22)
전체	166.2	166.4	213.0	221.0	215.2	△5.8
중소기업	18	9	11.5	13.5	9.2	△4.3
중견기업	24.6	24.1	27	30.1	28.2	△1.9
대기업	123.6	133.3	174.5	177.3	177.9	0.6
제조업	89.4	90.1	119.2	131.4	120.1	△11.3
반도체	36.3	43.7	58.8	54.6	51.8	△2.8
전기장비	3.4	3.0	6.7	12.8	13.2	0.4
화학제품	6.2	5.2	8.0	9.6	8.8	△0.8
자동차	8.7	7.3	6.6	6.9	5.7	△1.2
의약품	0.9	1.0	1.7	1.6	1.2	△0.3
그 외 기타	33.9	29.9	37.4	45.9	39.4	△6.6
비제조업	76.7	76.3	93.8	89.5	95.1	5.6

주: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 존재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 연도

38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방안

가. 현황

- 내국인이 현지법인을 통해 타국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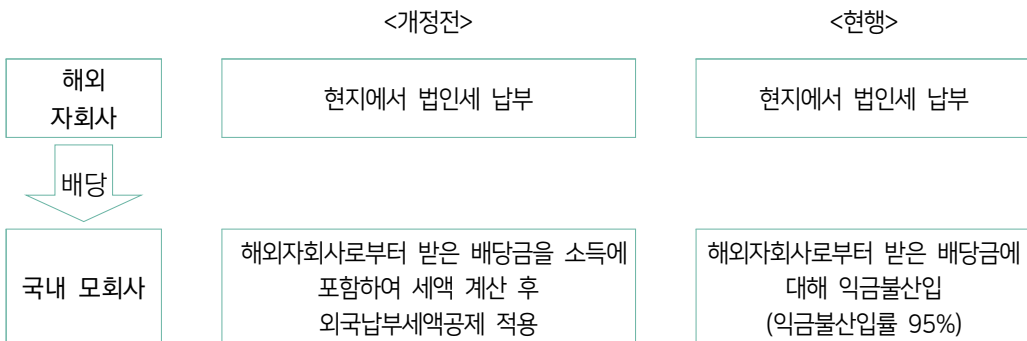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북미	589	1,539	1,299	4,689	7,451	18,074	30,719	31,001
아시아	1,771	1,725	4,384	10,234	10,567	18,984	18,486	20,088
유럽	641	315	662	6,221	3,420	10,285	12,296	15,626
기타 지역	238	1,789	984	4,372	8,456	10,435	15,131	13,626
계	3,240	5,368	7,329	25,516	29,894	57,778	76,632	80,34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2023년부터 해외유보 자금의 국내 송금 제고 및 이중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도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으로, 해외유보 자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 부담이 완화
 -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현지에서 부담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했으나, 불완전한 조정으로 인해 국내 송금 시 추가적인 세 부담 발생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내용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나. 주요 쟁점

- 해외자회사에 대한 배당금 면세(익금불산입) 도입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해외유보 자금의 국내 유입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 일본: 2009년 제도 도입. 해외자회사의 본국(일본) 송금이 증가(Tajika et al.(2012) 및 Hasegawa & Kiyota(2017))하였고, 한국에 소재한 일본계 자회사에서도 본국(일본)으로의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최보람(2015))
 - 영국: 2009년 제도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면세 도입 후 국내 송금액이 단기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Egger(2015))
 - 미국: 2004~2005년 한시적인 해외자회사 배당금 면세 시행. 해당 기간에 본국으로의 송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Oler et al.(2007), Faulkender & Petersen(2012) 등)
- 다만, 국내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연구가 존재
 - Blouin and Krull(2009)은 미국 내로 송금된 자금이 국내 설비투자가 아닌 자사주 매입에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
 - Dharmapala 외(2011) 해외원천소득의 환류를 촉진하였으나, 투자·고용·연구개발을 증가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Liu, L.(2014)는 영국 내 배당이 증가했으나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분석

다. 관련 통계

해외직접투자(현지법인) 및 재투자수익수입 규모 추이: 2000 ~ 2023. 5.

(단위: 억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53.7	60.7	41.2	48.4	67.3	73.3	119.4	227.4
재투자	(당해)	3.6	5.7	4.2	5.9	16.7	18.9	13.3	19.1
수익수입	(누적)	21.4	27.1	31.3	37.2	53.9	72.8	86.1	105.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241.9	209.1	255.2	294.8	294.6	310.9	284.2	298.9
재투자	(당해)	0.4	1.9	52.8	88.0	80.3	72.7	53.1	38.5
수익수입	(누적)	105.6	107.5	160.4	248.4	328.7	401.4	454.5	493.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5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403.6	448.7	515.9	652.1	577.8	766.3	803.4	164.1 ¹⁾
재투자	(당해)	52.2	57.2	60.7	58.7	75.9	165.8	161.9	△2.8
수익수입	(누적)	545.2	602.4	663.1	721.8	797.6	963.4	1,125.4	1,122.6

주: 1) 해외직접투자는 최신자료인 2023년 3월까지의 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한국은행, 「국제수지표」

연도별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	'22~'23 증감률 ¹⁾
직접투자소득(A)	15,600	13,097	29,893	28,198	19,627	107.0
일반배당수입(B)	9,733	5,510	13,314	12,005	19,907	312.4
비율(B/A)	62.4	42.1	44.5	42.6	101.4	-

주: 1) 2023년 증감률은 2022년 5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한국은행, 「국제수지표」

39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개선

가. 현황

-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원활한 국내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관세 감면혜택 등 세제지원 적용

- 감면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전·복귀 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관세) 국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증설을 위해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소재지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수도권 외
양도·폐쇄 (완전복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100% + 2년 50% (관세) 100%	
축소·유지 (부분복귀)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100% + 2년 50% (관세)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100% + 2년 50% (관세) 50%

-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확대, 업종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

- 감면기간 확대: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 단, 감면기간 확대는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 한함
- 업종요건 완화: (현행) 해외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 (개정안)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유사성이 확인된 업종

나. 주요 쟁점

- 2014년 이후 국내복귀기업의 수는 연간 10개 내외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약 24개 기업이 복귀

-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누적 기준 약 136개 기업(대기업 3개, 중견기업 33개, 중소기업 100개)이 국내 복귀

국내복귀기업 현황: 연도별, 2014~2023.6

(단위: 개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계
기업 수	15	2	8	4	8	14	23	26	24	12	1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는 세제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초기 소요비용 등으로 인해 세제지원의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원 효과성이 높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은 국내복귀기업은 복귀 후 소득이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적고 재정정책¹⁾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
 - 이수영 외(2018)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비교하여, 지원대상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 감면을 통한 입지 지원, 현금보조금 지원 등 투자지원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함을 지적
-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세제지원 뿐 아니라 보조금 등을 통한 R&D지원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
 - 미국은 법인세·관세 인하, 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외에도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공급망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시행
 - 영국은 리쇼어링 기업의 입지 전략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하며, 프랑스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를 지원

1)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세감면, 이전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 순으로 나타남

다. 관련 통계

국내복귀기업 현황: 복귀지역별·업종별(2023.6. 누계 기준)

(단위: 개사)

구분	계	전자	자동차	금속	기계	주얼리	화학	신발	섬유	포장재	기타 ¹⁾
전국	136	37	27	15	11	11	8	8	6	5	8
서울											
부산	13		1	2	1			8			1
대구	8	2	4	1					1		
인천	7	3	2	1		1					
광주	3	1	2								
대전											
울산	2		2								
세종	3	1			1						1
경기	18	9	1	3					1	2	2
강원	3	1					1		1		
충북	6	3		2							1
충남	17	4	3	2	4		1			2	1
전북	18	5			1	10	1		1		
전남	1								1		
경북	21	7	7	2	1		3		1		
경남	16	1	5	2	3		2			1	2
제주											

주: 1) 기타에는 시각디자인, 컨테이너, 가구, 양조, 석재, 연마재 등이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내복귀기업 관련 조세지출 추이¹⁾: 2017~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인세	0.0	3.0	8.0	1.6	3.0
소득세	0.2	0.4	0.1	0.0	0.0
관세	0.1	0.1	1.0	0.3	7.0

주: 1) 법인세 및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관세는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라 감면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40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가. 현황

■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¹⁾에서 합의한 디지털세제²⁾ 중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2년말 국내 입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제60조~제86조) 신설)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
 - 동 법률은 OECD 및 포괄적 이행체계가 발표한 모델규정(Model Rule)³⁾ 및 주석서(Commentary)⁴⁾ 내용 반영

■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및 과세체계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 다국적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복수의 관할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으로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조합, 신탁 등이 구성기업이 됨
- (과세체계)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기업의 부담세액이 소재지국별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세액만큼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추가적으로 납부
 - 실효세율: 과세대상 다국적그룹 구성기업 소재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 조세⁵⁾ 합계를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⁶⁾으로 나누어 산정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8)

- 1)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디지털세제 논의를 주도
- 2)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디지털세제는 시장소재국의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적용(필라2)임. 필라1은 2025년 다자조약 발표를 목표로 논의 중이며,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 예정
- 3) 모델규정은 2021년 12월 20일 발표(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1. 12. 20.)
- 4) 모델규정 주석서는 2022년 3월 14일 발표(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Commentary to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2. 3. 14.)
- 5) 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된 세금으로 소득세 대신 부과되는 판매소비세·재산세·급여세 등은 제외

- 해외자회사가 저세율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업규칙)하며, 최종 모기업이 저세율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구성기업(자회사)이 해당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소득산업보완규칙)

나. 주요 쟁점

-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시행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세무 통합 시스템 구축, 과세자료 제출 및 신고 등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예상
-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정착을 위한 국가 간 과세자료 정보공유 확대 필요
 -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과세자료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과세자료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필요
-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기업과 국가 간 분쟁의 대응 방안 및 절차마련 필요
 - 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있어 분쟁해결절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분쟁 대응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

다. 관련 통계⁷⁾

법인세 신고 외국법인 및 법인세액 추이: 2017~2021년

(단위: 개, 조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국법인수	10,152	10,301	10,630	10,449	10,929
외국법인 법인세액	78,426	82,643	81,042	71,853	74,547

주: 외국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회계상 순손익으로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된 항목을 가산하여 세전 순이익으로 환원된 소득

7)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통계가 부재하여 일반적인 외국법인에 대한 통계현황 작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설립 추이: 2018~2022년

(단위: 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외 신규법인	3,557	4,018	2,434	2,349	2,6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업규모별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 분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대기업	555	23,462	500	25,052	468	18,558	490	35,231	487	20,863
중견기업	353	2,222	350	2,033	371	1,707	414	2,473	404	1,906
중소기업	716	797	751	912	845	1,199	874	161	905	96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디지털세 합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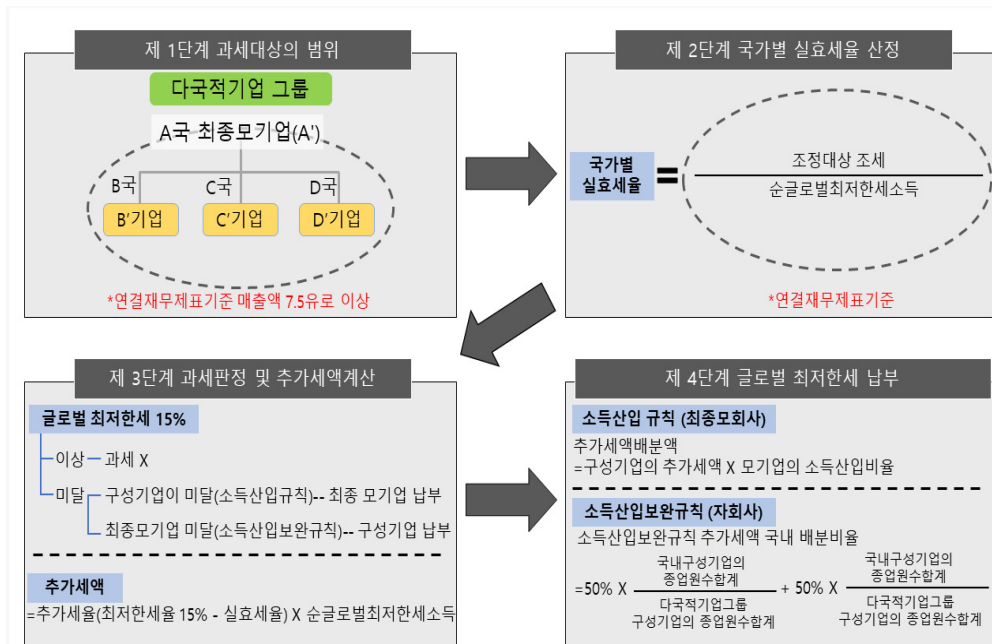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장소재지국 과세소득 배분: 디지털세제 필라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단계: 디지털세제 필라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1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가. 현황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 유산취득세방식, 법정상속분방식 등이 있으며, 각국의 조세환경에 따라 과세방식 선택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결정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결정
 - (법정상속분방식)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후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 결정
-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왔으나, 응능과 세 및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일관성을 고려하여 최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
 -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며, 상속세는 유산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과세방식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속세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24개국)¹⁾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이 채택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

나. 주요 쟁점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산세 방식 대비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수가 감소할 우려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8)

1)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로 부과하는 국가(호주, 캐나다 등 4개국), 추가소득세로 과세하는 국가(라트비아 등 3개국), 비과세하는 국가(오스트리아 등 7개국)도 있음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조세회피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액이 감소하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부담 증가 우려

- 상속인별로 관할 과세관청이 분산되어 담당 세무공무원이 각각의 상속분을 특정해서 평가하거나 과세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집행비용이 증가하게 됨

다. 관련 통계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현황: 한국 vs. OECD 평균 vs. G7 국가

(단위: %, %p)

구 분		2011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이 (2021-2011)
한국		0.2	0.4	0.4	0.4	0.5	0.7	0.5
OECD 평균		0.1	0.1	0.1	0.1	0.1	0.2	0.1
G7	G7 평균	0.2	0.2	0.2	0.2	0.2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4	0.6	0.6	0.6	0.6	0.7	0.3
	독일	0.2	0.2	0.2	0.2	0.3	0.3	0.1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4	0.4	0.4	0.4	0.5	0.2
	영국	0.2	0.3	0.2	0.2	0.2	0.3	0.1
	미국	0.1	0.1	0.1	0.1	0.1	0.1	0.0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현황: 한국 vs. OECD 평균 vs. G7 국가

(단위: %, %p)

구 분	2011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이 (2021-2011)
한국	1.0	1.5	1.5	1.6	1.9	2.4	1.4
OECD 평균	0.3	0.4	0.4	0.4	0.4	0.4	0.1
G7 평균	0.5	0.6	0.7	0.6	0.7	0.6	0.2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1.0	1.3	1.3	1.4	1.4	1.6	0.6
독일	0.4	0.5	0.5	0.5	0.7	0.7	0.3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
일본	1.1	1.3	1.3	1.3	1.3	..	0.2
영국	0.5	0.8	0.8	0.7	0.8	0.8	0.3
미국	0.4	0.5	0.6	0.4	0.5	0.5	0.1

주: 일본은 2011과 2020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및 세율 현황

회원국명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세율
벨기에 (Belgium)	유산취득세 방식	• 3~30%
칠레 (Chile)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1~25% • 형제자매: 1.2~30% • 기타: 1.4~35%
덴마크 (Denmark)	유산세 방식	• 기본: 15% • 친척 이외 25%추가
핀란드 (Finland)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7~19% • 기타: 19~33%
프랑스 (France)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5~45% • 형제간: 35~45% • 4촌간: 55% • 기타: 60%
독일 (Germany)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7~30% • 친척: 15~43% • 기타: 30~5%
그리스 (Greece)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0~10% • 친척: 0~20% • 기타: 0~40%

회원국명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세율
헝가리 (Hungary)	유산취득세 방식	• 18%(주거용 부동산 9%)
아이슬란드 (Iceland)	유산취득세 방식	• 5%
아일랜드 (Ireland)	유산취득세 방식	• 33%
이탈리아 (Italy)	유산취득세 방식	• 4~8%
일본 (Japan)	법정상속분 과세방식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절충형)	• 10~55%
한국 (Korea)	유산세 방식	• 10~50%
리투아니아 (Lithuania)	유산세 방식	• 5~10%
룩셈부르크 (Luxembourg)	유산세 방식	• 2.5~15%
네덜란드 (Netherlands)	유산취득세 방식	• 10~40%
폴란드 (Poland)	유산취득세 방식	• 직계존비속 등 친족 : 0~7% • 조카 및 형제자매 배우자: · 0~12% • 기타: 0~20%
슬로베니아 (Slovenia)	유산취득세 방식	• 부모, 형제자매 및 그 후손 : 5~14% • 조부모: 8~17% • 기타: 12~39%
스페인 (Spain)	유산취득세 방식	• 10~40%
스위스 (Switzerland)	유산취득세 방식	주(州) 상속세/ • 배우자, 자녀: 0~10% • 그 외 10~40%
튀르키예 (Türkiye)	유산취득세 방식	• 10~30%
영국 (United Kingdom)	유산세 방식	• 40%
미국 (United States)	유산세 방식	• 18~40%

자료: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2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 현황

가. 현황

-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2022.05.)’ 등을 통해¹⁾ 관세 경감 정책을 시행
 -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 오름폭이 상승한 것이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라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관세 경감 정책을 시행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는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 14개 품목: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 이후 2022년 7월, 10월, 2023년 3월 등 최근 7월까지 총 6차례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이 이루어짐
 - 가장 최근에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07.)」에서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7월 6일 관세 경감 실시
- 관세 경감은 주로 할당관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²⁾에 따라 원활한 물자수급·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

김문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6)

- 1) 본 고는 관세 경감 정책 분석 시점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부터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 정책이라 발표한 내용으로 한정
- 2)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 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 할당관세는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1] 부터 [별표12]의 조정을 통해 시행
 - 그 외 TRQ(저율관세율할당물량)³⁾ 증량, 기존 부과되었던 조정관세⁴⁾ 제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관세를 경감

나. 주요 쟁점

-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경감⁵⁾은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나, 동 정책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관세법」에서는 할당관세 부과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2023년 5월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실적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된 전체 품목은 119개, 총 세수 지원액은 1조 9,694억원이고, 이 중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한 긴급할당관세 지원은 4,974억원 수준⁶⁾
 - 일부 축산·육계농가에서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경감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⁷⁾을 제기

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TRQ(저율관세율할당물량) 증량은 기획재정부령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실시
- 4)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대통령령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정
- 5) 일례로, 2022년 7월 관세 경감 대상에 포함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관세액 50억원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인 품목임
- 6) LNG 등 기초원자재 지원액이 1조 1,35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
- 7) 기획재정부 실적보고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소비자 효과보다는 생산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물가안정의 정책목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격 안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어 있음

다. 관련 통계

최근 10년 관세 실적 및 예산: 2014~2023년

(단위: 조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¹⁾
관세	8.7	8.5	8.0	8.5	8.8	7.9	7.1	8.2	10.3	10.7

주: 1)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경감 실시 현황: 2022.05.~2023.07.

시기	품목	할당관세 등 적용 내용	지원 기간	지원효과 ¹⁾ (억원)
'22.05. ²⁾	대두유	5%→0%	~22.12월 말	지원효과 내용 없음
	해바라기씨유	5%→0%	~22.12월 말	
	돼지고기	22.5~25%→0%	~22.12월 말	
	밀	1.8%→0%	~22.12월 말	
	밀가루	3%→0%	~22.12월 말	
	계란가공품	할당기간 연장	~22.12월 말	
	사료용근채류	할당물량 증가(+30만톤)	~22.12월 말	
	나프타	0.5%→0% (조정관세 제외)	~22.9월 말	
	나프타용 원유	0.5%→0%	~22.9월 말	
	산업용 요소	할당기간 연장	~22.12월 말	
	망간메탈	2%→0%	~22.12월 말	
	페로크롬	2%→0%	~22.12월 말	
	전해액첨가제	6.5%→0%	~22.12월 말	
	인산아암모늄	6.5%→0%	~22.12월 말	
'22.07.	소고기	10.6~40%→0%(10만톤)	~22.12월 말	2,242.6
	닭고기	20~30%→0%(8만2,500톤)	~22.12월 말	329.8
	분유(전지·탈지)	0~0.23%→0%(1만톤)	~22.12월 말	438.5
	대파	27%→0%(448톤)	~22.10월 말	28.7
	커피원두	0~8%→0%(수입전량)	~22.12월 말	38.7
	주정원료	6.5~10%→0% (조주정 64,833kl, 매니옥칩 51,833톤)	~22.12월 말	100.0
	돼지고기(삼겹살)	0% 할당물량 증가(+2만톤)	~22.12월 말	111.8
	대두(가공용)	TRQ 증량(+1만톤)	~22.12월 말	지원효과 내용 없음
	참깨	TRQ 증량(+3,000톤)	~22.12월 말	

시기	품목	할당관세 등 적용 내용	지원 기간	지원효과 ¹⁾ (억원)
'22.10.	LNG	할당기간 연장	~23.3월 말	3,718
	LPG	2%→0%	~23.3월 말	85
	원유(LPG제조용)	2%→0%	~23.3월 말	505
	고등어	10%→0%	~22.12월 말	19
	명태	22%→10% (조정관세 제외)	~23.2월 말	71
	바나나·망고·파인애플	30%→0%	~22.12월 말	157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기간 연장	~23.6월 말	246
	옥수수(가공용)	3%→0%	~22.12월 말	18
'23.03.	닭고기	할당물량 증가(+3만톤)	~23.6월 말	172
	대파	27%→0%(5,000톤)	~23.6월 말	12
	무	30%→0%	~23.6월 말	2
	명태	22%→10% (조정관세 제외)	~23.6월 말	54
	칩 제조용 감자	30%→0%	~22.11월 말	38
	냉동콩치	24%→10% (조정관세 제외)	~22.12월 말	29
	종오리 종란	12%→0%(10톤)	~22.6월 말	1
'23.05.	돼지고기	할당물량 증가(+4만5,000톤)	~23.12월 말	257
	고등어	10%→0%(1만톤)	~23.8월 말	30
	설탕	5%→0%(10만5,000톤)	~23.12월 말	40
	원당	3%→0%	~23.12월 말	23
	조주정	할당물량 증가(+8만6,000kl)	~23.12월 말	88
	팜박	2%→0%(4만5,000톤)	~23.12월 말	2
	주정박	2%→0%(15만톤)	~23.12월 말	13
	생강	TRQ 증량(+1,500톤)	~23.9월 말	20
'23.06.	닭고기	20~30%→0%(3만톤)	~23.12월 말	지원효과 내용 없음
'23.07.	나프타	0.5%→0% (조정관세 제외)	~23.12월 말	
	나프타용 원유	0.5%→0%(1억 배럴)	~23.12월 말	

주: 1)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지원효과 금액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연기금 및 사회보험

43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과제

가. 현황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저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정부의 공적인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
 -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 따른 위기정보 입수 결과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정의하며 이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 수행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는 국민생활실태조사¹⁾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나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2018년 기준 48만 가구, 73만명 규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²⁾에 따른 발굴 대상자는 2018년 36.7만명에서 2022년 120.8만명으로 증가
-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22.11.24) 추진 중

허아름 예산분석관 (02-6788-3728)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2) ①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 위 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약 700만명의 정보 수집 대상자 중 고위험군 약 20만 명(중앙 약 15만명, 지자체 자체발굴 약 5만명)을 지자체에서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추진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정보 입수 확대¹⁾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 지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 •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 • 복지멤버십²⁾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예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³⁾ • 발굴 후 공공-민간자원 연계 강화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강화 • 新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

주: 1) '22. 34종 → '22.11 39종 → '23 하반기 44종(18개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체납, 단전, 단수등 정보 입수)

2)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3) '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재산기준 완화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³⁾가 연이어 발생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돌봄부재, 고립·단절, 정신, 출산·양육, 재난·안전 등)에 따른 신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향후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생 예상

○ 2018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 73만명(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59만명(중위 40~50% 이하) 등 총 132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존재

○ 2019년 기준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 일반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만 정부의 공적이전소득⁴⁾을 지원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이 12.8%에 육박⁵⁾

3) 서울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22.4),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22.8.21),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22.11.23)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정부의 사회수혜금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5) 김태완 외(2022),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지원체계의 내실화 필요성 제기
 - 취약계층 대상자 포착의 정확성과 표적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기정보⁶⁾ 입수 확대 및 발굴 모형 고도화를 통한 폭넓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굴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가입(2023년 기준 669만 가구 가입) 독려 및 현행 23.7% 수준의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신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신취약계층(금융부채 과다로 인한 생활형 저소득층, 가족해체·사망 등으로 인한 1인 가구(고령, 중장년, 청년, 여성 등),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등

다. 관련 통계

비수급 빈곤층 현황

구분		2014년 기준 4차 조사	2015년 기준 5차 조사	2018년 기준 6차 조사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71만 가구, 118만명	63만 가구, 93만명	48만 가구, 73만명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규모	85만명	51만명	59만명
	기준	중위소득 40~50%이하	중위소득 40~50%이하	중위소득 40~50%이하
차상위 포함 비수급 빈곤층	규모	203만명	144만명	132만명

주: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나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추정)

자료: 김문길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2.: 34종)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 위기정보
 ('22.11: 39종)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23. 下: 44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수도·가스요금체납 정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연도	발굴 구분	발굴 대상자	발굴차수					
			1차 (1월)	2차 (3월)	3차 (5월)	4차 (7월)	5차 (9월)	6차 (11월)
2021	소 계	1,339,909	223,745	245,791	276,826	223,899	198,620	171,028
	중 앙	645,236	115,952	93,120	97,090	99,300	105,316	134,458
	지자체	694,673	107,793	152,671	179,736	124,599	93,304	36,570
2022	소 계	1,208,086	162,244	155,908	205,748	242,904	222,629	218,653
	중 앙	729,900	118,435	97,355	123,665	140,944	107,635	141,866
	지자체	478,186	43,809	58,553	82,083	101,960	114,994	76,787
2023	소 계	442,802	214,189	228,613	-	-	-	-
	중 앙	296,478	145,319	151,159	-	-	-	-
	지자체	146,324	68,870	77,454	-	-	-	-

- 주: 1. 발굴 대상자: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가구로 예측·선별된 대상자
 2. 중앙 발굴: 발굴모형*에 의해 선별된 대상자, 3개 이상 위기정보 보유자 등을 선정
 * 발굴모형: 위기정보 입수자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활용 분석 모형
 3. 지자체 발굴: 중앙발굴 대상자 외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4. 2023년은 3월까지 조사완료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지원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

연도	발굴 대상자	지원내역						
		계	지원을	기초 생활 보장	법정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공공 서비스 ¹⁾	민간 서비스 ²⁾
2021	1,339,909	663,874	49.55	28,611	11,180	19,664	105,740	498,679
2022	1,208,086	606,101	50.17	25,708	9,338	15,402	109,351	446,302
2023 (~2차)	442,802	207,388	46.84	8,431	2,241	6,590	29,240	160,886

- 주: 1) 기타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2)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및 복지사각지대 연계 실적: 2021~2023년

(단위: 가구, 명)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누적 가입자	가구	6,218,396	6,478,217	6,693,137
	가구원	9,174,109	9,650,722	10,109,065
	(가구 전년대비 증감)	-	(259,821)	(214,920)
	(가구원 전년대비 증감)	-	(476,613)	(458,343)
사각지대 연계대상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현금성 급여 미신청자 ¹⁾	-	860	790

주: 1. 누적가입자: ('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 대상, ('22년.9월~) 전 국민 가입 대상, 2023년 6월 기준

2. 사각지대 연계 대상: 2023년 3월 기준

1) 취약계층 기준: 65세이상 1인가구이거나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중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를 수급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복지멤버십 안내대상 서비스 연계 실적: 2022~2023년

안내사업 분류	안내사업	사업 안내 건수	안내 후 수혜받은 건수 ¹⁾	연계율
만연령 도래 등 생애 주기별로 안내하는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다함께돌봄 등 10개 사업	7만건	5천건	7.1%
수급자, 장애인 등 자격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서비스	과학문화바우처,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tv 수신료, 가스요금할인,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등 39개 사업	1,014만건	250만건	24.7%
소득재산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등 31개 사업	74만건	9만건	12.2%
계	80개 사업	1,095만건	259.5만건	23.7%

주: 1. 본 통계는 '23.6월말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중 가구 기준으로 사업을 안내한 건수와 안내 후 사업을 수혜 중인 건수로 추후 서비스 중지(사망, 안내사업 수혜 탈락 등) 발생으로 인해 해당 데이터 변동 가능

1) 수혜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수혜 이력이 있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 집계하였으며, 안내 사업의 수혜정보는 안내 후 1~2달 이후에 확인되어 안내 건수와 수혜 건수 간 차이 존재

자료: 보건복지부

신 복지사각지대 현황

대상		현황	관련사업
고독사		3,378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실시 (9개 시도, 39개 시군구)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유형별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11,039명	- 자립수당(월 35만 → 40만원, '23.1월~) 지급 - 자립지원 전담인력(108명) 배치 - 자립지원 사례관리(1,195명) 실시
신취약 청년	가족 돌봄청년	약 6만명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삶의 질, 돌봄현황, 복지욕구 등) 실시('22년) -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23.7월~)
	고립청년	약 51.6만명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실시('22년)
	은둔청년	약 24.7만명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추진 중('23.6.~12.)

- 주: 1. 고독사: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2.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3. 가족돌봄청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19~34세)
4. 고립청년: 사회적 관계·지지체계가 단절된 청년
5. 은둔청년: 사회적 관계·지지체계가 단절된 이들 중 한정된 장소(집, 방 등)에 머물러 있는 청년
6. 고독사, 고립청년은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청년 2022년 기준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4

연금개혁 추진과제

가.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이 시급
 - 2022년 결산 기준, 국민연금 수입은 87.6조원, 총지출 34.9조원, 적립금은 890.5조원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43년 기금고갈이 전망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급여액 수준이 낮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공적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20년 기준 40.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중고령자(50대 이상)가 생각하는 노후최소생활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은 낮은 수준
 - 2022년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월 58만원,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2만원 수준
 - 2019년 기준,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24만원, 부부 199만원, 2023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4만원
- 연금개혁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단일 개혁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성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계획 등을 포함

- 국회도 2022년 7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폭넓게 논의 중
 -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운영 기한인 2023년 4월 말에 합의된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2023년 10월까지 운영 예정)

나. 주요 쟁점

-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1) 서로 상충되는 재정안정화 조치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재정안정화 조치의 예)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연기 등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은 14년 연기되며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3,699조원(2023년 불변가격 기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후소득보장 강화 조치의 예)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의 강화 등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율 15%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이 8년 연장되나 2093년 누적적자는 283조원(2023년 불변가격 기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개선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2) 일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제도 간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 따라 기초연금의 보완 역할을 설정할 필요
 - 2022년 결산 기준, 기초연금 지출은 20.1조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국민연금이 재분배 요소를 유지하되 향후 제도 성숙에 따라 대상 포괄성과 급여 수준이 모두 확대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높지 않은 수준의 보편급여로 전환 가능
 -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재분배 기능을 하는 제도로 전환 가능
 -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인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는 법정연금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할 필요

■ 연금개혁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와 단계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안정화 조치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조치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먼저 연금개혁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개선 조치의 적절한 조합을 도출할 필요
-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과 국회가 논의할 개혁안을 연계하여 개혁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상하되, 모든 개혁 과제를 일시에 추진할 수 없으므로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혁의 우선순위와 추진 단계를 설정할 필요

다. 관련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결과

구 분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2040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 전망 ※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41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 전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29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43년 적립금 소진 전망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3년 6.1조원에서 2093년 15조원으로 증가 전망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3년 1.9조원에서 2093년 4.5조원으로 증가 전망

주: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불변가격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 2023.3.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구 분	기금 소진 시점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분
보험료율 15% 인상	2069년(+14년)	△3,699.3
보험료율 15% 인상 + 소득대체율 45% 인상	2065년(+10년)	△1,975.5
보험료율 15% 인상 + 소득대체율 50% 인상	2063년(+8년)	△282.6
보험료율 12% 인상 + 수급개시연령 67세로 상향	2064년(+9년)	△2,965.6
보험료율 12% 인상 + 소득비례연금 전환	2061년(+6년)	△1,079.5

주: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불변가격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II」, 2023.3.

2022년 4대 공적연금 재정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수 입	지 출	적립금
국민연금	87.6	34.9	890.5
사학연금	7.3	5.7	24.1
공무원연금	22.2	22.9	15.1
군인연금	3.7	3.7	1.2

- 주: 1. 2022년 결산 기준이며, 수입은 총수입과 정부전입금의 합계 기준(정부 보험료 부담금과 국고보전금이 있으므로 정부전입금을 포함하여 작성), 지출은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립금은 연금급여 등 단기 지출에 대비한 지불준비금 성격을 가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각 연금기금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퇴직연금 현황

(단위: 만명, 조원)

구 분	가입자 수	보험료 수입	연금 수급자 수	급여 지출
국민연금	2,250	55.9	642	34.0
사학연금	33	3.5	11	4.7
공무원연금	128	16.4	63	21.0
군인연금	19	0.7	10	3.7
기초연금	-	-	624	20.1
퇴직연금	637	295	17 (일시금 수령: 40)	(수급개시 계좌) 9.3

- 주: 1.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은 2021년 기준
 2. 연금 수급자 수는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수, 급여 지출은 당해연도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출된 급여액(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수당 포함)
 3. 기초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국비 및 지방비 포함 기준
 4. 퇴직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수급개시된 계좌의 금액으로 2021년에 지급된 금액이 아님에 유의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가. 현황

-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액상한제, 임신·출산진료비
- 건강보험 재정은 사업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며,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의무지출)만 국가재정에 포함
 - 의무지출은 일반회계(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보험 가입자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
 - 2022년 결산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88.8조원, 지출은 85.2조원으로 당기수지 흑자(3.6조)를 보였으며, 2023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총 12.0조원
 - 의무지출(23년 예산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9.15억원, 건강증진기금 1.82억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3억원으로 구성

나. 주요 쟁점

-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의 본격 이행²⁾에 따라 2018년 적자 전환 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³⁾ 및 보험료 수입 증가로 2021년과

임술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0)

- 1) 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5.)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023.2.28.) 발표를 통해 잔여 급여화 검토 대상 항목과 기급여화 항목 재검토 계획을 밝힘

2022년 다시 흑자로 전환

- 과거 3년(2017~2019년) 평균 지출 증가율은 10.6%인 반면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증가율은 6.4%로 감소
- 보험료 수입은 과거 3년(2017~2019년) 평균 증가율 7.5%에서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증가율은 9.2%로 증가

■ 그러나 의료체계의 점진적 정상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의 지속적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2022.9. 시행)⁴⁾ 등 수입 감소 요인의 영향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전망

-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2)은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
- 고령화가 급여비 증가 요인인 이유는 노인의 1인당 의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기 때문
 - 65세 미만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7년) 96만원 → ('21년) 125만원
 -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7년) 416만원 → ('21년) 497만원

■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상한(8%)⁵⁾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보험료를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29년에는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⁶⁾되므로 보험료를 상한 폐지, 향후 증가율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참고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가결됨

3) 개인위생 관리 강화,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의 의료이용 및 수요 감소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폭 감소

4) 부과체계 개편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보험료 수입이 연 2조 8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자세한 내용은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2022.9.) pp.73~79,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6) 국회예산정책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2

다. 관련 통계

건강보험 재정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A)	45.17	48.50	52.40	55.72	58.00	62.12	68.06	73.42	80.49	88.78	
보험료수입	38.61	41.24	44.05	47.31	50.01	53.64	58.74	62.48	69.23	76.55	
국고보조금	5.81	6.32	7.10	7.10	6.78	7.08	7.78	9.23	9.57	10.50	10.97
지출(B)	41.53	43.92	48.23	52.63	57.29	62.29	70.89	73.77	77.67	85.15	
보험급여비	40.27	42.49	46.50	51.05	55.54	60.59	69.04	70.95	76.60	83.17	
급여비 선지급(코로나19)								0.88	△0.88		
관리운영비 등	1.26	1.42	1.73	1.58	1.75	1.70	1.85	1.94	1.94	1.98	
재정수지(A-B)	3.64	4.59	4.17	3.09	0.71	△0.18	△2.82	△0.35	2.82	3.63	
적립금	8.22	12.81	16.98	20.07	20.77	20.60	17.77	17.42	20.24	23.87	

주: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건강보험 지표 추이: 2017~2023년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료율	6.12	6.24	6.46	6.67	6.86	6.99	7.09
보험료율 인상률	0.00	2.04	3.49	3.20	2.89	1.89	1.49
실 국고지원율 (일반회계+기금)	13.6	13.2	13.2	14.8	13.8	13.7	14.4 ¹⁾
수가인상률(평균)	2.37	2.28	2.37	2.29	1.99	2.09	1.98

주 1) 2023년 실 국고지원율은 본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23~2031년

(단위: 조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A)	90.8	97.8	104.9	112.7	120.6	129.0	137.6	143.8	150.1	6.48
지출(B)	93.2	98.3	106.5	115.2	124.5	132.6	143.0	152.1	163.7	7.29
재정수지(A-B)	△2.5	△0.5	△1.5	△2.5	△3.9	△3.6	△5.4	△8.3	△13.6	
적립금	17.7	17.3	15.7	13.3	9.3	5.7	0.2	-	-	

자료: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22)

46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가. 현황

-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의료인력 관리 필요
 - 2021년 우리나라의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6명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국가 총 27개국 중 최하위 수준(26위)이며, OECD 국가 평균(3.73명)에 비해 1.07명 낮은 수준임
- 하지만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및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 시, 당직근무 등 과중한 업무, 업무대비 낮은 임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갈등 부담 등이 기피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대비 생활·자녀교육, 진료여건 격차 등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발생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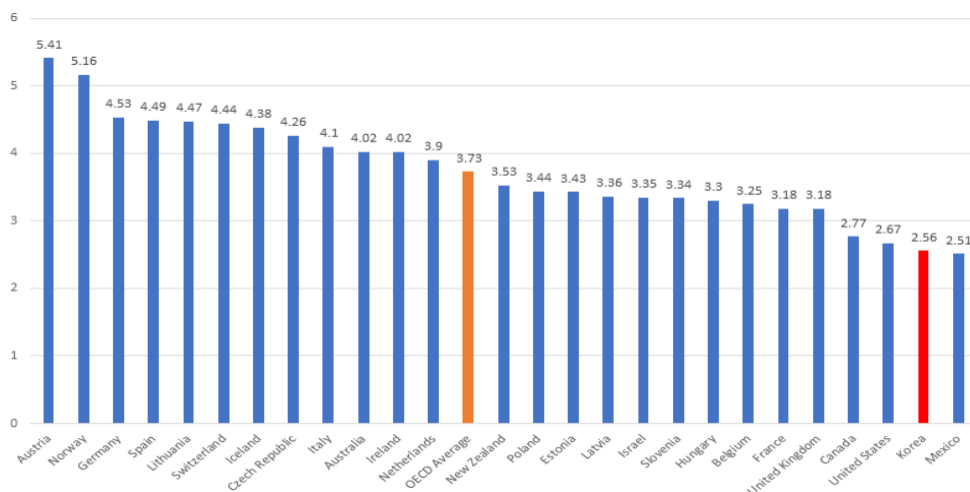
-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을 통해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단기연수와 술기교육 지원, 지역보건의료 및 특수·전문분야에 종사할 미래 의료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
 - 2022년 기준 정원 대비 확보율은 외과 66.8%, 흉부외과 34.8%, 산부인과 68.9%, 소아청소년과 27.5%, 가정의학과 58.5%, 병리학과 40.0%, 핵의학과 22.7%로 주요 과목의 충원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지역별 불균형 문제 발생

- 2022년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광주 2.62명, 대구 2.62명, 대전 2.61명, 부산 2.52명 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 6.94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부산 6.27명, 대전 5.67명 순으로 특·광역시에 의료인력 집중화 경향
- 기피 전공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에 일정 부분 한계가 따름
 - 전공의의 전문과목 선택은 개인의 적성, 근무환경, 장래 전망,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단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한 기피 전공과목의 의료인력 확대 및 지역간 의료인력 분배에는 한계
-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체계 및 관련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다. 관련 통계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현황

(단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주: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국가(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는 제외
 자료: OECD.Stat, Healthcare Resources

전공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확보 현황(2020~2023년)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총합계	3,441	2,906	84.5	3,409	2,778	81.5	3,480	2,877	82.7	3,479	2,888	83.0
내과	629	591	94.0	609	565	92.8	676	650	96.2	635	626	98.6
소아청소년과	214	152	71.0	212	78	36.8	207	57	27.5	208	53	25.5
신경과	91	90	98.9	89	86	96.6	94	94	100.0	99	98	99.0
정신건강의학과	131	124	94.7	131	130	99.2	134	132	98.5	137	136	99.3
피부과	69	69	100.0	71	71	100.0	70	70	100.0	70	70	100.0
외과	209	152	72.7	202	162	80.2	205	137	66.8	220	149	67.7
흉부외과	60	30	50.0	66	27	40.9	66	23	34.8	72	40	55.6
정형외과	211	210	99.5	211	208	98.6	211	209	99.1	218	216	99.1
신경외과	97	94	96.9	97	96	99.0	101	100	99.0	106	105	99.1
성형외과	73	73	100.0	73	72	98.6	73	73	100.0	73	73	100.0
산부인과	171	126	73.7	160	125	78.1	167	115	68.9	187	145	77.5
안과	104	104	100.0	106	105	99.1	105	105	100.0	104	103	99.0
이비인후과	108	107	99.1	106	105	99.1	107	107	100.0	108	107	99.1
비뇨의학과	62	37	59.7	63	40	63.5	62	54	87.1	53	51	96.2
재활의학과	104	103	99.0	107	106	99.1	107	107	100.0	105	105	100.0
마취통증의학과	202	201	99.5	202	201	99.5	203	202	99.5	205	205	100.0
영상의학과	139	138	99.3	139	138	99.3	141	140	99.3	139	139	100.0
방사선종양학과	32	13	40.6	33	12	36.4	34	22	64.7	23	15	65.2
진단검사의학과	47	26	55.3	51	36	70.6	42	41	97.6	39	37	94.9
병리과	77	15	19.5	80	23	28.8	80	32	40.0	82	45	54.9
가정의학과	364	243	66.8	354	179	50.6	354	207	58.5	339	163	48.1
응급의학과	174	162	93.1	180	165	91.7	179	155	86.6	190	160	84.2
핵의학과	31	5	16.1	22	3	13.6	22	5	22.7	29	9	31.0
직업환경의학과	35	34	97.1	35	35	100.0	35	35	100.0	35	35	100.0
예방의학과	7	7	100.0	10	10	100.0	5	5	100.0	3	3	100.0

주: 1. 정원 외(별도정원) 포함, 상반기 모집 결과 기준

2. 별도 색상 표시 과목은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 미만인 과목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사 현황(2019~2022년)

(단위: 명)

시도	2019		2020		2021		2022	
	활동 의사 수	1,000명당 의사 수	활동 의사 수	1,000명당 의사 수	활동 의사 수	1,000명당 의사 수	활동의사 수	1,000명당 의사 수
서울	30,359	3.12	31,140	3.22	32,045	3.37	32,704	3.47
부산	8,008	2.35	8,102	2.39	8,219	2.45	8,356	2.52
대구	5,908	2.42	6,013	2.49	6,083	2.55	6,192	2.62
인천	5,071	1.71	5,130	1.74	5,208	1.77	5,375	1.81
광주	3,658	2.51	3,676	2.54	3,659	2.54	3,751	2.62
대전	3,726	2.53	3,680	2.51	3,722	2.56	3,773	2.61
울산	1,754	1.53	1,762	1.55	1,789	1.60	1,808	1.63
세종	302	-	441	-	458	1.23	496	1.29
경기	21,210	1.60	22,173	1.65	22,813	1.68	23,893	1.76
강원	2,719	1.76	2,793	1.81	2,784	1.81	2,778	1.81
충북	2,529	1.58	2,541	1.59	2,503	1.57	2,542	1.59
충남	3,198	1.51	3,244	1.53	3,270	1.54	3,242	1.53
전북	3,689	2.03	3,682	2.04	3,680	2.06	3,694	2.09
전남	3,128	1.67	3,140	1.70	3,199	1.75	3,172	1.75
경북	3,662	1.37	3,655	1.38	3,627	1.38	3,615	1.39
경남	5,532	1.65	5,619	1.68	5,683	1.71	5,716	1.74
제주	1,175	1.75	1,185	1.76	1,195	1.77	1,214	1.79
전국	105,628	2.04	107,976	2.08	109,937	2.13	112,321	2.18

주: 1. 전체 전문과목 의사 수를 합한 수치임

2. 연말 기준

3. 별도 색상 표시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 미만인 지역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시도	2019	2020	2021	2022	2023.4
서울	5.42	5.67	6.18	6.55	6.60
부산	5.42	5.59	5.91	6.27	6.63
대구	5.15	5.24	5.86	6.54	6.74
인천	3.94	4.14	4.29	4.47	4.58
광주	6.14	6.28	6.56	6.94	7.17
대전	4.85	5.09	5.42	5.67	6.05
울산	4.02	4.23	4.50	4.82	4.95
세종	0.65	2.12	2.37	2.63	2.72
경기	3.00	3.27	3.47	3.74	3.86
강원	3.92	4.04	4.32	4.55	4.72
충북	2.98	3.04	3.21	3.35	3.65
충남	2.80	2.88	3.50	3.59	3.46
전북	4.21	4.42	4.72	4.95	5.12
전남	4.57	4.62	4.85	5.12	5.37
경북	3.59	3.67	3.88	4.04	4.21
경남	4.16	4.36	4.54	4.87	5.13
제주	4.08	4.15	4.44	4.64	4.81
전국	4.15	4.35	4.65	4.94	5.09

주: 2019~2022년은 연말 기준, 2023년은 4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가. 현황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수급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국가재정 외로 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의무지출)만 국가재정에 포함
 - 의무지출은 국고지원금, 공무원·교원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포함
 -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일반회계)에서 지원¹⁾
 -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9조원, 지출은 12.2조원이고, 의무지출은 2.0조원(국고지원금 1.8조원 등)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의무지출 규모는 2.2조원이고, 이 중 국고지원금 1.9조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1,377억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부담금 1,139억원 등임

나. 주요 쟁점

- 향후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후 요양수요 증가, 보험수혜자 확대 등 지출 증가 요인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박선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코로나19 발생 직전 3년(2017~2019) 평균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1.6%,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2년에는 14.0%로 감소
-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18년) 8.8% → ('22년) 11.1%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모두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을 고려할 때, 지출의 증가는 다음 해 보험료를 인상 등 수입 증가를 수반함
 -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등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매년 인상해오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8년) 7.38% → ('23년) 12.81%
- 2022년 10월 발간한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매년 증가하여 2027년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²⁾
 - 보험급여비 전망: ('24년) 16.1조원 → ('28년) 23.3조원 → ('30년) 30.3조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한 자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하여 보험지속성을 점검할 필요

다. 관련 통계

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표 추이: 2013~2023년

(단위: %, 만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료율 (소득대비 보험료율)	6.55 (0.38)	6.55 (0.39)	6.55 (0.40)	6.55 (0.40)	6.55 (0.40)	7.38 (0.46)	8.51 (0.55)	10.25 (0.68)	11.52 (0.79)	12.27 (0.86)	12.81 (0.91)
수급자 수 (노인인구 대비 비율)	39.9 (6.4)	47.5 (7.3)	47.5 (7.3)	52.0 (7.7)	57.9 (8.2)	64.9 (8.8)	73.2 (9.5)	80.7 (9.9)	89.9 (10.5)	99.9 (11.1)	-

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임, 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2) 전망기간(2022~2031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대비 12.27%(소득 대비 0.86%), 2023~2031년은 건강보험료 대비 12.81%(소득 대비 0.91%)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 결과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수	소 계	3.8	4.1	4.4	4.7	5.1	6.2	7.6	9.6	11.8	13.9	15.4
입	보험료수입	2.5	2.7	2.9	3.1	3.3	3.9	5.0	6.4	7.9	9.3	15.5
(A)	정부지원금	1.2	1.3	1.4	1.5	1.8	2.1	2.6	3.2	3.8	4.4	15.5
지	소 계	3.3	3.8	4.3	4.7	5.6	6.8	8.3	9.5	10.7	12.2	15.6
출	보험급여비	3.1	3.6	4.0	4.4	5.2	6.5	7.9	9.1	10.3	11.8	16.0
(B)	관리운영비등	0.2	0.3	0.3	0.3	0.4	0.3	0.4	0.4	0.4	0.4	7.7
	재정수지(A-B)	0.5	0.3	0.1	0.0	△0.4	△0.6	△0.7	0.1	1.0	1.7	-
	누적준비금적립금	1.1	1.3	1.5	1.7	1.9	1.8	1.1	0.4	0.4	1.4	-

주: 1. 각 연도별 결산 기준

2. 국가지원금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차년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20%)과 의료급여 부담금(국가분)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 2023~2031년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4.7	15.9	17.1	18.4	19.8	21.2	22.7	23.9	25.1	7.3
	지출(B)	14.4	16.1	17.8	19.6	21.5	23.3	25.3	27.9	30.3	9.9
	재정수지(A-B)	0.2	△0.2	△0.7	△1.2	△1.8	△2.1	△2.7	△4.1	△5.2	-
	적립금	2.4	2.2	1.5	0.3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2.10.

48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부담

가. 현황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 등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2017~2022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인한 집행액은 매년 증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17) 2,426억원 → ('22) 3,049억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17) 8억원 → ('22) 15억원
 - (육아휴직 급여)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
 - 2017~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연평균 19.5%로 증가
 - 육아휴직 급여: ('17) 6,804억원 → ('22) 1조 6,572억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목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
 -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073억원 집행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2019년 시행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22년 기준 61억원 집행

나. 주요 쟁점

- 모성보호급여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보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모성보호급여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 중 국가 재정(일반회계 전입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14.3% 수준에 불과함
 -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 필요

다. 관련 통계

모성보호급여 중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 비중: 2017~2023년

(단위: 백만원, %)

연도	모성보호급여 지출 (A)	일반회계 전입금 (B)	비중 (B/A)	고용보험기금 순수부담(A-B)
2017	935,614	90,000	9.6	845,614
2018	1,104,076	90,000	8.2	1,014,076
2019	1,350,031	140,000	10.4	1,210,031
2020	1,561,358	180,000	11.5	1,381,358
2021	1,685,010	220,000	13.1	1,465,010
2022	2,077,151	300,000	14.4	1,777,151
2023	2,100,641	300,000	14.3	1,800,641

주: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모성보호급여 유형별 지원조건

유형	조항	지원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 급여	§75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70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휴직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73의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단축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75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급여 유형별 현황

유형	지급기간		지급단가		
	우선지원기업	대규모기업	소득대체율	하한액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다태아 120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통상임금 100%	최저임금	30일 기준 210만원
유산사산휴가 급여	5~90일	마지막 30일	통상임금 100%	최저임금	30일 기준 210만원
육아휴직 급여	1년		통상임금 80%	70만원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 80%	월 통상임금 50만원	(최초 5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 (나머지 시간) 월 통상임금 1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	없음	통상임금 100%	최저임금	401,910원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급여 유형별 집행 현황: 2017~2022년

(단위: 백만원)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산전후휴가급여	242,598	248,438	268,516	285,771	289,498	304,899
유산사산휴가 급여	801	892	1,170	1,398	1,415	1,545
육아휴직 급여	680,430	839,083	1,058,853	1,212,143	1,297,525	1,657,2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785	15,663	21,095	54,995	89,669	107,330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	397	7,050	6,904	6,146
합계	935,614	1,104,076	1,350,031	1,561,357	1,685,011	2,077,151

주: 1. 집행액 기준

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19년 시행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2017~2022년

(단위: 명)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산전후휴가급여	81,083	76,394	73,279	70,933	70,320	73,110
유산사산휴가 급여	625	668	816	1,010	1,108	1,228
육아휴직 급여	90,108	99,198	105,165	112,040	110,555	131,087
남성	12,042	17,665	22,297	27,423	29,041	37,885
여성	78,066	81,533	82,868	84,617	81,514	93,2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821	3,820	5,660	14,698	16,689	19,466
남성	321	550	742	1,639	1,632	2,001
여성	2,500	3,270	4,918	13,059	15,057	17,465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	1,059	18,720	18,270	16,168

주: 1. 출산전후휴가급여에는 예술인, 특고, 기간제·파견근로자 상당액 등도 포함

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19년 시행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7~2022년

(단위: 개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육아휴직	9.4	9.4	9.5	9.4	9.5	9.0
남성	6.3	6.6	7.0	7.0	7.3	7.3
여성	9.8	10.0	10.2	10.2	10.3	9.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5	7.4	7.9	9.0	9.3	9.4
남성	7.6	7.0	7.4	7.7	8.6	8.5
여성	7.5	7.4	7.9	9.1	9.4	9.5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단위: 백만원)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수입액(A)	8,487,013	13,645,130	14,835,516	13,589,704	13,992,183
지출액(B)	9,860,141	13,893,658	14,424,208	14,145,403	13,984,637
재정수지(A-B)	△1,373,128	△248,528	411,308	△555,699	7,546

자료: 고용노동부

49

실업급여 추이

가. 현황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¹⁾, 직업능력개발수당²⁾, 광역구직활동비³⁾, 이주비⁴⁾ 등으로 구분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 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실직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실업급여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및 공포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
 - 2020년 12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2021년 7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등) 시행
-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최근 5년간 2018년 0.70배에서 2022년 0.26배로 감소

안태훈 예산분석관 (02-6788-3741)

-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2)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 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 3)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 4)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행 등 지급

나. 주요 쟁점

- 구직급여 사업의 목적은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재취업률이 최근 5년간 28%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 최소화 및 사업 내실화 논의 필요
 - 구직급여 사업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⁵⁾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는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반복수급 비중은 매년 6.0% 수준을 유지
 - 부정수급건수는 2018~2022년 기간 중 매년 25,0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중 196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2018년 131만 5천명에서 2022년 163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중 6조 4,549억원에서 10조 9,105억원으로 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최근 코로나-19 및 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의해,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법정 적립배율(1.5~2.0배)⁶⁾을 고려하여 적립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인 일반회계전입금은 2022년 1.3조원에서 2023년 0.3조원으로 감소⁷⁾

5)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를 의미

6)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업급여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7) 2022년: 모성보호지원 0.3조 +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0.8조 + 실업급여계정 이자비용 등 한시지원 0.2조 = 1.3조

2023년: 모성보호지원 0.3조

다. 관련 통계

실업급여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구직급여	12,628,061	12,062,474	11,180,665	10,910,504	11,183,948
취업촉진수당	465,097	442,832	524,934	468,018	386,659
조기재취업수당	464,819	442,580	524,662	467,850	386,464
직업능력개발수당	29	22	23	8	11
광역구직활동비	0.16	0.30	0.16	0.07	0.16
이주비	249	229	249	160	18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계획액
		당초	수정	
사회보장기여금	13,556,486	15,417,940	15,417,940	17,043,109
○고용주부담금	8,397,548	9,412,179	9,412,179	10,346,737
○피고용자부담금	5,158,937	6,005,761	6,005,761	6,696,372
전입금	1,065,387	1,300,000	1,300,000	300,000
○일반회계전입금	1,065,387	1,300,000	1,300,000	300,000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수급 중 재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직급여 수급종료자(A)	1,012	1,107	1,211	1,337	1,211
수급 중 재취업자(B)	292	286	325	359	339
재취업률(B/A)	28.9	25.8	26.8	26.9	28.0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추이

(단위: 천명,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복 수급	구직급여 수급자	1,315	1,443	1,703	1,774	1,631
	반복수급자수	82	86	93	100	102
	비중	6.3	5.9	5.5	5.7	6.3
부정 수급	부정수급 건수	25,574	22,003	24,259	25,753	23,885
	부정수금액	19,617	19,786	23,710	28,243	26,859
	징수결정액	40,349	40,311	44,047	50,206	51,606
	환수액	36,210	35,919	37,952	42,731	41,670
	미환수액	4,139	4,392	6,095	7,475	9,936

주: 1.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시까지 지속적으로 환수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수액이 증가함(부정수급 내역은 2023년 5월말 기준)

2. 반복수급 구직급여 수급자: 연장급여 미포함,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구직급여 지급실적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직급여 수급자	1,315	1,444	1,704	1,775	1,631
구직급여 지급액	64,549	80,917	118,556	120,625	109,105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적립배율 현황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A)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66
	연말적립금(B)	55,201	41,374	38,666	42,665	37,058
	적립배율(B/A)	0.70	0.42	0.28	0.30	0.26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사업 계정	지출액(C)	36,566	40,894	65,706	66,325	48,699
	연말적립금(D)	38,886	31,726	27,800	13,163	14,972
	적립배율(D/C)	1.1	0.8	0.4	0.2	0.3

주: 임금근로자 계정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5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하여 공무원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설치연도	가입대상	보험료율	급여수준	수급요건	수급개시연령
1960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	18%	재직 1년당 지급률 1.7% (2035년 기준)	10년 이상 재직	2020년 60세 → 2033년 65세

- 그러나 공무원연금기금은 지출이 수입보다 커 2001년부터 적자 상태이며, 부족분을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 퇴직급여 등의 지출을 기여금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1항¹⁾에 따라 국가 등이 그 부족액을 보전해야 함

나. 주요 쟁점

-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2020년에는 2조원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3조원대에 진입 후 2022년 전년대비 37.5% 증가한 4조 4,451억원으로 재정적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금기여금, 정부 부담금 등의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2017년 8.25%→2020년 9%),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6.4조원을 기록
 - 다만, 연금개혁으로 기수급자 연금액을 5년(2016~2020년) 동안 동결하였으나, 2021년부터 인상²⁾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여 적자 규모 확대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 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기금 재정 현황: 2014~2022년

(단위: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A)	10.0	10.6	11.7	12.6	13.4	14.8	15.6	15.7	16.4
연금기여금	3.5	3.8	4.5	4.9	5.3	5.7	6.0	6.2	6.5
정부 부담금 등	6.5	6.8	7.2	7.7	8.1	9.1	9.6	10.2	11.1
지출(B)	12.6	13.7	14.0	4.9	15.7	16.9	18.2	18.9	20.8
퇴직급여	10.2	11.4	12.0	12.8	13.6	14.5	15.5	16.8	18.1
기타급여 등	2.4	2.3	2.0	2.1	2.1	2.4	2.7	2.9	2.7
재정수지(A - B)	-2.6	-3.1	-2.3	-2.3	-2.3	-2.1	-2.6	-3.2	-4.4
전년대비 증가율	-	19.2	-25.8	0.0	0.0	-8.7	23.8	23.1	37.5

주: 연도별 결산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특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기적인 적자개선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개선방향 모색 필요
 -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23년 -6.1조원에서 2090년 -15조원에 달하며, 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도 2023년 0.27%에서 2093년 0.35%로 상승할 전망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수입	15.4	16.8	17.3	17.5	16.4	15.3	13.3	11.2	10.5
지출	21.5	27.0	31.2	32.4	30.3	28.3	27.4	26.1	25.5
재정수지	-6.1	-10.2	-13.9	-14.9	-13.9	-13.0	-14.1	-14.9	-15.0
(GDP대비 비율)	(-0.27)	(-0.39)	(-0.47)	(-0.45)	(-0.39)	(-0.34)	(-0.35)	(-0.35)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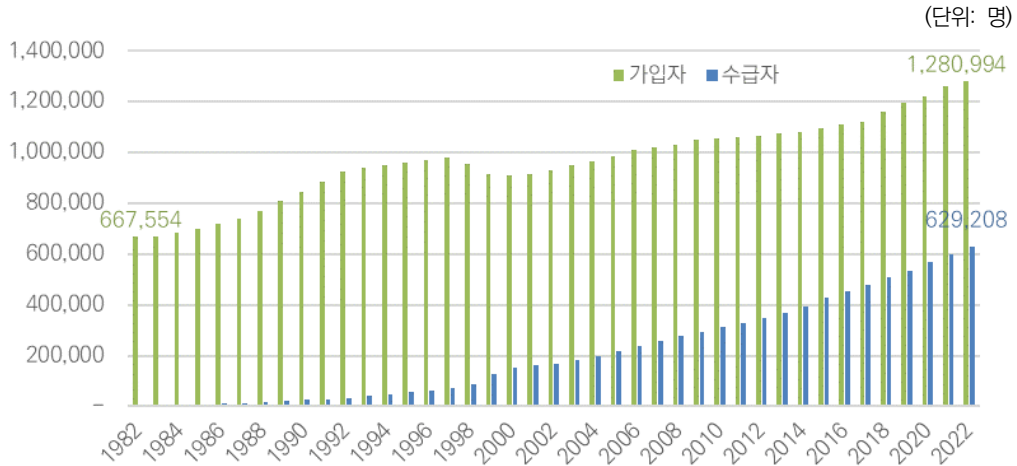
주: 전망액은 2023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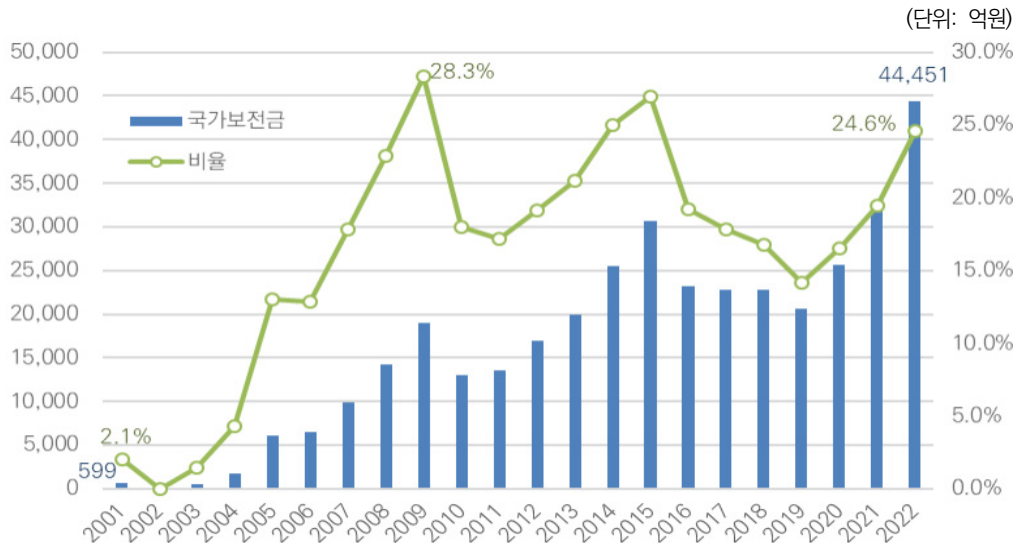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1982~2022년



주: 1982년 가입자 수 667,554명, 수급자 수 3,742명에서 2022년 각각 1,280,994명, 629,208명으로 증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총당에 투입된 국가보전금 추이: 200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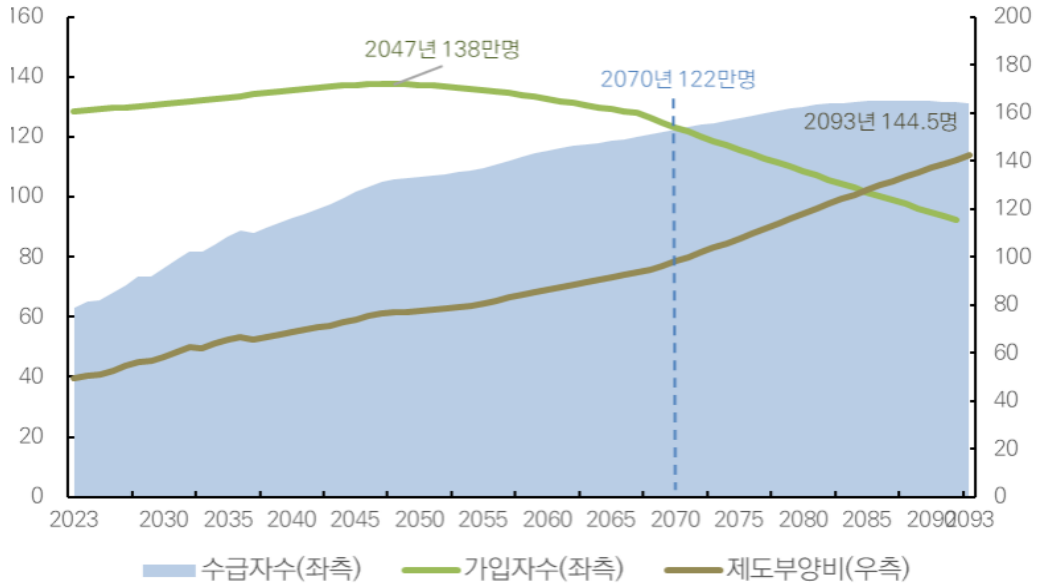
주: 1. 비율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급여 지출 총액 대비 국가보전금의 비율을 말함

2. 국가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지출총액 대비 2.1%)에서 2022년 4조 4,451억원(지출총액 대비 24.6%)으로 증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전망: 2023~209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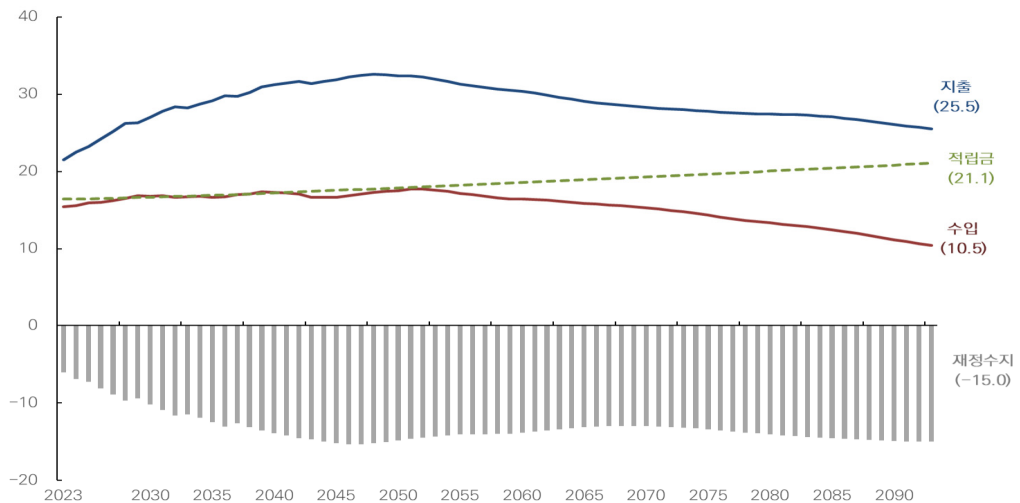


주: 제도부양비는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며, 2070년 이후 제도부양비가 100을 넘어서고 2093년에 144.5명에 이릅니다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단위: 조원)



주: 공무원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급여지출에 사용되지 않고 책임준비금 성격으로 운영 중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

51

군인연금 현황 및 보전금 추이

가. 현황

-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을 설치·운영
 - (운영체계) 국방부 군인연금과가 제도를 총괄하고, 기여금 징수와 급여 지출은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
 - (적용범위) 군인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은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역연령과 일치
- 군인연금기금 수입 3조 7,460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조 9,220억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중 99.5%는 군인연금 지급에 사용
 - 일반회계전입금 중 군인연금 국가부담금은 「군인연금법」¹⁾에 근거하여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고용주로서의 국가 부담비율(보험료율)만큼 부담
 - 보전금은 「군인연금법」 제45조²⁾ 본인의 기여금과 국가의 연금부담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

이한성 예산분석관 (02-6788-4642)

1) 「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022년 군인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여유자금회수	합 계
			국가부담금	보전금		
	221	7,172	12,427	16,793	847	37,460

지출	군인연금 지급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합 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32,776	3,128	1,354	11	191	37,460

자료: 국방부

나. 주요 쟁점

-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군인연금 급여 지급의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족분인 보전금 규모는 2013년 1조 3,692억원에서 2022년에는 1조 6,793억으로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군인연금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2050년에는 3.9조원, 2093년에는 4.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국가가 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연금개혁으로 인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하고 지급률(연소득대비 연금액비율)은 1.9%에서 1.7%로 인하하였으나, 군인연금은 보험료율 14%, 지급률 1.9%를 유지 중
- 군인연금 보전금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과소추계한 경우에는 정산하고, 과다추계한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군인연금기금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연금 급여 지급액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한 보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과소, 과다 추계시 정산을 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과소 추계시에만 정산 중

다. 관련 통계

군인연금 수입 현황: 2011~2022년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자체 세입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27,436	4,855	17.7	8,889	32.4	13,692	49.9
2014	28,561	5,265	18.4	9,563	33.5	13,733	48.1
2015	28,556	5,229	18.3	9,896	34.6	13,431	47.1
2016	29,580	5,587	18.9	10,328	34.9	13,665	46.2
2017	31,011	5,965	19.2	10,389	33.5	14,657	47.3
2018	32,327	6,251	19.3	10,976	33.9	15,100	46.7
2019	33,813	6,536	19.3	11,537	34.1	15,740	46.5
2020	34,673	6,847	19.7	12,047	34.7	15,779	45.5
2021	35,202	7,020	19.9	12,170	34.6	16,012	45.5
2022	37,460	8,240	22.0	12,427	33.2	16,793	44.8

주: 국가부담금은 군인연금 기여금 외에도 재해보상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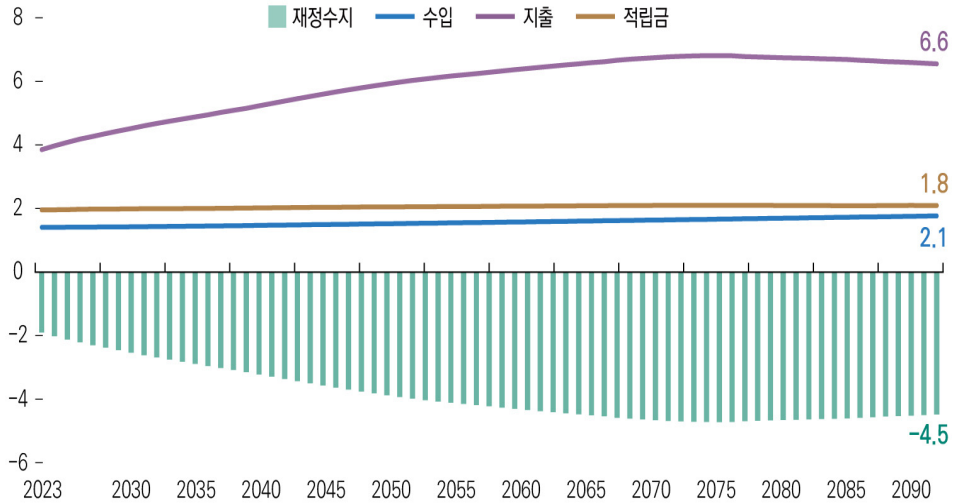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093	연평균 증가율
수입	2.0	2.0	2.0	2.1	2.1	2.1	2.1	2.1	2.1	0.1
지출	3.9	4.2	4.9	5.7	6.3	6.7	6.8	6.6	6.6	0.8
재정수지	△1.9	△2.5	△3.2	△3.9	△4.3	△4.6	△4.7	△4.5	△4.5	·
(GDP 대비 비율)	(△0.08)	(△0.10)	(△0.11)	(△0.12)	(△0.12)	(△0.12)	(△0.12)	(△0.11)	(△0.10)	·
적립금	1.4	1.4	1.5	1.5	1.6	1.6	1.7	1.8	1.8	·
(GDP 대비 비율)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4)	·

주: 전망액은 2023년 기준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2023. 3., p.17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단위: 조원)



주: 전망액은 2023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2023. 3., p.17

군인연금 국고보전금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및 집행	실집행		보전금 잔액
		금액	실집행률	
2018	1,510,000	1,497,990	99.2	12,010
2019	1,574,008	1,557,299	98.9	16,709
2020	1,577,855	1,558,745	98.8	19,110
2021	1,601,186	1,614,047	100.8	△12,861
2022	1,679,303	1,767,062	105.2	△87,759

주: 2018~2020년의 예산상 보전금 잔액이 남은 경우 정산하지 않고 잔액을 군인연금기금으로 적립하나, 2021~2022년의 보전금 부족분은 차차년도에 정산을 하여 예산으로 보전함

자료: 국방부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경제

가. 현황

- 2023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6월에 2.7%를 기록하면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수준으로 하락
 - 국제유가 하락,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상품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데 기인
- 그러나 근원물가상승률¹⁾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남
 - 2023년 7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각각 3.3%, 2.3%를 기록하면서 근원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면서 근원물가상승률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물가안정책을 발표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을 통해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
 -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23.7.28.)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나. 주요 쟁점

-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서비스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박선우 경제분석관 (02-6788-3733)

1)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 OPEC+의 원유 감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23.7.17.) 등으로 국제원자재가 격의 변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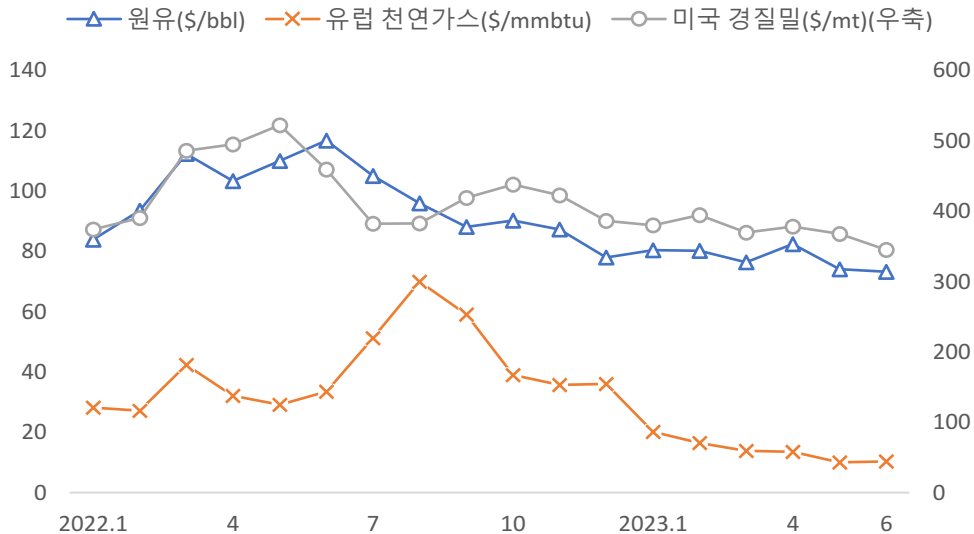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2022~2023년

(단위: 전년동월대비, 전년대비, %)

	2022				2023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근원물가상승률	4.2	4.3	4.1	3.6	4.1	4.0	4.0	4.0	3.9	3.5	3.3
소비자물가상승률	5.7	5.0	5.0	5.1	5.2	4.8	4.2	3.7	3.3	2.7	2.3
상품	7.3	6.1	6.2	6.7	6.6	6.0	4.7	3.4	3.0	2.0	1.4
농축수산물	5.2	0.3	0.3	3.8	1.1	1.1	3.0	1.0	-0.3	0.2	-0.5
공업제품	6.3	5.9	6.1	6.9	6.0	5.1	2.9	2.0	1.8	0.2	0.0
전기가스수도	23.1	23.1	23.2	12.6	28.3	28.4	28.4	23.7	23.2	25.9	21.1
서비스	4.2	4.1	4.0	3.7	3.8	3.8	3.8	4.0	3.7	3.3	3.1
집세	1.7	1.6	1.4	1.9	1.3	1.1	0.9	0.8	0.6	0.5	0.3
공공서비스	0.8	0.8	0.8	0.8	0.8	0.9	1.2	1.0	1.0	1.0	1.2
개인서비스	6.4	6.2	6.0	5.4	5.9	5.7	5.8	6.1	5.6	5.0	4.7

자료: 통계청

국제원자재가격: 2022~2023년



자료: 「Pink Sheet」, World Bank

2023년 공공요금 인상 현황: 수도권

	내용
지하철	• (서울) 1250원 → 1400원('23.10.7.~) • (인천) 1250원 → 1400원(1·2호선 요금 기준, '23.10.7.~)
버스	• (서울) 1200원 → 1500원('23.8.12.~) • (인천) 1250원 → 1500원(간선버스요금 기준, '23.10.7.~)
택시 (기본요금)	• (서울) 3800원 → 4800원('23.2.1.~) • (경기) 3800원 → 4800원('23.7.1.~) • (인천) 3800원 → 4800원('23.7.1.~)
전기	• (한국전력공사) 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23.5.16.~)
가스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1.04원/MJ 인상('23.5.16.~) • (서울) 1000원 → 1250원(기본요금 기준, '23.7.1.~) • (인천) 840원 → 1000원(기본요금 기준, '23.8.1.~)

자료: 보도자료 종합

2023년 하반기 정부의 물가안정책

	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 (2023.7.27.)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 -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 적으로 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20%) 적용기한을 3년 연장(~'26.12.31.)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7.28.)	•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 농산물 공급 확대: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 출하장려비 지원 등 - 축산물 공급 확대: 2023년 8월까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톤 전량 도입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2023년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53

최근 경상수지 현황

가. 현황

- 경상수지는 2023년 상반기에 24.4억달러 흑자를 기록
 -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수지 등으로 구성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 ('21)852→('22)298→('23.1~6월)24.4
 - 올해 1월 월간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2개월(5~6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상반기에 24.4억달러 흑자 기록
 -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248.7억달러)대비 9.8% 수준
 - 최근 1년간 부진하던 경상수지는 점차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그간,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해온 상품수지는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2023년 상반기에 34.7억달러 적자를 기록
 - ※ 상품수지(억달러, 누적): ('23.1월)-73.2→(3월)-98.5→(5월)-14.9→(6월)-34.7
 - 반도체와 석유제품,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 감소가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
- 서비스수지¹⁾는 운송수지 적자전환과 여행수지 악화로 적자가 지속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 운임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
 - 여행수지는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 확대
 - ※ 서비스수지(억달러, 누적): ('23.1월)-32.7→(3월)-72.0→(5월)-93.2→(6월)-119.3
- 다만 투자소득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²⁾는 흑자 확대
 - 올해 1월에는 65.4억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법인 등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흑자 폭 확대
 -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누적): ('23.1월)65.4→(3월)133.1→(5월)146.4→(6월)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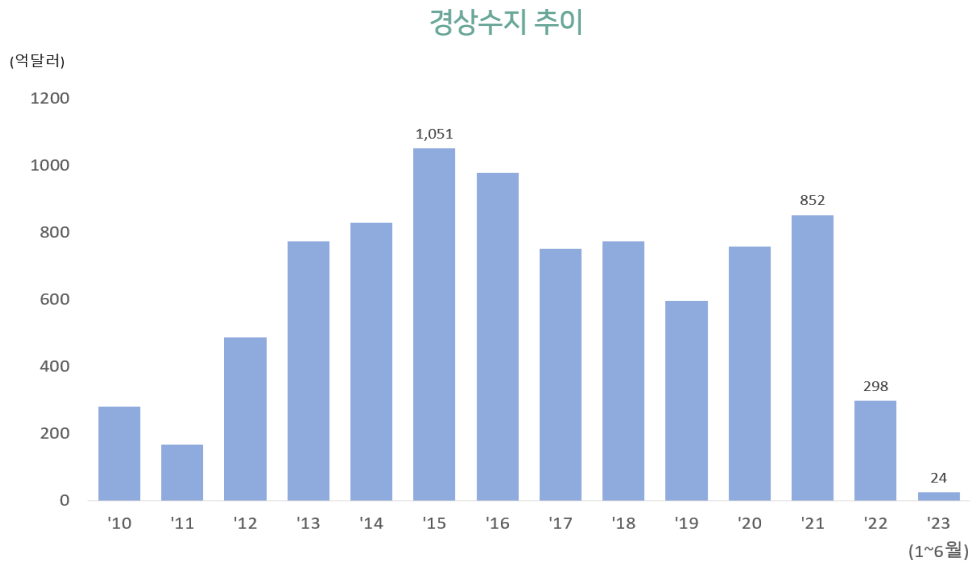
김원혁 경제분석관 (02-6788-4657)

- 1)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유지보수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12개의 수지로 구성됨
- 2) 본원소득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급료, 임금 그리고 투자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급료, 임금 그리고 투자소득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 수지의 합으로 계산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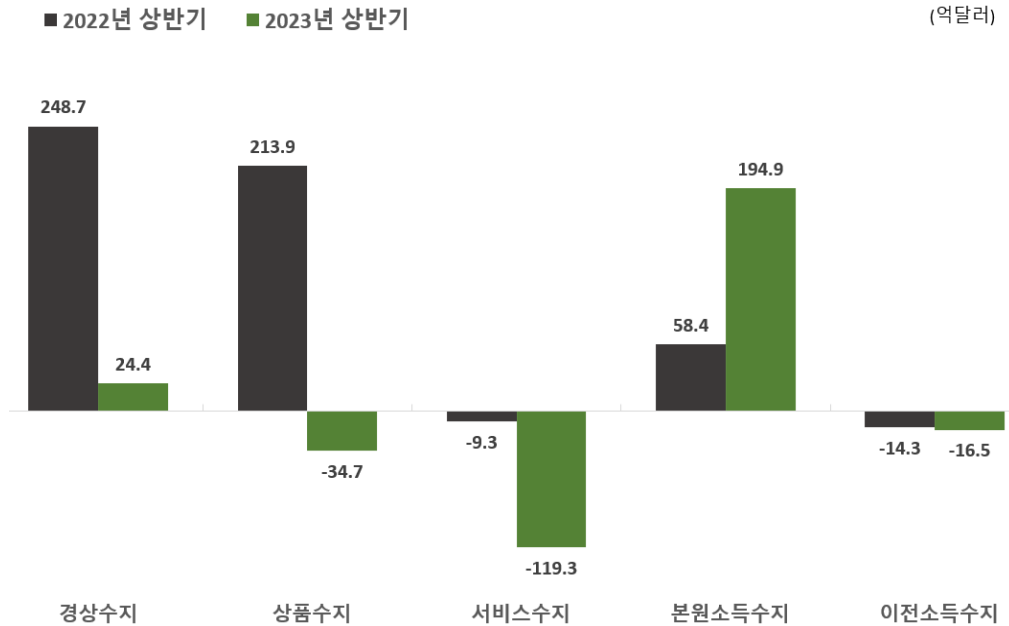
- 경상수지 부진이 전반적인 경제기초 체력 약화의 신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상수지 부진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과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우나, 경상수지 약화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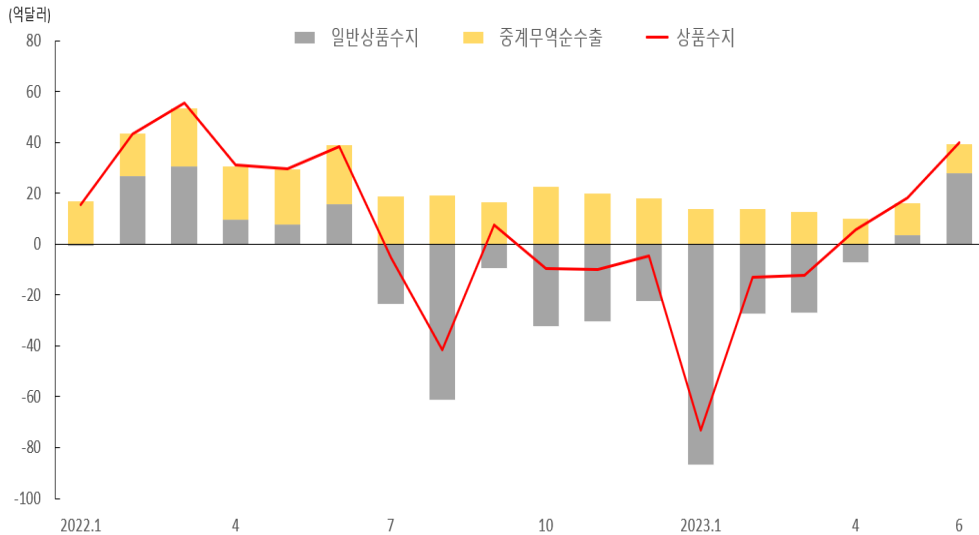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년 항목별 누적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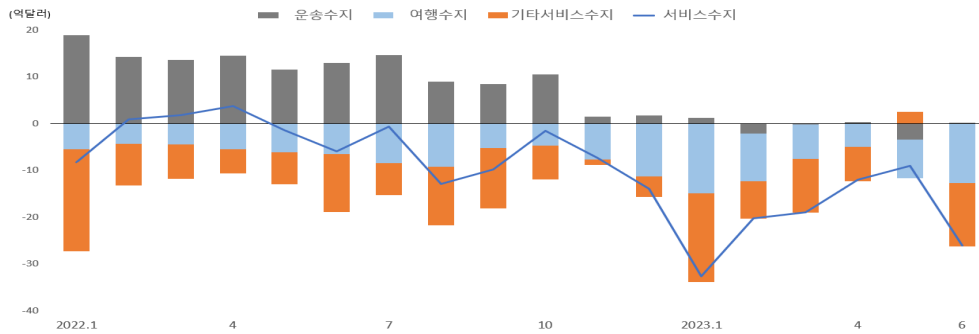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근 상품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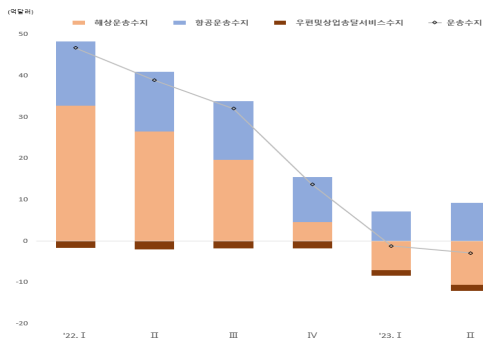
최근 서비스수지 추이



주: 기타서비스 수지는 운송 및 여행수지를 제외한 가공서비스, 건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유지보수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수지의 합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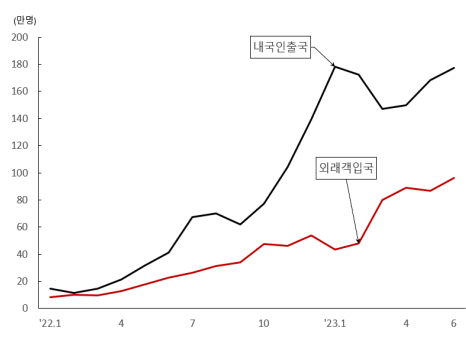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운송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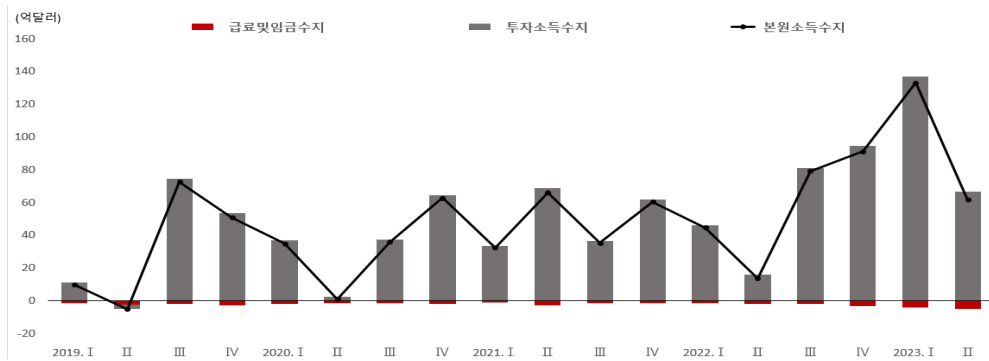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여행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본원소득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4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과제

가. 현황

-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¹⁾ 및 무역안보주의²⁾ 기조가 확산
 - 2018년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 정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역의 도구화로 이어짐
 - 미중 무역갈등에 더하여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안보주의 기조 확산
 -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세계무역이 둔화하는 추세로 전환
-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시장 개발이 중요한 과제
 - 고도로 분업화된 글로벌 공급망 체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호의존성을 자국 이익을 위하여 무기화하는 대외무역 기조 발현
 - 이러한 대외무역 기조의 확산으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첨단 제품 및 핵심원료에 관한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들이 연이어 발효됨
 - 소규모개방경제로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제품생산과 수출을 위한 공급망 및 시장의 다변화가 중요한 당면 과제

나. 주요 쟁점

- 안정적 제품생산을 위한 안정적 원자재 및 부품 공급 확보 필요
 -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공급이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

김용균 경제분석관 (02-6788-4791)

- 1) 보호무역이란 높은 관세 부과, 까다로운 규제, 제품의 수출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함
- 2) 무역안보란 무역거래가 경제의 범위를 넘어 전략물자 관리, 기술유출 보호 등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국가안보적 영역이라는 개념을 말함

-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안보주의의 대두로 나타나고 있는 특정 원산지에 대한 견제, 특정 원산지 원자재 및 부품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각국의 원산지 규제에 대응하여 공급망 다변화가 당면 과제

-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을 하여 수출을 하는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중국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임
- 우리나라는 중국 내에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는데, 중국에 대한 규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첨단 제품 생산을 위한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

다. 관련 통계

한국과의 무역금액 비중 상위 10개국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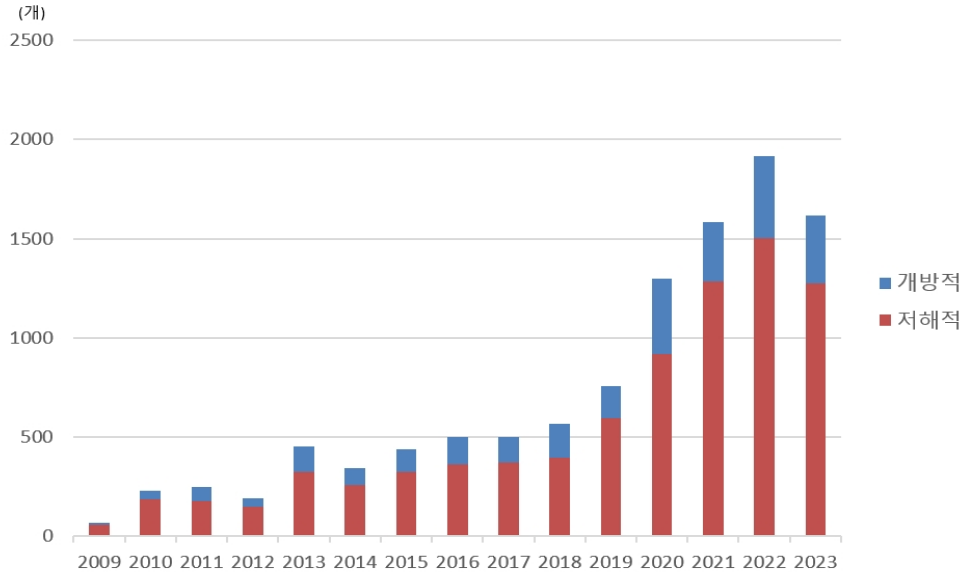
2022년	무역금액	비중
합계	14,149.6	100
중국	3,103.7	21.9
미국	1,915.5	13.5
베트남	876.9	6.2
일본	853.2	6.0
호주	636.8	4.5
대만	544.7	3.8
독일	336.8	2.4
싱가포르	305.5	2.2
홍콩	295.3	2.1
인도	277.7	2.0

주: 무역금액은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합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격별 무역정책 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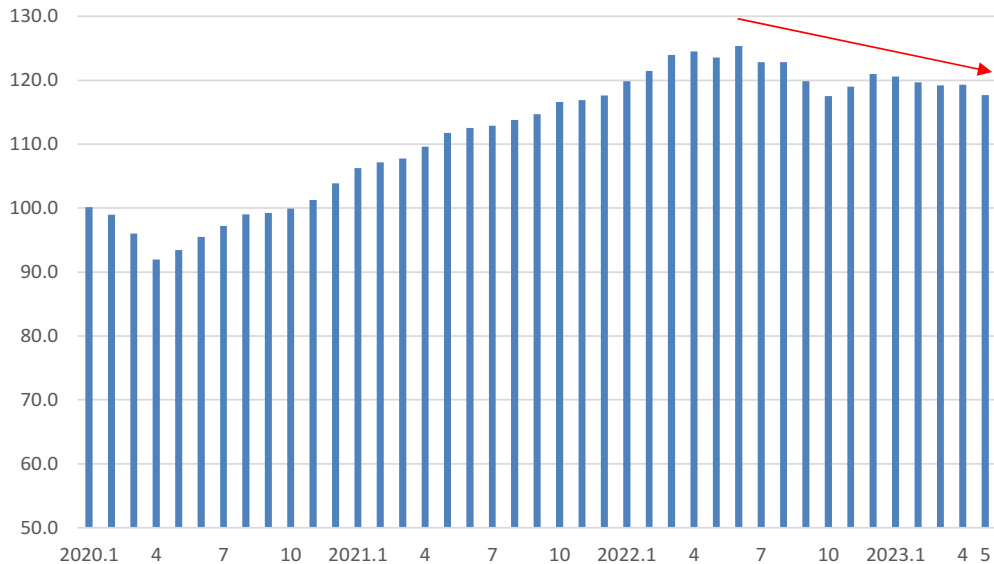
(단위: 개)



주: 개방적 무역정책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정책, 저해적 무역정책은 무역거래를 제약하는 정책을 의미
자료: Global Trade Alert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계무역금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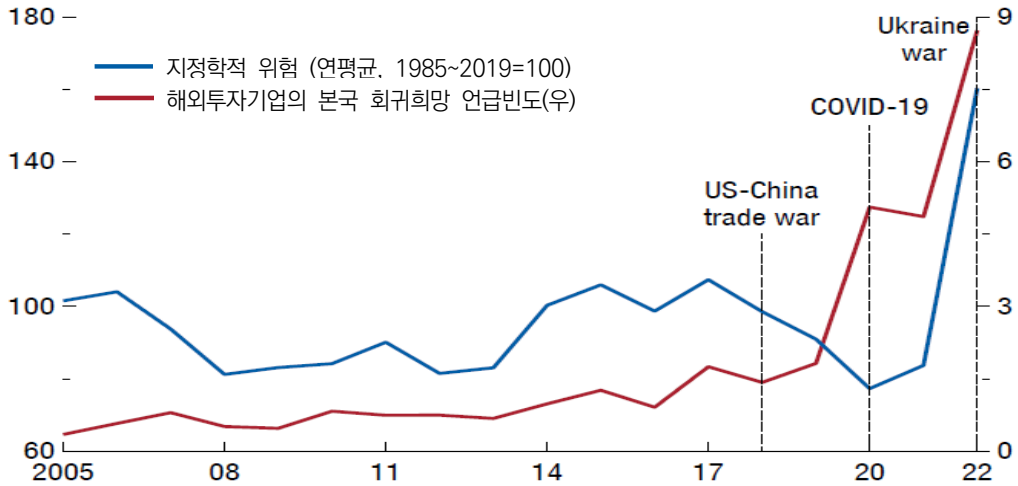
(2010=100)



주: 월별자료를 기준년 연간 지수(2010년 지수 100)에 대비하여 표시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투자기업의 본국 회귀의사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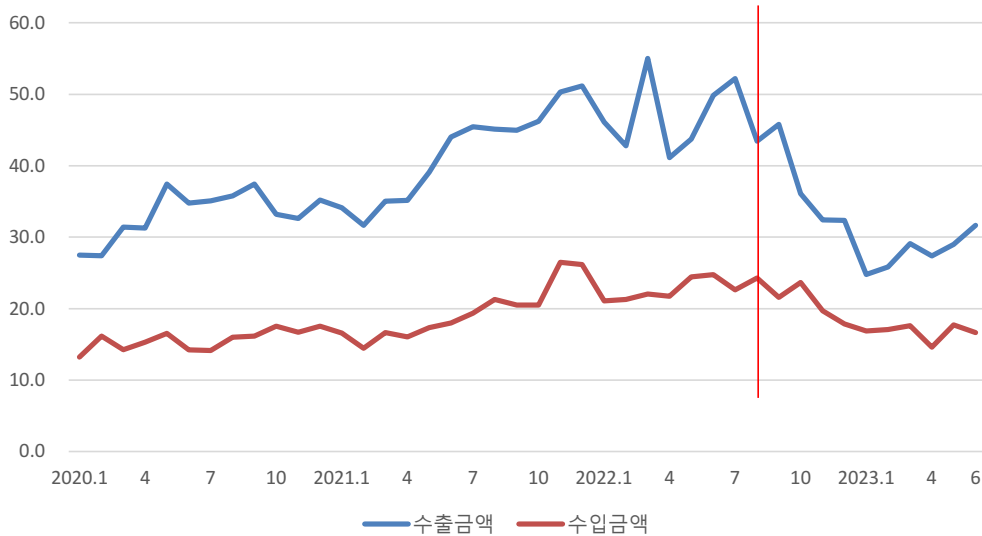


주: 해외투자기업의 본국 회귀희망은 기업의 실적발표 보고서에서 '회귀'라는 표현을 언급한 빈도를 나타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4.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2022년 8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발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5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과 수입의존도 추이

가. 현황

- 정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22.10.18)에 따라 전략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對 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확대하고, 총 150대 핵심전략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
 -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에 따라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고 핵심품목의 자립화에 필요한 R&D 집중 지원
 -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20.7.)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일본 대응 100개 품목에 전 세계 대응 238개 품목을 추가한 총 338개 품목을 세계공급망 관련 핵심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2020.10)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R&D 전략지원 대상 100대 핵심전략품목에 對 세계 대응 85개 품목과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65개 미래선도품목 선정
 -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에서는 기존 핵심전략품목을 對 일본은 100개 품목에서 87개 품목으로, 對 세계는 85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65개 미래선도품목은 31개로 조정하여 총 15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 제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책의 변화 과정

	소부장 1.0 (‘19.8)	소부장 2.0 (‘20.7)	소부장 R&D 고도화 (‘20.10 & ‘21.5)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22.10)
현재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품목 100개 (對일본)	GVC핵심품목 100개 (對일본) 238개(對세계)+ α	① R&D핵심품목 100개 (對일본) 85개 (對세계)	150대 핵심전략기술 87개 (對일본) 32개 (對세계+공급안정)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		+ β (신산업)	② 미래선도품목 65개	31개 (미래 대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윤성식 예산분석관 (02-6788-4666)

- 2022년에 국내 산업 중요도와 대일 의존도 등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 對 일본 및 對 세계, 미래선도 전략 R&D 품목을 총 250개에서 150개로 조정
 - 對 일본 R&D 전략품목: 100개 → 87개, 對 세계 R&D 전략품목: 85개 → 32개, 미래선도 R&D 품목: 65개 → 31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2조 740억원에서 2023년 2조 3,462억원으로 증가
 - 2023년 전체 예산 2조 3,462억원 중 2조 2,923억원(97.7%)이 R&D 사업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집행

나. 주요 쟁점

- 소재·부품·장비 수입 상위 6개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합계가 2019년 74.1%에서 2021년 71.9%로 완화된 이후 2023년(상반기) 73.1%로 증가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 완화 필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체 수입액 중 중국 의존도가 2019년 28.8%에서 2023년 30.7%로 증가하고, 일본 의존도는 2019년 17.0%에서 2023년 14.2%로 감소
 - 수입 상위 국가(중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베트남) 수입의존도는 2019년 74.1% → 2020년 73.5% → 2021년 71.9% → 2022년 72.4% → 2023년(상반기) 73.1%
-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對 일본 100대 전략품목 중 일부 품목의 전략품목 제외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 부족 우려
 - 對 일본 100개 전략품목에서 제외된 13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타 품목에 통합하여 관리되며, 10개 품목은 산업중요도 재평가 등을 통해 핵심전략품목에서 제외
 - 예를 들어, 對 일본 100개 전략품목에서 조정된 13개 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리 품목은 5개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중 3개 품목에 대해 2020~2022년

기간 중 총 232억 9,500만원 규모의 R&D를 지원하였으나, 2022년까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성과가 파악되지 않음

對 일본 100대 전략품목 조정 내용

(단위: 개)

소관 부처	산업중요도 재평가 및 기술확보전략 반영 제외	품목 통합	합 계
산업통상자원부	3	2	5
중소벤처기업부	6	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0	1
합계	10	3	1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 관련 통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 추이: 2020~2023년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전체	2,074,023	2,553,315	2,395,752	2,346,194
연구개발출연금	1,722,479	2,153,843	2,232,822	2,292,294
일반출연금	90,395	96,783	100,409	21,642
출자	260,000	300,000	60,000	30,000
기타	1,149	2,689	2,521	2,258

주: 2020~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무역수지: 2019~2023년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6
전산업	수출액	542,233	512,498	644,400	683,585	307,179
	수입액	503,343	467,633	615,093	731,370	333,645
	무역수지	38,890	44,865	29,307	-47,785	-26,466
소재부품장비	수출액	308,636	300,186	363,479	373,749	154,406
	수입액	192,921	197,635	248,321	263,904	123,516
	무역수지	115,715	102,551	115,158	109,845	30,890
소재	수출액	91,390	90,647	120,324	117,719	52,748
	수입액	62,254	59,050	81,362	81,358	36,462
	무역수지	29,137	31,597	38,961	36,361	16,286
부품	수출액	195,984	190,290	222,027	234,261	90,923
	수입액	112,438	112,897	133,683	152,420	71,354
	무역수지	83,545	77,393	88,345	81,842	19,569
장비	수출액	21,262	19,249	21,128	21,769	10,735
	수입액	18,229	25,687	33,276	30,126	15,700
	무역수지	3,033	-6,439	-12,148	-8,358	-4,9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분야 무역수지: 2019~2023년

(단위: 백만달러, %)

국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6
중국	수출액	93,376	90,503	106,531	104,228	38,213
	수입액	55,568	54,201	71,039	78,808	37,870
	무역수지	37,808	36,301	35,492	25,420	343
일본	수출액	14,201	12,688	14,838	14,599	6,938
	수입액	32,889	34,007	39,278	39,529	17,595
	무역수지	△18,688	△21,318	△24,440	△24,930	△10,657
대만	수출액	8,059	10,119	14,503	17,135	6,157
	수입액	13,019	15,656	20,491	25,192	10,768
	무역수지	△4,960	△5,537	△5,988	△8,057	△4,611
베트남	수출액	35,784	38,067	44,351	47,080	14,086
	수입액	8,596	8,192	9,238	9,952	4,915
	무역수지	27,188	29,875	35,113	37,128	9,170
미국	수출액	33,522	34,391	44,044	50,977	23,371
	수입액	23,288	23,467	27,448	26,799	13,292
	무역수지	10,234	10,924	16,596	24,178	10,080
독일	수출액	5,611	6,666	7,450	6,227	2,813
	수입액	9,584	9,796	11,085	10,865	5,795
	무역수지	△3,974	△3,130	△3,635	△4,638	△2,982
6개국 합계	수출액	190,553	192,434	231,718	240,246	91,577
	수입액 (비중)	142,944 (74.1)	145,319 (73.5)	178,579 (71.9)	191,145 (72.4)	90,235 (73.1)
	무역수지	47,609	47,115	53,139	49,101	1,343
전체	수출액	308,636	300,186	363,479	373,749	154,406
	수입액	192,921	197,635	248,321	263,904	123,516
	무역수지	115,715	102,551	115,158	109,845	30,8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

56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과 교역구조 변화

가. 현황

- 對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2022년 5월 對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3개월 연속 적자 기조가 유지
 - 2022년 9월에는 對중국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다음 달 10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
- 반도체를 제외한 對중국 무역수지는 이미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
 - 반도체를 제외한 對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적자 기록
 - ※ 2021년: -26억 달러, 2022년: -244억 달러
 - 2022년부터는 對중국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對중국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

나. 주요 쟁점

-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는 중국 경기 부진,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경기적 요인 외에도 對중국 교역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음
 - 최근의 對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 경기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경기적 요인에 기인
 -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으로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점 또한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 對중국 교역 중 중간재 비중(2022년 기준): 수출(83.6%), 수입(67.5%)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들어서는 對중국 중간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
- 이와 같은 對중국 교역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박선우 경제분석관 (02-6788-3733)

다. 관련 통계

對중국 무역규모: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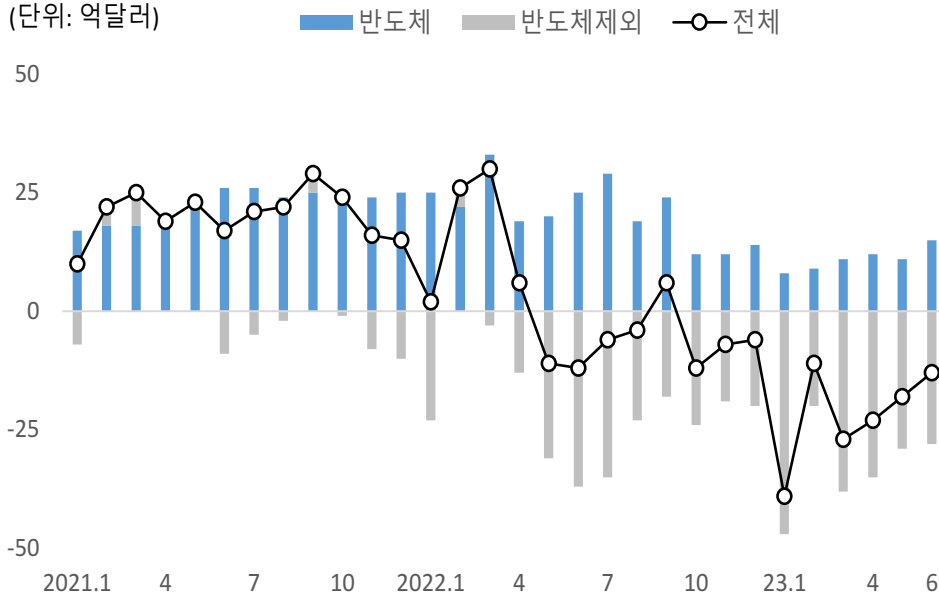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

	2022년				2023년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수출(A)	524	518	548	6,836	464	500	549	495	521	542
對중국 수출(B)	122	114	112	1,558	92	99	105	95	106	105
對중국 수출비중(B/A)	23.3	22.0	20.4	22.8	19.8	19.8	19.1	19.2	20.3	19.4
총수입(C)	592	588	596	7,314	589	553	597	522	543	531
對중국 수입(D)	134	121	118	1,546	131	110	132	118	124	118
對중국 수입비중(D/C)	22.6	20.6	19.8	21.1	22.2	19.9	22.1	22.6	22.8	22.2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중국 무역수지: 2022~2023년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공단계별 對중국 교역구조: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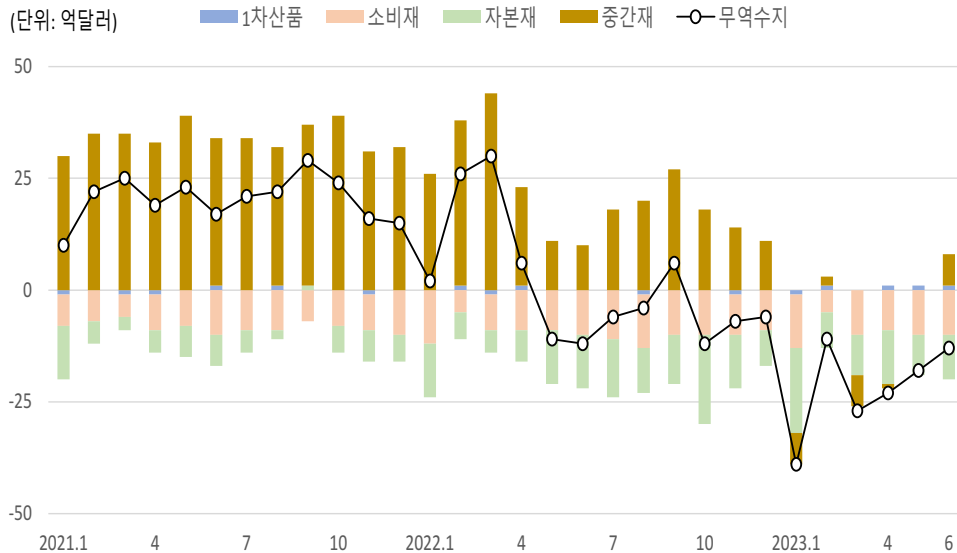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2022년				2023년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차산품	수출	2	1	2	22	1	2	1	2	2	2
	수입	2	2	2	23	2	1	1	1	1	1
소비재	수출	6	6	6	75	4	6	6	6	6	6
	수입	16	15	15	189	16	11	16	15	16	16
자본재	수출	12	10	12	160	8	10	12	9	11	9
	수입	32	22	20	288	27	18	21	21	20	19
중간재	수출	102	96	92	1,302	79	82	86	79	87	88
	수입	84	82	81	1,044	86	80	93	80	87	81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공단계별 對중국 무역수지: 2022~2023년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57

원화가치 약세의 현황 및 방향성

가. 현황

- 2023년 7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년 고점대비 하락하였으나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2022년 10월 1,427원 수준을 나타냈던 원/달러 환율은 2023년 1월 1,247원까지 하락한 이후 등락을 보이며 2023년 8월 1,318원을 기록¹⁾
 - 2019~2021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63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1,292원, 2023년 1~8월 1,297원을 기록
- 2022~2023년 중 등락을 보이며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된 대외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
 -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따른 달러 유동성 감소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 및 하락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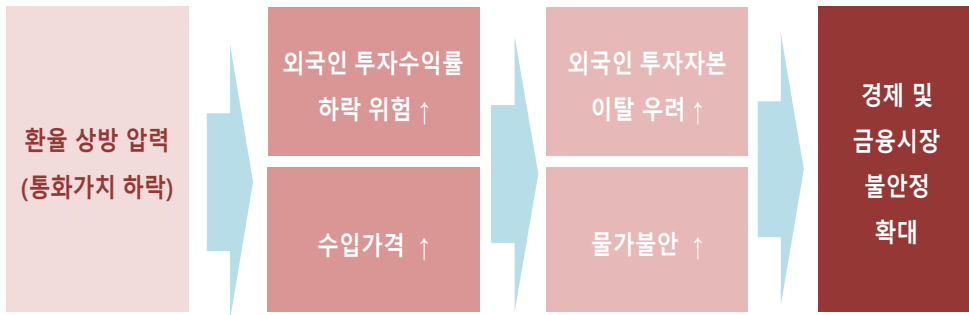
나. 주요 쟁점

- 원화가치 약세는 자산시장 및 수입가격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원화가치 약세로 외국인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어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

박승호 경제분석관 (02-6788-4671)

1) 2023년 9월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5원으로 8월 대비 상승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간 연계 Flow



■ 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 및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최근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
- 장기적으로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할 필요

다. 관련 통계

원/달러 환율 추이: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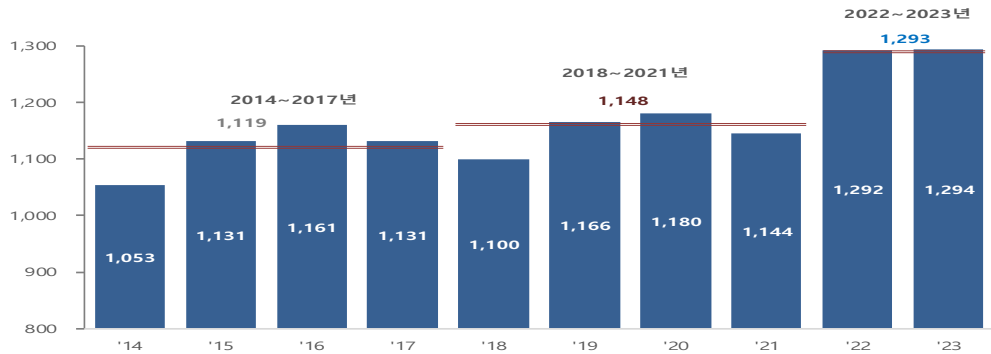
(단위: 원/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원/달러 환율	1,095	1,053	1,131	1,161	1,131	1,100	1,166	1,180	1,144	1,292	1,294
변동률	-2.8	-3.8	7.4	2.6	-2.6	-2.7	5.9	1.2	-3.0	12.9	0.1

주: 연평균 환율을 의미하며, 2023년은 1~7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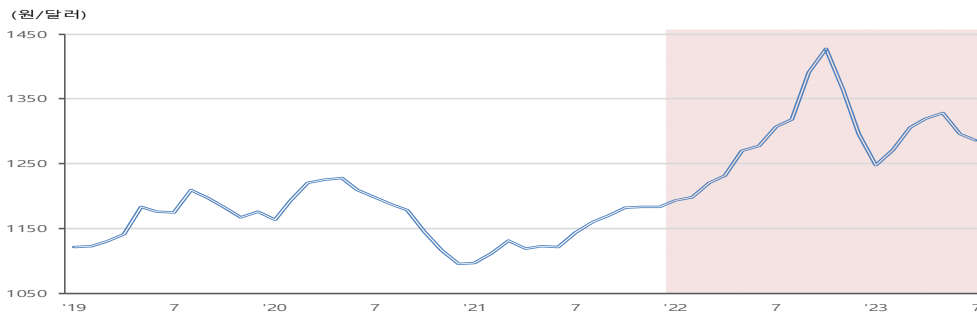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및 평균 환율 추이(연간 기준)

(단위: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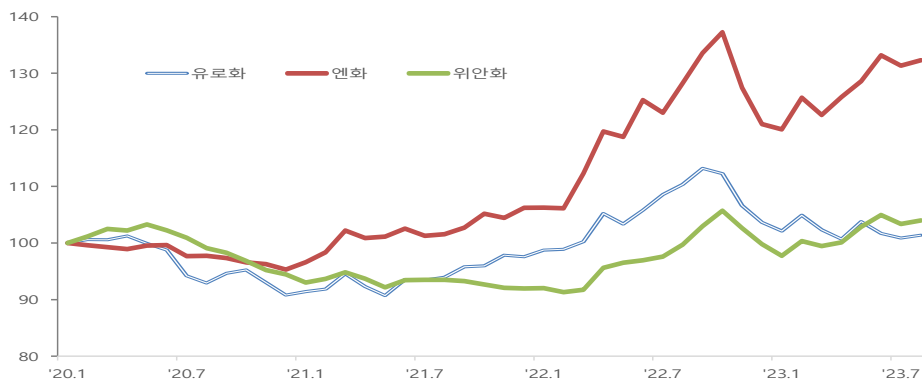
주: 연평균 환율을 의미하며, 2023년은 1~7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원/달러 환율의 최근 동향



주: 월평균 환율
자료: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 최근 동향



주: 2020년 1월 환율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

- 원/엔(100엔) 환율은 2023년 9월 11일 기준 905.8원으로 작년 7월 평균(973.2원) 대비 6.9% 하락¹⁾했으며, 원/엔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20년 5월 평균(1,145.7원) 대비 20.9% 하락
- 올해 7월 5일 장마감 기준으로 원/엔 환율은 897.29원으로, 8년 만에 800원대를 기록

■ 엔화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엔저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

- 지난 7월 28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1%로 6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미·일 금리 차는 5.26 ~ 5.51%p로 벌어짐

■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엔저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중앙은행(BOJ)은 국채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나. 주요 쟁점

■ 엔저 지속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엔저가 지속하는 경우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일본방문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가 악화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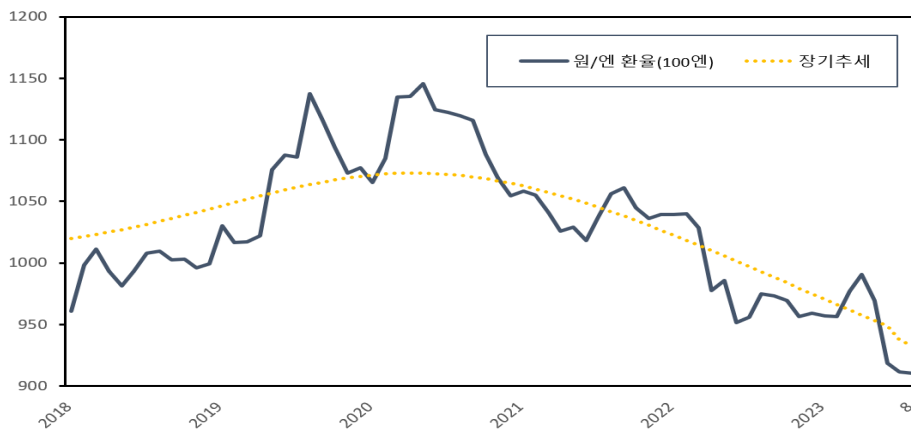
- 국내 경기 위축 및 해외여행 등의 증가로 국내 주요관광지의 내국인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관련 여행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
- 우리나라 여행수지는 2023년 6월까지 누적 58.3억달러 적자

- 소재·부품·장비의 일본의존도가 높아져 국내 소부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 그간 국산화에 힘써온 우리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와 매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 對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유인 감소 가능성
 - 최근 일본은 엔화 약세를 활용하여 반도체 등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 경기개선 기대와 엔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일본 주식 매수 건수가 역대 최다 기록한 바 있음

다. 관련 통계

원/엔 환율 추이(2018-2023)

(단위: 100엔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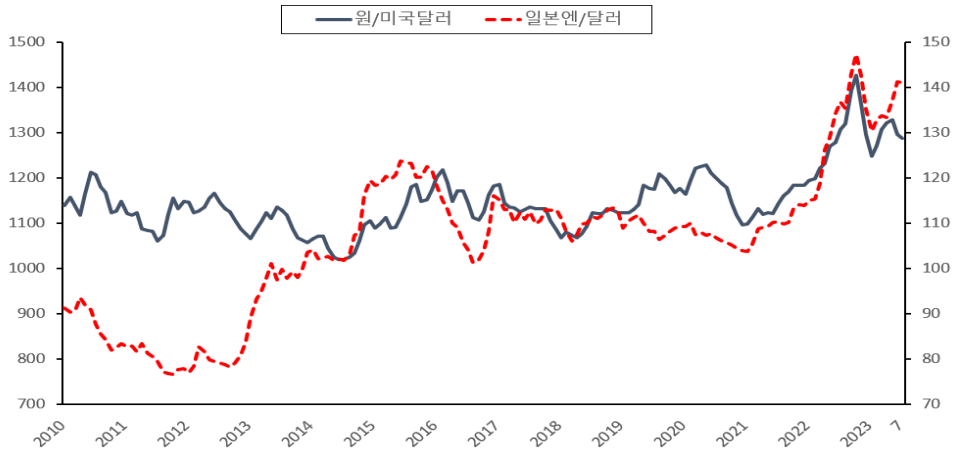


주: 매매기준율 기준이며, 장기추세는 200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HP-filter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음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對미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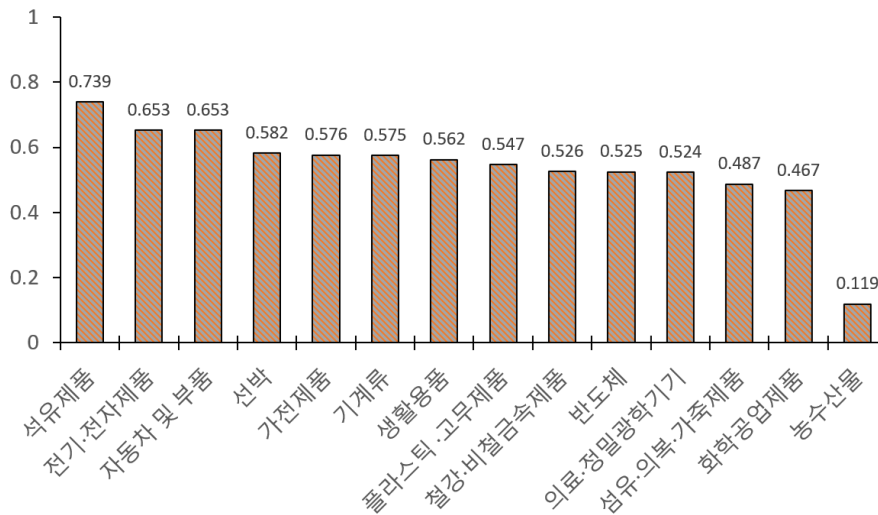
(단위: 1달러당 원, 1달러당 엔)



주: 매매기준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對세계시장 한·일 산업(품목)별 수출경합도 (2021년 기준)



주: 수출경합도는 양국의 수출구조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특정시장에서 대해 산업(품목) 수출 중 세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을 더한 수치로 계산됨.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10이면 수출구조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무역협회(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2022)

산업별 수출경합도: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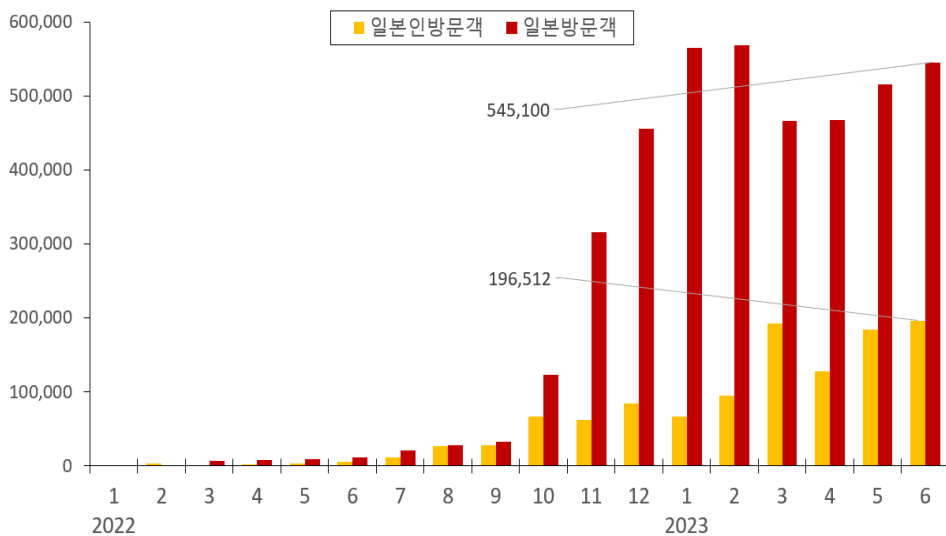
번호	산업(품목)	세계시장	미국시장	중국시장
1	석유제품	0.739	0.815	0.401
2	전기·전자제품	0.653	0.403	0.464
3	자동차 및 부품	0.653	0.736	0.423
4	선박	0.582	0.001	0.001
5	가전제품	0.576	0.185	0.659
6	기계류	0.575	0.369	0.602
7	생활용품	0.562	0.203	0.686
8	플라스틱·고무제품	0.547	0.515	0.530
9	철강·비철금속제품	0.526	0.357	0.504
10	반도체	0.525	0.504	0.613
11	의료·정밀광학기기	0.524	0.529	0.459
12	섬유·의복·가죽제품	0.487	0.291	0.463
13	화학공업제품	0.467	0.410	0.475
14	농수산물	0.119	0.353	0.364

주: 수출경합도는 양국의 수출구조를 비교하는 지표로서 특정시장에서 대해 산업(품목) 수출 중 세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을 더한 수치로 계산됨.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1이면 수출구조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자료: 무역협회(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2022)

최근 일본인방문객과 일본방문객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9

식량자급률 추이 및 쟁점

가. 현황

- 주요식품 자급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0년대 30% 이상으로 나타났던 곡류 자급률은 최근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급에너지 자급률(단백질·지방 등 공급에너지 소비량 중 공급에너지 생산량 비중) 측면에서도, 1990년대 60% 수준이었던 자급률은 최근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이 쌀은 1990년대 170kg에서 2021년 136kg으로 감소한 반면, 육류는 1990년대 35kg 수준에서 2021년 66kg으로 증가하는 등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국내 농업생산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22.12월)를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까지 올리고,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융자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
 - 밀 자급률 8.0%('21년 1.1%), 콩 자급률 43.5%('21년 23.7%)까지 상향 목표
 - ① 가루쌀·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주요 품목 생산 농가에 직불금 지급 ② 식량 작물 공공비축 확대 ③ 민간 기업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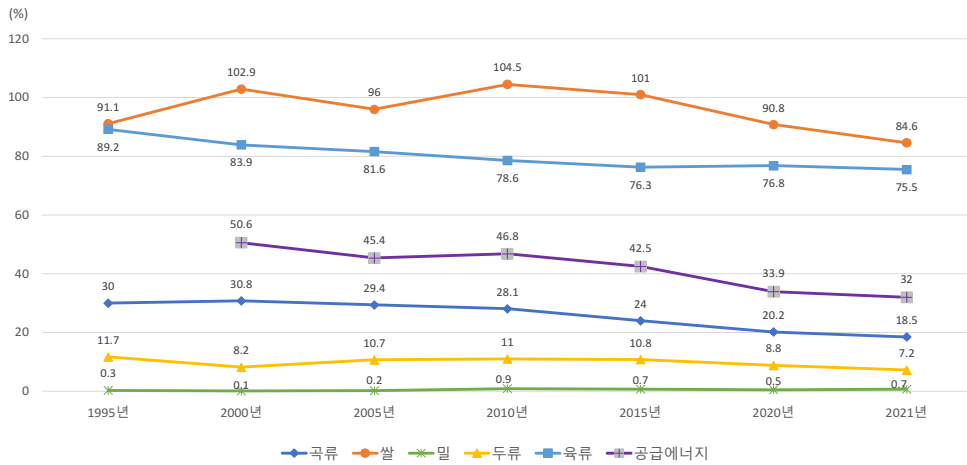
나. 주요 쟁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1월)을 통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재배면적 3만ha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기준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나타나, 실적이 저조한 상황
- 러·우 전쟁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식량자급률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곡물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곤란할 우려
 -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를 발표('23.7.17.)함에 따라 흑해 지역 국가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인 밀·옥수수 수급에 대응할 필요

* 러-우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항로인 흑해가 봉쇄되었다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러-우 간 2022년 7월 체결된 협정으로, 3차에 걸쳐 연장되었으나 4차 협상에서는 연장이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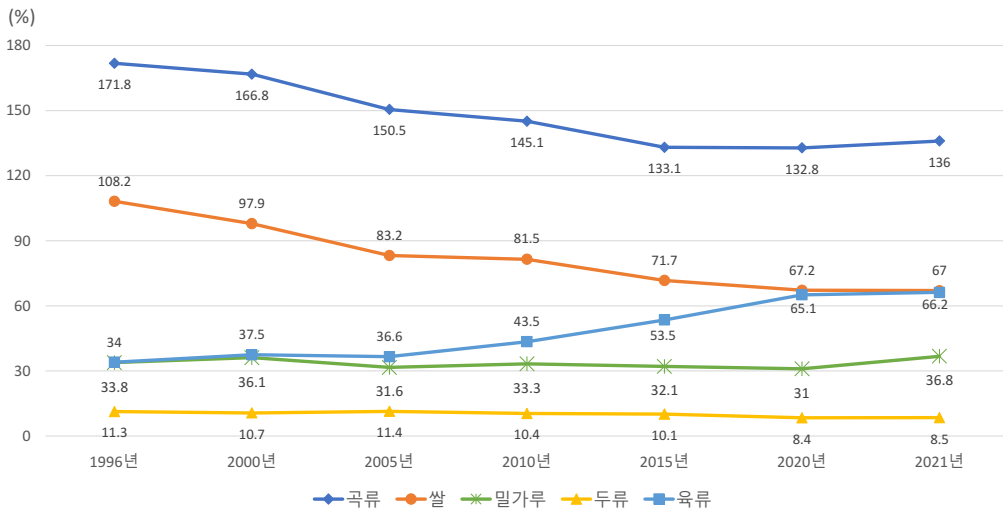
다. 관련 통계

주요식품 자급률 및 공급에너지 자급률: 1995~2021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식품수급표」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1996~2021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식품수급표」

품목별 2027년도 목표 자급률(사료용 제외)

(단위: %)

구분	전체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류 ¹⁾
목표자급률	55.5	98.0	34.6	8.0	43.5	8.2	109.5
'21년 기준 현황	44.4	84.6	33.3	1.1	23.7	4.2	104.0

주: 1) 감자나 고구마 등의 작물로서 덩이줄기나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작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2022.12.2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2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대비 실적

(단위: ha, %, 천톤)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재배면적	5,22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급률	1.0	1.7	2.5	3.3	4.2	5.0
	생산량	21	40	60	80	100	120
실적	재배면적	5,224	6,224	8,259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0.11월

통계청, 「2022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2.6월

60

최근 미국경제 상황과 정책금리 전망

가. 현황¹⁾

- 최근 미국경제는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고용여건과 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 2023년 1/4분기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2.2%와 2.4%(전기비, 연율)로 시장의 우려와 달리 견실한 성장세 지속
 - 통화 긴축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민간투자 등 내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 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과 통화 긴축 지속 등에 힘입어 안정세
 - 지난 2022년 3월 이후 2023년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동기간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5.25%p(0.00~0.25%→5.25~5.50%) 인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월 전년동월대비 6.3%에서 6월 3.0%까지 하락

나. 주요 쟁점

-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종료 시점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 미 연준의 2023년 6월 정책금리 예상 경로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1회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
 - 통화 긴축 기조 지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3월에는 SVB 은행 파산 등으로 은행위기가 발생하는 등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중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짐
- 한·미 간 정책금리 차 확대에 따른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수출입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 올 하반기에 미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물가와 실물지표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미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에 미

칠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 필요

다. 관련 통계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단위: %, 만명)

	2020	2021	2022					2023	
			연중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8	5.9	2.1	-1.6	-0.6	3.2	2.6	2.0	2.4
-개인소비	-3.0	8.3	2.7	1.3	2.0	2.3	1.0	4.2	1.6
-민간투자	-5.3	9.0	4.0	5.4	-14.1	-9.6	4.5	-11.9	5.7
-수출	-13.2	6.1	7.1	-4.6	13.8	14.6	-3.7	7.8	-10.8
-수입	-9.0	14.1	8.1	18.4	2.2	-7.3	-5.5	2.0	-7.8
-정부지출	2.6	0.6	-0.6	-2.3	-1.6	3.7	3.8	5.0	2.6
소비자물가(%)	1.2	4.7	8.0	8.0	8.6	8.3	7.1	5.8	4.1
실업률(%)	8.1	5.4	3.7	3.8	3.6	3.6	3.6	3.5	3.6
비농가 취업자수	-974.3	478.6	571.0	234.3	43.3	49.3	18.3	166.0	46.7

주: 1. 실질GDP와 지출항목은 전기비 연율(%)

2.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3. 비농가 취업자수는 전기비 증감(만명)

자료: 미국 BEA, BLS

미국의 금리인상 주기와 종료 시점

	종료 시점	금리인상 기간	지속기간(개월)
제1기	1984. 9월	1983. 4~1984. 8월	16개월
제2기	1989. 7월	1987. 1~1989. 6월	29개월
제3기	1995. 3월	1994. 2~1995. 2월	12개월
제4기	2000. 6월	1999. 6~2000. 5월	11개월
제5기	2006. 7월	2004. 6~2006. 6월	24개월
제6기	2019. 1월	2015. 12~2018. 12월	36개월
제7기	-	2022. 3월~	7월 현재까지 16개월

자료: 한국은행,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미 연준의 수정경제전망: 2023년 6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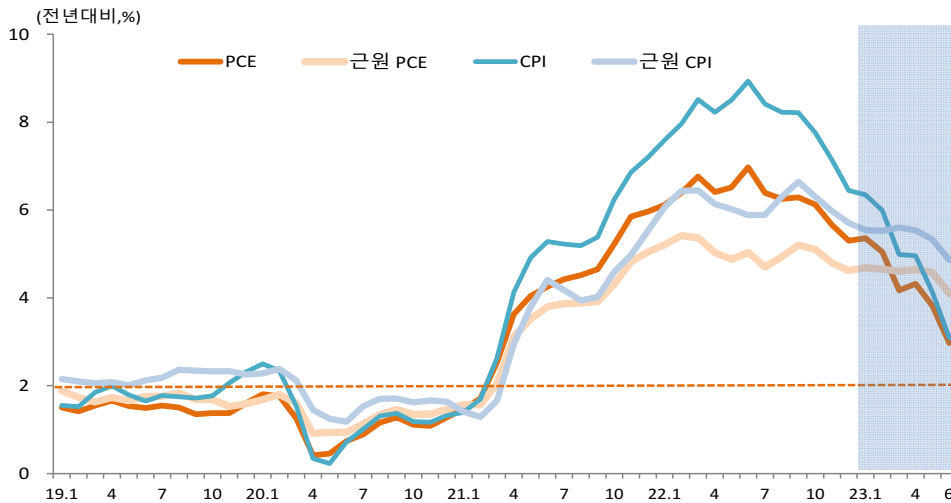
	2023	2024	2025	장기
실질GDP성장률	1.0	1.1	1.8	1.8
(2023. 3월 전망)	0.4	1.2	1.9	1.8
실업률	4.1	4.5	4.5	4.0
(2023. 3월 전망)	4.5	4.6	4.6	4.0
PCE물가상승률	3.2	2.5	2.1	2.0
(2023. 3월 전망)	3.3	2.5	2.1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3.9	2.6	2.2	
(2023. 3월 전망)	3.6	2.6	2.1	
정책금리	5.6	4.6	3.4	2.5
(2023. 3월 전망)	5.1	4.3	3.1	2.5

주: 1) 전망치는 참석자의 중간값(median)

2) 정책금리는 연말 기준

자료: 미연준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BEA, BLS

61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의 위험요인

가. 현황

- 미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2년 7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¹⁾이 발생한 이후 기준금리의 역전 폭이 확대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0%에서 2022년 7차례, 2023년 1차례 인상을 통해 3.50%로 상승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는 2022년 7차례, 2023년 4차례 인상을 통해 2021년 말 0.25%에서 2023년 8월 기준 5.50%로 상승
 -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기준금리 차이는 2022년 7월 0.25%p에서 2022년 말 1.25%p, 2023년 8월 2.00%p로 확대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 등 주요국 금융불안 등이 대두되며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
 - 2023년 7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최근까지 지속되는 상황
 - 미 연준은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2023년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

나. 주요 쟁점

- 한·미 간 기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될 우려
 -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확대는 우리나라 채권수요를 약화시켜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주가에는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또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확대는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원화가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박승호 경제분석관 (02-6788-4671)

1)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것을 의미

■ 한·미 간 금리역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금융시장의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미 간 금리역전의 확대가 미·중 간 갈등 양상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또한 한국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다. 관련 통계

주요 금리 추이: 2013~2023년

(단위: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기준금리	2.50	2.00	1.50	1.25	1.50	1.75	1.25	0.50	1.00	3.25	3.50
미국 기준금리	0.25	0.25	0.50	0.75	1.50	2.50	1.75	0.25	0.25	4.50	5.50
기준금리 차이	2.25	1.75	1.00	0.50	0.00	-0.75	-0.50	0.25	0.75	-1.25	-2.00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3.28	3.18	2.30	1.75	2.28	2.50	1.70	1.50	2.07	3.37	3.47
미국 국채(10년) 금리	3.03	2.17	2.27	2.44	2.41	2.68	1.92	0.91	1.51	3.88	3.68
국채금리 차이	0.25	1.01	0.03	-0.70	-0.12	-0.18	-0.22	0.59	0.56	-0.51	-0.20

주: 1) 기준금리는 연말 금리를 나타내며, 2023년은 7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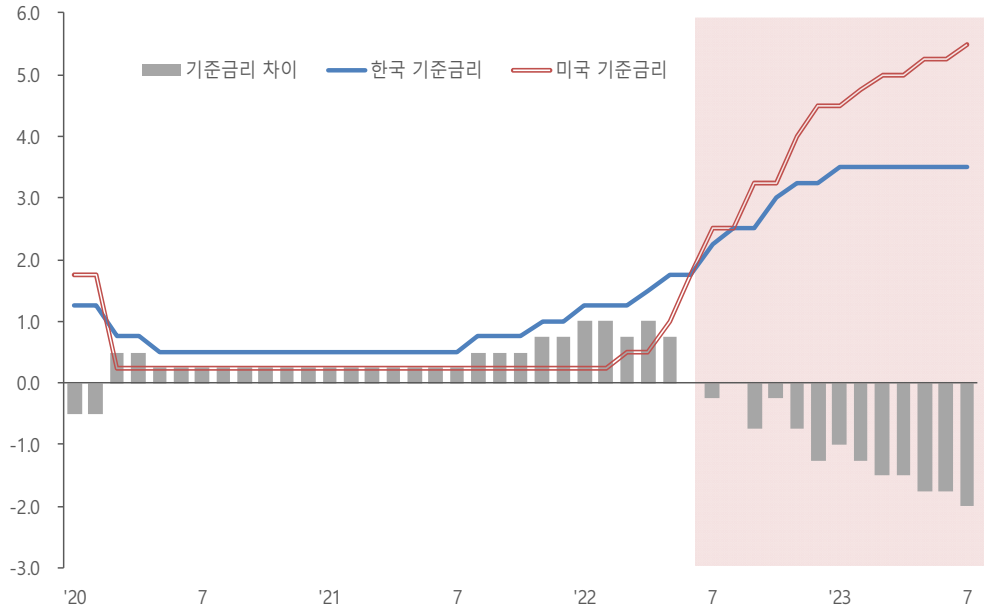
2) 시장금리는 연평균 금리를 나타내며, 2023년은 1~7월 평균

3) 금리차이는 한국 금리(기준금리, 국채금리)에서 미국 금리(기준금리, 국채금리)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미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 차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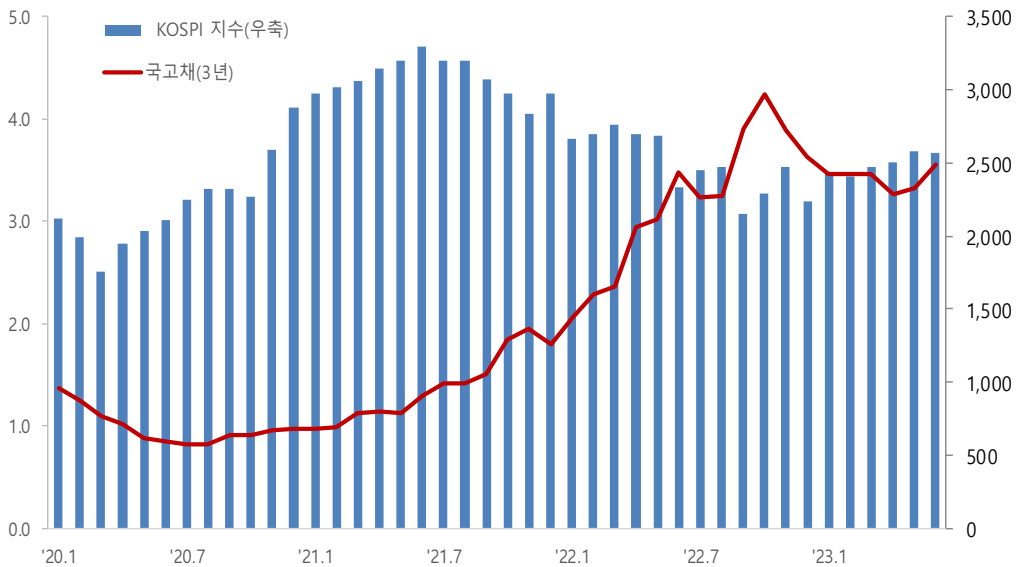
(단위: %, %p)



주: 기준금리 차이는 한국 기준금리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한국은행 및 Bloomberg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고채 금리와 주가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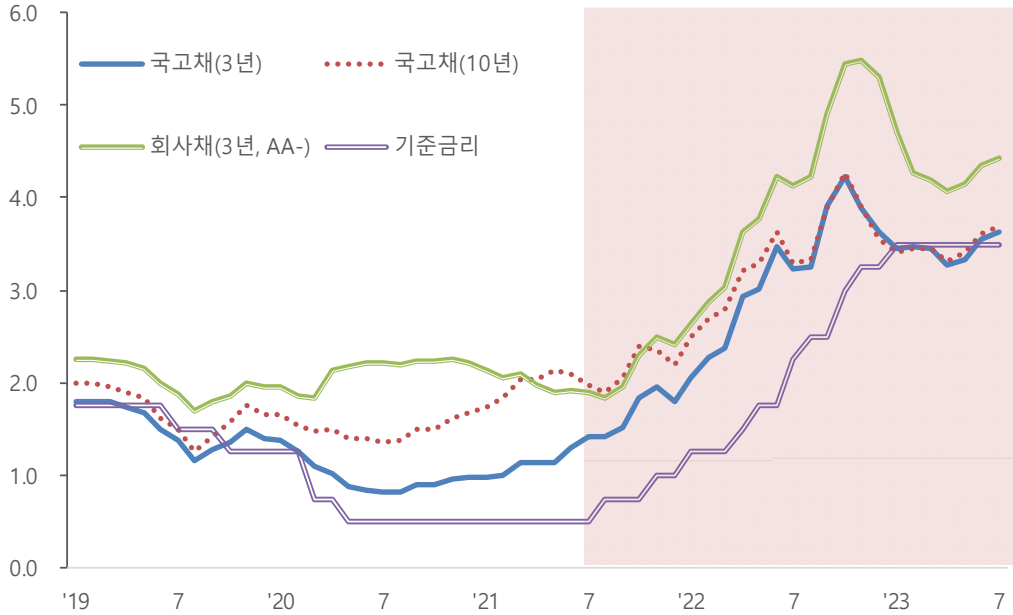
(단위: %, pt.)



자료: 한국은행 및 Fnguide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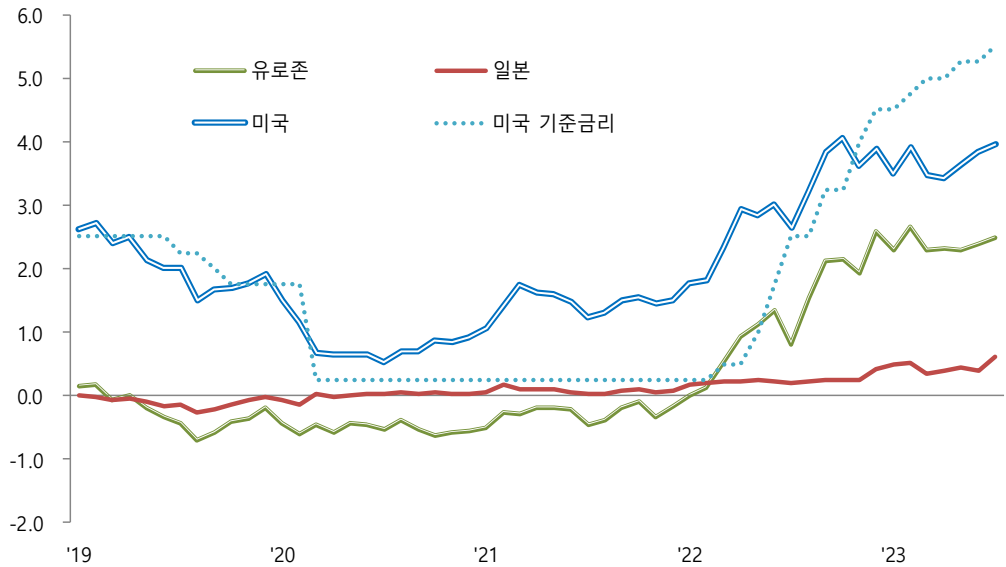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 국채금리 동향

(단위: %)



자료: Bloomberg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최근 소비와 수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여 진정 국면에 진입하였지만, 4월과 5월의 소비와 수출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2.3%, 15.2% 감소하여 부진한 경기 흐름이 지속
 - KDI와 한국은행은 2023년 하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2.1%와 1.8%로 수정하여 연초 전망치에 비해 각각 0.3%p, 0.2%p 하향
 - 기획재정부는 2023년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1.4%로 수정하여 당초에 비해 0.2%p 하향
 - IMF는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4월 기준 1.7%에서 7월 기준 1.4%로 0.3%p 하향
- 정부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지역경제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하반기 경기에 대응할 계획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
 - 하반기 경기둔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달성을 위해 ①거시·금융관리 강화, ②수출투자촉진, ③지역경제 활력 제고, ④내수 활성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

나. 주요 쟁점

- 경기대응을 위해 연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물가상승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경기가 호황일 때, 재정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재정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반면, 하반기 경기대응 혹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는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주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2023년 전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추경편성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다. 관련 통계

주요 기관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단위: %)

	2022년 연간 전망	2023년 1차 전망			2023년 2차(수정)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KDI	1.8	1.1	2.4	1.8	0.9	2.1	1.5
한국은행	1.7	1.1	2.0	1.6	0.8	1.8	1.4
기획재정부	1.6	-	-	1.6	-	-	1.4
IMF	2.0	-	-	1.7	-	-	1.4
OECD	1.8	-	-	1.6	-	-	1.5

- 주: 1. KDI 1차 전망은 2023년 3월 전망치이며, 2차 전망은 2023년 5월 전망치임
 2. 한국은행 1차 전망은 2023년 2월 전망치이며, 2차 전망은 2023년 5월 전망치임
 3. 기획재정부의 1차 전망은 2023년 1월 전망치이며, 2차 전망은 2023년 7월 전망치임
 4. IMF의 1차 전망은 2023년 1월 전망치이며, 2차 전망치는 2023년 7월 전망치임
 5. OECD의 1차 전망은 2023년 3월 전망치이며, 2차 전망치는 2023년 6월 전망치임

자료: 각 기관 전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MF가 평가한 G7 선진국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이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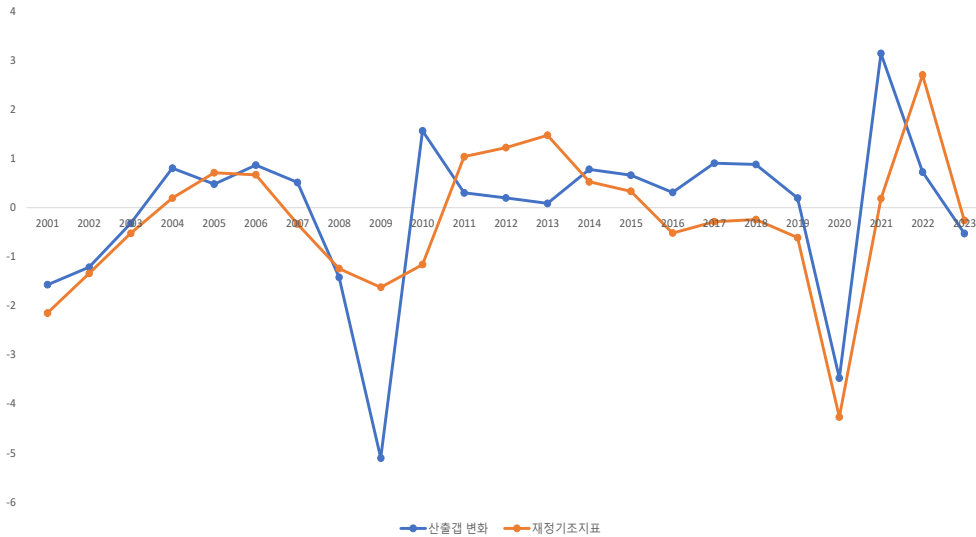
(단위: %p)

연도	경기국면		재정기조		재정기조 적절성 평가
	산출갭 변화	경기	재정기조지표(FIS)	재정기조	
2001	-1.57	하강	-2.15	확장	O
2002	-1.21	하강	-1.34	확장	O
2003	-0.32	하강	-0.52	확장	O
2004	0.81	상승	0.20	긴축	O
2005	0.48	상승	0.71	긴축	O
2006	0.87	상승	0.67	긴축	O
2007	0.52	상승	-0.33	확장	X
2008	-1.42	하강	-1.24	확장	O
2009	-5.11	하강	-1.62	확장	O
2010	1.57	상승	-1.16	확장	O
2011	0.30	상승	1.04	긴축	O
2012	0.20	상승	1.23	긴축	O
2013	0.09	상승	1.48	긴축	O
2014	0.78	상승	0.53	긴축	O
2015	0.66	상승	0.33	긴축	O
2016	0.31	상승	-0.52	확장	X
2017	0.91	상승	-0.29	확장	X
2018	0.88	상승	-0.24	확장	X
2019	0.20	상승	-0.61	확장	X
2020	-3.47	하강	-4.27	확장	O
2021	3.15	상승	0.19	긴축	O
2022	0.73	상승	2.71	긴축	O
2023	-0.52	하강	-0.26	확장	O

- 주: 1. 산출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이며, 산출갭 변화는 GDP 대비 산출갭 비중의 변화분을 의미, 산출갭 변화가 양(+)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상승(호황) 국면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하강(불황) 국면을 의미
2. 재정기조지표는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중의 변화를 의미하며, FIS가 양(+)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
3. 재정기조 적절성 평가는 경기상승(호황) 국면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경기하강(불황)국면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절한 재정운영임을 평가하는 것으로 산출갭 변화와 재정기조지표가 같은 부호일 경우 재정운영이 적절하다고 평가
4. 2021년까지는 실적치 자료이며, 2022~2023년은 IMF가 자체 추정한 추정치임
- 자료: IMF(2023.4), 「Fiscal Monitor」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G7 선진국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이

(단위: %p)



- 주: 1. 산출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이며, 산출갭 변화는 GDP 대비 산출갭 비중의 변화분을 의미, 산출갭 변화가 양(+)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상승(호황) 국면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하강(불황) 국면을 의미
2. 재정기조지표는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중의 변화를 의미하며, FIS가 양(+)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
3. 2021년까지는 실적치 자료이며, 2022~2023년은 IMF가 자체 추정한 추정치임
- 자료: IMF(2023.4), 「Fiscal Monitor」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MF가 평가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이와 평가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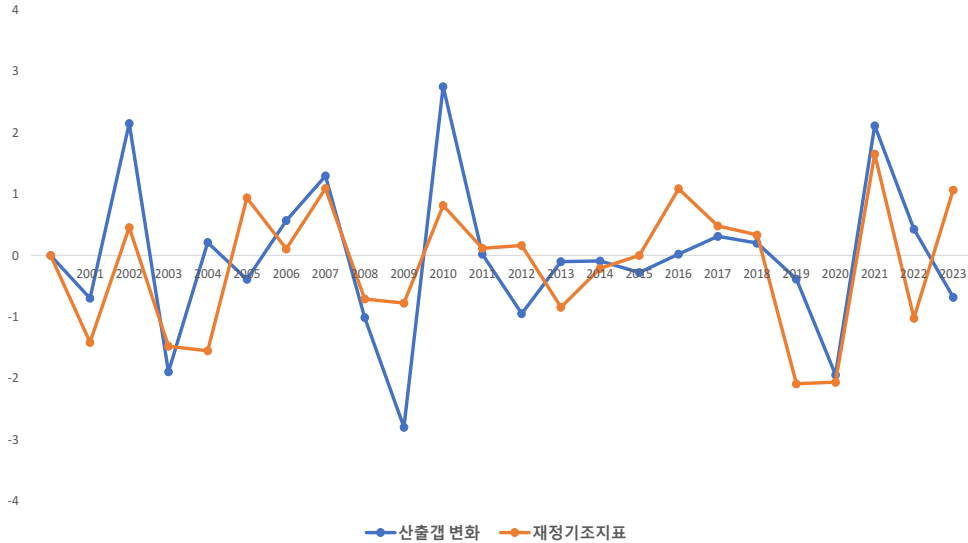
연도	경기국면		재정기조		재정기조 적절성 평가
	산출갭 변화	경기	재정기조지표(FIS)	재정기조	
2001	-0.697	하강	-1.416	확장	O
2002	2.151	상승	0.455	긴축	O
2003	-1.896	하강	-1.477	확장	O
2004	0.212	상승	-1.552	확장	X
2005	-0.388	하강	0.939	긴축	X
2006	0.569	상승	0.107	긴축	O
2007	1.296	상승	1.092	긴축	O
2008	-1.012	하강	-0.708	확장	O
2009	-2.797	하강	-0.775	확장	O
2010	2.751	상승	0.815	긴축	O
2011	0.021	상승	0.118	긴축	O
2012	-0.948	하강	0.163	긴축	X
2013	-0.1	하강	-0.844	확장	O
2014	-0.089	하강	-0.211	확장	O
2015	-0.277	하강	0.002	긴축	X
2016	0.023	상승	1.087	긴축	O
2017	0.312	상승	0.482	긴축	O
2018	0.202	상승	0.335	긴축	O
2019	-0.385	하강	-2.091	확장	O
2020	-1.942	하강	-2.064	확장	O
2021	2.115	상승	1.651	긴축	O
2022	0.428	상승	-1.022	확장	O
2023	-0.68	하강	1.066	긴축	X

- 주: 1. 산출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이며, 산출갭 변화는 GDP 대비 산출갭 비중의 변화분을 의미, 산출갭 변화가 양(+)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상승(호황) 국면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하강(불황) 국면을 의미
2. 재정기조지표는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중의 변화를 의미하며, FIS가 양(+)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
3. 재정기조 적절성 평가는 경기상승(호황) 국면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경기하강(불황)국면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절한 재정운영임을 평가하는 것으로 산출갭 변화와 재정기조지표가 같은 부호일 경우 재정운영이 적절하다고 평가
4. 2021년까지는 실적치 자료이며, 2022~2023년은 IMF가 자체 추정한 추정치임

자료: IMF(2023.4), 「Fiscal Monitor」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이

(단위: %p)



- 주: 1. 산출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이며, 산출갭 변화는 GDP 대비 산출갭 비중의 변화분을 의미, 산출갭 변화가 양(+)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상승(호황) 국면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연도 대비 경기하강(불황) 국면을 의미
2. 재정기조지표는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중의 변화를 의미하며, FIS가 양(+)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이전 연도에 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
3. 2021년까지는 실적치 자료이며, 2022~2023년은 IMF가 자체 추정한 추정치임
- 자료: IMF(2023.4), 「Fiscal Monitor」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3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의미
 -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이 존재하며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음
 -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등이 포함되며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당
- 소수의 임금근로자만이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절대다수는 2차 노동시장에 포함
 - 1차 노동시장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11.9%인 반면, 2차 노동시장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종사자는 88.1%
 - 2010년 1차 노동시장에 포함된 임금근로자 비중은 9.6%였다는 점에서 지난 10여년간 1차 노동시장의 규모는 소폭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가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음
 - 또한, 동기간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규모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나. 주요 쟁점

-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¹⁾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종합

유근식 경제분석관 (02-6788-4753)

1) 상생임금위원회는 2023년 3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논의체로 정부 및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까지 관련 대책은 발표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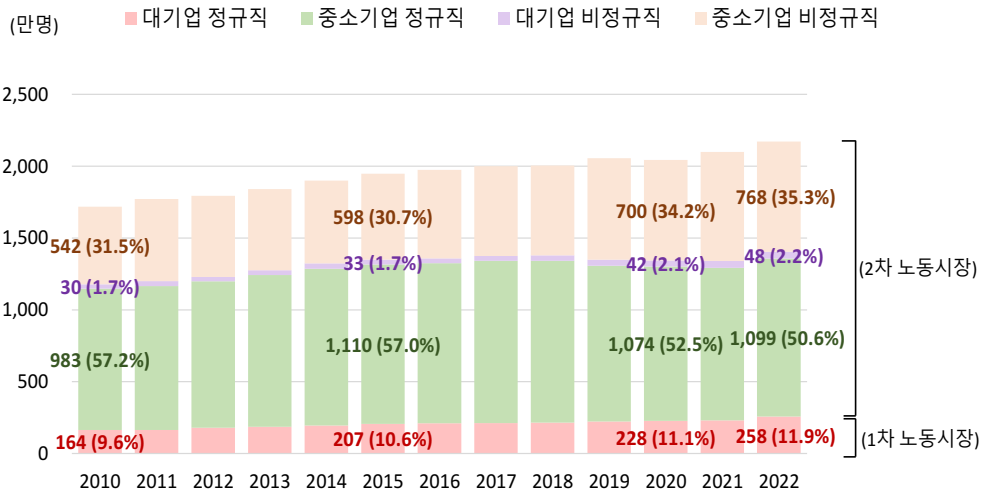
- 또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²⁾ 또한 상반기 중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

-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다방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다. 관련 통계

종사상지위·규모별 임금근로자 수 및 비중



주: 1차 노동시장은 종사자규모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으로 정의하였고, 2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종사자로 정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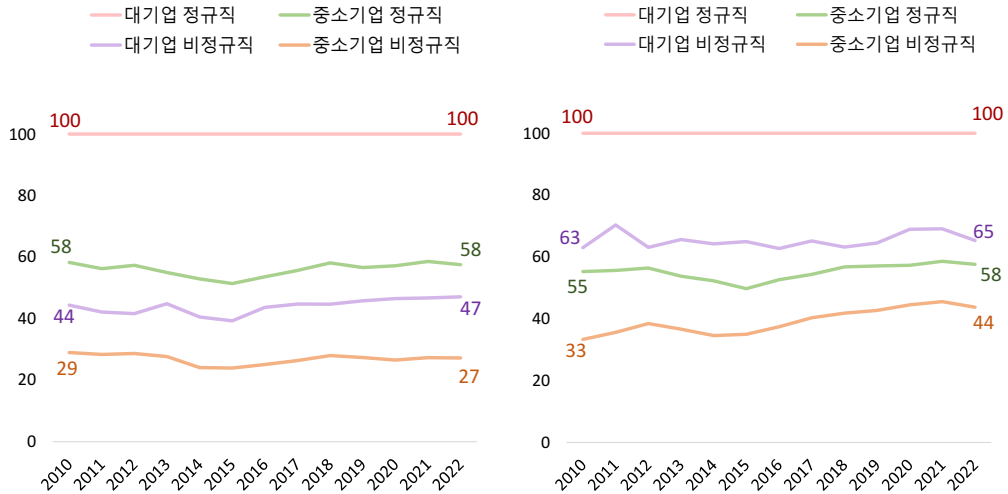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2023년 2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근로기준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족한 경사노위 소속의 연구회로,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 구성

종사상지위·규모별 상대임금

(대기업 정규직 = 100)

[월 총임금]

[시간당 임금]



주: 1. 종사자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

2.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설정한 상대임금을 제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종사상지위·규모별 사회보험 적용률 및 노동조합 가입률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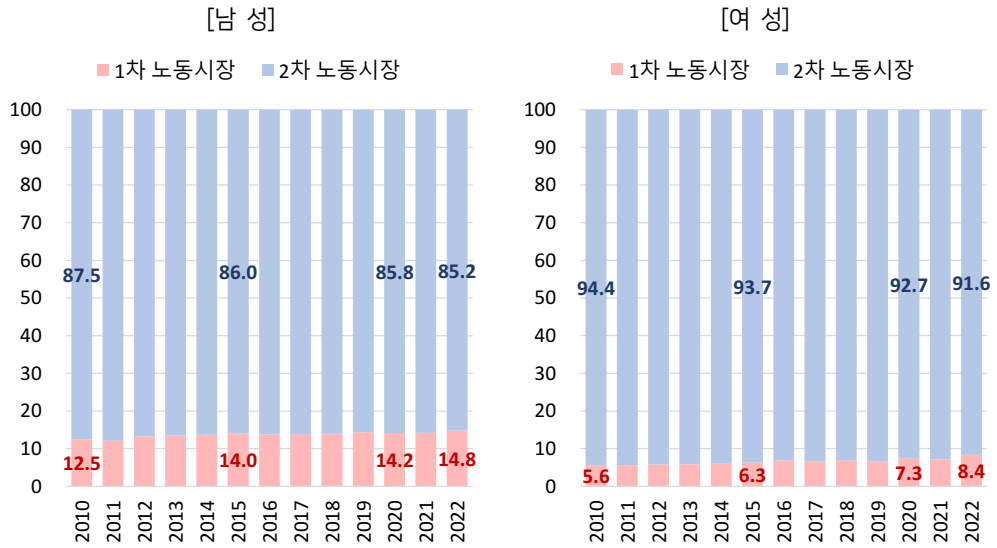
(단위: %)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보험	95.4	94.4	98.7	79.0
건강보험	99.9	98.4	98.2	67.9
국민연금	99.0	98.4	97.5	64.4
산재보험	99.7	97.8	99.9	98.2
상여금	88.3	57.8	48.1	21.8
노조가입률	36.9	9.3	1.7	0.6

주: 종사자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성별 1·2차 노동시장 근로자 비중



주: 1차 노동시장은 종사자규모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으로 정의하였고, 2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종사자로 정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가. 현황

- UN 해비타트(HABITAT·인간정주계획)에 따르면 이민(Immigration)은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나, 일반적인 이민정책의 대상자는 영주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 국내 거주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외국인, 난민까지 포함

-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른 이민자는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의 귀화허가자'이며,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와 단기불법체류자는 제외

외국인	22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0만 2천명 *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계 외국인이 전체 상주 외국인의 약 90%를 차지 *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유학생 순으로 높은 비중
귀화 허가자	22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국내 상주 귀화허가자는 5만 2천명 * 귀화 이전 국적은 주로 베트남(40.8%), 한국계중국(33.0%)

-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등을 중심으로 한 비숙련 노동인력의 유입이 확장되었다면, 2010년 이후 정주형 이민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2월 현재 약 82만명으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약 41만명)의 두 배에 달함

- 독일은 방문노동자들의 정주에 이민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늦었으나, 최근 숙련 노동자 도입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민 수용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이민정책을 시행

- 정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¹⁾'을 운영 중으로, 2023년에는 132개 지자체에 40,647명 배정

유민호 예산분석관 (02-6788-4643)

이소연 경제분석관 (02-6788-4752)

1)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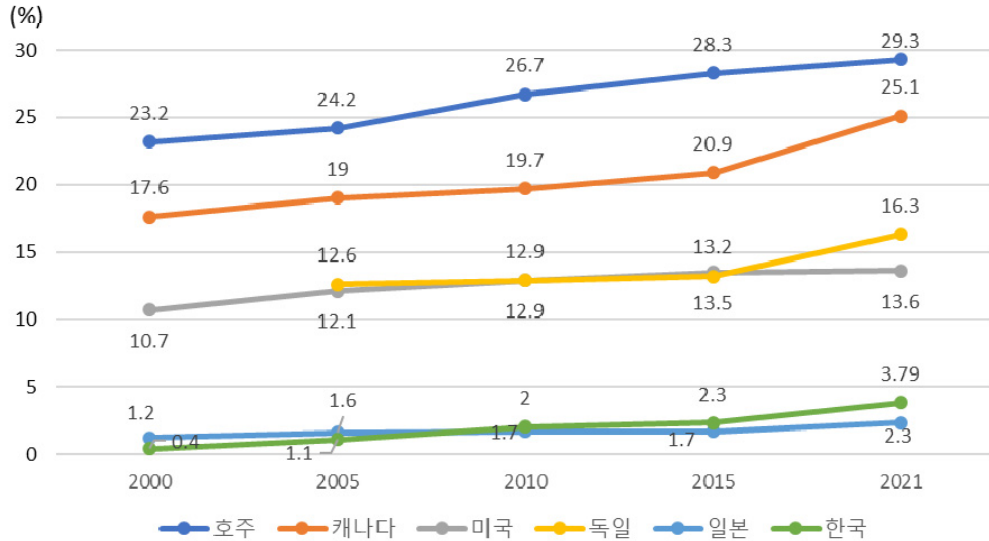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약화, 연금·의료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확보 및 기피업종의 노동력 수급 등을 위한 이민정책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제기
 -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반면,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高위험·低임금 업종에서 내국인 비중 감소 및 외국인 대체 경향 심화
 - 정부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2022.8.)을 통해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비전문인력, E-9) 쿼터 확대 및 신속 입국,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발표
- 한편, 이민자 비중이 높은 미국(13.6%), 캐나다(23%), 호주(29.3%)는 전통적 이민국가로서 사회 통합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은 국경지역의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였으나,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한 정책변화 중이고, 2022년 미국이민국은 합법적 이민 시스템과 귀화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이민 장벽 감소를 정책 목표로 두고²⁾ 비자정책 등을 통해 전문성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취업을 유도
 - 캐나다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민자 유입은 캐나다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³⁾로 보고 이민정책을 지원
 -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과거 유색인종을 배척했던 정책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
- 단기·비숙련 인력보다는 숙련 근로자, 우수 인재 및 정주형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

2)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2

3) 캐나다 연방이민국(IRCC), 2022 이민에 관한 의회 연례보고서, 2022

다. 관련 통계

OECD 주요 국가의 이민자 비율: 200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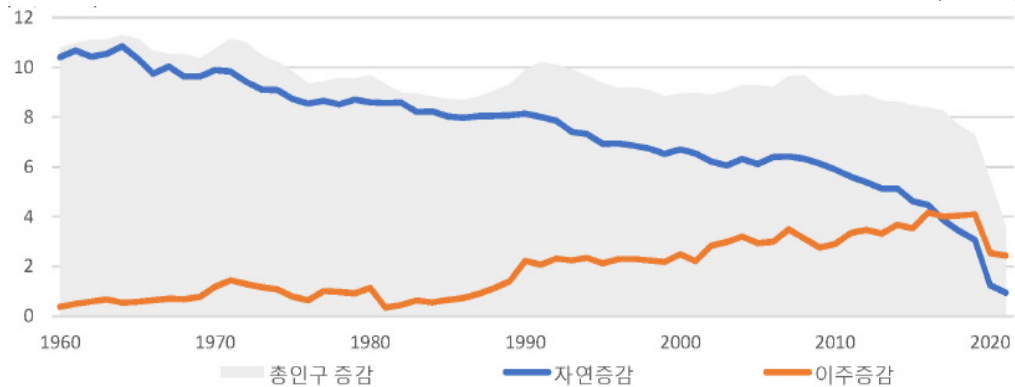


- 주: 1. 이민자 비율은 거주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수
 2. 독일, 일본,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거주 허가를 가지고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3. 미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 인구 통계값은 외국국적자(외국인)과 귀화한 내국인(귀화자)를 포함한 해외 출생인구를 포함

자료: OECD, 각국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국가의 인구증가 구성요소: 1960~2020년

(단위: %)



자료: UN 인구추계(202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외인구 유입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출산율 감소에 따른효과	△0.4	△0.2	△1.1	△3.0	△5.0
경제활동인구의 5%를 해외인구로 유입	-	2.1	0.7	△1.7	△3.7
유입된 해외 인구가 정주형 이민으로 전환	-	2.1	1.7	△0.6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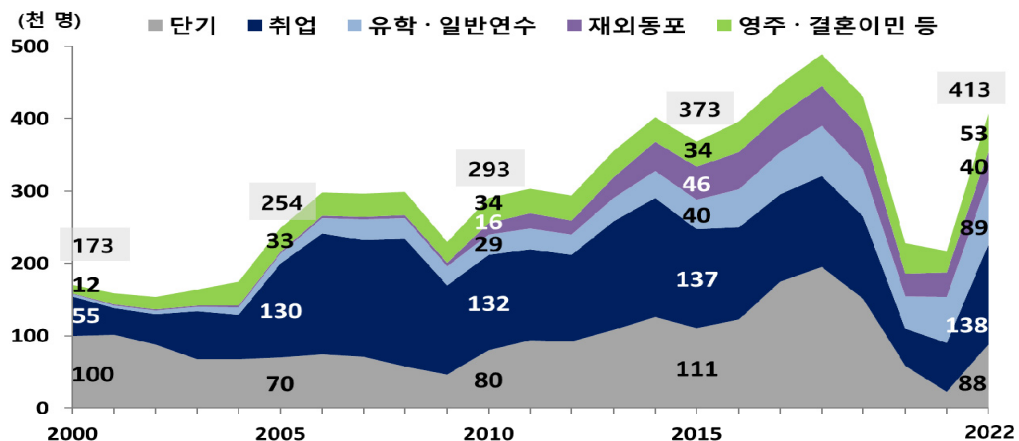
연도별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규모

(단위: 천명)

구 분	2011	2015	2019	2021
취업 체류자격	전문인력(E-1~E-7)	47,774	48,607	46,581
	단순기능인력(E-8~E-10, H-2)	547,324	576,522	520,680
	소계	595,098	625,129	567,261
정주형 체류자격	거주(F-2)	138,418	38,881	43,403
	재외동포(F-4)	136,702	328,187	478,442
	영주(F-5)	64,979	123,255	153,038
	결혼이민(F-6)	-	128,879	134,285
	소계	340,099	619,202	823,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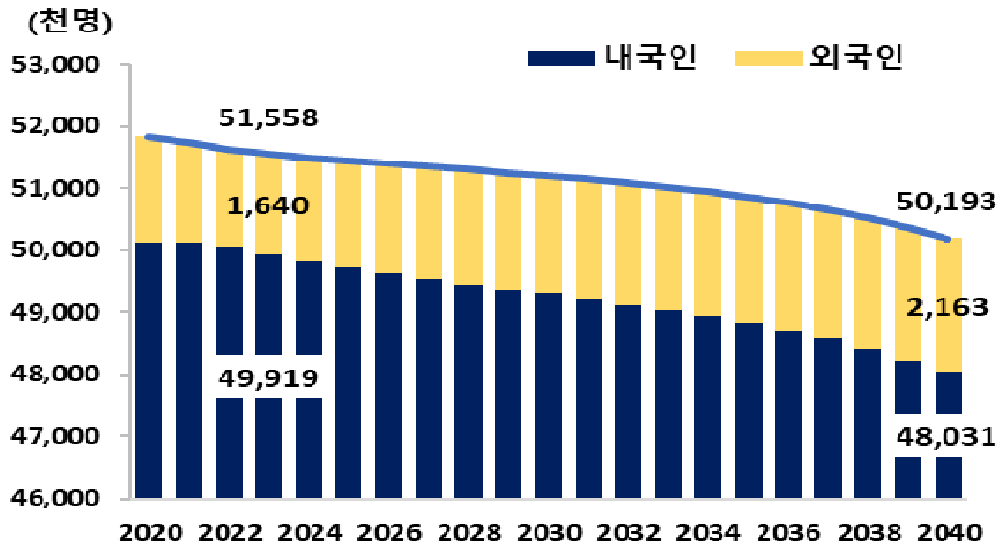
자료: 이민정책연구원,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국적 연계 강화 방안」, 2p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연도 12월. 통계월보. 재구성’ 자료를 재인용

외국인 입국 체류자격별 추이: 200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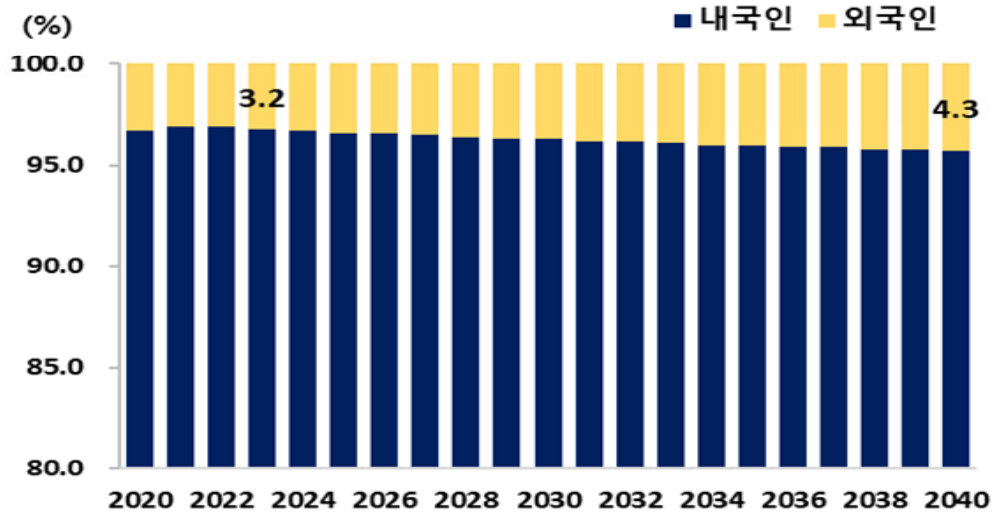
주: 합계는 기타체류자격을 포함한 수치
자료: 통계청,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내·외국인 인구수 전망



자료: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내·외국인 인구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성별·국적별 외국인 상주인구

(단위: 천명, %)

구 분	상주인구	아시아	아시아 이외				아시아 이외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2021. 5. (구성비)	1,331.8 (100.0)	1,198.6 (90.0)	511.4 (38.4)	126.7 (9.5)	175.6 (13.2)	384.9 (28.9)	133.1 (10.0)
남자 (구성비)	740.6 (100.0)	672.2 (90.8)	272.9 (36.8)	47.8 (6.5)	85.5 (11.5)	266.1 (35.9)	68.4 (9.2)
여자 (구성비)	591.2 (100.0)	526.4 (89.0)	238.6 (40.4)	79.0 (13.4)	90.1 (15.2)	118.8 (20.1)	64.8 (11.0)
2022. 5. (구성비)	1,301.9 (100.0)	1,169.5 (89.8)	478.8 (36.8)	129.9 (10.0)	169.0 (13.0)	391.8 (30.1)	132.4 (10.2)
남자 (구성비)	717.3 (100.0)	653.3 (91.1)	256.5 (35.8)	48.0 (6.7)	83.6 (11.7)	265.2 (37.0)	64.1 (8.9)
여자 (구성비)	584.6 (100.0)	516.2 (88.3)	222.3 (38.0)	81.9 (14.0)	85.4 (14.6)	126.6 (21.7)	68.3 (11.7)
전년대비증감	△29.9	△29.1	△32.6	3.2	△6.6	6.9	△0.7
증감률	△2.2	△2.4	△6.4	2.5	△3.8	1.8	△0.5

자료: 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단위: 천명, %)

구 분	상주 인구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7)	유학생 (D-2, D-4·1·7)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기타
2021.5.	1,331.8	216.6	122.8	40.0	143.4	380.0	128.4	127.0	173.5
2022.5. (구성비)	1,301.9 (100.0)	209.5 (16.1)	96.5 (7.4)	41.7 (3.2)	162.6 (12.5)	374.3 (28.8)	129.6 (10.0)	122.7 (9.4)	165.0 (12.7)
전년대비 증감	△29.9	△7.1	△26.3	1.7	19.2	△5.7	1.2	△4.3	△8.5
증감률	△2.2	△3.3	△21.4	4.3	13.4	△1.5	0.9	△3.4	△4.9

자료: 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외국인 밀집지역: 광역자치단체 수준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충남	서울, 인천	경남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충북	경북, 전남, 전북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준

구 분	인구 대비 10%이상(11)	인구 대비 5% 이상(46)	인구 대비 3% 이상(16)	인구 대비 3% 미만(13)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7)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8)	금천구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김포시, 부평구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 (50)	안성시, 포천시, 음성군, 서울 중구, 인천군	김해시, 관악구, 광산구, 연수구, 동대문구, 광진구, 광주시, 오산시, 경주시, 용산구, 서대문구, 경산시, 양주시, 이천시, 종로구, 울주군, 서귀포시, 당진시	군포시, 제주시, 거제시, 동작구, 미추홀구, 성동구, 남동구, 인천 서구, 파주시, 마포구, 군산시, 달성군, 성북구, 양산시, 청주시	달서구, 유성구, 안양시, 창원시, 전주시, 고양시, 포항시, 서울 강서구, 의정부시, 강남구, 남양주시, 송파구
외국인주민수 1만명 미만 (21)	영암군	논산시, 통영시, 여주시, 칠곡군, 완주군, 동두천시, 보령시, 영천시, 함안군, 예산군, 창녕군, 금산군, 완도군, 성주군, 부산 중구, 고령군, 진도군, 장성군, 고성군, 의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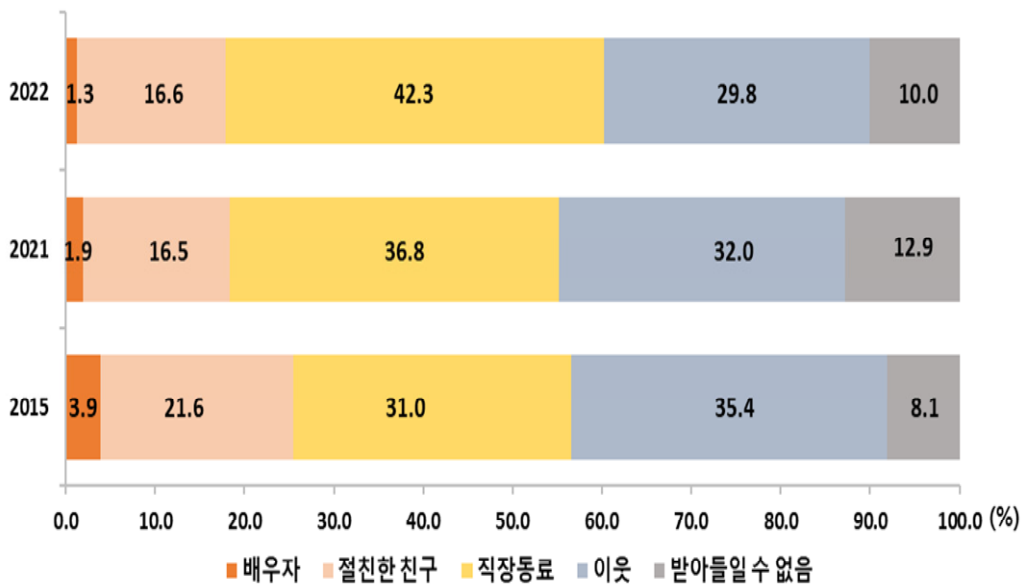
주: 순서 배열기준 (1) 외국인주민수, (2) 인구 대비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요 국가들의 의회 내 이민정책 담당 기구

국가	의회 내 이민정책 담당 기구
미국	이민 난민과 국경 안보 소위원회 (상원 사법위원회 내 8개 소위원회 중 하나) 이민 건전성 안보 및 집행 위원회(하원 사법위원회 내 6개 소위원회 중 하나)
캐나다	시민권 이민 상임위원회(하원)
호주	상화원 상임 이민정책 검토위원회(상화원 합동위원회)
유럽연합(EU)	이주 난민 실태인 위원회(EU 회의)
덴마크	이민과 통합 위원회 귀화 위원회(덴마크 의회)
독일	이민 난민 정책 담당하는 내무자치위원회(연방하원)

자료: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가능성



주: 5개 항목(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1개 항목 선택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65

청년 고용 현황과 과제

가. 현황

- 청년층 고용은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 청년층(15~29세) 고용률¹⁾은 2015년 41.2%에서 2022년 46.6%로 상승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46.5%로 높은 수준 지속
 - 2015년 9.1%였던 청년실업률²⁾은 2016~2017년 9.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6.4%, 2023년 상반기에는 5.9%까지 낮아짐
- 다만,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
 -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이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상승하였고, 동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³⁾은 16.9%에서 23.2%로 상승
 -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도 1년 이하 단기 계약직 비중은 2015년 21.0%에서 2023년 29.6%로 상승하였고, 시간제 비중은 13.9%에서 21.9%로 상승
- 청년 중 별다른 활동 없이 “쉬었음”으로 응답한 NEET⁴⁾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청년층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 비중은 2015년 3.3%(30.7만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5만명)로 상승⁵⁾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근식 경제분석관 (02-6788-4753)

- 1)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냄
- 2)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노동시간은 조사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등 특정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이에 본고에서는 조사 항목 중 “평소 36시간 미만 일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여 그 비율을 제시하였음
- 4)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무직상태이면서 학업을 하고 있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있지 않은 청년을 지칭하며, 본고에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NEET로 정의하여 그 수를 파악하였음
- 5) 청년층(15~29세)과 30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2022년 기준 비구직 NEET는 65만명에 달함

나. 주요 쟁점

- 청년 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특정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가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발적 현상인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변화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 생산연령인구⁶⁾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50년에는 현재의 6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희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2023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 NEET의 약 37%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약 94%에 달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편입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강화, 일경험 제공 등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⁷⁾

6) 15~64세 인구를 나타내며, 한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노동공급 및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7)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청년 도전지원사업 대상을 NEET 위험군까지 확대하고(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NEET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힘(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다만, 2023년 기준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 도전지원사업의 지원인원이 8천명에 불과하여 현재 NEET의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

다. 관련 통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분야 과제 수 및 예산

(단위: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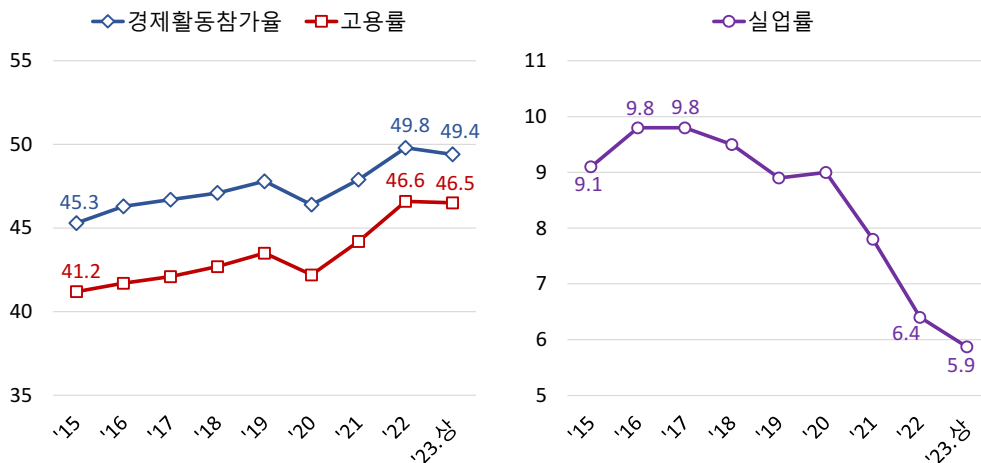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일자리	115	82,197	148	77,496	146	58,344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57	63,490	70	56,580	66	34,245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0	12,052	56	12,428	61	15,047
3.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9	6,630	12	8,312	10	8,960
4. 일터 안전망 강화	9	26	10	176	9	93

- 주: 1. 청년예산은 청년정책 과제 전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을,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 수혜자 중 청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작성
 2.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바탕이 되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여, 고용통계의 청년층(15~29세)과 연령구분에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을 재인용⁸⁾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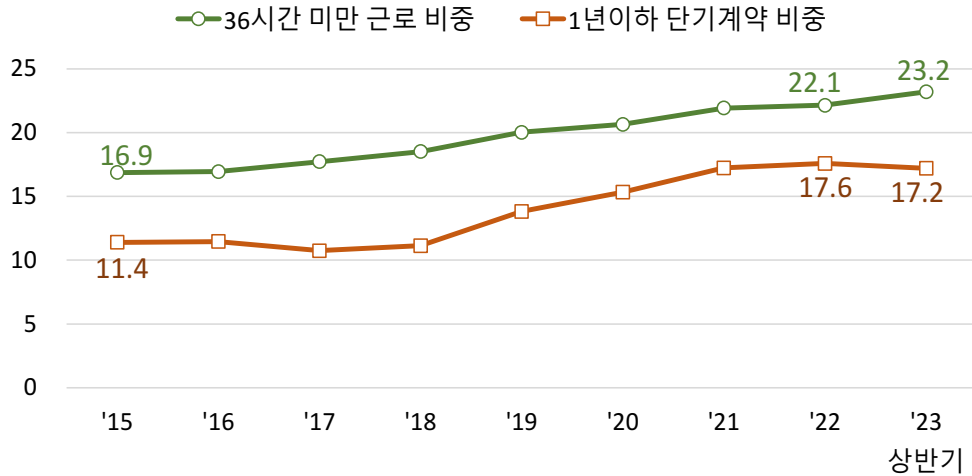
주: 2023년은 상반기(1~6월)의 계절조정 수치를 제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2)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결산분석 시리즈, 2023

청년층(15~29세) 단기 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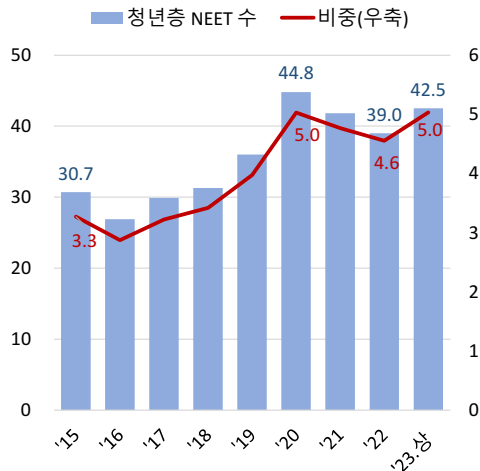


주: 36시간 미만 근로여부는 조사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평소 36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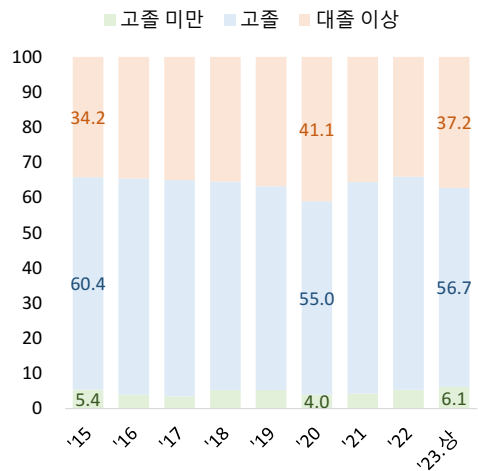
청년층 NEET 수 및 비중

(단위: 만명, %)



청년층 학력별 NEET 비중

(단위: %)



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NEET로 정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정부는 2023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조 5,018억원의 재정 투입 계획
 -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으로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도입되어 현재 총 6개 부처 9개 사업 운영중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규모는 2019년 1조 2,189억원에서 2020년 1조 5,438억원, 2021년 1조 7,709억원, 2022년 1조 9,557억원으로 매년 확대
 - 지원 방식은 사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청년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납입하여 만기시 수령하게 하는 구조
 - 2023년 6월 출시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고 시중은행의 우대금리와 정부지원금 및 이자비과세 혜택 적용시 만기 최대 5천만원 수령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7월 31일 기준 25.3만명 가입
- 지원 대상과 목적은 사업별로 상이
 -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각각 연소득 7,5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
 -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의무 이행자의 전역시 목돈 마련이 목적
 -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2022년 일몰)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 유도가 목적으로,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는 정부 지원금을 적립하여 탈수급 성공시 지급
 -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 청년 대상이며,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두터운 지원(만기시 정부 지원금 1,440만원 수령)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가 목적으로, 만기까지 근속 유지시 지원금 지급

나. 주요 쟁점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 쟁점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최고 연 10%의 이자 혜택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289.6만 명 중 23.7%인 68.5만 명이 2023년 5월까지 중도 해지¹⁾
 - 단, 2022년 기준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해지율이 52.7%²⁾임을 고려하면 청년 희망적금 해지율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는 5년으로, 결혼 등 목돈 사용처가 많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최고 금리 6% 상품은 카드 사용실적 등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불리한 측면
 -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준(총급여 6,000만원)을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원)에 비해 완화하면서,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 비해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다. 관련 통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367,801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47,550	360,168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병내일준비지원				219,009	658,421
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귀준비금				30,301	86,557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구 청년저축계좌)		7,321	27,854	66,897	175,477
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19,034	15,688	12,383	7,119	6,690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02,712	238,858	314,401	274,984	206,366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573,975	778,704	917,702	875,468	429,586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23,157	503,268	498,576	434,414	210,693
계		1,218,878	1,543,839	1,770,916	1,955,742	2,501,759

주: 1.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 이전 연도는 추경 포함

2. 주택정책에 해당하는 청약저축 사업과 정부의 매칭 기여금이 없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사업은 제외
자료: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조세일보, 「청년희망적금 68만명 중도해지...4명 중 1명꼴」, 2023.06.21

2) 은행연합회 제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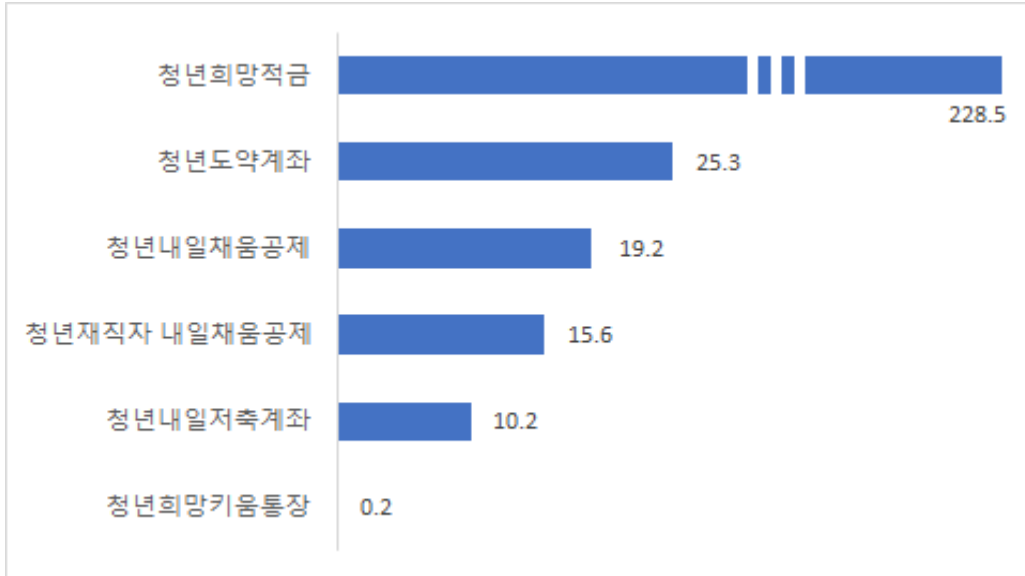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수혜 대상 및 지원 내용

소관부처	사업명	대상	지원 조건	지원 내용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19~34세 청년	5년간 월 70만원 이하 자유 납입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6% 이자,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지원금 월 최대 2만4천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19~34세 근로 청년	2년간 매월 50만원 이하 납입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기본 금리 5%, 이자소득 비과세
국방부/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 의무 수행자	복무 기간중 월 40만원 이하 납입	납입 원리금의 71% 및 이자 1% 지원
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중인 15~39세 근로 청년	3년간 자유 납입,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근로·사업소득의 45%+민간매칭금 최대 2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이하 19~34세 근로 청년	3년간 매월 10만원 납입	매월 매칭 적립금 10만원 지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0만원 지원)+이자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5~34세 중소·중견기업	5년간 720만원 납입, 근속	5년 근속시 3,000만원 수령(정부가 1,08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	3년간 600만원 납입, 근속	만기시 1,800만원 수령(정부와 기업이 각 60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 300만원 이하, 15~34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2년간 400만원 납입, 근속	만기시 1,200만원(정부와 기업이 각 400만원씩 지원)+이자 수령

자료: 부처별 예산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별 가입자 현황

(단위: 만명)



주: 1. 가입자 수는 미해지 계좌 수 기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2023년 6월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는 2023년 3월말 기준, 나머지는 2022년 12월말 기준

자료: 부처별 제출 자료 및 예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최근 기업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3년 1분기 기준 1,818.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며, 한 해 동안에만 173.8조원이 증가
 -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음
- 기업대출 증가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
 - 2022년 4분기 GDP대비 기업대출 비중(119.6%)은 2019년 대비 18.3%p 증가했으며, 이는 비교 가능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¹⁾
- 산업별로는 건설·도소매·부동산업의 대출잔액 증가속도가 빠름
 - 산업별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 기준 제조업의 경우 8.2%로 산업 전체 평균(10.6%)보다 소폭 낮았으나, 건설업(17.7%), 부동산업(11.1%), 도소매업(11.2%)에서 높음
- 기업의 재무안정성은 다소 낮아진 상황
 - 기업의 재무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3년 1분기 95.0%로 2022년 1분기 88.1%에 비해 상승
 - 또한, 최근 기업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0.35%로 2022년 1분기 0.26%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²⁾
 -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 부담과 수출 부진에 따른 업황 저조,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 상황

김원혁 경제분석관 (02-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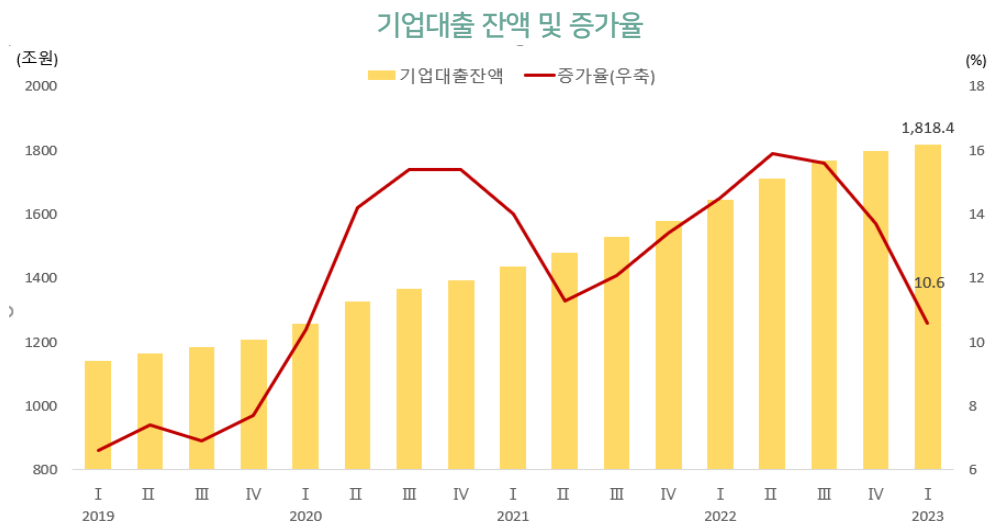
1) BIS 통계 기준

2) 국내은행의 대출금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금감원 자료 기준)

나. 주요 쟁점

-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연체율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 기업대출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IMF는 최근 보고서³⁾에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경기하강기에 투자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상존
 -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나, 부실기업의 증가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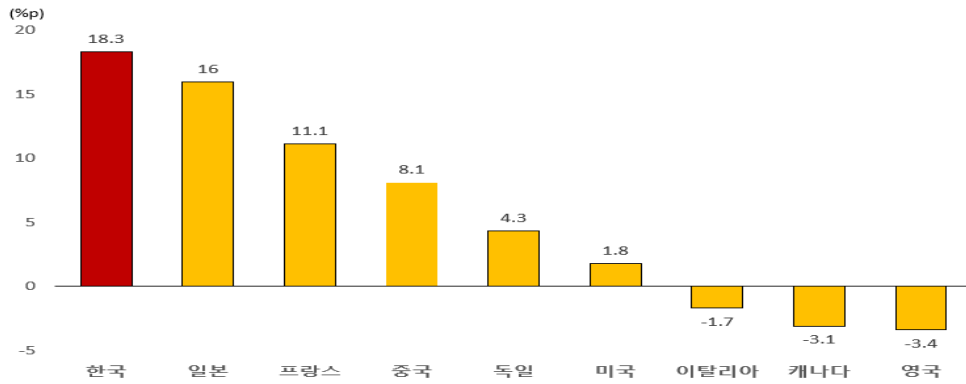
다. 관련 통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IMF (2022), "Scarring and Corporate Debt," WP/2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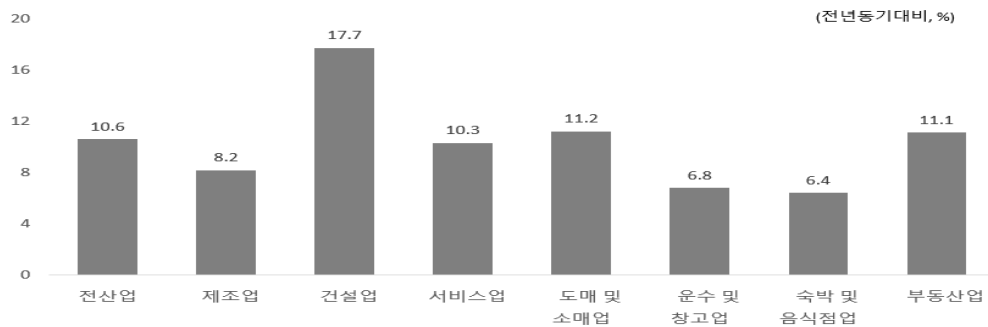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속도 국제비교(2019-2022)



주: 2019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 GDP 대비 기업부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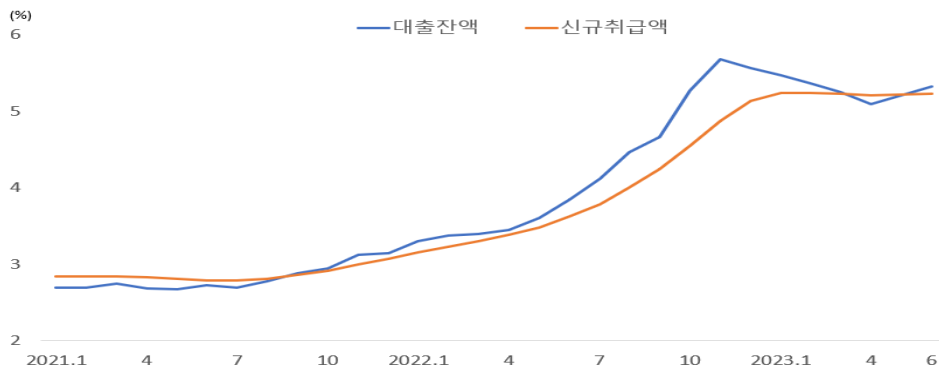
자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2023년 1분기 산업별 대출잔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8

가구유형 변화와 주거정책

가. 현황

- 1인가구가 2019년부터 급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보급률 하락
 - 주택공급은 「제2차 장기('13~'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8)의 주택수요보다 많았으나,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주택보급률 하락
 - 「제2차 장기('13~'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8)은 2018~2022년간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86.5천호(316.2~457.2천호)로 추정
- 통계청은 2023년 이후 주택수요와 직결되는 가구수 증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
 - 전월대비 주민등록세대수 증가량은 2020년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 이후 감소 추세
 -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나. 주요 쟁점

- 우리나라 인구수가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구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인가구 증가에 주로 기인하므로, 1인가구의 주거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 논의 필요
 - 가구수 증가는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주택수급 불균형은 주택시장 불안 야기 가능
 - 주택공급은 5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수요를 면밀히 추정하여 안정적인 주택수급 관리를 도모할 필요
 -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단독주택(12.6%p↑) 및 주택이외의 거처(5.7%p↑)의 주거 비중이 높은 반면, 아파트(18.8%p↓) 주거 비중은 낮음
 - 1인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월세 비중이 18.9%p 높고, 자가 비중은 23.0%p 낮았음

-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월세, 전세 비중이 높고, 40대, 50대는 월세, 자가 비중이 높으며, 60대와 70세 이상은 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청년 가구(19~34세)는 대부분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¹⁾ 주거비용이 낮은 단독주택(다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 필요

- 청년 가구 점유형태: 자가 13.8%, 임차 81.6%, 무상 4.7%
- 청년 가구 주택유형: 단독주택 37.5%, 아파트 33.8%, 다세대 11.7%

■ 고령 가구(65세 이상)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며, 고령 가구의 19.8%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요구가 있으므로,²⁾ 주거급여 수급 대상 고령 가구의 노후 주택 거주지원 정책 수립 시 이를 감안할 필요

- 고령 가구 점유형태 : 자가 75.7%, 임차 19.6%, 무상 4.7%
- 고령 가구 주택유형 : 아파트 44.0% 단독 43.4%, 다세대 7.1%

다. 관련 통계

연도별 주택보급률 추이: 2015~2021년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02.3	102.6	103.3	104.2	104.8	103.6	102.2
수도권	97.9	98.2	98.3	99.0	99.2	98.0	96.8
지방	106.5	106.8	107.9	109.1	110.1	108.9	107.4
서울	96.0	96.3	96.3	95.9	96.0	94.9	94.2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국 신규 주택수요 전망

(단위: 천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평균	400.3	395.9	391.2	378.5	366.9	386.5
수요구간	329.9~471.1	326.2~465.7	321.2~461.9	310.8~446.3	292.8~441.0	316.2~457.2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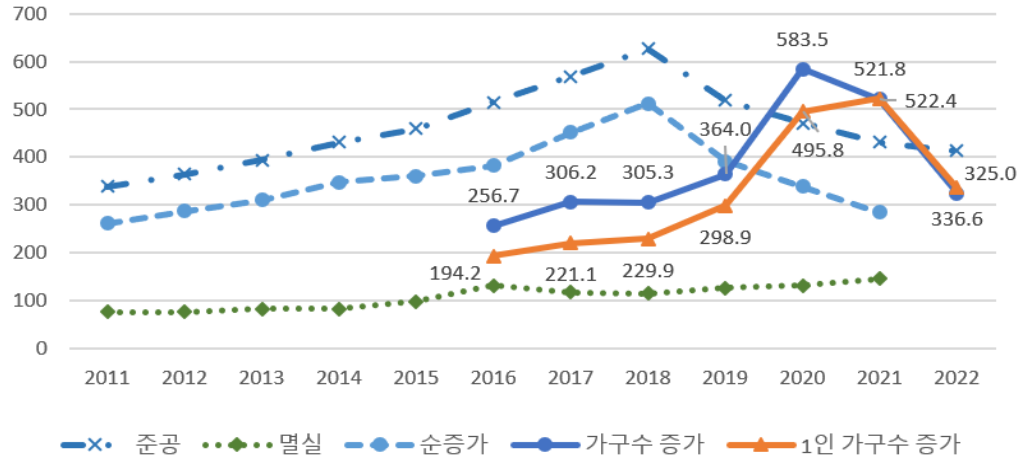
1)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2.

2)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2.

전년대비 주택 및 가구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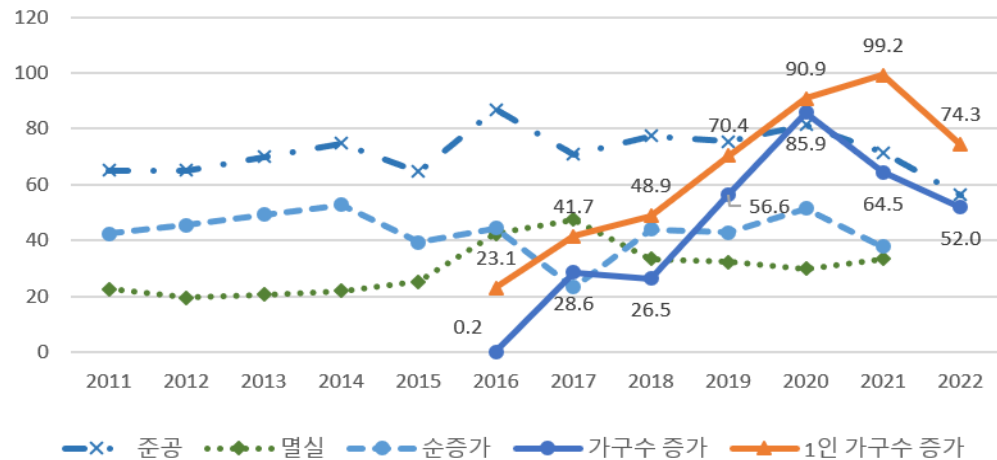
(a) 전국

(천 호,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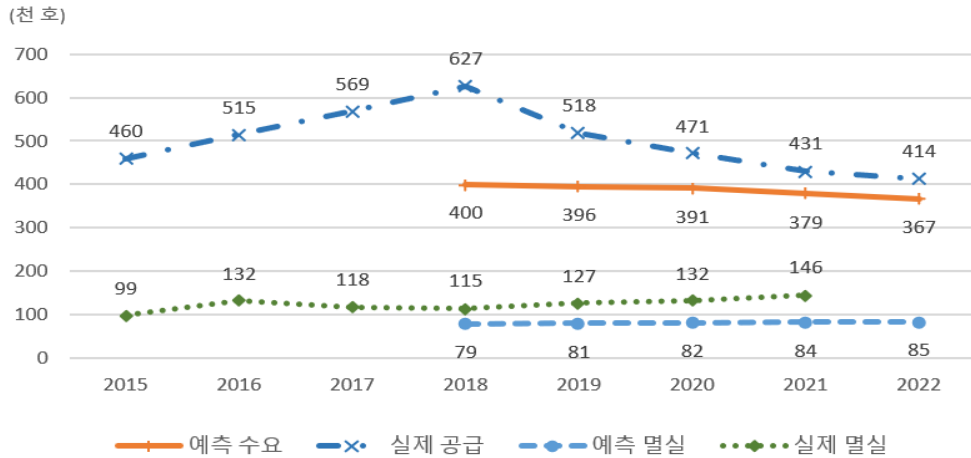
(b) 서울

(천 호, 천 가구)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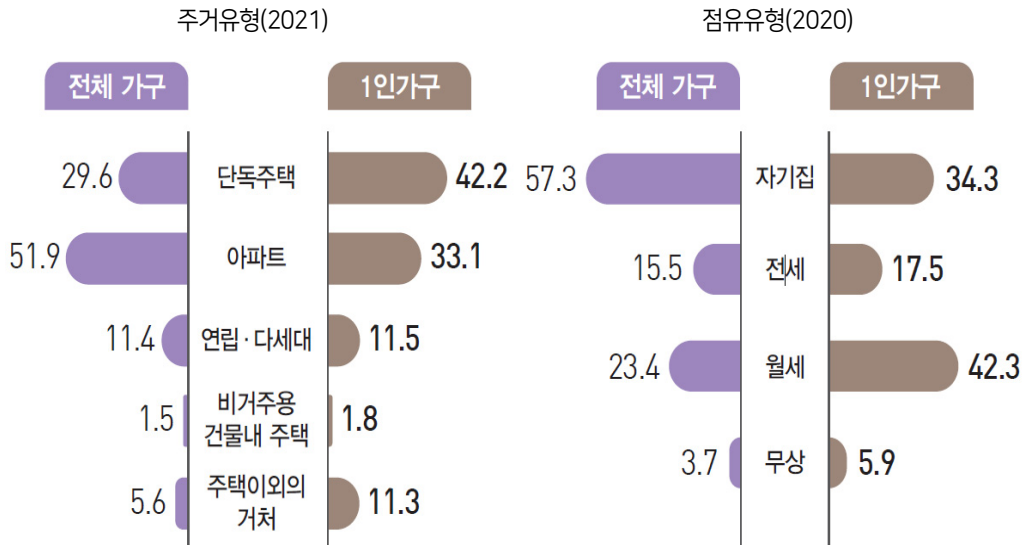
주택 예측수요, 공급, 멸실 현황(전국)



자료: 1.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연구」, 2018. 2, 104쪽.
 2.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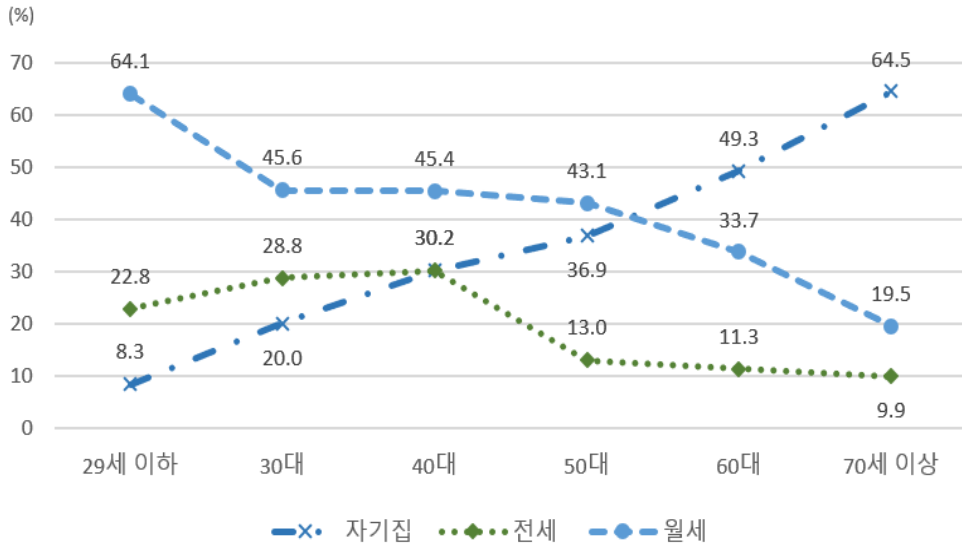
전체 가구 및 1인가구의 주거 및 점유 유형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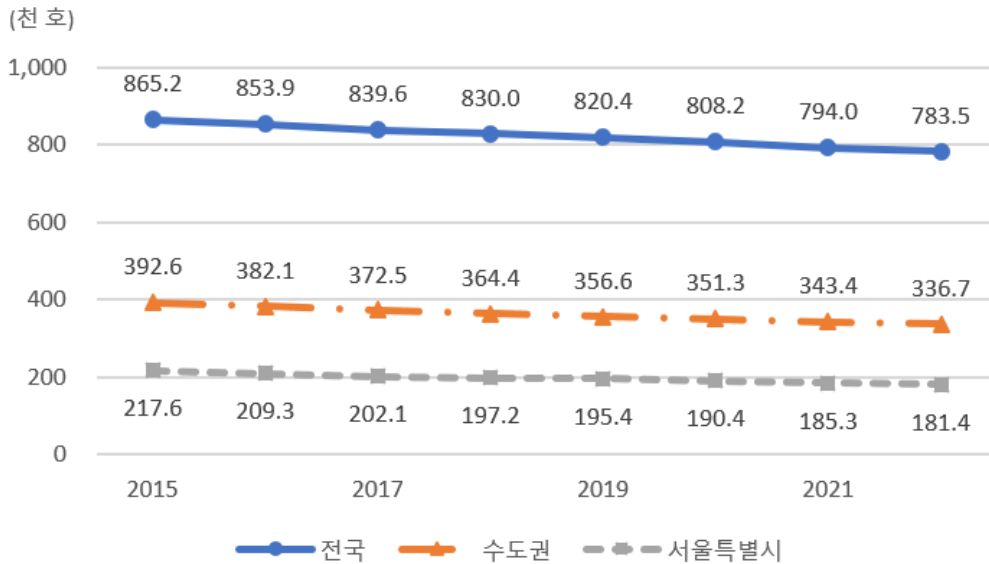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

1인가구 연령별 점유형태(2020)



자료: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 18쪽.

연도별 단독주택(다가구)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9

건설업 미분양 및 부동산 PF 현황

가. 현황

- 미분양 주택은 2021년 9월 이후 증가하다 2023년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미분양은 2023년 2월 75,438호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23년 6월 66,388호를 기록
 -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10월 이후 증가하여 2023년 6월 9,399호를 기록
 - 지역별로 2023년 6월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은 각각 10,559호, 55,829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7%, 138% 증가
- 부동산 PF¹⁾ 연체율은 2023년 3월 2.01%로 3개월 동안 큰 폭으로 증가
 - 2023년 3월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6조원으로 2022년 말의 130.3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체율은 동기간 중 1.19%에서 2.01%로 증가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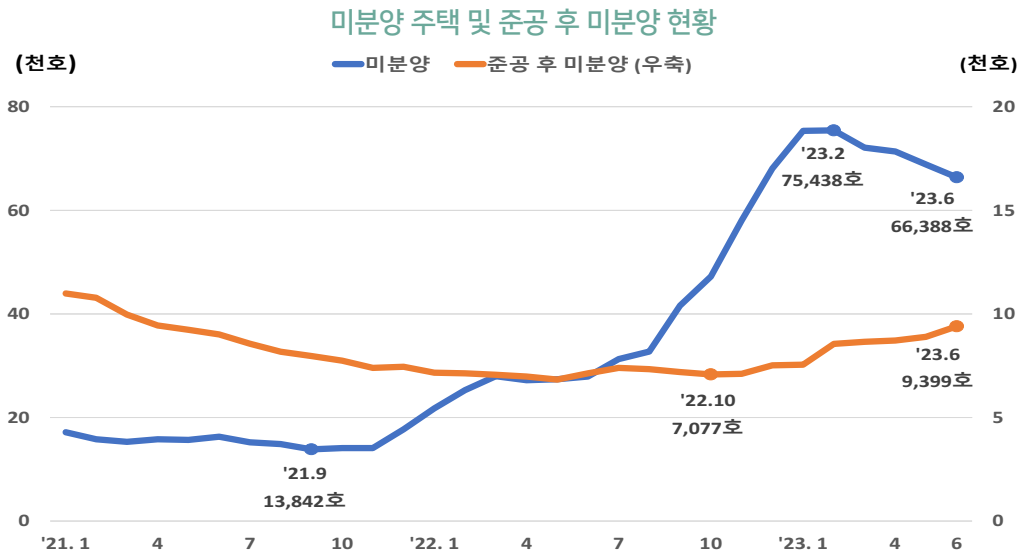
-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로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계속될 가능성
 - 미분양은 부동산개발사업자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신용보증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영향
 - 2023년 상반기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건수는 각각 11.9조원, 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8%, 59.6% 감소
 - 고금리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침체, 신규사업 감소, PF 부실화 우려 등 하방 요인들을 감안할 때 2023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 위축이 지속될 전망
 - 금융당국은 2023년 3월 이후 단기 유동화증권 만기 조정, 부실자산 조기상각 등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PF 시장 안정화를 추진

신용재 경제분석관 (02-678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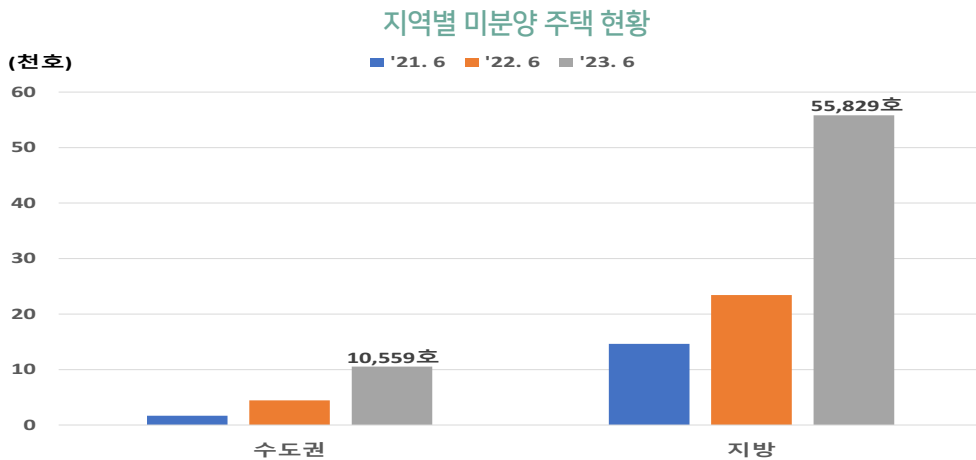
-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시행주체의 자본 대비 큰 규모의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부동산 PF는 일반적으로 건설사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미분양 및 PF 시장 위축으로 자금경색이 지속될 시 중견·중소 건설사 도산 가능성
 - 회사채 발행,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 조달 방법이 제한적인 중견·중소 건설사는 자금경색에 상대적으로 취약

다. 관련 통계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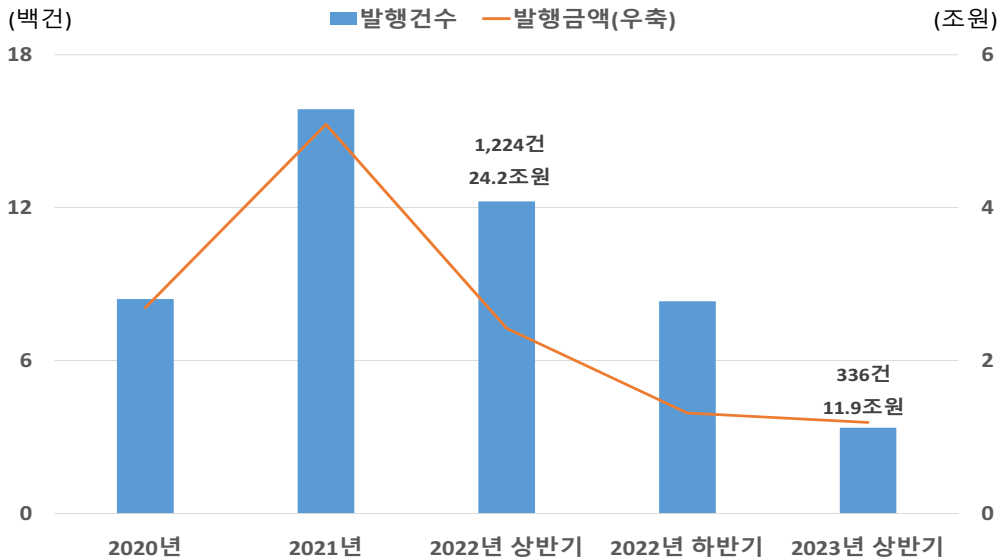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A)	2023년 3월(B)	증감(B-A)
은행	대출잔액	26.1	32.5	39.4	41.7	2.2
	연체율	0.29	0.02	0.01	-	0.01
증권	대출잔액	5.2	4.6	4.5	5.3	0.8
	연체율	3.37	3.71	10.38	15.88	5.50
보험	대출잔액	36.4	42.0	44.3	43.9	0.4
	연체율	0.11	0.07	0.60	0.66	0.06
저축은행	대출잔액	6.9	9.5	10.5	10.1	0.4
	연체율	2.43	1.22	2.05	4.07	2.02
여신전문	대출잔액	13.8	19.5	26.8	26.1	0.7
	연체율	0.28	0.47	2.20	4.20	1.99
상호금융	대출잔액	4.1	4.9	4.8	4.5	0.3
	연체율	0.30	0.09	0.09	0.10	0.01
계	대출잔액	92.5	112.9	130.3	131.6	1.3
	연체율	0.55	0.37	1.19	2.01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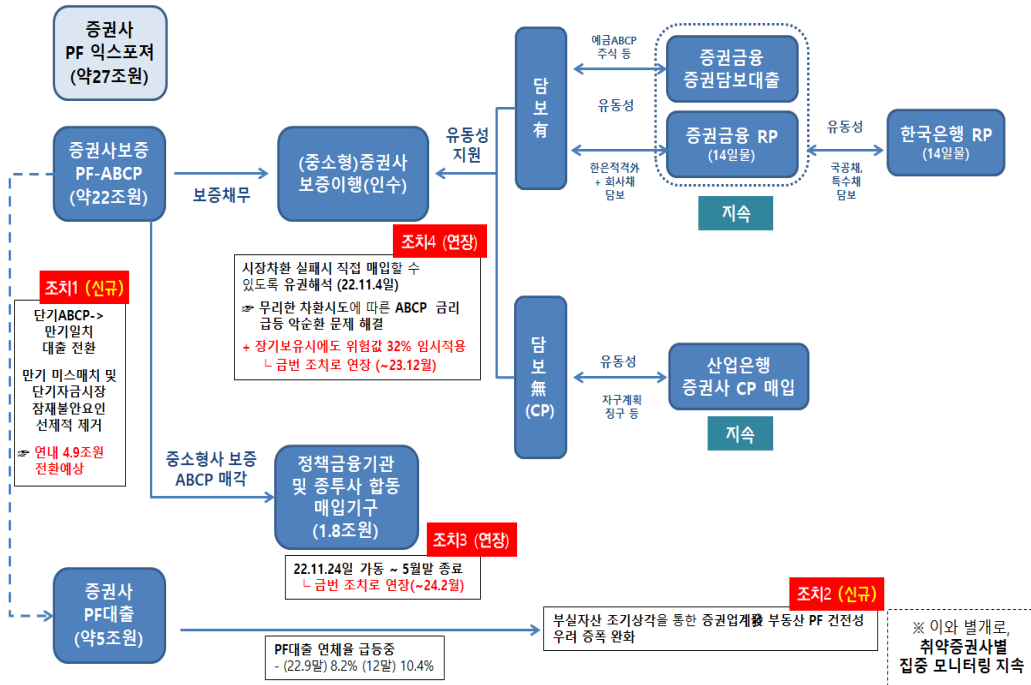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7. 4.

부동산 PF 발행 추이



자료: NICE신용평가의 「2023년 상반기 유통화시장 발행실적 분석 및 하반기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2023. 5. 25.

70

최근 역전세 및 강통전세 현황

가. 현황

-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하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와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강통전세' 확대 우려
 - 한국은행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로, 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¹⁾
- 최신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65.4만호), 강통전세 위험가구는 10.9%(11.2만호)로 추산됨²⁾
 -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는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보다 2023년 1~6월 평균 전세시세/매매시세가 낮은 가구로 정의³⁾
 -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3.8%)이,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가 가장 높고 강통전세는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가장 높음
 -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역전세 물량은 65만 4,152건, 이 중 강통전세 물량은 11만 1,713건⁴⁾
 -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전세보증금의 19.5%), 강통전세 위험가구의 강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매매시세의 11.2%)

천경록 경제분석관 (02-6788-4751)

이규민 예산분석관 (02-6788-4623)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05.30.)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실거래 미시자료 중 2021년 01월부터 2023년 6월 까지 신고된 297만여 건의 전월세 및 매매 거래 자료를 사용. 추산 방법은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밝힌 방법을 따랐으나 세부 내용에서 다를 수 있음.

3) 전세/매매시세는 번지수 주소(본번 기준), 평형대, 주택유형(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단독), 건축년도가 동일한 주택의 2023년 1~6월 평균 전세/매매 가액으로 추정. 2023년 상반기 중 거래가 없어 전세/매매시세가 추정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동일 주소지 내 동일 유형 주택의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과 같다고 가정함.

4) 역전세·강통전세 물량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세 계약만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미신고 물량은 포함하지 않음.

나. 주요 쟁점

- 정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⁵⁾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한 대출규제를 기존 DSR 40% 적용에서 DTI 60% 적용으로 완화
 -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원활히 반환되도록 DTI 60%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
 - 집주인이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갭투자 실패도 보호하여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
 -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음
 -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
- 한편 강통전세 및 역전세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역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총 2,799건, 5,790억원에서 2022년 5,443건, 1조 1,726억원으로 각각 94.5%, 102.5% 증가하였으며, 2023년 6월 기준 8,156건, 1조 8,52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황
 - 강통전세 및 역전세 물량으로 인해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사고의 증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는 공사의 손실은 공사가 보전하되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 증대,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선제적 관리 필요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2023.07.26.)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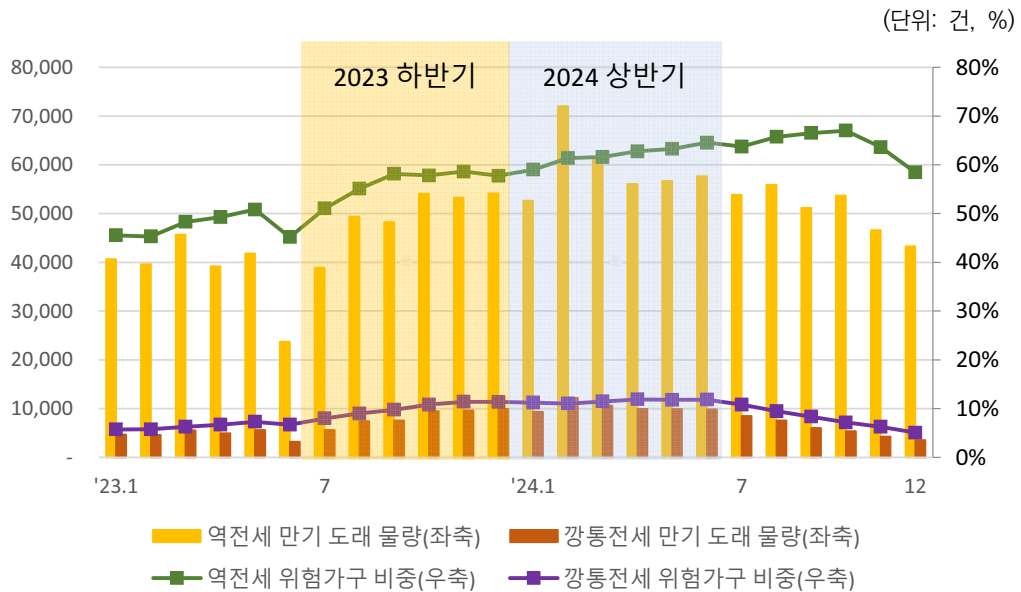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추이

구 분	2021.1	2021.7	2022.1	2022.7	2023.1	2023.7
전국	97.6	100.6	103.3	103.1	95.2	91.4
수도권	97.3	100.8	104.1	103.7	92.6	88.2
지방	97.8	100.4	102.5	102.6	97.6	94.4

주: 2021년 6월 = 100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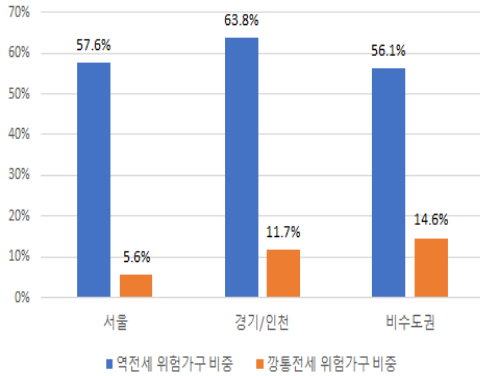
만기 도래 시점별 역전세/강통전세 물량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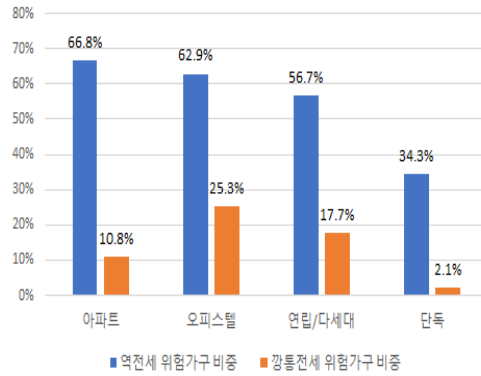
주: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는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보다 2023년 1~6월 평균 전세시세/매매시세가 낮은 가구로 정의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별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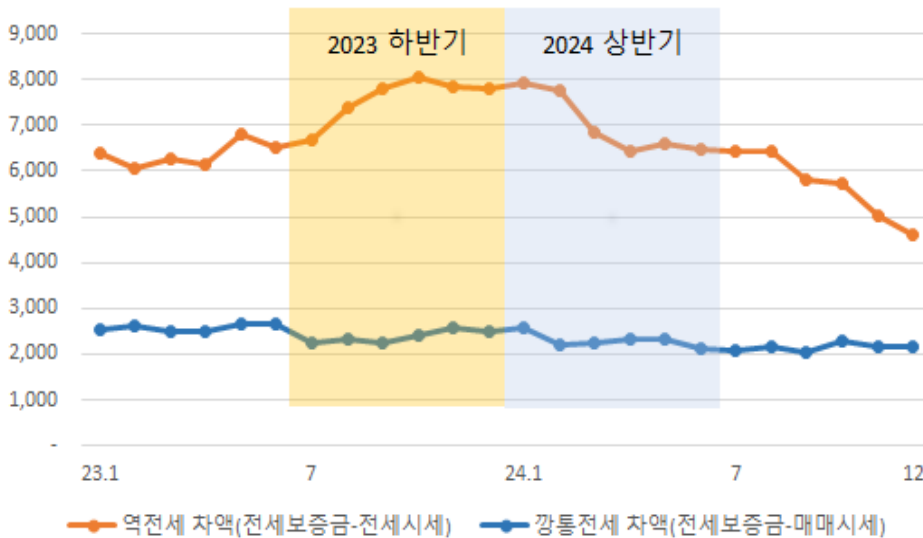
주택유형별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만기 도래 시점별 평균 역전세/강통전세 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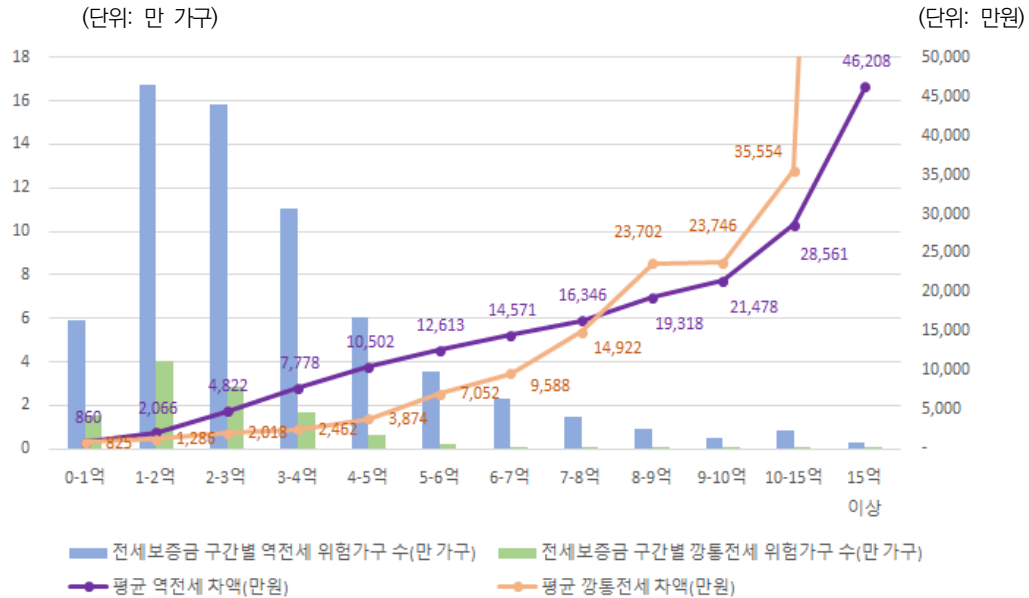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는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보다 2023년 1~6월 평균 전세시세/매매시세가 낮은 가구로 정의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세보증금 구간별 역전세 위험가구 수 및 역전세 차액



주: 역전세/강통전세 위험가구는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보다 2023년 1~6월 평균 전세시세/매매시세가 낮은 가구로 정의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A)	243,721	493,930	315,602	637,904	393,162	850,481	456,999	1,047,641	506,812	1,168,883
보증사고(B)	1,630	3,442	2,408	4,682	2,799	5,790	5,443	11,726	8,156	18,525
대위변제	1,364	2,837	2,266	4,415	2,476	5,041	4,296	9,241	5,992	13,353
사고율(B/A)	0.67	0.70	0.76	0.73	0.71	0.68	1.19	1.12	1.61	1.58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1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

가. 현황

- 인공지능 시스템¹⁾은 주어진 목표에 대한 예측, 추천, 의사결정 등을 생성하여 인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총칭
 - 실제 및 가상 환경의 인식 → 인식된 환경을 모델로 추상화 → 모델 추론을 통한 결과 도출
 -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야기
- 2022년 11월 미국 기업 OpenAI는 생성형 AI²⁾인 챗GPT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대중화 가능성을 선보임
 - 광학렌즈의 발명이 현미경을 통하여 작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미생물학의 분야를 발전시켰듯이, AI의 발전이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야기시킬 것으로 기대³⁾
 -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 및 투자 확대
-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2021년 「신뢰할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안)」을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
 - 국회에서는 7건의 법률안⁴⁾을 병합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023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김상용 경제분석관 (02-6788-4680)

- 1) OECD에서 정의한 AI system을 인용
- 2)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합성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생성할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
- 3) 실제로 Jumper 외(2021)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단백질의 물리적 구조를 예측
- 4)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기본 법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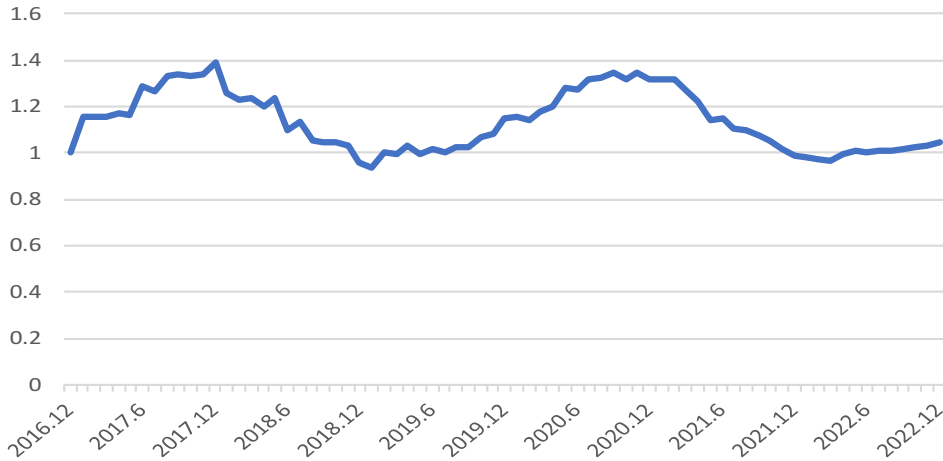
나. 주요 쟁점

-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가능
 -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 AI를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 및 의사결정 보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의료, 금융, 제조업, 에너지, 운송, 소매 및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
- 인공지능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일자리 감소: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는 고숙련 직종(high skilled job)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감소하여 탈 기술화(deskilling)가 가속화될 수 있음⁵⁾
 - 불평등: 인공지능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면,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 보안 및 윤리적 위험: 악의적인 행위자가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보안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5) 미국-EU 무역 및 기술위원회(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future of workforc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2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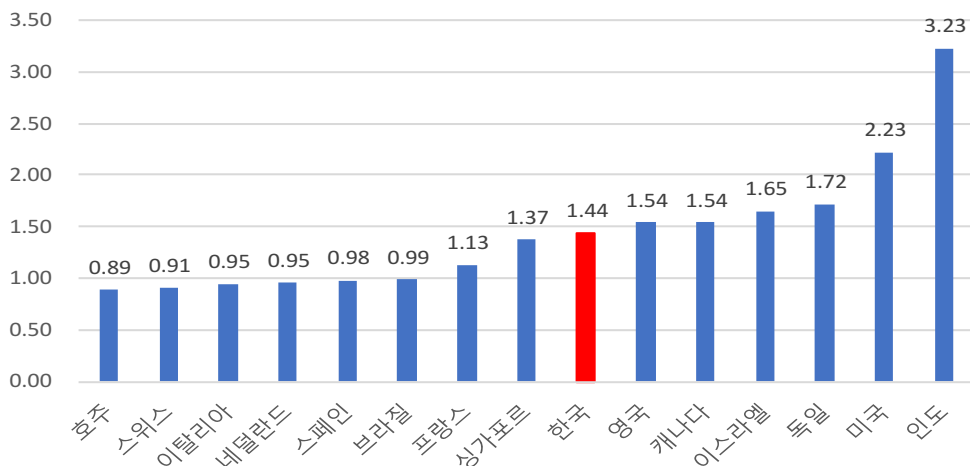
한국의 상대적 AI 채용지수(Relative AI hiring index) 변화



주: 상대적 AI 채용지수는 2016년 AI 관련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1로 했을 때의 상대 수치 변화 비중을 연도별 변화로 표기

자료: 스탠포드 대학교 AI 인간중심연구소, 「AI index report 2023」, 2023

2022년 상대적 AI 기술 침투율(Relative AI skill penetra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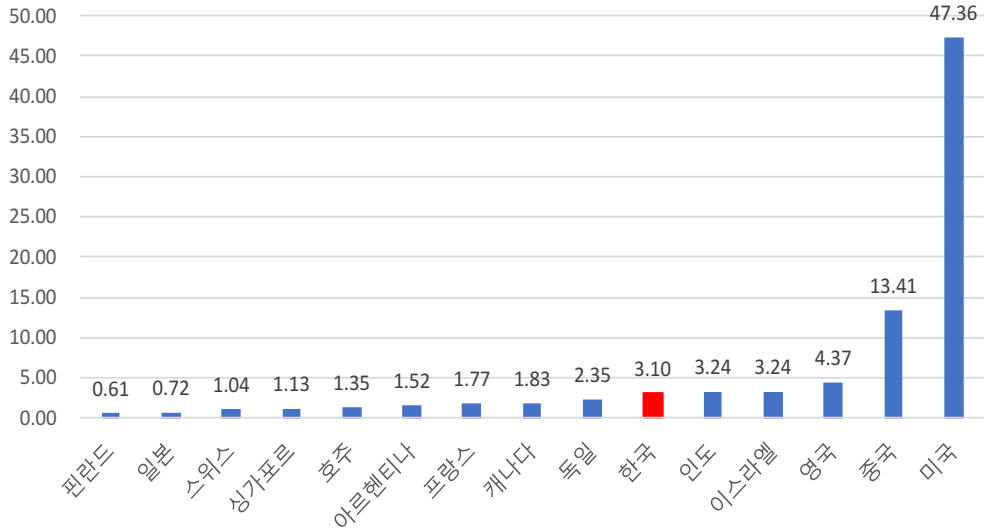
주: 1. 상대적 기술 침투율은 전 직종에서 AI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세계평균을 1로 고정

2. 한국의 수치가 1.4라는 것은 한국이 AI 관련 기술을 세계 평균보다 1.4배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

자료: 스탠포드 대학교 AI 인간중심연구소, 「AI index report 2023」, 2023

2022년 AI 관련 민간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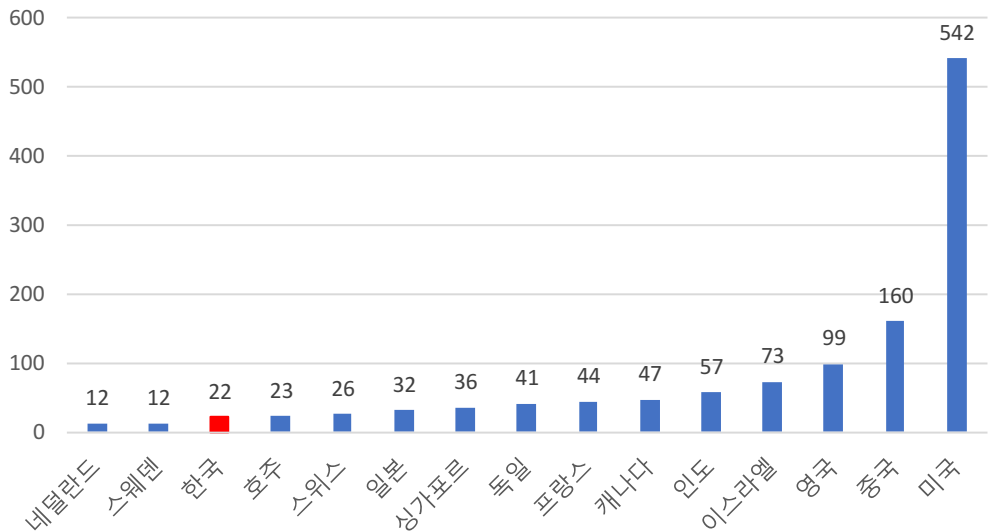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스탠포드 대학교 AI 인간중심연구소, 「AI index report 2023」, 2023

2022년 신규 투자를 받은 AI 관련 기업체 수

(단위: 개)



자료: 스탠포드 대학교 AI 인간중심연구소, 「AI index report 2023」, 2023

72

친환경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현황

가. 현황

- 글로벌 친환경자동차의 성장세에 힘입어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
 - 2022년 글로벌 친환경자동차의 신차 판매량은 약 1천만대(전체 판매량의 약 13%)를 기록하였고, 2030년까지는 4.5천만대(전체 판매량의 약 43%)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국내 배터리 셀 및 소재 업체의 합산 매출은 약 62조원을 기록하여 2019년 대비 3.5배 가량 증가
 - 각국의 탈탄소 움직임과 각종 환경규제 도입으로 화석연료에서 탈피하는 세계적 추세로 인하여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이차전지 생산에 관련한 규제 확산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핵심원자재법」, 「배터리규정」 등의 정책 및 규제 시행
 - 첨단산업의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핵심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공급망 관리 필요
 - 산업의 진화와 동시에 환경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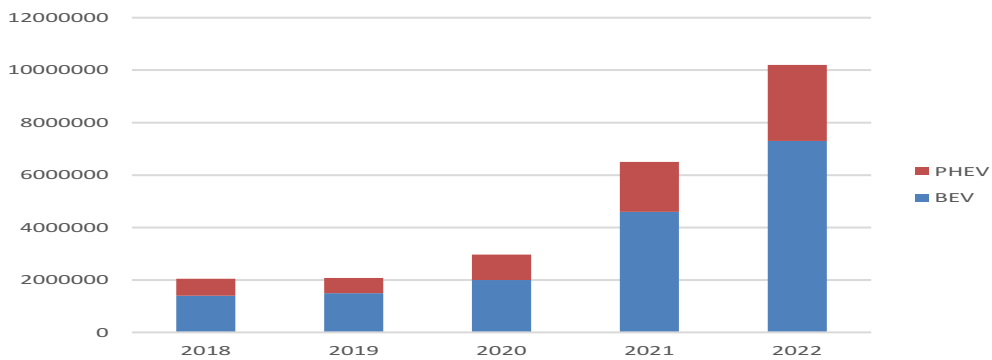
-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에 대응하여 공급망 다변화가 당면 과제
 -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원자재 및 핵심부품 수입 중 중국 의존도는 80%를 넘어선 수준이며,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코발트는 80% 이상, 천연흑연은 90%에 육박
 - 배터리 핵심원자재 및 핵심부품 공급 시장의 중국의 지배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핵심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
- 원산지 및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차세대 산업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생산에 있어 각각의 역내 생산 유도를 위한 규제 및 정책을 시행

-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주요국의 규제 및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신규 규제 및 정책 입법 동향 발생 시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다. 관련 통계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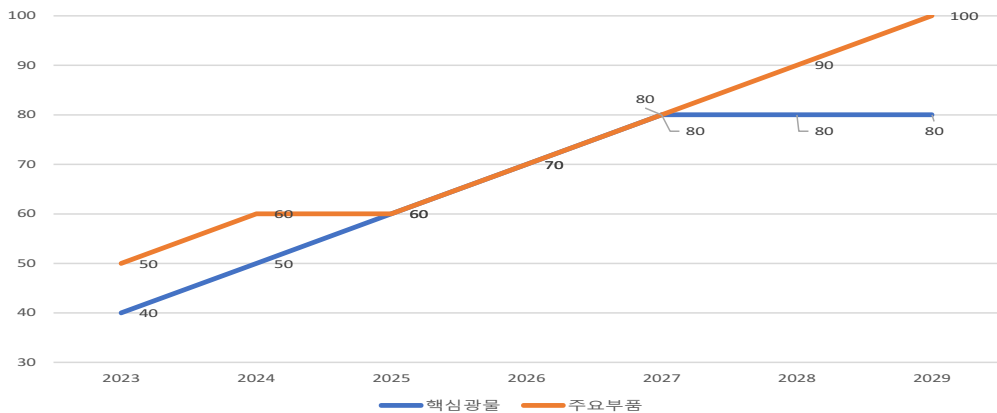
(단위: 대)



주: PHEV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BEV는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말함
 자료: IEA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북미 및 미국과 FTA 체결국 내에서의 생산 비율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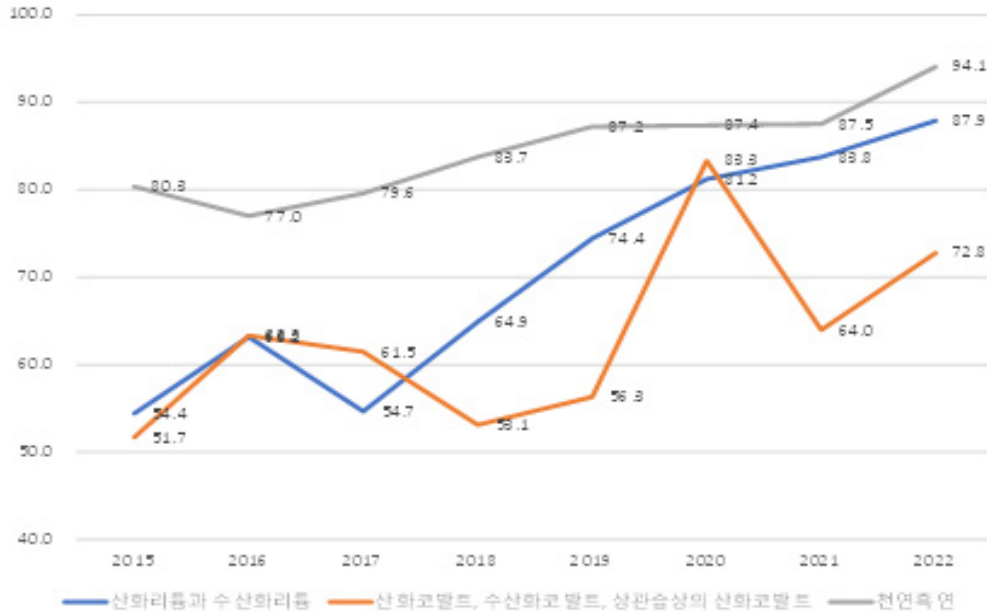
(단위: %)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및 주요 부품 원산지 조건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중국산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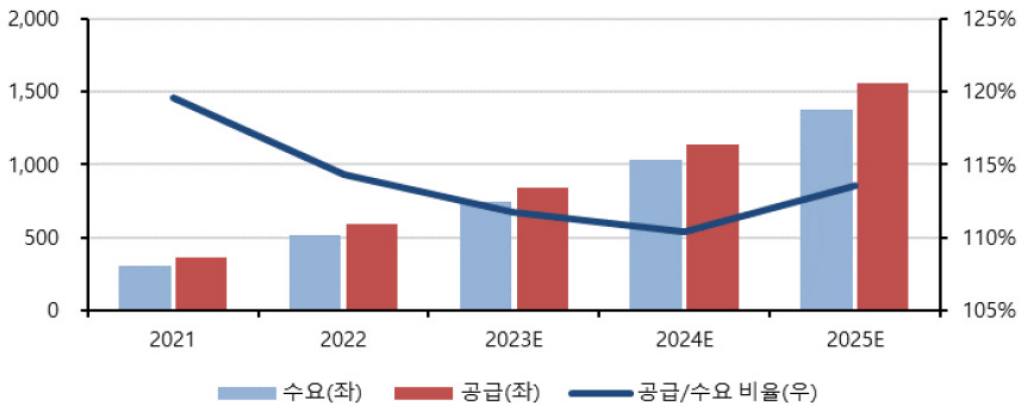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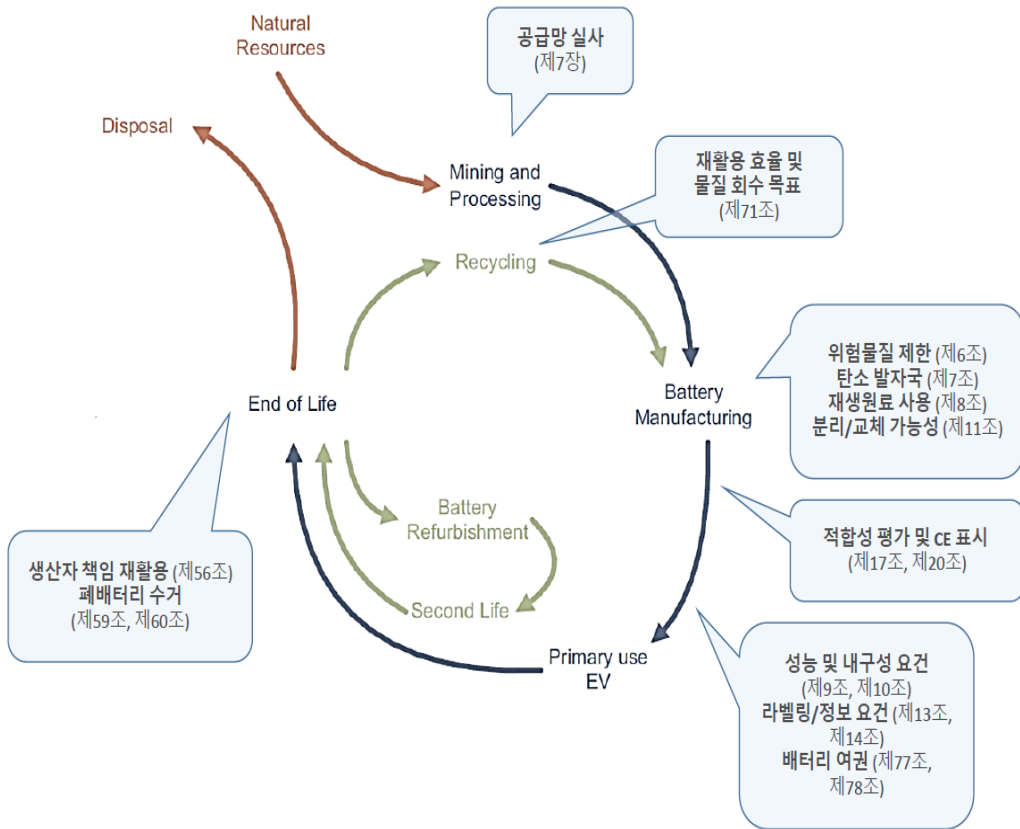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공급전망

(단위: GWh)



자료: 한국신용평가

EU 배터리규정 수명주기별 요건



자료: 한국무역협회, 법무법인 광장

73

「녹색성장·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정투자 현황

가. 현황

-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9조 원의 재정투자를 포함하는 「탄소 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¹⁾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로드맵 제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단위: 백만톤CO₂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21.10월)	수정 NDC ('23.3월)
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 환	149.9 (44.4%)	145.9 (45.9%)
	산 업	222.6 (14.5%)	230.7 (11.4%)
	건 물	35.0 (32.8%)	35.0 (32.8%)
	수 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 소	7.6	8.4
	탈루 등	3.9	3.9
흡수 · 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주 1. 탈루 배출(Fugitive Emission)은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 또는 방출을 의미

2.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23. 3. 21.

김윤희 경제분석관 (02-6788-4679)

- 1)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2023~2042)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됨. 하위계획에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등이 있고, 관련 계획으로는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중장기 행정계획이 포함

- 향후 5년간 중장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재정사업 예산은 54.6조 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 원 등이 계획

재정투자 계획: 2023~2027년

(단위: 억원, %)

	2023	2024~2027	합계	합계 대비 비중
합계	133,455	765,738	899,193	100.0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79,480	466,283	545,763	60.7
기후변화 적응대책	29,856	164,213	194,068	21.6
녹색산업 성장	10,459	54,453	64,912	7.2
정의로운 전환	2,366	19,837	22,203	2.5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4,602	30,319	34,922	3.9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5,999	26,881	32,881	3.7
국제협력	693	3,751	4,444	0.5

자료: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23. 3. 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재정투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축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포괄할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재정투자 예산으로 조사된 397건의 예산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²⁾에 포함된 예산 수는 183건, 포함되지 않은 수는 214건
-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내 예산사업 중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사업은 3개가 있으나 이 중 2개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국제감축 부문에 반영됨³⁾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3) 산업자원통상부 (6131-311), 환경부(6131-610), 기획재정부(6131-300)

■ 재정투자 계획에 대한 예산안 조사 결과, 부문별 중장기 감축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거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향후 감축 목표량의 비중을 고려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2030년 감축목표 수정안에서 8.6%(37.5백만톤CO₂e)의 비중을 차지하나 2023년 기준 관계된 전체 사업 수는 4개⁴⁾이며 관련 예산액도 2023년 기준 193억으로 전체 예산의 0.14%에 불과
- 온실가스 1천톤CO₂e를 감축하기 위해 소요된 감축 비용을 추정한 결과 총량 관점에서 온실가스 1천톤CO₂e 감축 비용은 평균 약 27억 6,400만 원으로 계산됨⁵⁾

4) 산업자원통상부 (6131-311), 환경부(6131-610), 산림청(1331-302), 외교부(313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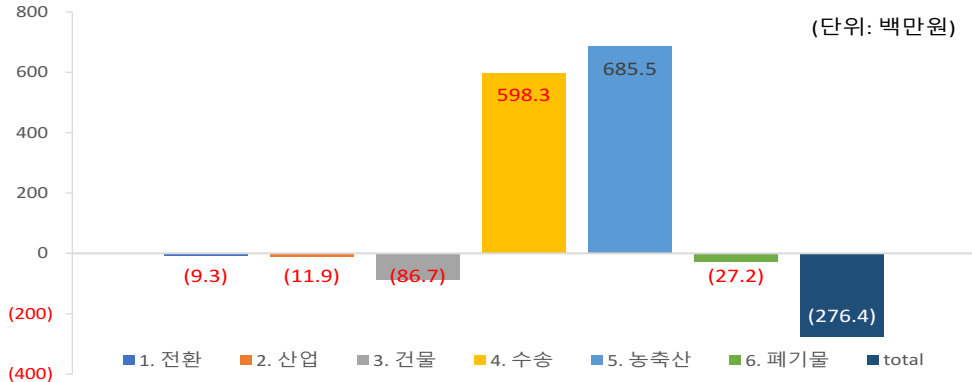
5)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조사된 397개 재정사업을 바탕으로 최근 4년 결산자료(재정투입: Input)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감축실적: Output)를 이용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추정한 결과, 온실가스 1천톤CO₂e를 감축하는데 전환이 9.3백만 원, 산업이 11.9백만 원, 폐기물이 27.2백만 원, 건물이 86.7백만 원 순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됨, 이는 t-1 년도 대비 t 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t 년도 재정투입의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용(민간부문 제외)이자 온실가스 1천톤CO₂e 감축에 대한 재정투입의 탄력성(elasticity)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분석을 위해 먼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연도가 2018년도이기에 시작 연도를 2018년 이후로 선택하였고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존재하기에 통상적인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NDC기준의 10 개 부문 중 예산이 작거나 2021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및 탈루 등을 제외한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의 배출량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total)을 2019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수송과 농축·수산 부문은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증가(전년대비 276천톤 증가: 농축산분야 33천톤 감축, 수산 분야 310천톤 증가) 하였기에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함. 온실가스 감축 비용 계산 결과는 아래 표 및 그림 참조

[온실가스 감축(1천톤CO₂e)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용]

	A.재정투입: Input (십억 원)				B.감축 실적: Output (t기-t-1기, d) 천톤CO ₂ e				A/B.온실가스 감축 비용: 탄력성 e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d2018	d2019	d2020	d2021	e2018	e2019	e2020	e2021
전환	190	182	182	259	16,974	-19,610	-30,680	3,976	11	-9	-6	65
산업	45	52	61	91	-734	-4,354	-9,762	15,717	-62	-12	-6	6
건물	332	308	565	597	15	-3,555	-2,086	1,214	22,407	-87	-271	492
수송	843	1,727	2,047	2,425	-228	2,887	-4,813	1,704	-3,705	598	-425	1,423
농축·수산	170	189	239	278	-3	276	528	136	-50,288	685	452	2,037
폐기물	21	25	38	70	-172	-903	214	55	-123	-27	176	1,274
합	5,590	7,121	9,294	10,507	16,332	-25,764	-44,991	23,404	342	-276	-207	449

다. 관련 통계

온실가스 1천톤CO2e 당 공공부문의 감축 비용(2019년 기준)



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기에 위 그림의 (-)부문만 비교 대상으로 간주
 자료: 정부 부처별 제출자료(2023.4~2023.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처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재정사업 수 비교

부처	고용부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총합계
I. 중장기 감축 정책, 10대 부문																	181
1. 전환											8						8
2. 산업				1			2				8					3	14
3. 건물				6							2					1	9
4. 수송				7							8			11	1	6	33
5. 농축수산							27							6			33
6. 폐기물														1		9	10
7. 수소		2		2							11			6		3	24
8. 흡수원				1						24				3		8	36
9. CCUS		5									4			1			10
10. 국제										1	1	1				1	4
II. 탄소중립 사회 이행기반 강화정책, 6대 분야																	216
1. 적응		1			11		9		3	14	3		1	19	5	22	88
2. 녹색성장		4			1						29			2		8	44
3. 전환	8						1				5			5		1	20
4. 지역											1			1		14	16
5. 인력인식	2		4		2		2	1		4	2			5		10	32
6. 국제협력					2	2	1			3		3		1		4	16
총합계	10	12	4	17	16	2	42	1	3	46	82	4	1	61	6	90	397

주: 1. 2023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세부사업 기준 사업 수

2. I.중장기 감축 정책에는 10대 부문에 대해 37개 정책과제가 있으며, II.탄소중립 사회 이행기반 강화정책에는 6대 분야에 45개 정책과제가 있음

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2023.4~2023.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처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재정투자 비교

(단위: 십억원)

부처	고용부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총합계
I. 중장기 감축 정책		45.7		355.8			333.4			902.8	1,377.0	0.04		214.4	1.1	4,708.0	7,938.2
1. 전환											341.2						341.2
2. 산업				1.3			3.8				274.8					176.9	456.8
3. 건물				213.3							278.2					63.9	555.4
4. 수송				130.1							290.8			82.7	1.1	3,437.0	3,941.8
5. 농축·수산							329.5							43.7			373.3
6. 폐기물														2.6		88.3	90.9
7. 수소		8.3		10.9							159.0			20.1		823.4	1,021.6
8. 흡수원				0.3						900.3				63.3		108.0	1,071.8
9. CCUS		37.4									26.6			2.1			66.1
10. 국제										2.5	6.4	0.04				10.4	19.3
II. 탄소중립 사회이행기반 강화정책	636.3	67.5	89.6		44.2	50.1	1,607.5	2.0	104.2	452.5	666.6	0.5	6.5	215.1	154.0	1,284.4	5,348.4
1. 적응		6.9			12.2		1,589.0		104.2	445.4	282.1		6.5	151.8	154.0	293.0	3,045.1
2. 녹색성장		60.5			10.8						324.0			6.0		477.1	878.4
3. 전환	156.4						18.0				16.9			46.9		1.3	239.5
4. 지역											38.0			2.4		422.2	462.6
5. 인력, 인식	479.8		89.6		19.5		0.4	2.0		1.2	5.6			5.3		80.9	684.3
6. 국제협력					1.8	50.1	0.2			6.0		0.5		2.7		9.9	71.1
총합계	636.3	113.1	89.6	355.8	44.2	50.1	1,940.9	2.0	104.2	1,355.3	2,043.6	0.5	6.5	429.5	155.1	5,992.4	13,319.2

주: 1. 2023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이며, 세부사업 기준 사업예산

2. I. 중장기 감축 정책에는 10대 부문에 대해 37개 정책과제가 있으며, II.탄소중립 사회 이행기반 강화정책에는 6대 분야에 45개 정책과제가 있음

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2023.4~2023.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시작하여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 중
 -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및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탄소 가격제도
 - 업체 수 증가와 교통 및 건설 등의 업종 추가로 인해 배출허용 총량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체 국가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e Scheme)의 비중 증가¹⁾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구 분	1기('15~'17)	2기('18~'20)	3기('21~'25)			
할당업체 수	525개	591개	684개(현재 736개)			
국가배출량 대비 ETS 비중	67.3%	70.1%	73.5%			
배출허용총량(연평균)	563백만톤	592백만톤	609.7백만톤			
유·무상할당	전면 무상할당	유상할당 실시(3%)	유상할당 확대(10%)			
시장활성화 정책	• 배출권시장 개설 • 시장안정화 조치(추가할당)	• 주기적 경매(월 1회) • 시장조성자 도입	제3자(증권사 등) 시장참여			
근거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2.5)					
적용 대상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대상온실가스(6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운영체계	기획재정부·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는 ETS 할당계획 수립,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운영절차: 할당(정부) → 보고(업체) →정산(미제출시 시장가 3배 과징금)	기본계획 수립 계획기간 전전 년도 말	할당계획 수립 (허용총량 설정) 계획기간 전년도 6월	할당업체 지정,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 전년도 7~10월	배출권 거래 계획기간 (매년 당해연도)	배출량 보고 추가할당 및 취소 계획기간 (다음연도 3월)	배출권 정산, 이월· 차입 계획기간 (다음연도 8월)

자료: 환경공단,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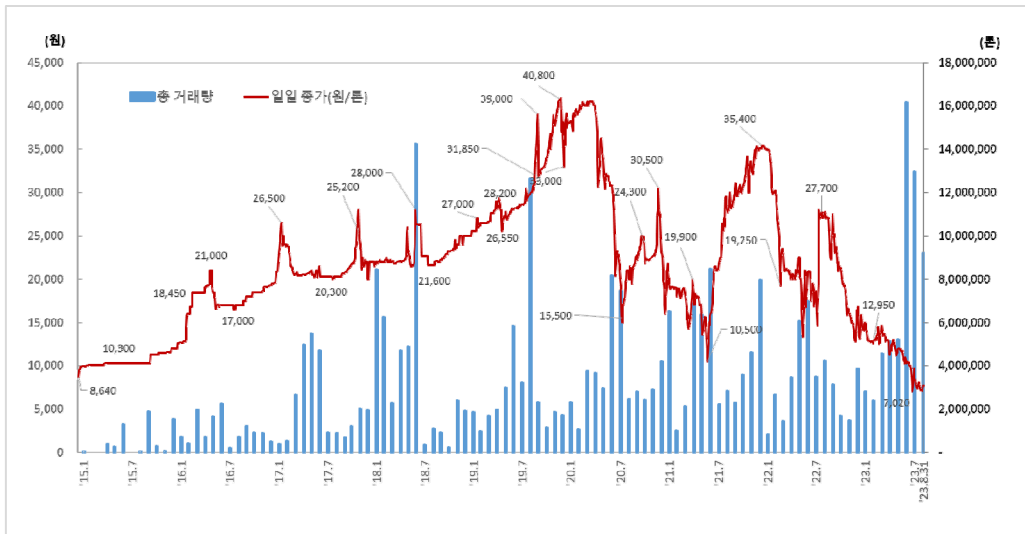
김윤희 경제분석관 (02-6788-4679)

1) 국가배출량 대비 ETS의 비중 비교 시, EU는 약 38%, 뉴질랜드는 49%, 스위스는 12%, 영국은 26%를 나타냄, ICAP, Emission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2023, 2023.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증권사, 외부 사업참여자가 있으나 배출권 가격이 2015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²⁾

- 시장개설 이후 전체 할당배출권 거래량 중 장내거래 비중은 52.84% 수준으로 증가했고 시장조성자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나 거래가는 감소추세

배출권거래제 가격 추이



자료: 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유동성 부족에 의한 가격발견 기능 약화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
 - 시장참여자 제한 등에 따라 국내 배출권 거래 규모는 세계 최대규모³⁾를 차지하는 EU-ETS와 비교 시⁴⁾ 상당히 낮은 수준
 - 국내는 시장개설 초기(2015년) 제3자의 시장참여 제한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할당대상업체가 유일한 수요자이자 공급자⁵⁾ 역할 수행⁶⁾

2) KAU22 기준 7020원, 2023년 7월 24일

3) 2021년 글로벌 거래량 기준, 79.4% 비중 차지

4) EU-ETS는 도입 초기(2005년)부터 다양한 제3자가 시장에 참가하였고, 배출권을 직접 할당받지 못한 제3자들은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활발히 거래

5) 증권사 자기매매를 허용('21.12월)하였으나, 거래량은 매우 저조

6)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 과부족분(사전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 차이) 역시 이월 및 차입제도 등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보유하거나 충당

- “균형 탄소가격 형성,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내 유동성 확대 필요

■ 가격 변동성이 커서 할당업체는 배출권 정산기(6~8월)를 제외⁷⁾하면 거래 유인이 낮고, 이월 등을 위해 수급(매도)이 집중될 경우⁸⁾ 가격 변동성(하락)이 증가하는 현상 반복

- 현재는 시장참여자들만 주로 거래에 참여하기에,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탄소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위탁매매를 도입⁹⁾하여 제3자 참여를 유도하고 파생상품을 개발하며¹⁰⁾ 선물시장을 준비하는¹¹⁾ 등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도입 필요
- 시장조성자제도가 도입¹²⁾되었고 증권사의 자기매매가 허용¹³⁾되었으나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조성되지 않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에¹⁴⁾ 한국예탁결제원과 온실가스정보 센터의 인프라 결합(전용회선 연결)이 필요¹⁵⁾

7) 비정산기 일평균 거래 참여자는 약 10개 사(매도+매수) 수준

8) 정산기에 잉여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급락

9) 자산운용사,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도입 추진 (2024년내)하며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제3자 시장참여자 확대 및 배출권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기대

10) 할당대상업체 및 배출권 투자자 대상 위험관리 수단 제공을 위해 배출권 선물 도입 검토(2025년 중)

1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지원을 위하여 배출권 선물시장을 통한 배출권 가격안정화 및 위험관리 수단 제공 필요

【 선물시장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① (위험관리) 할당대상업체는 선물 헤지거래를 통해 미래 잉여·부족 물량의 거래가격을 조기에 확정^{*}가능하여 가격변동위험을 회피

* 할당대상업체는 가격변동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② (가격발견기능) 현물배출권과 연계한 현·선 차익거래를 통해 현물시장에서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도움

[차익거래 예시]



12)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책은행 2개사(2019.6월) 및 증권사 3개사(2021.5월)가 시장조성자로 참가하였고(2022.12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

13) 시장조성자 이외의 유동성 추가 공급을 위해 21개 증권사에 자기매매를 허용(2021.12월)하였으며, 보완 한도를 기존 2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확대(2023. 6월)

14) 현재는 배출권거래제 정규장 종료 후 수탁자는 위탁 거래내역을 GIR(온실가스정보센터)에 전송하고 장외 거래 마감 후 GIR은 수탁자에게 위탁자 잔고 전송

15) 배출권시장 위탁매매 도입 시 익일 정상적인 실시간 장내시장 거래를 위해서는 수탁자(증권사)의 위탁거래 원장과 GIR의 배출권등록부 잔고대사를 위해 수탁자와 GIR간 인프라(전용회선) 연결이 필요

다. 관련 통계

■ 거래규모 비교시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연간 체결 건수는 지속적 증가

-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2015년 1월 12일 배출권거래 시장개설

배출권 거래규모 추이

(단위: 천톤, 백만원, 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일평균 거래량	20.8	60.6	73.1	68.9	84.5	104.3	105.4
일평균 거래대금	368	1,282	1,627	2,002	2,503	2,441	2,323
연간 체결 건수*	332	901	1,094	1,543	3,806	7,134	8,876

주: 경쟁/협의/경매 포함, 거래발생연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배출권거래제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 참가자는 2022년말 기준 643개사

- 배출권거래시장 회원(약 760개사)은 일반회원(727개사),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12개사) 및 거래중개회원(21개사)으로 구분('23.3.31 기준)¹⁶⁾

실거래 회원수 추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원수	111	229	329	293	382	509	643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시장개설 이후 전체 할당배출권 거래량 중 장내거래 비중은 52.84% 수준

- 거래대상은 할당배출권(KAU), 외부사업 감축량(KOC; Korea Offset Credit) 및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이 있음¹⁷⁾

장내·외 할당배출권 거래량 비교

(단위: 천톤)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장내거래	2,562.1	13,707.8	17,530.4	15,777.9	20,734.0	23,919.5	25,149.9	119,381.6
장외거래	1,631.3	7,504.5	27,307.4	17,741.8	19,522.9	24,787.1	8,055.5	106,550.5
장내비중	61.1%	64.6%	39.1%	47.1%	51.5%	49.1%	75.7%	52.84%

주: 경쟁/협의/경매 포함, 거래발생연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 할당대상업체(724개사)와 국책은행(3개사)은 일반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일부 은행(2개사)과 증권사(5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

17) KAU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KOC는 외부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 인증받은 배출권(할당대상업체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 KCU는 외부사업 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제출량의 5% 내에서 제출 가능)

- 할당받은 배출권을 연단위별 종목상장에 따라 일정 기간에만 시장에서 거래하고, 매년 연말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음해 8월말까지 정부에 제출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거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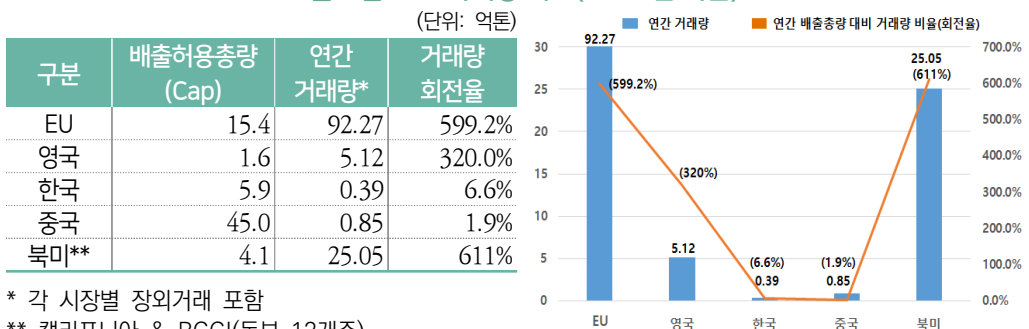
거래종목	3차 계획기간 ('21년~'25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6월	7~12월	1~6월	7~12월	1~8월	9~12월	1~8월	9~12월	1~8월	9~12월
KAU21	거래가능			상장폐지						
KAU22	거래가능					상장폐지				
KAU23	거래가능							상장폐지		
KAU24	거래가능									상장폐지
KAU25	거래가능('26년 8월말까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국내 거래량 및 거래량 회전율은 각각 EU의 0.42% 및 1.1%

- EU-ETS는 도입 초기(2005년)부터 다양한 제3자가 시장에 참여하였고, 배출권을 직접 할당받지 못한 제3자들은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글로벌 ETS 거래량 비교(2022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후대응기금 자원조성 현황

-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자체수입), 일반·특별회계/기금(교특회계, 전력·복권기금) 전입,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자원조성
- 2022년말 이후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며 배출권 가격이 하락,¹⁸⁾ 배출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며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 역시 감소

기후대응기금 수입 내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단위 : 억원, %)

수입	'22(결산)	'23(확정)	비중	비고
합계	20,465	24,867	100%	
❶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등	3,232	4,009	16.1%	· '23년도 배출권 계획 물량 감안
❷ 교통·에너지·환경세(7%)	7,632	12,222	49.1%	· 교통·에너지·환경세 7%
❸ 타 회계·기금 전입·예수금	9,601	8,636	34.7%	
특별회계전입금	3,000	3,000	12.1%	·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
기금전입금	2,000	2,910	11.7%	· 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 여유자금
기금예수금	4,601	2,726	11.0%	· 지출 대비 수입 부족(예상)액

자료: 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대 국회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 내용 및 심사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일자	심사 진행현황
1. 김영진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2023.6.16.	소관위접수
2. 민형배의원 등 11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 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단의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제35조제4항 신설)	2023.5.24.	소관위접수
3. 임이자의원 등 10인: 할당대상업체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022.12.6.	소관위심사
4.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종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2021.3.3.	소관위심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8) ('22.9)26,900원/톤 → ('22.11)19,350원/톤 → ('23.1)12,900원/톤 → ('23.7)10,350원/톤

75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실태

가. 현황

■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기준 약 210조원(소매판매액의 24.7%)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¹⁾
 -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율은 2021년 전년대비 20.2%, 2022년 10.3%로, 소매 판매액 증가율 8.1%, 5.6%를 상회
 - 온라인쇼핑 거래 비중은 음식료품(12.7%), 음식서비스(12.7%), 가전·전자·통신기기(9.9%), 의복(9.2%), 여행 및 교통서비스(8.0%) 등의 순
-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매출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²⁾
 - 온라인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약 45.6%, 배달앱의 경우 56.6%에 해당
 - 입점업체의 가입 동기를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가입이 매출 증대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이고(오픈마켓 89.2%, 배달앱 59.6%), 홍보 편리(배달앱 48.2%)와 경쟁업체의 사용(배달앱 46.2%)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영업이익은 오픈마켓의 경우 15.5%, 배달앱의 경우 약 24.3%에 해당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³⁾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⁴⁾ 매출⁵⁾은 2022년 약 88.6조원으로 전년(69.2조원) 대비

조은영 경제분석관 (02-6788-4676)

- 1)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5월 온라인 쇼핑동향,” 2023.7, 15쪽.
- 2)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2021년.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6,547개사) 중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수조사에 응답한 4,419개사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1,729개사임. 주요 사업 유형(중분류)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서비스(운송, 음식점, 숙박, 금융 및 보험 등), 재화(전자상거래, 전자게시판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 중 서비스가 46.8%(41.5조원), 재화가 26.9%(23.9조원)로 대부분을 차지
- 4) 원문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통칭.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인프라 사업자(정보 인프라 제외) 중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 참고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직거래는 60.9%, 중개거래는 37.2%, 둘 다 제공은 2.0%임
- 5)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각 기업의 부가통신 매출 중 상품·용역판매를 제외한 이용자수수료·광고수수료·중개수수료로 한정

19.4조원(28.1%) 증가

- 기업규모별 업체수와 매출을 살펴보면, 대기업 221개사(12.8%), 중견기업 193개사(11.2%), 중소기업 1,296개사(75.0%)로 구성되며, 대기업 매출액이 70.1조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
- 주요 대기업 매출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2022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오픈마켓인 쿠팡의 경우 54.5%,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73.8%, 숙박앱인 야놀자의 경우 35.1%, 패션앱인 무신사의 경우 47.7%임⁶⁾

나. 주요 쟁점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유통비용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의견

- 대형 온라인 플랫폼⁷⁾의 실질수수료⁸⁾가 다른 매체에 비해 높지 않으나 판매장려금⁹⁾과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광고비 등 기타비용과 납품업체의 기업규모별 실질수수료 차등 적용을 고려 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유사한 수준
 -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 쇼핑몰(10.3%)의 순¹⁰⁾
 - 기타비용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
 -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도 업체마다 편차가 크고¹¹⁾,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p 높음

6) NICE평가정보(주)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값임

7) 쿠팡, SSG, GS SHOP, 카카오(선물하기), 롯데아이몰, 마켓컬리를 대상으로 함

8) 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 및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여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임

9) 온라인 쇼핑의 거래유형은 직매입(66.8%), 위수탁(31.0%), 특약(2.2%)의 순.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하는 납품업체의 비중은 9.9%이며,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1.8%에 해당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1.23.

11) 참고로, 쿠팡은 24.4%, SSG.COM은 20.4%, GS SHOP은 17.2%, 롯데아이몰은 15.%, 카카오 선몰은 13.5%임

-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입점업체 중 유통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배달앱(64.7%), 숙박앱(62.4%),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으로 나타남¹²⁾

-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명목 판매수수료율¹³⁾은 오픈마켓(11.1%), 숙박앱(11.8%), 패션앱(19.1%)이며 이밖에 배달료,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입점업체에게 부담되고 이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과 입점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입점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여러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가입비와 광고비의 중복 지출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 있음

- 참고로, 입점업체가 이용중인 플랫폼 수는 평균 3.6개로, 오픈마켓(4.3개), 숙박앱(3.9개), 배달앱(2.9개), 부동산앱(2.4개)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비용 인상 시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37.6%), 무대응(34.0%), 유사 플랫폼으로 이동(17.6%)한다고 응답¹⁴⁾

-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이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순으로 나타남

-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고,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26.4%), ‘부당 요구’(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¹⁵⁾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 시장지배력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및 분쟁조정위원회 마련,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

- 2022년 5월부터 오픈마켓과 배달앱에 관한 자율규제 방안이 운용 중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해소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 입점 업체들은 설문조사에서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표준계

12)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2023.

13)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임

14)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2022.10,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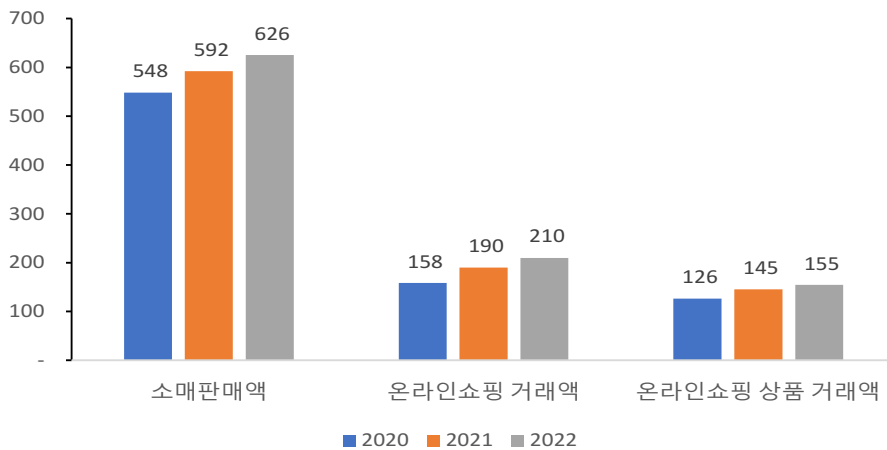
15)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1년, 34쪽.

약서 도입과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사전협의를, 수수료 및 광고비·판매대금 정산 방식 및 절차·상품검색 및 노출·계약기간 및 갱신 등의 기준 마련 및 공개 등을 선호한다고 응답¹⁶⁾

다. 관련 통계

소매판매액 및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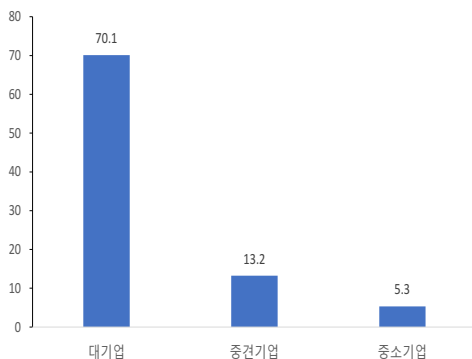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각년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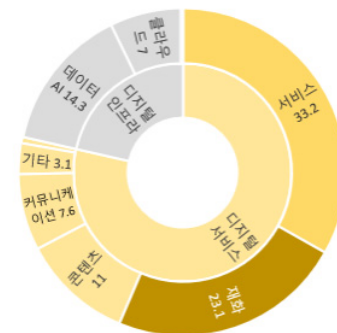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동향」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 구성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부가통신사업의 시장 동향」

16)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2022.10, 6~7쪽.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분야별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 및 기타비용

(단위: 판매액 대비 %, 원)

		판매수수료		기타 비용(광고비, 판매장려금 등)	
오픈마켓		11.1%	쿠팡(13.4%), 네이버(7.1%), G마켓(12.8%)	7.0%	쿠팡(8.8%), 네이버(6.0%), G마켓(6.1%)
숙박업		11.8%	야놀자(12.4%) 여기어때(11.2%)	899,110원	야놀자(964,366원) 여기어때(833,390원)
패션업		19.1%	무신사(24.5%), 지그재그(15.7%) 에이블리(16.1%) 네이버패션(9.4%)	2.9%	무신사(1.4%), 지그재그(4.7%) 에이블리(3.9%) 네이버패션(4.7%)
배달업	배달비	-	-	3,473원	배달의민족(3,386원) 요기요(3,435원) 쿠팡이츠(3,741원)
	광고비	-	-	191,289원	배달의민족(241,675원) 요기요(170,602원) 쿠팡이츠(96,62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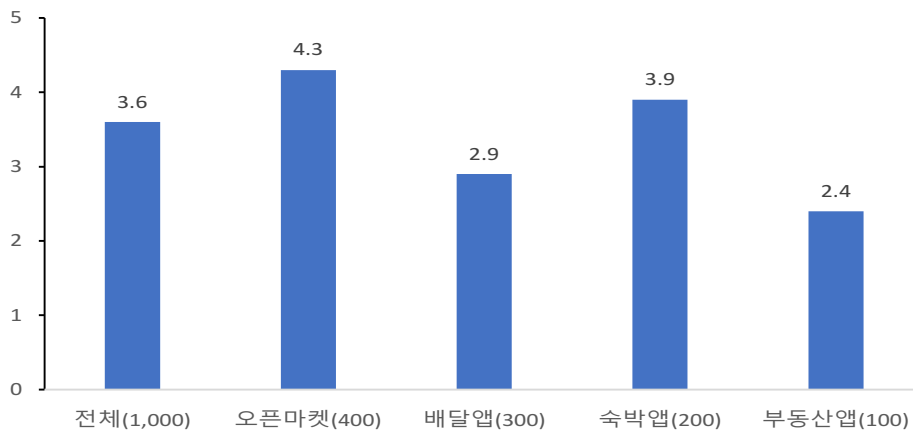
주: 1) 명목 판매수수료율(계약서, 약관 등에 명시된 정률 판매수수료율)을 의미

2) 오픈마켓과 패션업은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의 종류와 부과 체계 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입점업체의 전반적인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배달업과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업체별 광고 상품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입점업체의 구체적인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2023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이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 수(2021년)

(단위: 개)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부담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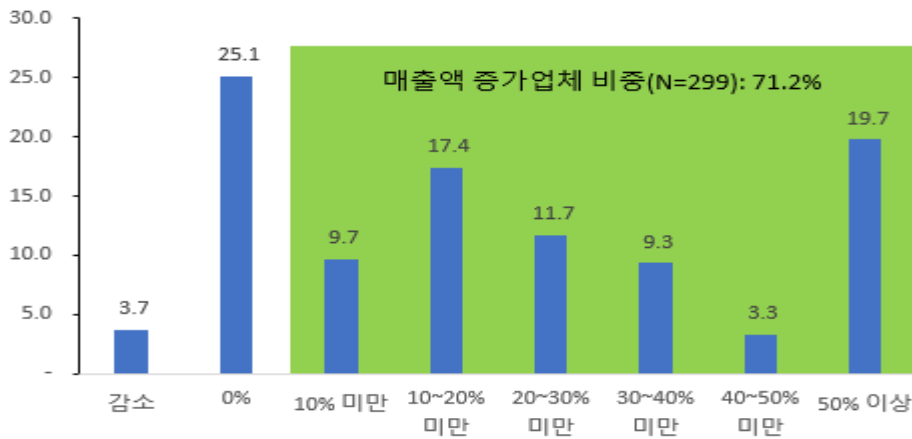
(단위: 점, %)

구 분	체감 적정성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담	매우부담
오픈마켓	44.9점	2.0	24.7	37.3	23.0	13.0
배달앱	32.3점	0.7	15.0	19.7	42.0	22.7
숙박앱	32.8점	2.0	16.0	19.7	35.7	26.7
패션앱	51.7점	3.7	33.3	34.0	24.0	5.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2023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후 매출 현황(2020년)

(단위: %)



주: 오픈마켓과 배달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평균 마진율(2022년)

(단위: %)

배달앱 (N=300)		오픈마켓 (N=300)		숙박앱 (N=300)		패션앱 (N=300)	
전체	21.0	전체	19.2	전체	22.7	전체	22.7
1억 미만	22.2	3억 미만	19.9	1억 미만	22.0	2억 미만	26.5
1~2억 미만	20.6	3~10억 미만	19.0	1~5억 미만	24.4	2~10억 미만	20.3
2억 이상	20.5	10억 이상	18.0	5억 이상	21.9	10억 이상	22.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

가. 현황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¹⁾²⁾³⁾,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2021년 기준 매출액 대비 2.3%를 투자
 - 기술개발 목적은 매출증대·규모확장(47.1%)과 채산성·수익성 증대(39.8%), 사업 다각화(9.0%)의 순
 - 기술개발비는 2021년 기준 평균 약 2.0억원(매출액 대비 2.3%)임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의 비중이 4.4%인 반면 중기업은 1.5%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5.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5.8%)이 높았고 이들 업종 중 기술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기업이 각각 34.6%, 2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중점 투자분야는 기존제품개선(51.0%), 신제품개발(24.8%), 기존공정개선(20.4%), 신공정개발(3.7%)의 순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31.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3.0%)의 경우 신제품개발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음
 - 참고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8대 기술분야⁴⁾에 대해 비교해 보면, 미국(-1.9년), 독일(-1.3년), 일본(-1.2년), 중국(1.8년)의 순

조은영 경제분석관 (02-6788-4676)

- 1)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2022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2022.
- 2)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가통계로,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최근 기술개발 중인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의 약 5.7만여개(제조업 3.8만개, 제조업 이외 업종 2.0만개)의 기업 중 4천여개 기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3)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표본 중소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27.8명, 평균 업력은 16.7년으로 나타남. 기업체당 평균매출액은 86.5억원이며 혁신형 중소기업은 29.7%, 일반기업 70.3%로 구성. 기술기업군별로 살펴보면, 범용기술 기업군이 52.0%, 중간기술 기업군이 42.5%, 고기술 기업군이 5.5%으로 구성.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시장진입기(4.1%), 성장기(42.3%), 성숙기(52.3%), 쇠퇴기(1.3%)로 구성. 주거래처 형태는 중소기업 간 거래가 54.2%, 중견기업 15.3%, 대기업 10.5% 등의 순. 핵심기술의 기술분류별 분포는 '기계소재' 분야 27.0%, '지식서비스' 20.3%, '화학' 16.9%등의 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40.5%, 상시기술개발전담 부서보유 기업이 33.2%인 것으로 나타남
- 4)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을 포함

- 조사업체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0.1%이지만 특정 업종, 성장단계, 기술기업군에 집중되는 경향
 - 기술정보의 외부 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체 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해당 기업체의 0.9%), 금속가공제품(0.8%), 기타운송장비업종(0.5%)의 순으로 나타남
 - 혁신형기업(0.5%), 첨단기술업(0.4%), 성장기기업(0.4%), 중간기술기업(0.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술유출은 개발판매계획과 영업정보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⁵⁾⁶⁾
 - 기술유출 항목은 개발판매계획(56.5%), 영업정보(52.2%), 연구노트 및 데이터 등 관련정보(34.8%), 시제품 및 관련 부품(26.1%), 설계도면(21.7%), 아이디어 및 제안서(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허청 보호집행 통계에 따르면, 기술유출은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중소기업 간 8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과 개인 간 257건, 대·중소기업 간 69건, 해외 유출이 13건의 순으로 나타남⁷⁾
 - 기술유출 기업 중 심층분석에 응답한 기업(국내 기술유출 3건, 해외 기술유출 1건)의 자체 산정에 따르면, 피해액은 국내 기술유출의 경우 건당 12.8억원, 해외 기술유출의 경우 건당 151억원임⁸⁾
- 기술유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내외 조치를 취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보안강화, 특허출원 및 영업비밀의 지식재산권 획득, 기술임치⁹⁾ 등 기술보호제도¹⁰⁾를 이용하며, 외부적으로 법적대응 및 수사기관의뢰, 전문기관 상담

5)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2022.6.

6)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는 매출액 5억원 초과 제조업과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기타 업종 3,4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

7) 기술탈취 관련 특허청 보호집행 통계로,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수사건을 합한 수치임(특허청 보도자료, “기술탈취 방지대책,” 2023.6)

8)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2년), 8쪽.

9)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및 분쟁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물로 활용하는 제도임. 2018~2022년까지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60,248건으로 2018년 9,522건에서 2022년 15,628건으로 증가세를 보임

(15.8%), 관계자에 경고문서 발송(15.8%) 등을 조치

- 일부 중소기업(10%안팎)은 입증자료 부족(75.0%)과 법적대응 여력 미흡(50.0%)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¹¹⁾

나. 주요 쟁점

■ 기술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시 행정조사자료의 활용과 손해배상 배율 인상 등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

-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소송시 행정조사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상대방 기업의 동의없이 행정조사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5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공정화법」)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 위반시 손해배상액 가중제도를 2011년부터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다는 의견 있음¹²⁾
 - 손해배상배율을 3배에서 5배 또는 10배로 늘리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공정화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됨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자료의 활용과 손해배상배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와 기업 간 기술협력의 감소 등의 측면에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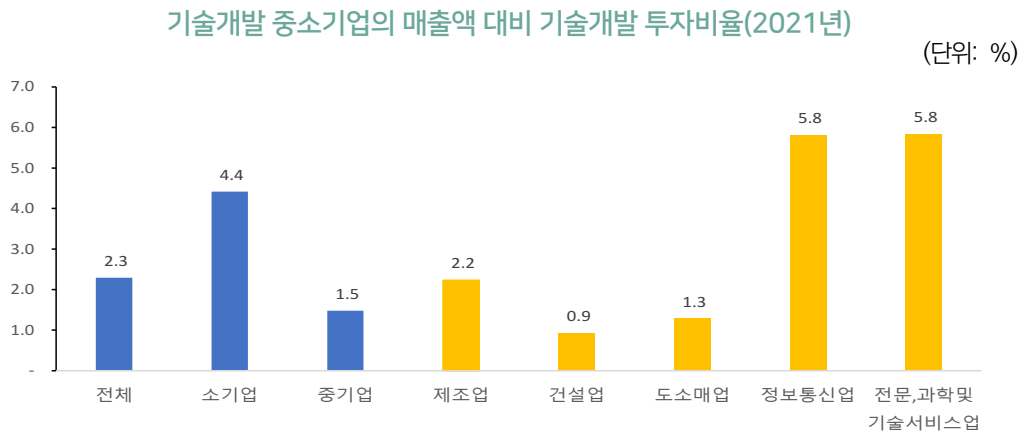
10)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용, 기술보호 현장진단 및 자문, 기술지킴서비스 제공,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용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전체 기업 수에 비해 이용실적은 낮은 수준. 참고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실적은 2020~2022년 동안 44건,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2018~2022년 동안 562건, 기술보호 현장진단 및 자문은 동기간 4,671건, 기술지킴서비스는 5,499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261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60,248건임

11)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2022.6. 10~12쪽.

12) 최승재(2014)에 따르면, 2000~2009년 상반기 선고된 국내 특허침해(실용신안 사건 포함) 사건에서 5천만원 이하가 약 50%정도였고, 인용액이 청구액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손해배상배율의 상향보다 적절한 실손해액 산정을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¹³⁾
 - 2011년 「하도급공정화법」에 가중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승소한 사례가 1건에 불과
 - 2021년 기준 대중소기업 간 특허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75%에 이름
 - 한편, 「하도급공정화법」의 경우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탈취된 후 하도급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
- 손해배상배율 상향이 기술탈취의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업 간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음
 -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 ‘거래를 중단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 ‘자료제출에 따른 영업비밀 누출’(15.4%) 등을 제시¹⁴⁾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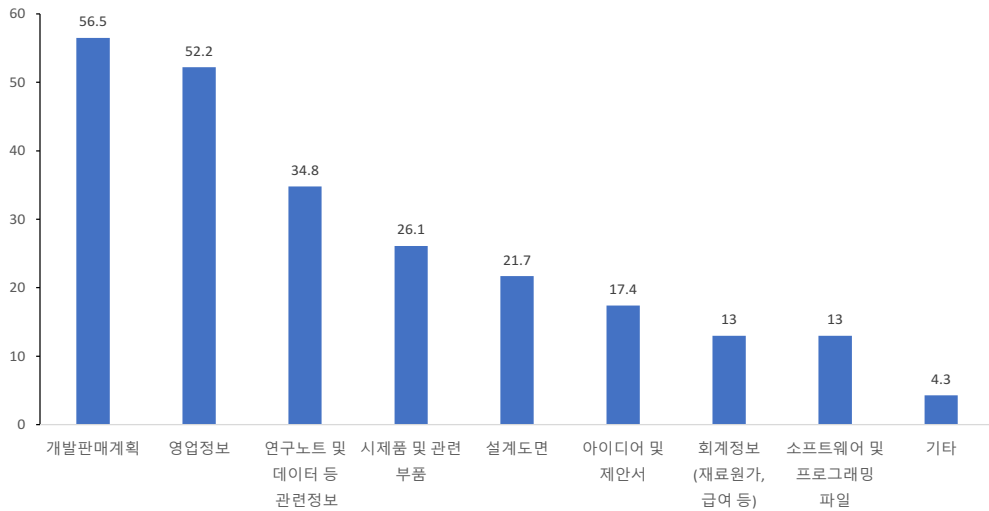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2022년

13) 채민선, ‘흩어져 있는 ‘기술탈취 근절 제도’ 실효성 없다,’ 중기이코노미, 2023.4.21.

14)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하도급 위수탁 규제 증가 기업 설문조사 보도자료,” 2019.

외부로 침해된 기술 및 경영정보(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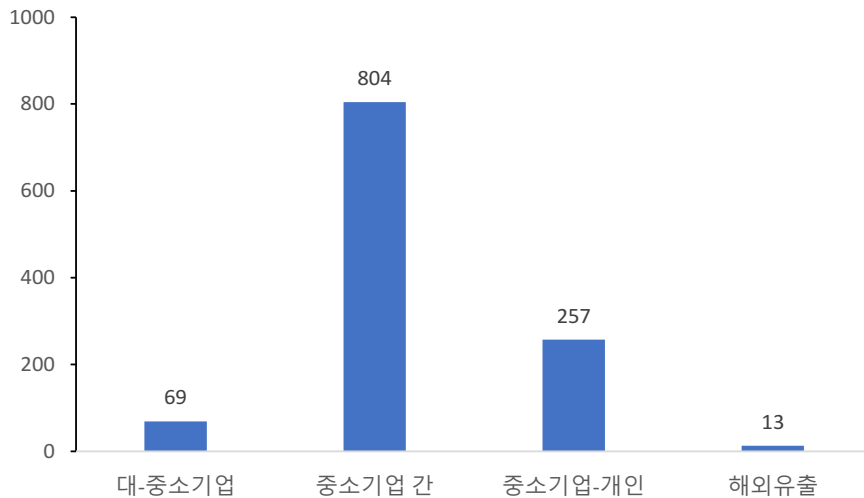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2022년

기술탈취 관련 특허청 보호집행 통계(2019~2023년 5월)

(단위: 건)



주: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수사건 합계

자료: 특허청

기술정보 외부 유출 애로 경험

전체		기업체수(개)	경험있음(%)
		57,234	0.1
규모	소기업	41,953	0.2
	50억원 초과~80억원 이하	5,288	0.5
	8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	3,718	1.0
업종	금속가공제품	4,882	0.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768	0.9
	기타운송장비	438	0.5
공업구조	중화학공업	28,692	0.2
산업형태	가공조립형	23,303	0.3
기술수준	첨단기술업종	5,840	0.4
	중기술업종	10,339	0.4
기업유형	혁신형기업	12,606	0.5
기업성장단계	성장기	16,193	0.4
기술기업군	중간기술기업	15,178	0.4
기업업력	3~7년미만	6,054	0.4
	7년이상	30,847	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2022년

21대 국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관련 주요 법률안

의안	발의자 (발의일)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2021.11.11.)	현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2023. 7. 26.)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제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2023.6.9.)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

77

공공기관 이전의 현황 및 성과

가. 현황

- 2019년을 기점으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
 - 2005년 기준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346개(85%)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
 - 지방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별 통·폐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
-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수립 언급
 -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
 -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¹⁾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²⁾ 이외의 공직유관단체³⁾ 또한 지방 지자체들의 유치 희망 상태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2024년 총선 이후로 연기
 - ‘공공기관 2차 이전전략’은 2023년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별 과열 조짐에 따라 현재는 연기된 상태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

김상용 경제분석관 (02-6788-4680)

1)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 2023

2)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여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 현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상태

3)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포함

나. 주요 쟁점⁴⁾

-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는 늘었지만, 계획인구 달성에는 실패한 상황
 - 2022년 6월 기준으로 10개의 혁신도시 중, 부산(105.7%)과 전북(100.7%)의 혁신도시만이 계획인구를 달성한 상태
 - 특히 광주·전남(78.4%)과 충북(78.5%)의 혁신도시는 2022년 6월 기준, 계획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낮은 계획인구 달성률을 보임
 -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보다는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더 늘어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
-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혁신도시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
 -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율이 공공기관 이전 후 각각 2.6%와 1.6%씩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경쟁이 심화
 -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
 -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과 농협 및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역별 유치 경쟁이 심화

4)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KDI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021)을 참조

다. 관련 통계

공공기관 지역별 위치 현황

The figure is a map of South Korea divided into nine regions, each represented by a different color. Arrows point from each region to a box containing a list of research centers located there. The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research centers are:

- 충남 (기관 : 7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특별기념관, 한국중부발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 강원 (기관 : 12개)**: 강원랜드, 강원원주대학교지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복합소재기술개발원
- 충북 (기관 : 14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훈려개발원
- 경북 (기관 : 10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 대한정보통신공단, 한국고령안정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곡태백문화복지재단, 한국수목유전자육, 한국산지진흥재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의약진흥회
- 대구 (기관 : 14개)**: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지교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불봉농림수산진흥원, 한국국립과학성정보원, 한국국립산림진흥원, 한국부산산업, 한국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학재단, 한국기능정보대전진협회
- 울산 (기관 : 9개)**: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매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협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핵심기술자력대학연계대학교
- 경남 (기관 : 14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기술표본원, 국토안전관리원, 부산대학교지교병원, 주력관리공단, 한국농도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출판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천지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 부산(기관 : 21개)**: APEC기록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체육협력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영상동물공익위원회, 해양진흥위원회, 주력도시주택공사, 한국농부발전, 한국수산물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단, 한국주요금융공사, 한국정호선상업복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구소, 한국해양진흥공사, 경남발전연구원의학원
- 제주 (기관 : 5개)**: 공동원예연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
- 대전(기관 : 39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충남대학교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정보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산생명자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폐기물, 한국원자력환경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축산업진흥원, 한국축산유통개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생활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국가수립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전북 (기관 : 11개)**: 국민연금공단, 새마을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국조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물산업물러스트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민간연구사, 한국문화유산사업진흥원
- 광주(기관 : 3개)**: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세계직지연구소
- 전남 (기관 : 16개)**: 국립묘지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물우수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경영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 한국문화유산진흥원, 한국KDN, 한국KPS, 한국MCS

주: 1.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만을 표시

2.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도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수도권 공공기관 리스트

	공 공 기 관
서울 (기관: 122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악방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작기증원,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에스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환경보건협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요양원, 육아정책연구소, 공영홈쇼핑, 통일연구원, 한국문화번역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영상자료원
경기 (기관: 31개)	88관광개발,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잡월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인천 (기관: 8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한국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주: 1.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만을 표시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등은 제외)

2.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도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혁신도시별 주민등록현황

(단위: 천명)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계획	달성		계획	달성
부산	7	7.3 (105.7%)	충북	39	30.7 (78.5)
대구	22	18.7 (85.0%)	전북	29	29.3 (100.7%)
광주·전남	50	39.2 (78.4%)	경북	27	23.1 (85.6%)
울산	20	19.9 (99.5%)	경남	38	33.1 (86.8)
강원	31	26.4 (85.2%)	제주	5	4.9 (98.0%)

주 : 2022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2022

2022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실적

(단위: 명)

혁신도시	채용대상인원	지역채용인원 (비율 %)	혁신도시	채용대상인원	지역채용인원 (비율 %)
부산	218	83 (38.7%)	충북	92	36 (39.1%)
대구	206	94 (45.6%)	전북	256	84 (32.8%)
광주·전남	649	228 (35.1%)	경북	363	129 (35.5)
울산	65	29 (44.6%)	경남	407	135 (33.2)
강원	238	146 (61.3%)	제주	20	9 (45.0%)

주: 1.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인원 기준

2. 30%가 목표치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22년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2023년도 추진계획」, 2023

78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가. 현황

-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고,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2015년 이전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2023.7.28.)
 - 기준 중위소득¹⁾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²⁾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수혜 대상자가 증가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
 -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권 일 경제분석관 (02-6788-4677)

- 1)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
- 2)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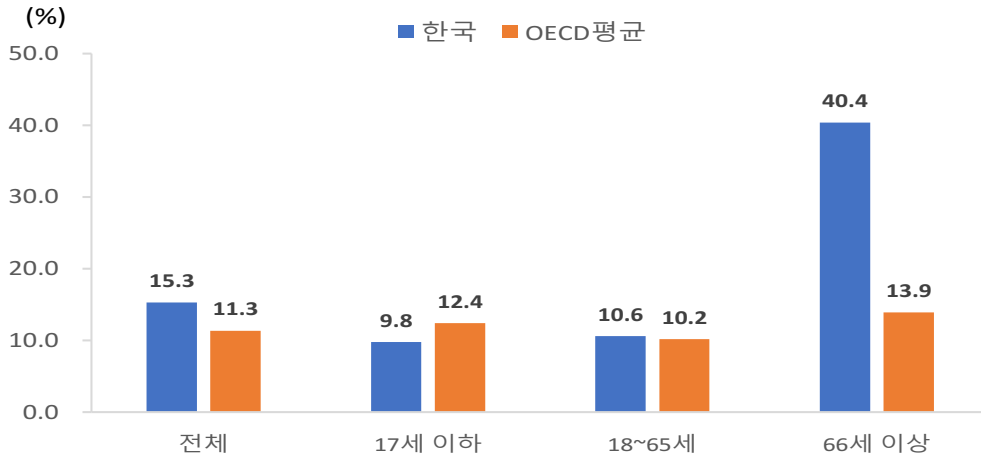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났으나 빈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 15.3%)은 OECD 평균(11.3%)보다 높은 수준이나, 17세 이하 및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 반면,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18배로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 수준을 높이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난 대응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며 기초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은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저소득 자영업자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³⁾
 -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
 - 재난대응체계로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소득 안전망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소득 빈곤층을 넘어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⁴⁾

3) 이영욱,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KDI FOCUS』통권 제111호, 2022.4.21.

4) 최진희,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제43권 제1호, 보건사회연구원, 2023.

다. 관련 통계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2021년)



주: OECD 평균은 통계자료가 있는 OECD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경제」, 2023.7.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⁵⁾과 추가증가율⁶⁾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 5)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
- 6)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0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0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0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¹⁾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²⁾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 1)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4개 산업 등 총 73개 사업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	보훈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국토부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기초생활) 주거급여
18		행복주택 공급
19	농림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학교우유급식
21	문체부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2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3	법무부	통합문화이용권
24		스포츠강좌이용권
25	복지부	법률 구조 제도
26		(기초생활) 생계급여
27		해산·장제급여
28		긴급복지
29		장애수당(기초)
30		장애수당(차상위)
3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2		(기초생활) 의료급여
33		장애인연금
34		재난적 의료비 지원
3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부처	사업명
36	복지부	자활근로
37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9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2		노인실명예방사업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4		발달재활서비스
45		언어발달지원
4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1		치매 검진 지원
5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5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6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57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아이 돌봄 서비스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8	질병청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6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	통일부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1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2	해수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3		어촌생활돌봄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79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역할과 추진현황

가. 현황

- 저출산 및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돌봄 불안, 의료비용 부담,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한 도시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
 -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적 향상과 헬스 케어와 같은 복지비용 절감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주요 이슈로 부각¹⁾
- 스마트시티는 정보와 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 운영 서비스 제공,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를 뜻함
 -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 케어,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20~2027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24.53%로 추정되며, 유럽이 세계 스마트 시장의 3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²⁾

나. 주요 쟁점

- 디지털 기술의 활용방안이 증가하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마트시티는 혁신적인 정보 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내 이동·주거·복지에 관련하여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임
 -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스마트시티 내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서비스 요소로 고려
 - 스마트 서비스는 1인 가구의 연결성, 공유 가능성 및 생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시티의 조건으로 확장 가능

이소연 경제분석관 (02-6788-4752)

1) K.Skouby et al., Smart cities and the ageing population, 2014

2) TechNavio, Global Smart city market 2023-2027, 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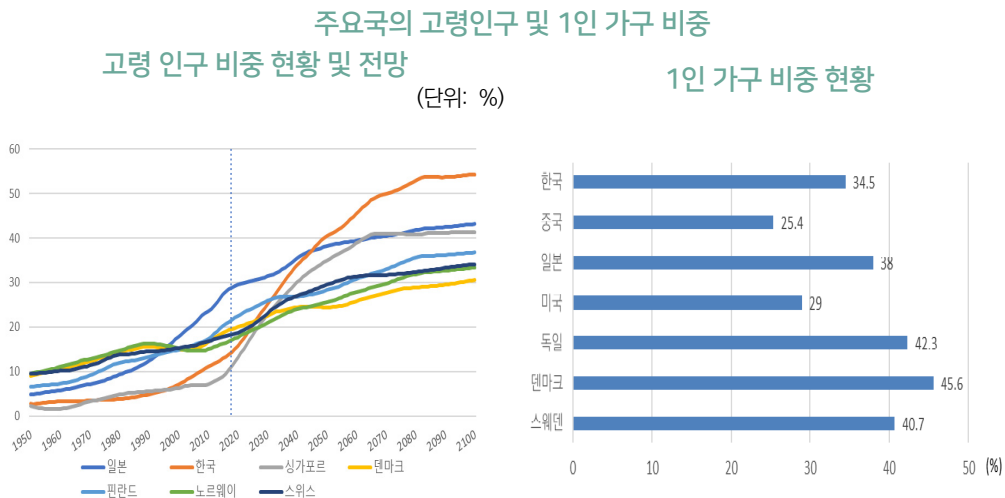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 남미 등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스마트 헬스 케어, 스마트 교통 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증가³⁾

■ 한국은 도시혁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도모

-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세종과 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
- 2019년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2019-2023)」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국가 시범도시, 기존도시, 노후 도시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접근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적용

다. 관련 통계



주: UN의 기준에 따르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주: 1. 1인 가구 비중 = (1인가구수/일반가구)*100
 2. 2022년도 기준 1인 가구 비중 현황
 자료: UN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료: 각국 통계청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Daniel F.Runde et al, Addressing an Aging popul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2021

인구 구조 변화와 스마트시티의 역할

스마트	디지털 기술의 활용	
	영역	내용
의사 소통	사회 참여	사회적 고립 방지, 가상현실 기반으로 탐색 및 소통
	심리 치료	정서적 교감 지원- MR 기반 사회적 상호작용 도모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치료	원격 치료 및 재활 기술
	모니터링	ICT, AI를 활용한 의료헬스산업 첨단화
스마트 팩토리	공급사슬 차세대화	VR쇼핑, XR 기술을 활용한 문화 서비스 경험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소비환경 구축
스마트 홈	안전	센서 활용으로 인한 경보 시스템
	주거와 일상생활	활동 모니터링 및 가상 간병인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	이동성	자율주행 공공교통으로 고령자의 이동권 확대
	사고 방지	고령자 사고 빈도 횡수 감소

자료: 1. 서울디지털재단,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스마트시티 정책 거버넌스 연구」, 2019
2. OECD, Measuring smart cities' performance, Do smart cities benefit everyone?, 2020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

거점형	내용
울산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 응답형 버스, 스마트 교통패스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친환경 솔루션, 스마트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기반
고양	경기권의 데이터 허브 거점도시로 인프라 구축 및 교통 문제 해결을 추진
강소형	내용
목포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 도입
평택	자발적 탄소시장 구성으로 녹색 스마트시티
태안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 로봇 카트, 노인 생활안전 케어존 구성 및 드론 배송 및 순찰, 관제 시스템 도입
아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입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개발로 타 지역 인구 유입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거점 조성

주: 1.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 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2023년 5월 선정된 지자체로 각각 국비 200억원 지원 계획.
2. 감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2023년 5월 선정된 지자체로 각각 국비 120억원 지원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주요국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실시기관

도시(국가)	계획명	프로젝트	
		실시기관	추진 내용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 도시 계획	Forum Virium Helsinki :헬싱키 산하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지원 기관	환경, 건강, 디지털, 시민 도시 정책 테마로서, 혁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건강한 삶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실, 디지털 정보국, 정보기술청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도시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최초 탄소중립도시	코펜하겐 솔루션 랩	건강, 스마트 이동성, 에너지와 기후 변화, 스마트 시민, 스마트 학습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일본)	초스마트사회 (society5.0)	국토교통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소멸 위기 지방 선정 수도권 격차 최소화 건강증진 및 수명연장, 이동 수단의 혁신(자율주행 공공교통 서비스)
부산 (한국)	에코델타도시	부산시, 한국수자원 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의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 2022년 1월 스마트빌리지 입주시작

- 자료: 1. 스마트도시 정책 거버넌스 연구, 스마트도시 해외사례, 헬싱키, 2021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 녹색연구단, 싱가포르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제도, 2019.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 녹색연구단, 일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제도, 2019 .
 4. House of Switzerland, Switzerland's smart cities, a valuable export, 2017
 5.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 2018

스마트시티 지수 순위: 2023년

순위	국가	도시	등급	순위 변동(2021년기준)
1	스위스	취리히	AAA	-
2	노르웨이	오슬로	AA	-
3	덴마크	코펜하겐	AA	▲ 2
7	싱가포르	싱가포르	AA	-
8	핀란드	헬싱키	AA	▲ 1
16	대한민국	서울	A	▲ 2

주: 1. Smart city index는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 단계를 평가하여 세계 118개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5개 분야, 39개 지표를 평가.

2. 건강·보건, 모빌리티, 활동, 직업과 교육 기회, 거버넌스 5개 분야

자료: IMD SUTD, [Smart City Index], 2023.4

80

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점검

가. 현황

-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 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됨에 따라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체계가 수립됨
- 국회는 2021년 12월 종래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이하 '기본법') 제정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기본법은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정의함
 - 정부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하였고, 4대 전략, 17개의 목표, 11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설정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는 우리 정부 및 유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우리 정부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K-SDGs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23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정량평가가 가능한 155개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2024년 예정)
 - 또한,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을 유엔 SDGs 지표에 근거하여 분석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
 - 우리나라 SDGs 성취도의 국제수준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및 유엔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UNSDSN)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SD report)」를 통해 확인 가능

나. 주요 쟁점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출발선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책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피드백 자료로 활용 가능
- 2022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는 세계 31위
 - UNSDSN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SDG Index, 이하 “SDGI”)는 78.1로 작년 대비 4계단 하락한 31위에 머무름
 - 한국의 SDGI는 미국(75.9, 39위)보다는 높으나, 핀란드(86.8, 1위)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
 - 한국 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가 높은 30개국 중 12개 국가*는 예산 편성 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
 - * 핀란드(1), 스웨덴(2), 덴마크(3), 오스트리아(5), 노르웨이(7), 스페인(16), 포르투갈(18), 네덜란드(20), 일본(21), 이탈리아(24), 캐나다(26), 그리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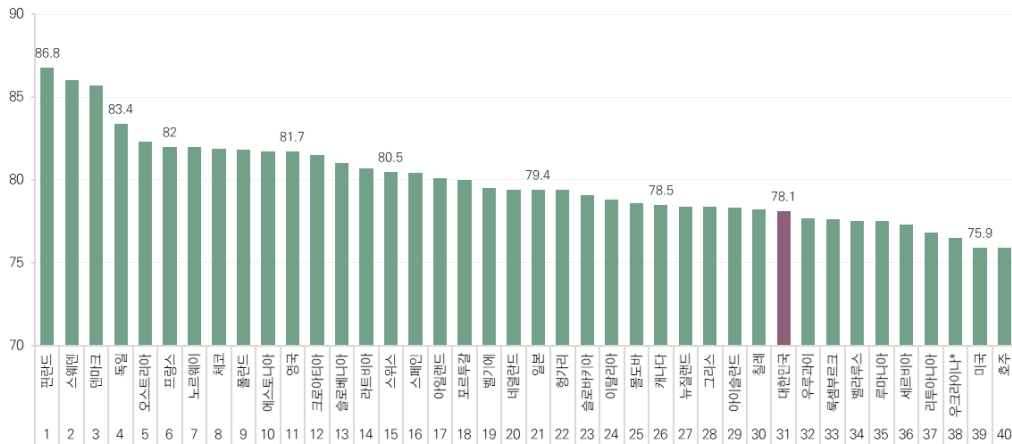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 상위 30개국 중 28개국이 OECD국가이며, OECD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와 국가 경제 수준의 상관성은 높지 않음(상관계수 0.29)
 - 1인당 GDP 최상위 국가(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보다는 차상위 국가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중 11개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음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성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발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가 낮거나 평균적인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문(성평등, 깨끗한 물·위생, 수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및 지구촌 협력 등)은 적극적인 개선 필요
 - 5년간(2017-2022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평균적인 달성 수준도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SDG15(육상생태계 보전) 부문은 목표 달성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후행하고 있어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SDG14(수생태계 보전) 부문도 개선 추세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우리나라의 SDG14(수생태계 보전) 및 SDG15(육상생태계 보전) 부문 성취도는 각각 55.4 및 54.1로 절대적인 성취 수준이 낮으며, OECD 평균(63.7 및 66.6)과 큰 차이를 보임
 - 생태계 및 환경 보호(산림복원 및 보호구역 지정 등)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성평등 제고와 ODA 규모 확대 등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현행법 중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한 법률은 126건
 - 현행 91건의 법률은 목적·기본이념·정의·원칙 조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고 있고, 35건의 법률은 책무·사업 등 관련 조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은 낮지 않음
 - 다만, 지속가능발전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필요

-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수준 점검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발·개선 및 보급하여야 할 것임

다.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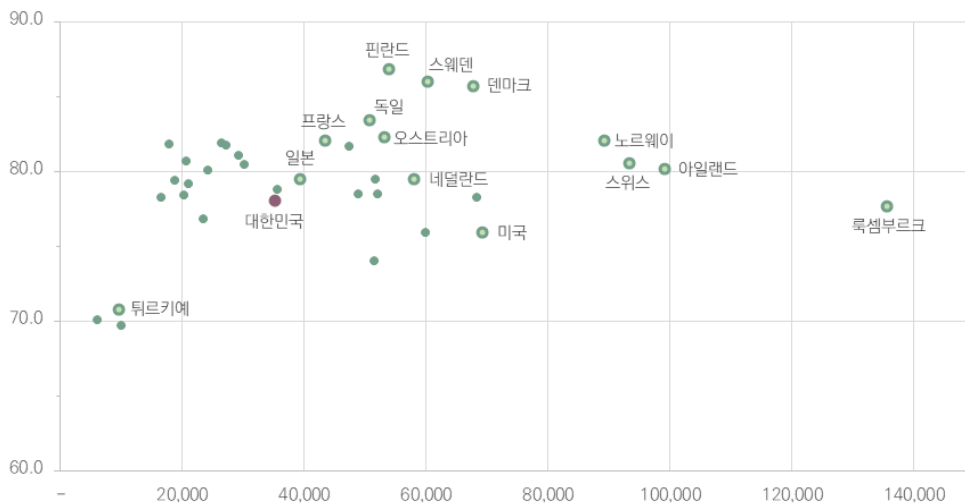
2022년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도(SDGI) - 상위 40개국



주: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UNSDSN 자료(202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SDGI와 일인당 GDP - OECD 국가



자료: UNSDSN 자료(202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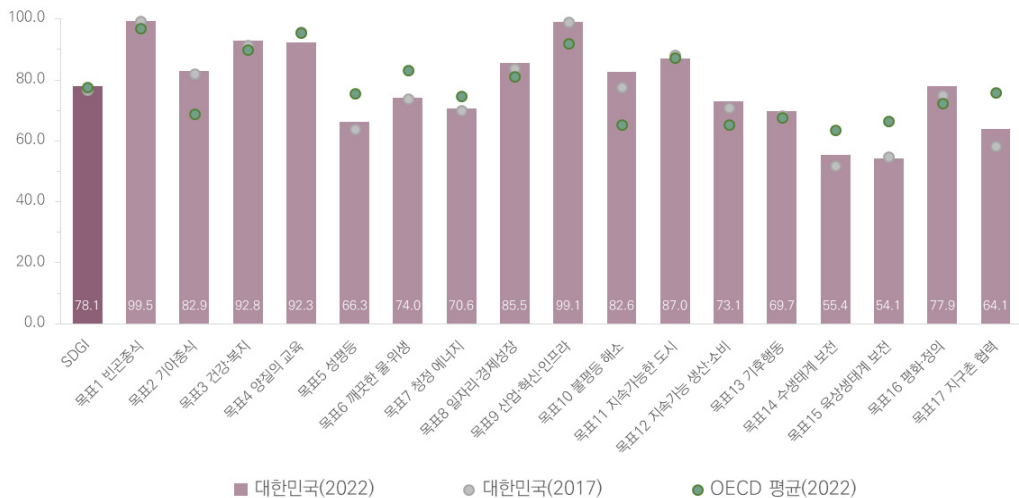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성취수준 및 개선추세 - 주요 OECD 국가



성취수준 ● 목표 달성 ● 일부목표 미달성 ● 상당목표 미달성 ● 주요목표 미달성 ● 자료 없음
개선추세 ↑ 정상이행 ↗ 점진적 개선 → 부진 ↓ 후행

자료: UNSDSN 자료(202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성취도 비교 (2017-2022년)



자료: UNSDSN 자료(202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속가능발전을 목적·기본이념·정의·원칙에 반영한 법률(91건)

(2023. 7. 31. 기준)

연번	제명	연번	제명	연번	제명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5	고용정책 기본법	6	공공외교법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	국립공원공단법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3	국토기본법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극지활동 진흥법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대기환경보전법
2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8	물관리기본법	2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2	밀산업 육성법	3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3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6	산림기본법
37	산림보호법	3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산림조합법	41	산업발전법	4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	소상공인기본법
46	수산업법	4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4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번	제명	연번	제명	연번	제명
52	어장관리법	5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54	에너지법
5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5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5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8	연안관리법	59	원양산업발전법	60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61	자연공원법	62	자연환경보전법	63	자원순환기본법
6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6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7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7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7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7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7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76	하수도법	77	한국국제협력단법	7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7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8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88	환경영향평가법	89	환경정책기본법	9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9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발간일	2023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익섭
편 집	정책총괄담당관실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730)
인쇄처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60-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Fiscal & Economic Issues
at a Glance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